발간등록번호
11-1101000-000051-01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❷
2008.2 ~ 2013.2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❷ 2008.2 ~ 2013.2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차례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❷ 2008.2~2013.2

제 3 편 국책사업 추진 및 국제행사 지원

제1장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6

1. 4대강 살리기 사업
2. 새만금사업
3.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4.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5. 세종시 이전
6.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진

제2장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120

1. 핵안보정상회의
2. 2012 여수세계박람회
3.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4.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
6.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제 4 편 규제개혁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156

제2장 기존 규제의 정비 159

제3장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193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223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36

제 5 편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제1장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개요 256

제2장 정부업무평가 체계 및 운영 성과 257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및 운영 성과 337

제4장 향후 발전방향 340

제 6 편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추진

제1장 추진배경 344

제2장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구축 351

제3장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360

제4장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추진 369

제5장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지원 377

제 7 편 조세심판업무 추진

제1장 조세심판원 일반현황 390

제2장 조세심판업무 추진성과 394

제3장 주요 조세심판 사례 411

부 록 국무총리 담화문·발표문 422

국무총리 주요 일지 506

국책사업 추진 및 국제행사 지원

006 제1장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120 제2장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1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제1절 4대강 살리기 사업

1. 추진배경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고 있다.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정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했으며,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독일은 하벨강 · 이자르강 프로젝트를 통해 강 복원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강과 산, 산림과 하천을 개조하여 국가를 부흥하자는 '강산개조론' 을 설파하셨고, 제1차 국토계획(1972~1981년)을 통해 4대강 유역개발을 추진하여 치수와 이수 분야에서 당시의 경제 수준에 맞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앞두고, 개최지인 서울시의 환경정비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강종합개발사업(1982~1986년)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강 본류의 서울시 구간에 수중보 2개(잠실, 신곡)를 건설하고 7,000만㎥의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여 한강의 물길을 깊고 넓게 만드는 한편, 주변지역도 시민공원 등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로, 철도, 주택 등 교통 · 주거 분야 SOC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온 반면, 하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정비된 서울시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과 수변공간은 경작지, 비닐하우스, 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방치된 채 소수의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어려운 물관리 여건으로 인해 매년 홍수 ·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향의 기후변화로 인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 전 낙동강-병성천 합류부(상주)

4대강 사업 전 제2낙동대교 부근(부산)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의 3분의 2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천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산악지형으로 하천경사가 급해 홍수 도달시간이 짧고 첨두홍수량이 매우 큰 편에 속해 물관리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1)]

이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홍수피해가 반복되었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마철 이후 갈수기에는 건천화와 하천 유량 부족에 따른 수질악화로 인해 가뜩이나 방치되고 있는 수변공간은 혐오공간이 되어가고 있고, 생태계의 건강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한편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여가 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수상레저 · 수변 문화활동 등과 같은 하천 활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8년,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결정 당시 유럽, 미국 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전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녹색뉴딜사업(Green Newdeal Projcet)의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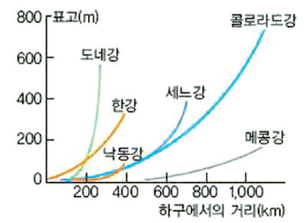

【 하천경사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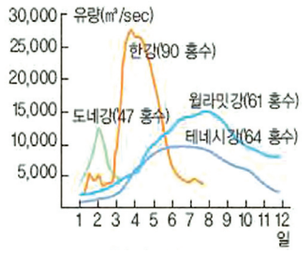

【 홍수 수문곡선(강우집중도) 비교 】

1) 물 스트레스 국가는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700㎥ 이하로 수자원 개발이 없는 자연 하천에 물 공급을 의존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인 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말함(PAI(국제인구행동연구소), 1997), UNEP, UNESCAP 등 유엔산하기구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음)

2. 사업 추진경과

2000년대 이후 홍수 예방, 친수공간 증대를 위한 강 살리기의 필요성이 전문가 집단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국가의 예산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2년 6조원대의 수해피해, 2006년 1조9,000억원대의 수해피해, 갈수기 물부족 및 수질오염, 유량의 계절적 편차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친수공간 부족 등 대내적 요건과 전 세계적인 경향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피해의 대규모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개념의 물관리대책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졌으나,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보니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15일 주재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홍수, 가뭄 등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2009년 1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녹색뉴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2009년 2월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설치되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가 구축되었다.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은 관계부처 이견조정 등 대외 기능강화와 국내외 홍보 강화 등을 위해 2009년 4월 장관급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국무총리실 4대강 정부지원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4대강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 4대강 정부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로, 4대강 살리기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부처 간 정책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정부지원협의에서 국토부(보, 준설 등), 환경부(수질개선사업), 농식품부(저수지 둑 높임 사업 등), 행정안전부(자전거길) 등 주요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정 및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이 공유·논의되어 전체적인 4대강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

【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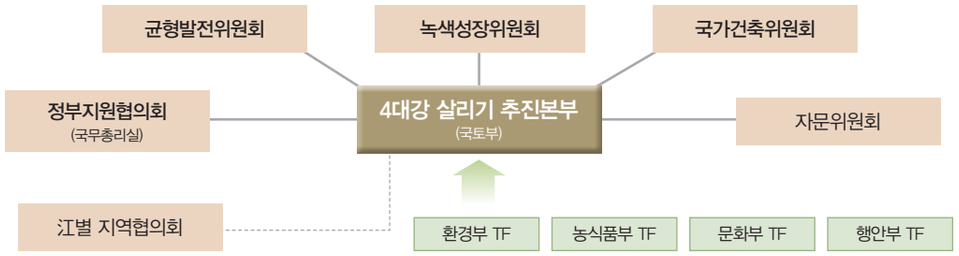

2009년 4월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참여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합동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의미와 추진방향,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기본구상 등이 논의되었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성과도 발표되었다.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 대회(2009.4.27)

이후 지역설명회(2009.5.7~19, 12회), 공청회(2009.5.25), 전문가그룹 자문, 관련 학회토론 등을 거쳐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0월 16일 죽산보·승촌보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2011년 말에는 주요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현장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16개의 보 현장을 국민에 개방했다.

2011년 10월 6일에는 국무총리가 백제보 개방행사에 참석했고, 2011년 10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수계별 합동 행사를 실시하여 4대강 현장 개방을 기념했다. 개방행사는 음악제, 공도교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국민참여형 행사로 개최되었다.

개방행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전문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시된 의견들은 개방행사에 반영되었다.

백제보 개방행사

이포보 개방행사

달성보 개방행사

죽산보 개방행사

주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도 표출되었는데, 특히 일부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26건 제기되었다. 2012년 9월 현재 판결 선고된 22건의 소송에서 모두 정부가 승소하여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2011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로 지자체장이 교체된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표명, 사업착수를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3건)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경남도와 협의를 계속했지만 경남도 측이 사업추진을 거부하자 경남도 구간의 사업권을 회수하여 국가가 직접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국가가 승소했다.

2012년 9월 현재 16개 보 건설과 4억5,000만m^3의 퇴적토 준설, 130km^2의 수변생태공간 조성, 1,757km의 자전거길 조성 등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전체 공정률 98%로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2011년 10월 개방행사 이후 2012년 9월까지 약 1,000만명의 국민이 현장을 찾아 달라진 4대강을 확인하고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을 즐기고 있다.

3. 사업의 비전, 목표, 투자계획

2009년 6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 사업의 비전으로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 제시되었다. 비전을 보다 구체화한 사업목표는 ①기후변화 대비 ②자연과 인간의 공생 ③국토 재창조 ④지역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의 4가지로 제시되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과제는 ①물 부족과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 ②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③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④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⑤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5가지이다.

사업비는 2009~2012년간 총 2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고,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소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부처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소관 15조4,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조9,000억원, 환경부 소관 3조9,000억원이 투자되었다(다만, 국토해양부 소관 15조4,000억원 중 8조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키로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09.9.25)에서 결정되었다).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목표 】

4. 사업 주요 내용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정비, 보 · 댐 건설, 제방보강, 자전거길 및 수변공간 조성 등 홍수예방 및 물 확보 관련 주요업무를 담당했고,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등 농업분야 사업을 각각 담당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수 예방 및 물 확보

- 16개 보 : 홍수 시에는 물을 통과시키고 가뭄 시에는 가두는 역할– 보에 부착된 소수력발전소 : 최대 5만8,000가구가 사용가능한 2억7,000만kw 전력 생산
- 4억5,000만m^3 퇴적토 준설 : 물길을 크고 넓게 하여 충분한 물 흐름 공간 확보
  – 준설토는 골재 판매(판매수익 약 3,300억원), 농경지 리모델링에 활용
  * 한강종합개발사업(1982~1986년)시 서울시 구간에서 7,000만m^3 준설
- 수변생태공원 : 경작지 · 쓰레기매립지 등으로 방치된 수변공간을 수변공원(130km^2, 교목 18만8,000주, 관목 1,204만주, 초화류 3,734만m^2)으로 조성
  – 오토캠핑장, 광장, 산책로,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편의시설도 설치
- 생태하천 : 하천 내 농경지 (2,000만평)을 정리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어도(魚道), 생태습지, 샛강 등을 조성하여 강 · 사람 · 자연 공생 도모
- 수변자전거길 : 1,757km(한강 310km, 낙동강 665km, 금강 305km, 영산강 377km, 새재길 100km)
- 노후 제방보강 : 784km, 제방폭 확대 및 제방 사면 완경사화 등으로 치수 안전도를 증대하고, 하천 · 육상 생태계 단절 지양
-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건설 : 홍수조절지(2개소), 강변저류지(3개소)를 건설하여 하류 홍수피해 예방, 평소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활용
- 문화관 건립 : 5개소, 4대강의 역사 · 문화를 보여주는 콘텐츠 전시, 공간 일부는 독서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 낙동강 댐사업 : 3개소, 낙동강 유역 물 공급과 홍수 방어
- 낙동강 하구둑 구조 개선 :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475m → 760m)하여 수위 1.1m 저감
- 농경지 리모델링 : 140개소, 7,709ha의 저지대 농경지를 평균 2.6m 높여 침수피해 방지 및 시설원예 등 고소득 재배 여건 마련

수질개선 및 생태 개선

- 수질개선사업 : 1,281개소, 하수처리장 · 총인처리시설 신 · 증설 등
  * 하수처리장 신 · 증설(832), 총인처리시설 신 · 증설(233), 수생태복원(107), 비점오염저감(24), 공단폐수처리(39), 가축분뇨처리(21), 완충저류(10), 측정망(15)
- 멸종위기어류 인공증식 · 복원 및 방류 : 4대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어류 증식 · 복원 기술개발 및 수계 방류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기준을 총인은 최대 20배(하수처리장 10배), COD는 2배 강화

농업 분야 사업

- 저수지 둑 높이기 : 93개소, 저수지 용량을 늘려 갈수기 건천화와 수질 악화 방지 및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용량 증대
-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 3개소,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확장, 영암연락수로 확장, 영암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을 통해 수위를 저감하여 주변 농경지(5,897ha) 상습 침수방지

【 4대강 살리기 사업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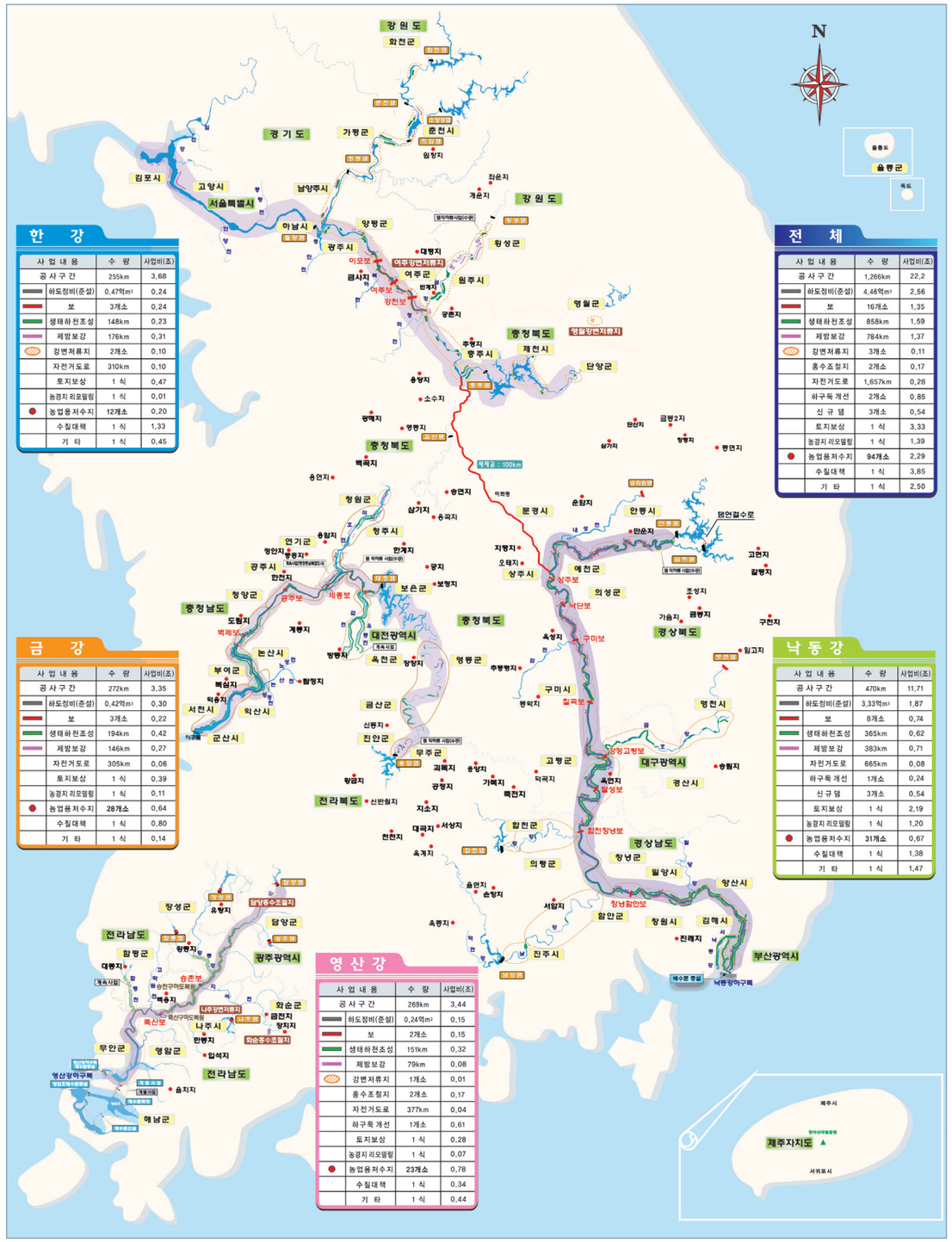

5. 사업 성과

최종적인 성과는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2012년 이후 평가가 가능하지만, 2012년 9월 현재 공정률이 98%에 이르렀고 당초 기대했던 여러 성과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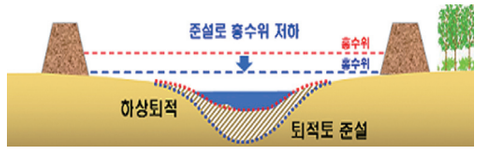

【 준설 개념도 】

첫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했다. 준설 공정은 2011년 장마기간 이전에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 결과, 2011년 장마철의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가 사업 이전에 비해 2~4m 저감되었다. 본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 수위도 함께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가옥 침수 등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하천 공사용 임시 물막이가 철거되고 보도 정상 운영되는 등 홍수대응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2012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3개의 태풍(덴빈, 볼라벤, 산바)이 연속하여 한반도를 관통했지만, 본류 수위가 낮아져 본류제방이나 제내지(제방을 경계로 마을 쪽) 침수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 인근 준설 전후

한강 이포보

낙동강 낙단보

한편 보 건설, 준설 등을 통해 4대강 본류에는 7억6,000만m^3의 풍부한 물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2년 5~6월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변에는 취수장·양수장 등에서 취수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사업 이전에는 4대강 본류 용수부족으로 관계기관에서 댐 방류요청(1999~2009년간 20차례)이 있었으나 2012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 낙동강 경남 창녕군 어연양수장 사례 】

2009년 5월 가뭄 시

2012년 6월 창녕함안보 설치 후

둘째, 수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질 개선을 도모했다. 수변경작지 2,000만평을 정리하고 하천 내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 286만톤을 수거하는 등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했다. 한편 총 3조9,000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1,281개소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면 II급수 이상의 좋은 물 비율이 76%에서 8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4대강의 수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3년(2007~2009년)과 2012년 1~7월의 평균수질을 비교할 경우 총 16개 보 중에서 BOD는 10개보가,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TP)은 12개 보에서, 조류농도(Chl-a)는 11개 보에서 개선되었다. 2012년 7월까지 강수량이 적었고, 고온이 지속되었음을 감안할 때 예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질개선 상태는 수질개선사업(3조9,000억원), 수량증가(11억7,000만m^3), 하천내 농경지 정리(2,000만평)의 효과로 판단된다.

대구 금호강 노곡하중도 비닐하우스 철거

【 보구간 2012년 1~7월 평균 수질 비교(2007~2009/2012) 】

수계	보 명	BOD(mg/L)			TP(mg/L)			Chl-a(mg/m³)			COD(mg/L)		
		2007~2009	2012	증감	2007~2009	2012	증감	2007~2009	2012	증감	2007~2009	2012	증감
평 균		3.1	2.8	↓	0.196	0.114	↓	36.7	31.8	↓	6.0	6.2	↑
한강	강천보	1.6	1.0	↓	0.035	0.029	↓	14.9	9.1	↓	3.9	3.6	↓
	여주보	1.5	1.5	–	0.030	0.048	↑	13.8	13.3	↓	3.5	4.1	↑
	이포보	2.4	1.0	↓	0.083	0.065	↓	18.0	18.2	↑	4.6	4.6	–
낙동강	상주보	0.9	1.5	↑	0.037	0.038	↑	8.0	10.2	↑	3.2	4.1	↑
	낙단보	0.9	1.8	↑	0.035	0.043	↑	10.7	12.7	↑	3.4	4.6	↑
	구미보	1.0	1.7	↑	0.036	0.040	↑	16.5	11.4	↓	3.5	4.4	↑
	칠곡보	2.1	2.0	↓	0.146	0.081	↓	21.3	19.0	↓	4.9	5.2	↑
	강정고령보	2.6	2.1	↓	0.077	0.071	↓	41.5	27.4	↓	5.8	5.2	↓
	달성보	3.5	3.2	↓	0.251	0.165	↓	59.6	45.6	↓	7.7	6.9	↓
	합천창녕보	3.1	3.1	–	0.248	0.129	↓	58.8	44.6	↓	6.7	6.7	–
	창녕함안보	3.1	3.0	↓	0.191	0.098	↓	72.4	53.8	↓	6.3	6.5	↑
금강	세종보	3.3	3.4	↑	0.250	0.104	↓	40.1	31.9	↓	7.8	7.3	↓
	공주보	3.5	3.2	↓	0.211	0.094	↓	39.6	41.6	↑	7.8	7.4	↓
	백제보	4.2	3.0	↓	0.201	0.084	↓	61.6	31.9	↓	8.4	7.2	↓
영산강	승촌보	8.0	6.4	↓	0.764	0.440	↓	34.9	69.4	↑	9.1	11.5	↑
	죽산보	7.4	6.0	↓	0.544	0.293	↓	75.5	68.2	↓	9.5	10.4	↑
예년 대비 증감(2012)		↑(증가) : 4개 ↓(감소) : 10개 – (유지) : 2개			↑(증가) : 4개 ↓(감소) : 12개			↑(증가) : 5개 ↓(감소) : 11개			↑(증가) : 8개 ↓(감소) : 6개 – (유지) : 2개		

보은군 보은하수처리

조치원 3공단 총인처리시설

올해 한강과 낙동강 등에 녹조류 · 남조류 등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보 등의 4대강 사업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녹조현상은 영양염류 · 수온 · 일조량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2012년 녹조를 4대강 사업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녹조가 심했던 한강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북한강에서 대량 발생했고, 사업이 시행되어 강천보 · 여주보 · 이포보가 설치된 남한강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2년의 녹조현상은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강수량, 길어진 일조시간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에도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많은 보와 댐이 있는데, 보 · 댐 때문에 녹조가 발생해 생태계가 크게 파괴된다면 이러한 보와 댐들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국정운영 2실장 주재하에 환경부 · 국토해양부 · 농림수산식품부 · 수자원공사 ·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갈수기 녹조대책을 추진하여 녹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모의훈련(2회)을 실시한 바 있다.

셋째,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노동자 고용 등을 통해 많은 서민일자리를 창출했다. 당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2009.7)'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34만명(2009~2012년)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 환경부 · 농림수산식품부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22조원)에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2010년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2010.9~2011.6)한 바 있는데, 마스터플랜 추정치의 88%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넷째,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여가공간을 확충했고 국토품격을 향상시켰다. 4대강 사업 이전에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에 여의도공원 면적의 40배에 이르는 생태공원 130km²를 조성하여 부족했던 문화여가공간을 확충하고 국토디자인의 품격을 크게 향상시켰다.

낙동강 화명지구 수변공원 조성 전후

충남 연기군 행복2공구 수변공원 조성 전후

수변생태공원에는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 캠핑장 · 산책로 · 체육시설(농구장, 야구장, 축구장 등)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했다.

담양 관방제림 생태공원 산책로

전남 나주 수변공원 산책로

여주 이포보 오토캠핑장

공주 수변체육시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디자인된 16개 보와 곳곳에 조성된 나루터, 130km²의 수변생태공원 등은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계백장군 말안장을 형상화한 백제보

나주평야의 쌀알을 형상화한 승촌보

연기군 합강정 전경

영산강 황포돛배 나루터

수변생태공원은 현재도 각종 지역행사와 축제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오토캠핑장은 입소문을 타고 가족 · 동호회 단위의 캠핑 장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1년 9월까지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4대강 현장을 방문했다.

영산강 문화관

한강(강천보) 문화관

금강(백제보) 문화관

낙동강(을숙도) 문화관

강정고령보 대표문화관 The Arc

한편 수계별 문화관을 건립하여 4대강의 역사 · 문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전시하고, 공간 일부는 독서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6월까지 현재 한강(강천보), 낙동강(을숙도), 금강(백제보), 영산강(승촌보)에 각 1개소, 4개소가 건립되어 일반에 개방되었고, 대표문화관(강정 고령보)은 2012년 9월에 개방되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하니 라시드(Hani Rashid)가 설계한 대표문화관(The Arc) 개방행사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강 문화 조성의 의의를 되새겼다.

다섯째, 경관이 수려한 국토 종주 수변 자전거길을 조성했다. 4대강 상하류를 잇는 명품 자전거 여행길 1,757km를 열어 국민적 호응은 물론, 스포츠 · 관광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자전거길 활성화를 위해 2012년 4월 22일 국민이 참여하는 '자전거길 통합개통행사' 와 '자전거 대축전'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2년 4월 29일 자전거 대축전 행사의 하나로 열린 'Tour De Korea' 폐막행사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였다.

중앙선 폐철도 활용 자전거도로

화천군 북한강 자전거도로

한편 2012년 3월부터는 '4대강 자전거 길 종주 인증제' 를 도입했다. 4대강 자전거 종주 노선 50km마다 인증센터(18개소)를 설치해 패스포트를 발급하고, 구간 완주 확인을 위한 출발 · 도착 스탬프를 찍어주며, 4대강 종주 구간 완주 시 인증서 및 인증메달을 수여한다. 2012년 9월 현재 인증 건수는 4만3,000여건을 넘어섰고, 스티븐슨 전 주미대사도 국토 종주를 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국토종주 1호(2012.3.23)

스티븐슨 전 주미대사 국토종주(2012.5.31)

4대강 자전거길 종주 인증수첩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했다. 재정투자의 혜택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 확대, 지역업체 입찰가점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국가가 발주하는 기타 다른 공사에 비해 1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천과 수변공간 정비 및 어도, 습지, 샛강 등을 조성함으로써 생태계를 되살려 강, 사람, 자연의 공생을 도모했고, 최대발전 시 연간 5만8,000가구가 사용가능한 친환경 소수력 발전에너지도 2억7,000만kw를 생산할 계획이다.

여주보 어도

금강 미호천 습지공원

낙동강 개진지구 잠산샛강

강천보 소수력발전소

일곱째, 농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소득 여건을 개선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준설토를 활용해 농경지를 높이는 사업)을 통해 7,709ha의 저지대 농경지를 평균 2.6m 높여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했고, 기존의 논농사 외에 시설원예 등 다양한 고소득 작물재배 여건을 마련했다.

【 농경지 리모델링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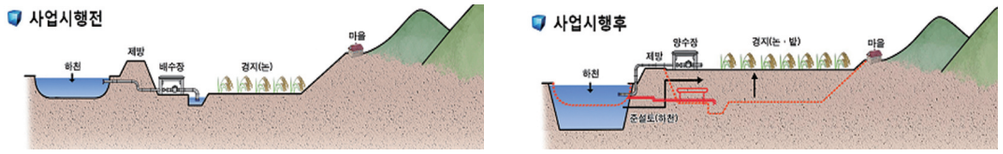

영산강 옥정제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여덟째, 녹색성장 사업으로서의 성과에 대해 UNEP,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1년 UNEP 녹색경제보고서에서는 "4대강 사업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사례"라고 했고, 2012년 OECD 환경전망 2050에서는 4대강 사업을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 사례로 소개했다.

세계물위원회도 2012년 5월 4대강 현장을 둘러보고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물과 녹색성장' 의 이론적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개발도상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제 물 커뮤니티에 전파되길 바라며, 향후 대구 경북에서 개최되는 '7차 세계 물 포럼' 을 통해서도 잘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며 호평했다.

아홉째, 태국 · 모로코 · 파라과이 · 알제리 등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우리나라의 물관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벤치마킹을 서두르고 있어 4대강 기술의 해외수출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11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태국은 차오프라야강을 중심으로 12조원 규모의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22일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2012년 3월 25일에 잉락 친나왓 총리가 4대강 현장을 방문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IT가 접목된 우리나라의 첨단 물관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2012년 8월 14일 한-태국 MOU를 체결하고 수자원 기술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1월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여 잉락 친나왓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4대강 기술공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편 태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4대강 기술수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2년 3월 26일에는 모로코와 첫 4대강 사업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모로코에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향후 양국 수자원협력을 위한 세부협의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012년 5월 29일에는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4대강 현장(강천보)을 방문하고, 강살리기 및 수자원 관리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4대강 사업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커져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기술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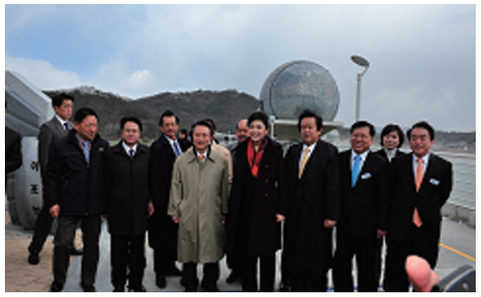

태국 총리 이포보 방문(2012.3)

한-모로코 MOU 체결(2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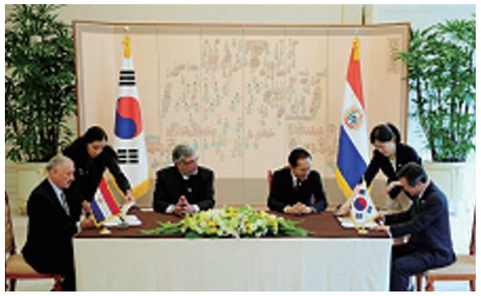

한-파라과이 MOU(2012.5)

파라과이 대통령 강천보방문(2012.5)

한-태국 정상회담(2012.11.10)

6. 향후 과제

4대강 본류사업, 홍수조절지 건설, 수질개선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은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댐 사업은 본체 건설은 2012년 완료하되, 물 채움, 주변정비 등은 2014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연계·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홍수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 하천과 홍수취약구간 등은 집중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도로, 교량, 주택 등의 SOC가 준공 이후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듯, 4대강 사업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된 하천과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4대강 본류 제방, 저수로, 다기능보 등 주요 하천 시설·구간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보 관리 및 운영은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하게 된다. 4대강 외 국가하천과 4대강 본류 고수부지(친수시설)는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고를 지원하고 조직·인력을 확충했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사업 구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부산·대전 등지의 지역에 추진 중인 친수구역개발사업[2]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4대강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도 도모할 계획이다.

4대강 보와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이 지역문화공간의 중심거점으로 자리매김됨에 따라 지역축제와 문화재 등과 연계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성과를 토대로 물 문제에 직면한 해외 각국과의 교류협력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특히 12조원 규모의 태국의 대형국책사업[3]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특정 정권만의 사업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재창조하여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2012년 현재 부산 강서지구(에코델타시티),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구리지구(월드디자인시티)가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3) 태국 물관리 사업의 최종수주는 2013년 4월경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 평화엔지니어리링이 2012년 9월 사전자격(PQ : Pre-Qulafication) 심사를 통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일자

일 자	주 요 내 용
2008.12.15	■ 국가균형발전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결정
2009.1.6	■ 국무총리 녹색뉴딜 추진안 발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확인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009.2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
2009.4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
2009.4.27	■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2009.5.7~19	■ 지역설명회(12회)
2009.5.25	■ 공청회
2009.6.8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2009.9.25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수자원공사에서 8조원 투자)
2009.10.16	■ 사업착공
2011.10~11	■ 4대강 현장 개방행사
2012.2.27~3.16	■ 4대강 사업 준공 전(前) 특별점검
2012.3.26	■ 한-모로코(광물에너지부) MOU 체결
2012.4.22	■ 4대강 자전거길 통합개통행사 – 자전거길 종주인증제 본격 시행
2012.4.30	■ 보 준공인가 전(前) 사용승인 완료
2012.4~5	■ 4대강 문화관(한강 강천보, 낙동강 을숙도,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개관
2002.5.29	■ 한-파라과이 MOU 체결
2012.8.14	■ 한-태국 MOU 체결
20'12.9.20	■ 강정고령보 대표문화관 디 아크(The Arc) 개관
2012.9월 말	■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돌파
2012.11.10	■ 한-태국 정상회담

제2절 새만금사업

1. 새만금사업 개요

1) 사업개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시작하여 가력도·신시도·야미도·비응도를 연결하는 33.9km에 이르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간척 토지 283km^2, 호소 118km^2 등 총 401km^{2}의 국토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대규모 국토 확장(401km^2)과 함께 대규모 호소(湖沼)를 조성하여 10억톤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역적인 측면으로는 김제·만경평야 120km^2 상습 침수지 배수 개선과 항만·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 고용창출 등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2) 추진경과

가. 착공

1970년대부터 구상되었던 새만금사업은 1986~1988년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병행실시(1986~1991년),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1991.10.22), 사업시행인가 고시(1991.11.16)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28일 착공했다.

나. 계획변경

당초 전체면적(283km^2)을 식량생산 목적으로 개발하려던 계획은 미곡 과잉생산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변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개발계획을 농업용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조정했다.

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약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가 되도록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키로 하고, 2007년 4월 전체 개발계획면적 중에서 농업용지의 비중을 72%에서 30%로 조정하는 것을 공약사항의 하나로 채택했다.

라. 인수위(새만금TF) 추진방향 설정

인수위는 새만금사업의 개발방향을 농지개발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키로 하고, 2030년 이후 완공 목표를 2020년까지로 수정, 사업기간을 10년 단축시켰다. 또 동진·만경 순차개발을 동시개발계획으로 바꾸어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마. 최종계획 확정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 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실무정책협의회(7차례), 공청회(2008.9.5), 국가정책조정회의(2008.10.2) 등을 거쳐 국무회의(2008.10.21)에 보고한 후, 기본구상을 변경했다. 제6차 새만금위원회(2011.3.16.)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확정했다.

【 기본구상 변경 세부내용 】

농업용지
2만250ha(72%) → 8,570ha(30%)
산업·관광용지 등
8,050ha(28%) → 1만9,730ha(70%)

【 공간구상계획의 변천 】

1 새만금사업 초기 구상안(1991)
- 100% 농수산 중심개발
- 농업식량생산기지 조성

2 2007.4. 토지이용 구상안
- 복합개발구상
- 농업용지 : 비농업용지 = 72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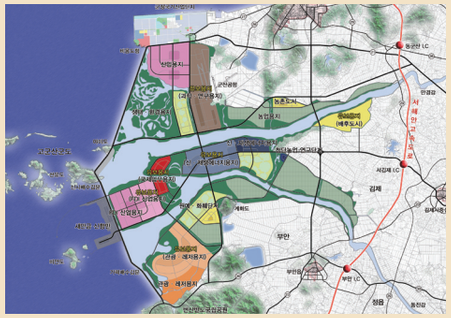

3 2008.10. 토지이용 구상변경(안)
-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
- 농업용지 : 비농업용지 = 3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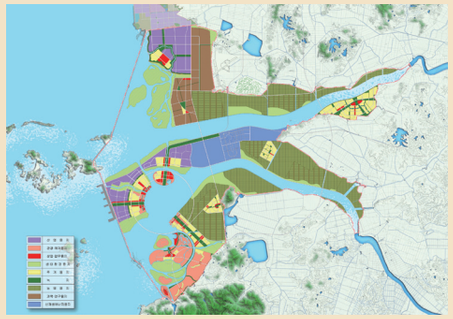

4 2010.1. 내부개발 기본구상
- 명품복합도시 개발구상
-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

3) 방조제 준공

1991년 11월 28일 착공한 새만금 방조제는 19년 만에 외곽시설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2010년 4월 27일 역사적인 준공식을 열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현 정부에서 마무리하여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개발 착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 최고의 기술 인정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설계에서 준공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축조해냈으며, 유례없는 최고난도의 심해공사를 순수 국내기술로 성공시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조제 단면 형성에 육지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바닷모래를 성토에 사용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설했다.

나. 난관 극복

새만금간척사업은 그간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헌법소원,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6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같은 해 4월에 새만금 방조제(제2호) 끝막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2조9,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연 237만명의 인력과 덤프트럭, 준설선 등 91만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됐다. 평균 바닥너비는 290m, 높이 36m이며, 바다 위 8.5~11m 높이로 솟은 방조제 건설에 쏟은 돌과 바닷모래는 총 1억2,300만m^3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418km)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다.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방조제' 로서 '세계 최고 기술력의 산물' 임을 인정하는 기네스북 등재가 2010년 8월 2일 이루어졌다. 기네스북을 편찬하는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Guinness World Records LTD)는 2010년 8월 2일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 최장 방조제임을 공식화했다. 새만금 방조제 33.9km(시점 : 부안 대항리, 종점 : 군산 내초도)가 네덜란드 압슬루트(Afsluit) 방조제 32.5km보다 더 긴 방조제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다.

4) 사업 추진체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새만금위원회' 가 새만금사업 관련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은 토지용도별 주관기관이 각각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며, 용도별 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

부 · 국토해양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지식경제부 · 교육과학기술부 · 전라북도(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청) 등 7개 기관이다. 각 주관기관이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 기본 ·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에 착수하는 절차이다.

【 사업 추진체계 】

가. 새만금위원회

① 구성 및 운영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9년 1월 설치되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새만금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라북도지사 등 정부위원 10명과 도시 · 환경 · 문화 · 해양 · 농업 등 분야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② 주요 기능

새만금위원회는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및 물 사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및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등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2개의 분과위원회 중 토지개발 분과위원회는 토지용도별 사업시행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환경대책 분과위원회는 수질 · 환경대책을 사전 심의하여 전체위원회를 지원한다.

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기획단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정책의 통합 · 조정과 새만금위원회 사무처리 및 지원을 위해 2009년 2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했다. 기획단장은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를 겸하고 있다. 2012년 현재 기획단은 2부 6과, 29명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은 새만금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북도 파견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위원 등이다.

2.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1)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종합실천계획(2010.1.28)은 2008년 10월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지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방향을 전환키로 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개발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2008년 10월 기본구상 변경안에서 제시되었던 8대 용지의 틀을 유지하면서 용지별 개발구상, 기반시설 확보대책,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선도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2)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의 의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2010년 1월 28일 확정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의 용도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구축계획 등을 좀 더 구체화한 계획이다.

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경위

계획 수립의 총괄 조정 역할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수행했다. 국토연구원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연구를 수행했다. 계획 수립의 주요의견 수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정책협의회 · 복합도시협의회를 합동회의로 총 22회 개최했다. 2010년 4월과 2010년 11월에는 20개 기관, 130여 명이 참석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실 · 국장 회의를 2010년 3월, 6월, 10월 3회에 걸쳐 개최했다.

또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등 해외

【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

주요국과 학술 · 기술교류를 통해 해외사례를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년 3월 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했다.

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① 새만금 비전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미래 성장엔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 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 **탄소Free도시 조성** 새만금을 탄소Free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 토지 이용,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 에너지절감 극대화, 녹색 건축물 확대
- **생태 · 녹지 네트워크 조성** 만경 · 동진강, 새만금 주변 금남정맥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 생태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井)자형'의 새만금 주요 생태 · 녹지축 구축
- **명품 수변도시 구현** 수변의 체계적 활용과 경관성 제고를 위해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공간에 주요 도시기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도시 쾌적성 제고
-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시형 농식품 생산, 가공, 물류를 통합한 농업개발모델(Agro Park), 생활폐기물 전(前)처리시설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와 고형연료 RDF(Refuse Derived Fuel) 시스템, 중수도 활용 및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시스템 등 도입
-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상향 조정** 태양광, 바이오디젤, 풍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총에너지 수요 중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② 주요계획 지표

새만금 개발 시 유발되는 인구는 총 76만명으로 새만금 지역 내부에 29만명, 외부 도시(전주 · 군산 · 김제 · 부안 등)에 47만명을 배분했다.

③ 기반시설 확충계획

새만금을 국내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로 열린 경제 · 물류 중심지로 만들어나가고자 국제 · 국내 연계망, 내부 간선도로망을 계획했다.

- **항만** 동북아 경제 및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신항만 18선석(자동차 1선석, 일반잡화 14선석, 컨테이너 2선석, 크루즈 1선석) 건설
- **공항** 새만금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군산공항을 활용하여 국제선 취항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 활주로용지(6.0km^2) 확보

- **철도** 장항선, 군산선, KTX(호남선) 등과 연계하기 위해 새만금~군산 간 철도(연장 45km, 복선 27km, 복선 확장 16km, 단선 2km) 노선 계획. 도입 시기는 2021년 이후로 하되, 부지 조성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내부간선도로망** 새만금 및 군장국가산단 등을 감안하여 계획된 3×3 간선도로망 체계를 토대로 내부간선도로망을 구축하되, 남북1축, 동서1축 · 3축 등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

【 새만금지역 기반시설계획도 】

④ 용지 조성계획

- **복합도시용지** 북측은 산업기능, 남측은 관광기능, 생태환경지구는 생태기능을 각각 중심 기능으로 설정했다. 복합도시 중심부 3개 도심을 연결하는 순환링을 구축(반경 2.4km, 연장 15.2km)한 것이 특징이다.

■ **면적** : 67.3km^2
■ **사업기간** : 1~2단계
– 1단계 : 36.9km^2, 2단계 : 30.4km^2
■ **비전** : 명품 새만금의 휴먼 · 녹색 · 글로벌 도시

- **농업용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 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곡물 공급원 확보', '저탄소 녹색농업 모델 정립', '첨단농산업클러스터 구축', '고부가가치 수출지향형 농산업 육성', '농어촌 체험관광 실현' 등 5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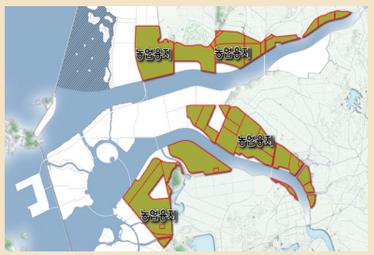

■ **면적** : 85.7km^2
■ **사업기간** : 2020년까지 개발(1단계)
■ **비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

● **배후도시용지** 배후도시에는 새만금 유발인구의 13.7%인 10만4,000명을 수용하며, 미래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기초해 그린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배후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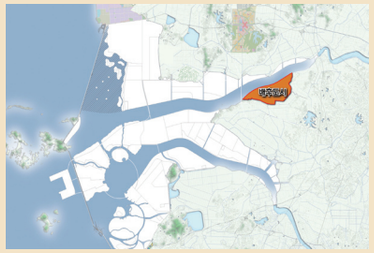

- **면적** : 10.0km²
- **사업기간** : 2021년이후 개발(2단계)
- **비전**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도시 및 지식기반 산업 육성 허브 조성

● **과학·연구용지** 과학·연구용지는 빅 앤 그린 사이언스 파크(Big & Green Science Park)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개발 초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여 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 중심의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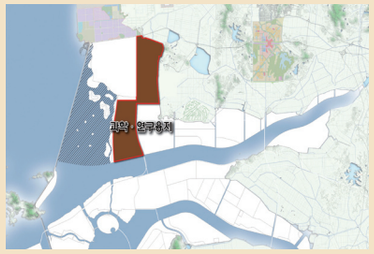

- **면적** : 23.0km²
- **사업기간** : 2021년 이후 개발 또는 소관기관 개발결정 시
- **비전** : 창조적 연구환경 및 과학·비즈니스 융합연구단지 조성

● **농촌도시용지** 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청정복합도시' 구현을 위해 자족적인 커뮤니티 형성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신농촌도시 구현, 복합 용도의 현대적인 편의·복지시설 배치, 농업·관광·바이오 및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면적** : 4.6km²
- **사업기간** : 2020년까지 개발(1단계)
- **비전** : 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청정복합도시' 구현

● **신재생에너지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에는 연구시험단지, 태양광발전단지, 바이오작물 생산단지, 바이오작물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를 연구하기 위해 태양광 파일로트(pilot) 생산설비를 구축한 연구시험단지를 조성하고, 저탄소 시범지역화를 위한 민자 태양광발전단지, 셀룰로오스계 원료, 바이오에탄올 등을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작물생산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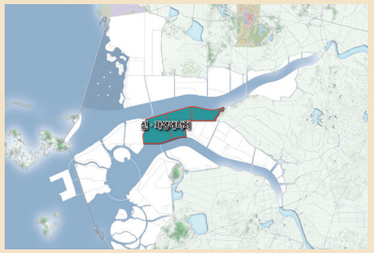

- **면적** : 20.3km²
- **사업기간** : 1~2단계(단계적 개발)
  – 1단계 : 연구시험단지, 바이오작물시범용지 등
  – 2단계 : 소관기관 개발결정 시 유보용지 개발
- **비전** :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허브 구축

● **산업용지** 새만금 산업용지에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RFT(핵융합), 바이오·고부가가치식품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지 중앙의 물류시설용지와 연계한 산업용지의 적정배치를 통해 입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업종, 신재생에너지, R&D 기능을 연계한 차세대 성장 육성축으로 조성할 것이다.

- **면적** : 18.7km²
- **사업기간** : 2020년까지 개발(1단계)
- **비전** : 지식창조형 산업 및 환경친화형 산업 허브 조성

● **생태환경용지** 생태환경용지에는 '수질정화', '생태복원', '생태체험'의 3대 핵심기능을 4개 권역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4개 권역 중 북부권역은 철새 도래지, 야생조류 서식지를 볼 수 있는 녹색체험 공간으로, 복합도시 북측은 도시 곳곳에 수질정화습지, 물고기 이동로 등을 계획했다. 복합도시 남측은 생물종 복원사업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지 내 생태환경용지는 만경·동진강을 따라 위치해 산악~농지~호수로,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이지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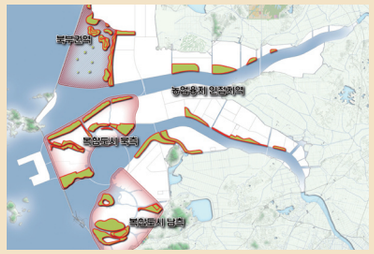

■ **면적** : 59.5km²
* 복합도시 내 생태환경용지 17.1km² 포함
■ **사업기간** : 1단계부터 연차조성
■ **비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생태공간의 구현

⑤ 계획의 집행

●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새만금사업은 1단계(2020년까지), 2단계(2020년 이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공간구조 형성에 핵심이 되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개발하는 원칙을 설정했다. 기반시설은 단계적 용지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용지 형성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방안** 사업비는 용지 조성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수질개선 대책비용 및 기타 사업비의 4개 항목으로 구분·추정했다. 실시계획 승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및 사업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반영했으며, 여타 사업비는 유사 사례의 공사비를 적용했다. 사업비 중 용지개발 및 기반시설 관련 기본·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추정금액으로서 사업구체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 기간별·재원별 사업비 추정 】

(단위 : 조원)

구 분		총사업비	기간별		재원별		
			2020년 까지	2021년 이후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22.19	13.20	8.99	10.91	0.95	10.33
용지 등 조성비 (49.2%)	소 계	10.91	6.61	4.30	3.43	–	7.48
	명품복합도시용지	3.32	1.83	1.49	–	–	3.32
	농업용지(방수제 등)	2.91	2.60	0.31	2.60	–	0.31
	경자구역 산업용지	1.50	1.50	–	–	–	1.50
	과학·연구용지	1.13	–	1.13	–	–	1.13
	신·재생에너지용지	0.46	0.34	0.12	0.05	–	0.41
	생태환경용지	0.63	0.19	0.44	0.63	–	–
	도시용지	0.86	0.05	0.81	0.05	–	0.81
	다기능부지 명소화	0.10	0.10	–	0.10	–	–

구 분		총사업비	기간별		재원별		
			2020년 까지	2021년 이후	국비	지방비	민자
기반시설 설치 (29.9%)	소 계	6.64	2.80	3.84	5.03	–	1.61
	항만 및 배후단지	2.55	1.06	1.49	1.41	–	1.14
	도로 및 철도	3.75	1.40	2.35	3.53	–	0.22
	생활·공업용수 공급	0.34	0.34	–	0.09	–	0.25
수질개선 대책 (13.0%)	소 계	2.89	2.89	–	2.08	0.65	0.16
	상류유역	2.69	2.69	–	1.88	0.65	0.16
	새만금호 내	0.20	0.20	–	0.20	–	–
기타 사업비 (7.9%)	소 계	1.75	0.90	0.85	0.37	0.30	1.08
	폐기물처리시설	0.74	0.70	0.04	–	–	0.74
	신교통수단	0.61	–	0.61	0.31	0.30	–
	공동구	0.40	0.20	0.20	0.06	–	0.34

3)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현황

가. 용지별 사업 추진현황

① 복합도시용지

복합도시용지는 총면적 57.4km²(1단계 27km², 2단계 30.4km²)를 국토해양부가 25.8km², 문화체육관광부가 14.5km², 환경부 17.1km²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10~2030년(1단계 2010~2020년, 2단계 2021~2030년)이며, 총사업비가 3조3,200억원(1단계 1조8,300억원, 2단계 1조4,900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복합도시용지는 규모가 방대하여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와 성공 가능성이 낮아 대상지를 분할, 순차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② 농업용지

농업용지(생태환경용지 포함)는 총면적 95km²(농업용지 85.7km², 생태환경용지 9.3km²)로 사업기간이 2010~2020년이고, 총사업비 1조5,406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농업용지는 현재 방수제 공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도구역인 대규모 농어업회사 유치공구(5공구, 1,513ha)를 2013년 상반기에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농업용지는 곡물단지 등 전통적인 농업방식이 아닌 농업과 식품산업, 자연순환이 어우러진 아그로파크(agropark) 개념을 도입, 미래 성장동력의 농림수산식품 산업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③ 경자구역 산업용지

경자구역 산업용지는 총면적 18.7km²로 사업기간이 2008~2018년이고, 총사업비가 2조7,270억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2008.9)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자구역 산업용지는 1공구(0.95km²) 매립공사를 완료(2012.3)했고, 2공구(2.5km²) 매립공사를 착공(2011.12)하여 2013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새만금 전체 산업단지(18.7km²)는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경자구역 산업용지에는 2010년 8월 17일 (주)OCI와 투자협약을 체결(10조원)해 투자유치를 한 바 있다.

④ 경자구역 관광용지

경자구역 관광용지는 총면적 9.9km²로 사업기간이 2008~2019년이고, 총사업비가 9,518억원(공공 1,648억원, 민자 7,870억원)이다. 게이트웨이(gateway)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2008.12)하고 나머지 8.9km² 면적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모색하고 있다.

⑤ 신재생에너지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총면적 20.3km²로 농림수산식품부가 13.0km², 지식경제부가 7.3km²를 개발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2010~2030년(1단계 2010~2020년, 2단계 2021~2030년)이며, 총사업비는 4,592억원(농식품부 508억원, 지경부 4,084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2010.12~2012.9)했고, 삼성그룹과 그린에너지 종합단지 구축 MOU를 체결(2011.4.27)하여 1단계(2021~2025년)로 부지 4.1km²에 풍력발전기 · 태양전지 · 바이오연료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7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⑥ 생태환경용지

생태환경용지는 총면적 50.2km²(북부권역 33.1km², 복합도시 내 17.1km²)로서 사업기간이 2010~2030년(1단계 2010~2020년, 2단계 2021~2030년)이며, 총사업비 8,417억원(부지조성비 6,102억원, 건축비 2,315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생태환경용지는 환경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2011.12)되고 개발기본계획이 심의 · 확정(2012.11)되었다.

⑦ 관광용지

복합도시용지 내 관광용지는 총면적 14.53km²(복합도시용지 중 남측 관광용지)로 사업기간이 2010~2020년이며, 총사업비 1,928억원(1단계 600억원, 2단계 805억원, 3단계 52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관광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2010.5~2011.12)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2011.4)를 거쳐 관광용지 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⑧ 과학연구용지

과학연구용지는 총면적 23.0km²으로서 총사업비 1조1,29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2021년 이후 개발(2단계)할 예정이다.

⑨ 농촌도시용지

농촌도시용지는 총면적 4.6km²로서 사업기간이 2010~2020년이며, 총사업비 2,801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농촌도시용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상태로 방수제를 축조(2015)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⑩ 배후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는 총면적 10km²로, 사업기간이 2021~2030년(2단계)이고 총사업비 5,80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이후에 추진(2단계)될 예정이다.

나. 기반시설 구축현황

① 신항만

새만금 신항만은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을 목표로 2012년 6월 14일 착공했으며, 2030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3.5km와 부두 18선석을 개발함에 따라 20ft 컨테이너 30만개를 포함하여 현 군산항의 화물처리수준인 연간 1,729만톤의 수출입화물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신항만은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방파제 3.1km와 부두 4선석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2단계로 8만GT급 크루즈부두를 포함한 부두 14선석을 개발하여 새만금 사업을 뒷받침할 국제 관문항으로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② 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에서 완주JCT까지 총연장 54.3km를 4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1,217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2012년 3월 28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3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간 총 19.8km를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938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새만금 복합도시의 핵심 통행노선이자 신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동서2축 도로는 2013년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③ 공항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취항 및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산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취항이 가능토록 미군 측과 SOFA개정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활주로 추가건설 등 시설확장은 향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며, 장래 군산공항 확장에 대비해 신설 활주로 용지(6km²)도 확보했다.

3.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1) 추진배경

가. 새만금 수질문제 대두와 방조제 공사 중단(1991.11~2000.8)

1991년 방조제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새만금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으나, 1996년 6월 시화호의 오염담수 방류사건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었고, 1997년 11월~1998년 3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사업 재검토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5월 국무조정실은 관련부처 국장급 10명과 시민단체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0명씩 등 총 30명의 위원들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민관공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수질, 해양, 경제성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기간(1999.5~2000.6) 동안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도 중단되었다. 이 기간 동안 공동조사단은 분과회의를 47차례, 전체회의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2000년 8월 결국 결론을 못 내린 채 그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 해체되었다.

나. 방조제 공사 재개와 1단계 수질개선대책 마련(2000.8~2001.8)

국무조정실에서는 10여 년간 진행된 공사 중단으로 야기된 방조제 유실을 우려, 2001년 5월 25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조제는 준공하되,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동진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순차개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재개되었고, 2001년 8월 환경부, 농림부, 전북도 등은 환경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세부실천계획(1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했다.

2) 추진실적 및 평가

1단계 대책이 환경친화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무조정실 새만금 환경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했다.

저층수 배제시설을 제외한 새만금호 내 및 간척지 내부대책은 새만금사업 지연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으나 상류유역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하수처리장 22개소, 하수관거 2,667km, 고도하수처리장 6개, 축산분뇨처리시설 937개 등 당초 계획을 거의 달성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0) 추진실적 】

구 분		1단계 수질개선대책					전북 자체 추가 대책				
		소계	하 수 처리장	고도하수 처리장	하수관거	축산분뇨 처리시설	소계	마 을 하수도	분뇨처리 시설보강	폐수 처리시설	생태하천
계 획	예산 (억원)	1조 1,859	3,410	433	7,463	553	4,190	1,484	688	716	1,302
	사업량		23개	6개	2,820km	937개		134개	2개	8개	46.6km
실 적	예산 (억원)	1조 2,549	3,159	936	7,901	553	2,444	899	471	662	412
	사업량		22개	6개	2,667km	937		107개	공사 중	7개	추진 중
집행률 (%)	예산 (억원)	105.8	92.6	216.2	105.9	100	58.3	60.6	68.5	92.5	31.6
	사업량		95.7	100.0	94.6	100		79.9	–	87.5	–

또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하수도 보급률이 2000년 42.8%에서 2010년 80.8%로 대폭 향상되었고, 새만금 상류 유역 대표 지점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도 2000년 만경강(백구제수문) 6.8mg/L, 동진강(군포교) 3.6mg/L에서 2010년 만경강(백구제수문) 5.9mg/L, 동진강(군포교) 2.8mg/L로 개선되었다.

3) 2단계 수질개선대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2008년 10월 21일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비농업용지 개발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제1단계 수질보전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9년 6월 26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에서 목표수질을 당초 농업용수 수준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체계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9년 7월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2010년 3월부터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2011~2020) 수질개선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착수, 공청회(2010.12.22), 관계부처 협의(2010.12.20~30)를 거쳐 2단계 수질개선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제6차 새만금위원회(2011.3.16)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나. 목표수질 설정

2009년 7월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에서는 '물의 도시'로서 새만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해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수질의 상향을 결정했고, 2010년 1월 28일 제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목표수질의 적용방식, 비용규제 및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용지구간별로 구분, 중·상류인 농업용지 구간은 IV등급(연평균)으로, 하류인 도시용지구간은 III등급(연평균)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했다.

여기에 수질등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과 친수활동 기회를 더욱 담보하기 위해 심미적 기준을 추가했다.

다. 주요 내용

① 개요

2단계 수질개선대책은 상류유역, 새만금 호내, 해양 등 권역별로 구분해 2011~2020년에 추진하며, 총 2조9,50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② 권역별 세부 수질개선대책

- **상류유역 대책** 상류유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에 2조5,865억원(국비 1조7,8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류유역 사업비의 60.7%(1조7,913억원)를 전반기(2011~2015년)에 집중 투자하고, 점오염원대책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source, 非點汚染源)대책, 가축분뇨대책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여기에 하천유지용수 확보 대책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수질개선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 호내 대책** 호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3,635억원(국비)을 투자하여 침전지시설, 인처리시설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내 유입수 관리를 위해 침전지시설, 유입수 인처리시설, 생태환경용지 내 인공습지조성, 금강희석수 도입 등 4개 사업에 총 3,319억원을 투자하며, 호소수 관리를 위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적·녹조 방제 대책, 오염 우심 지역 준설 및 심층 폭기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은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추이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 대책**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 환경변화를 예측·확인하기 위해 매년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4) 왕궁(익산)·용지(김제) 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

가. 익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

① 추진경과

- **가축분뇨 문제 대두와 해결 노력** 왕궁정착농원의 축산 농가는 대규모화된 반면, 저류조나 처리시설이 없어 미처리된 가축분뇨가 하천(익산천)으로 배출되면서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 인해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3년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착수하여 1998년에 완료했다. 그러나 완공된 처리장으로 당초 설계유입수질(BOD 1,200mg/L)보다 높은 수질(4,900mg/L)이 유입됨에 따라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전라북도 방문 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왕궁축산단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검토를 지시했다.
- **왕궁환경개선협의회 운영** 국무총리실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북도 등 8개 관계기관으로 왕궁환경개선협의회(위원장 : 국무차장)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 실무협의회(위원장 : 정책기획관)를 두어 왕궁축산단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실무협의회는 2010년 5월 28일, 축산단지 이전이나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축산단지 현대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고, 2010년 7월 왕궁환경개선정책협의회는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② 기대효과

환경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축사 면적이 73만㎡에서 7만6,000㎡로 대폭 줄고, 가축 사육두수도 11만4,000두에서 3만5,000두로 감소됨에 따라 축산분뇨가 하루 680㎥에서 207㎥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③ 그간 대책 추진상황

- **특별관리지역 지정** 2010년 12월 31일 정착농원 전체(173만㎡)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공사** 2008년 1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12월 시설물을 완성하고, 2011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했으나 방류수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2011년 7월 냉각기설치(2기) 및 2011년 10월 용존오존부상조를 교체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류수 보증수질을 확보하고 2012년 3월 31일 준공,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이다.
- **한센인 양로시설 확충** 한센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총 113동의 양로시설을 확충 중이며, 2013년 입주할 예정이다.
- **기타 수질개선 사업 추진** 축사는 2011년도에 15만9,976㎡(현업 4만1,768㎡, 휴폐업 11만8,208㎡)를 매입했고, 2012년에는 7만1,907㎡(현업 5만2,792㎡, 휴폐업 1만9,115㎡)를 매입했다.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나. 김제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

① 추진경과

2010년 3월 왕궁환경개선협의회에서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용지정착농원 환경도 개

선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왕궁정착농원 환경대책을 수립한 이후, 국무총리실이 본격적으로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 대책 수립을 추진했다. 축산단지의 전면철거를 요구하는 왕궁정착농원과는 달리 용지정착농원에서는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수질개선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들과 제도개선 사업을 포함한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2011.3.24)을 마련했다.

② 기대효과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7% 감소하고, 생활악취는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림대 조성, 복지회관 건립,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그간 대책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및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용지정착농원 3개 마을(신흥 · 비룡 · 신암)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루 180m^2 규모의 마을하수도 공사를 2011년 말 완공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사업은 2012년 9월 준공, 정상 운영 중이다.
- **기타 수질개선 사업 추진**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 말 착공했다. 2012년에는 휴폐업축사 9,760m^2 매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한센인 복지회관 건립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5)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체계 구축

가. 환경(수질) 모니터링의 실시

새만금 호내 및 상류유역 수질관리 일원화(2010.5)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환경(수질) 통합모니터링을 구축, 2011년부터 수질, 수생태계, 자연환경, 퇴적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수질모니터링은 상류 82개(만경강 49개, 동진강 33개), 호소 13개(만경수역 7개, 동진수역 6개), 해양 13개 등 총 108개 지점에 대해 측정하며, 측정항목과 측정주기는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수생태계는 총 10개 지점(만경강 5개, 동진강 5개)에 대해 분기별로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자연환경은 총 10개 지점(만경강유역 5개, 동진강유역 5개)에 대해 분기별로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퇴적물 측정은 새만금 호내를 대상으로 총 10개 지점(만경수역 5개, 동진수역 5개)에 대해 분기별로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측정결과는 각종 대책의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기관별 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 새만금 환경모니터링 운영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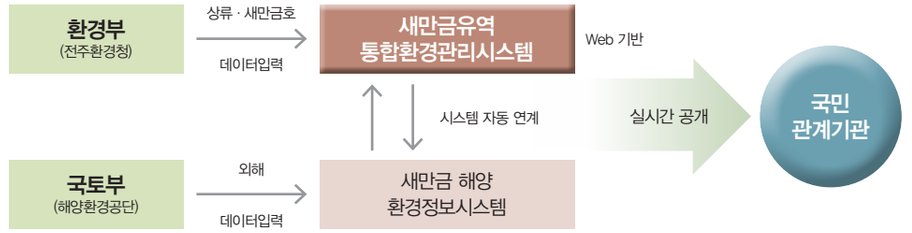

나. 환경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새만금 상류유역과 호내 및 외해를 포함하는 새만금 유역 전체의 오염원, 수질, 수생태계 및 자연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간 각 기관별로 개별 관리해오던 각종 환경정보를 통합한 DB를 구축함으로써 수질예측 및 환경관리 등에 활용하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새만금유역의 환경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종합관리시스템의 목적이다.

다.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방수제 공사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환경 악영향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수습체계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0년 5월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초안' 을 마련하고, 두 차례 관계부처 검토회의를 거쳐 2010년 9월 10일 제4차 새만금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을 확정했다.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은 비산먼지 발생, 유해곤충 발생, 부유쓰레기 발생 등 주요 환경 악영향 발생 시 각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사고 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라. 새만금 환경커뮤니티 구성 · 운영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만금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사전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잠재적인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24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전라북도 지역 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새만금유역 수질보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를 실시했다. 2011년 3월, 6월, 10월과 2012년 1월, 5월, 9월, 12월에 환경커뮤니티를 개최하여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환경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정부와 지역 환경단체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4. 새만금 투자유치

1) 투자유치 개요

가. 투자유치 전략

새만금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전략은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도록 목표를 수립했다.

【 단계별 투자유치 계획 】

구분	1단계(2010~2015년) 기반 형성기	2단계(2016~2020년) 도약기	3단계(2021년~) 활성화기
개발 단계	개발계획수립 부지조성 개발시행	부지조성개발 시행 및 사업분양	도시기반 완성 및 안착화
투자유치 목표	투자자 대상 인지도 강화 투자유치 기반조성	본격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앵커기업 및 협력사 유치	2단계 사업대상 투자유치 입주기업 환경 개선

단계별 세부 전략을 보면, 1단계(2010~2015)에는 인지도 강화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국내외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알리기를 본격 추진하고, 폭넓은 투자후보군을 발굴하여 투자의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등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유치 지원체계 확충 및 인센티브 개발 등 투자기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2016~2020)에는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타깃 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단계(2021~)는 마스터플랜의 2단계 개발사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투자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투자자를 일대 일로 지속 관리하고, 이미 유치한 산업의 전후방 연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 세부 추진계획

① 투자유치 추진기반 강화

-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는 새만금사업 관계기관 간에 투자유치 정책, 투자기업 발굴, 홍보활동 등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연차별 투자계획과 투자유치 활동을 총괄 ·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개발정책관 주재하에 각 부처 및 각 기관의 과장급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Invest Korea(IK)의 활용**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하의 'Invest Korea'를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전담기구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IK를 활용하여 해외 투자유치 전략 및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투자가 기초 정보 수집 및 월별 활동보고서를 통해 투자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또한 IK의 해외무역관 중 거점 무역관으로 뉴욕, 상하이, 프랑크푸르트를 선정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해외투자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명예자문관 · 투자자문단 등 협력 네트워크의 활용**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명예자문관 및 투자자문단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명예자문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 CEO, 외국 정부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새만금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2012년 6월 말 현재 빔콕 전 네덜란드 총리,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강현욱 전 새만금위원장이 명예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법률 및 금융전문가, 산업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9명의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투자정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과 함께 투자자,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② 잠재 투자자 발굴 및 관리 강화

- **투자유치 유망기업 및 잠재투자자군 발굴** 새만금과의 비전 적합성, 전략적 중요도, 유치 파급효과, 기업 역량, 유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 **잠재 투자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 전개** 새만금의 비전에 부합하는 주요 잠재 국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찾아가는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니즈, 투자 가능성 및 투자규모를 조사했고, 면담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하고 있다.
- **새만금 투자정보 뉴스레터 제작 발송** 새만금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잠재 투자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및 정책관련 이슈, 용지별 개발계획 및 새만금 관련 동향을 수록한 '새만금 News letter'를 제작해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③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

- **앵커기업 대상의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 국내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활동을 추진했다. 국내 앵커기업의 선투자를 통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이를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는 현재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가 확보된 후에는 소규모 접촉 형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새만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중화권은 막대한 자금을 토대로 해외투자에 관심이 많음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권에는 선진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많으나 초기 투자가 접촉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 대면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 지역별 투자유치 전략 】

지역	중화권	유럽, 북미권	신흥국
중점 산업	중국 관광객 대상 관광지, 지역개발 관련 투자가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 기계 등 바이오, 고부가식품, 신소재, 나노융합 등	국부펀드를 활용한 재무적 투자가
투자가 유형	마스터 디벨로퍼 서브 디벨로퍼	주요 선도 유망기업 유치	–
활동 성격	홍보, 대규모 IR 활동	투자가 면대면 접촉 방문상담 위주	홍보활동 위주

- **인센티브 개발**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했다. 외국인 투자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국·공유지 및 건물 등의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확대했고, 50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국공유 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 대부, 매각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설립 및 주택공급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 투자유치 활동

가. 2009년도 주요 활동

① 외신기자 설명회 개최(2009.9.3. 프레스센터)

주요 해외 언론사 외신기자(NHK Reuters, AFP 등 외신기자 27명)를 대상으로 새만금의 비전, 전략 및 투자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외신기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기회로 활용했다.

② 주한 외국공관 상무관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2009.9.22,10.14)

새만금사업의 비전, 추진전략 및 투자환경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투자 유력국 상무관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에게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당국가 기업들의 새만금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③ 국내 10대 기업 초청 새만금 사업설명회 개최(2009.10.8)

새만금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투자관련 문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 유력 국내기업을 초청하여 새만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급 간부를 대상으로 새만금 현장시찰도 추진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다.

④ 주한 외교사절 새만금 팸투어 실시(2009.9.9)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오피니언 리더 새만금 초청투어'(10개국 17명)를 실시했다.

나. 2010년도 주요 활동

① 주한 외교사절 초청 설명회 개최(2010.4.20)

역사적인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개최에 즈음하여 주한 외교사절 12개국 대사 및 부대사를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고, 방조제 준공식 참석을 요청했다.

② 외국 투자기업 초청 포럼 및 투자 상담회 개최(2010.5.14)

민간 전문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새만금 개발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외국 투자기업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외국 투자기업 초청 포럼과 투자 IR에는 국내외 주요 잠재투자가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 과정 중의 패널토의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성공 의지를 밝혔으며, 동시에 관심 기업에 대한 1:1 상담도 실시했다.

③ 한 – 네덜란드 투자유치 상호협력 MOU 체결(2010.4.28)

얀 페터르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 방한 기간(2010.4.28~29) 중 한-네덜란드 양국 간의 우호, 이해 및 협력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네덜란드 경제부 간 MOU를 체결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투자와 관련하여 양국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④ 한-네덜란드 공동 세미나 개최(2010.10.14)

한-네덜란드 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새만금 개발 관계기관, 연구소 및 국내외 주요

개발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가해서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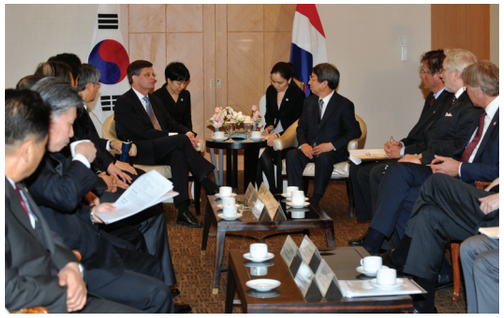

한-네덜란드 MOU 체결

⑤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해외 IR 추진

-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2010.6.27~30)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현지 투자 관련 정부기관과 양국 간 새만금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새만금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 **유럽지역(네덜란드 · 독일 · 스웨덴) 투자유치 활동**(2010.10.17~24) 2010년 10월 유럽지역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만금에 대한 해외 IR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해양엔지니어링, 첨단농업 관련 현지 기업은 미래의 유망한 사업처의 하나로 새만금에 관심을 표명했다.
- **중동지역(바레인 · 카타르 · UAE) 투자유치 활동**(2010.10.24~30) 신흥자본국에 대한 새만금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 2010년 10월 중동지역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했다.

다. 2011년도 주요 활동

① 전경련 초청 새만금사업 설명회 개최(2011.3.25, 한국프레스센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발표'(3.16) 직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잠재 투자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새만금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기업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② 새만금 국제포럼 2011(2011.6.1, 코엑스)

새만금 내부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최근 변화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새만금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새만금 국제포럼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만금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여 이를 이룰 수 있는 제도와 민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③ 제2회 한-네덜란드 공동세미나 개최(2011.5.16, 네덜란드)

한국-네덜란드 간에 체결된 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 제2회 한-네덜란드 새만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만금 잠재력 및 투자가치,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계획,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의 4개 주제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다.

④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해외 IR 활동

- **상하이 IR 및 칭다오 새만금 설명회 개최**(2011.4.25~30) 새만금의 지리적, 경제적 위치를 활용한 대중국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향후 중화권 자본유치를 위한 토대를 쌓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 **상하이 및 베이징 투자 설명회 참가**(2011.8.22~27) 상하이에서는 '새만금 단독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고, 베이징에서는 8월 25일 KOTRA가 주관한 '베이징 지역개발 CEO 투자 설명회'에 참가했다. 상하이 설명회에는 상하이 및 인근지역 유력 투자자 76개 업체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베이징 행사는 베이징 소재 대형 디벨로퍼 CEO 70여 명이 참석했다.
- **북미지역(뉴욕 · 샌프란시스코) 투자유치 활동**(2011.10.20~11.3) 새만금 복합도시 및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공모에 앞서 뉴욕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에 잠재 타깃투자자 및 개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구축 및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 **유럽지역(영국 · 프랑스) 투자유치 활동**(2011.11.29~12.5) 새만금의 용지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서 본격적인 사업자 공모에 앞서 국제금융, 대형 개발사가 밀집한 유럽지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영국의 한국투자설명회에 참가하여 금융 및 부동산 투자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을 소개했고, 프랑스에서는 재무적 투자자, 부동산 디벨로퍼 등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했다.
- **화교권지역(홍콩 ·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2011.9.4~8) 대한(對韓) 누적투자 10위를 기록하며,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홍콩과 아세안 국가 중 최대 대한(對韓) 투자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국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부동산 투자가 및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을 소개하고 관계자들과 상담을 실시했다.

라. 2012년도 주요 활동

① 일본지역 투자유치 활동(2012.2.21~22)

일본 대지진 이후 생산 거점에 대한 재배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세계부동산연맹 일본지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심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별 방문 면담을 실시했다.

② 미국지역 투자유치 활동(2012.2.28~3.1)

뉴욕에서 개최된 '새만금 Investment Forum 2012'에 참가해 지역 유력 투자가 등 80여 명을 대

상으로 새만금 복합도시 및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또한 LA지역 부동산 개발 전문가 및 재무적 투자가 2개사를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실시했으며, 롱 비치 마리나(Long Beach Marina) 등 새만금과 유사한 개발지역을 시찰했다.

③ 프랑스 세계 물 포럼 연계 홍보 활동(2012.3.10~3.17)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물 관련 행사인 '제6차 세계 물 포럼' 에 참가해 현지 새만금 전시관 운영과 홍보활동을 했고, 파리지역 글로벌 투자자 면담을 통해 새만금 홍보와 사전 투자 의향을 조사했다.

④ 중국지역 투자유치 홍보활동(2012.8.28~9.1)

2011년과 2012년 5월 상하이, 베이징에서 실시한 새만금투자유치 설명회 후속조치와 중국 서부지역 투자유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투자수요가 에너지 · 자원 등 국가 전력부분에 한정된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분에서는 해외 부동산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투자정보의 지속적인 제공과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새만금 현장에 초청하는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⑤ 부동산 투자박람회「MIPIM ASIA」참가(2012.11.6~9)

아시아의 관광 · 부동산 투자 박람회인「MIPIM ASIA 2012」에 참가하여 새만금 복합도시내 관광 · 레저용지 등의 개발을 위한 홍보활동과 홍콩내 부동산 투자자 및 개발업체 등 잠재 투자자들을 면담하고 새만금 투자 방향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했다. 새만금에 구체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았으나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

3) 투자유치 현황

가. 산업단지 투자유치 현황

① OCI와 투자협약 체결(2010.8.16)

OCI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폴리실리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가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OCI에서는 2012년 새만금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새만금에 본격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설립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태양광시장의 전망을 고려해 투자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장은 산업단지 1공구 155만1,000m^2 (약 47만평)에 세워질 계획이다.

② 조선해양클러스터 투자협약 체결(2010.7.27)

새만금 조선해양클러스터 컨소시엄은 군산대, 제이와이중공업(주), (주)신산테크, 윙쉽중공업 등 16개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해양클러스터에는 2014년까지 98만6,000m^2 면적에 1,69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용효과는 3,320명으로 예상된다.

③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 승인(2011.7.20)

OCI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 선정됨에따라 2공구 16만5,000m^2에 9,572억원을 투자하여 증기 및 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④ 세대에너텍(주) 투자협약 체결(2012.9.17)

새만금산업단지(2공구)내 세대에너텍(주) 등 6개사(현대하이텍, 에스엠테크, YJC, 금비산업)가 2공구 매립완료 시점인 2014년에 6만평 규모에 850억을 투자하여 발전소 열교환기, 보일러탱크를 제작하는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세대에너텍 등 6개사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고용효과는 865명을 예상된다.

나. 다기능부지 투자유치 현황

①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 사업협약 체결

신시도 휴게시설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석산개발 매입 토지)에 0.06km^2의 규모로 개발된다. 도입시설은 전망형 복합휴게소, 전망타워, 전문식당, 숙박시설 등이며, 투자규모는 784억원(1단계 597억원, 2단계 187억원)이다.

다. 신재생에너지용지 투자유치 현황

정부와 전라북도 등은 신재생에너지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를 구축하려는 삼성그룹과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그룹은 신재생에너지 용지 11.5km^2(350만평)에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4.1km^2부지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삼성그룹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투자계획(안) 】

구분	2021~2025	2026~2030	2031~2040
주력사업	– 풍력발전기 – 태양전지 – 바이오연료 – 그린에너지 R&D 센터 등	–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등 – 풍력발전기 및 태양전지 증설	– 연료전지 등 – 그린에너지 종합 산업단지화
소요부지	4.1km^2 (125만평)	3.3km^2 (100만평)	4.1km^2 (125만평)

라. 농업용지 투자유치 현황

농식품부는 농업용지 개발을 위해 (주)농산, (주)새만금팜, (주)초록마을 등 3개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도에 농업용지 5공구(15.13km²)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11년 세부 사업설계가 완료되었다. 2013년에는 부지기반시설이 준공될 예정이고, 2015년까지 참여기업이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유치 】

구 분	사 업 대 상 자		
	(주)농산	(주)새만금팜	(주)초록마을
신청면적(700ha)	250	333.3	116.7
사업품목	시설원예 (파프리카, 토마토) 및 가공식품	시설원예, 사료작물, 유기한우	사료작물, 유기한우, 가공식품
총투자비(백만원)	157,725	205,767	8,000
시설투자비(백만원)	156,225	195,617	3,448

5. 새만금사업 성과와 향후과제

1) 추진성과

가. 방조제 준공

1991년 11월 28일 착공 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9년간 끌어온 방조제 공사를 2010년 4월 27일 마무리함으로써 401km²의 국토 확장 및 본격적인 내부개발 착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세계 최장(33.9km)의 방조제 준공으로 국가 위상을 제고했으며, 방조제 준공 이후 현재(2012.9)까지 1,80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켰다.

나. 사업추진 체계 구축 및 개발계획 마련

새만금 정책의 통합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2009년 1월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2011년 3월 16일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 국가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국가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다. 신항만(2012.6 착공)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산업단지 매립(2009.3 착공) 및 농업용지 방수제 축조(2010.7 착공) 등 선도용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특히 토지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7억1,000만㎥) 중 81%(5억7,000만㎥)를 호소 내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토지 조성원가 절감에도 기여했다.

라. 2단계(2011~2020) 수질대책 수립 · 추진

새만금을 친환경적인 수변도시로 개발함에 있어 기본전제인 수질관리를 위해 2011년 3월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상류지역 오염원 저감을 위해 왕궁 · 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장기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새만금 환경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민관 소통을 강화했다.

2) 향후 과제

가. 내부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신항만,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농업용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 국가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복합도시 개발 등 핵심사업은 매립 및 용지조성을 담당할 민간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매립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구축 및 농업용지 개발 등 정부주도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타 용지 개발을 견인하고 공기업을 통한 매립, 용지의 단계적 개발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국내외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 도출

그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국내외 여러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매립이 일부 완료된 관광용지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유력투자자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유치활동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 수질대책 지속추진 등 수질관리 강화

2단계 수질대책 등 새만금 수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어폐류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상류지역 만경 · 동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제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커뮤니티를 통해 지자체, 지역사회, 정부 등 민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971 ~1986	■ 새만금사업 예정지 조사 등 실시
1989.11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1991.8.19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1991.10.22	■ 공유수면 매립 면허 · 고시
1991.11.13	■ 사업시행 인가 · 고시
1991.11.28	■ 방조제사업 착공
1999.5 ~2000.6	■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2000.8.18	■ 공동조사보고서 국무총리실 제출
2001.5.25	■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 방침 결정
2001.8. 2	■ 매립 면허 취소소송(환경 · 시민단체)
2001.8. 6	■ 정부 방침에 대한 후속 세부실천계획 수립
2006.3.16	■ 대법원 판결(정부 측 승소)
2006.4.21	■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2007.4.3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농지 72%, 산업 · 관광 등 비농지 28%)
2007.12.27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8.12.28 특별법 발효)
2008.2.12	■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2008.4.25	■ 새만금 일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산업 · 관광지구 28.6km^2)
2008.10.21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보고(국무회의)
2008.12.3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대통령훈령 제234호)
2009.1.14	■ 새만금위원회 발족
2009.4.30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09.7.23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조정안 발표
2010.128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심의 · 확정(제4차 새만금위원회)
2010.4.27	■ 새만금 방조제 준공
2010.8.2	■ 세계 최장(33.9km) 방조제로 기네스북 등재
2010.11.15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 보고(제5차 새만금위원회)
2010.12.22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2011.3.16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제6차 새만금위원회)

제3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1.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대부분이 통과하고 제주남방해역 대륙붕에는 약 230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는 등 인적 · 물적 자원의 주 해상교통로이자 국가의 생명선으로서 경제적 ·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다. 현재는 제주도와 부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와 진해 · 목포에서 해군이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지들로부터 제주도 남방해역까지는 거리가 멀어 상황발생 시 함정들이 작전을 전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제주 민군복합항이 건설되면 우리 해군은 제주도에서 이어도까지 8시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여 제주 남방해역에서 상황발생 시 주변국보다 신속하게 도착하여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참여정부는 제주 남방해역의 보호를 위한 해군의 신속한 기동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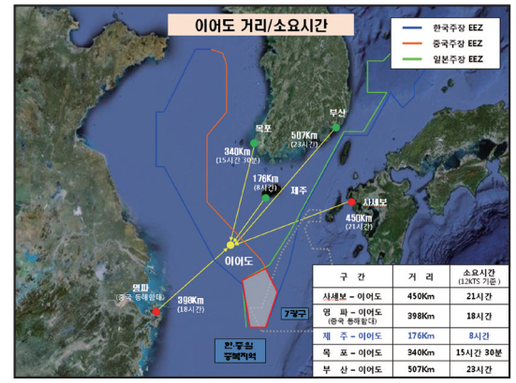

각 기지별 이어도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2. 입지선정 절차

2006년부터 화순 · 위미 지역이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하던 중 2007년 강정마을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제주도에 건의(4.27)했다. 제주도가 2007년 5월 4~12일 도민 1,500명, 후보지역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4.3%의 도민이 찬성했으며, 후보지역주민 찬성률은 강정이 56%로 가장 높았다. 이에 제주도는 2007년 5월 22일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및 후보지 선정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는 2007년 6월 8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건설지역으로 확정하고 이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3.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추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도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1993년부터 건설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07년 참여정부에서 지역주민 및 제주도의 유치 건의를 수용하여 해군기지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9월 11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해군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과 군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주민보상 절차를 완료하여 2010년부터 공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단순 군항이 아닌 크루즈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 국가안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제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환경 및 문화재 보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며 친환경적인 공사를 진행해왔다. 2007~2008년 강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했으며, 찬반 주민 공동생태계조사를 포함 총 7회에 걸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4] 또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 및 도의회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공법인 해수 유통형 부두, 수변공원 조성, 태양광 등대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건설해나가고 있다.

연산호 군락 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2009년 12월에 민군 공동으로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구역의 해저지질이 모래로 판명되어 연산호 서식환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현장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사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양 부이를 운영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업부지 내 멸종위기종은 전문가 조사 및 환경부 허가를 얻어 대체 서식지로 포획·이식하는 등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5]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포획·이식한 개체의 서식상태를 정기 모니터링하고 있다.

【 친환경적 공법 적용 】

해수 유통형 부두

수변공원 조성

태양광 등대

【 멸종위기종 유사환경 이식 】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연산호 자연착생 유도시설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강정 구럼비 바위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다'는 평가와 의견이 있었으나, 환경보전을 고려하고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수용하여 구럼비 바위 일부를 자연상태로 보전하여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추진 중 문화재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낙동문화학술연구소 주관으로 2007년 10월 29일~12월 5일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2010년 3월~2011년 7월에 1, 2차 시굴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11일~2011년 12월 23일에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2,366m²이 원형보전구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생태블록형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원형을 보전토록 했다.

4) 지역환경단체, 국회 이5당 보좌관 현장방문 수중촬영(2011.7) : 미(未)식별됨

5) 붉은발말똥게 총 303개체를 포획, 서귀포 약천사 선켓네에 이식(2010.6~2011.10) / 맹꽁이 유생 총 900여 개체를 제주시 돌문화공원에 이식(2011.6~9)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사업부지 내 용천수에서 발견된 제주새뱅이(민물새우)도 총 5,300여 개체를 강정천에 이식(2011.10~12)

5.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전성 검증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를 구성·운영한 후 2011년 9월 제주 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곤란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객관적 검증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예결위 해군기지 조사소위에서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를 권고(2011.10.21,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제주도 간 협의·결정하되 필요 시 국회·국방부·제주도 추천 전문가로 검증위원회 구성·검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해군)-제주도는 세 차례에 걸쳐 기술검토회의를 개최(2011.11.8, 12.1, 12.27)했으나 항로법선을 제외하고 선회장 규모, 시뮬레이션 적용 조건(풍속, 풍향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국무총리실에서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2012.1.18) 4차례에 걸쳐 기술검증회의(1.26~2.14)를 개최하고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검증위원회는 현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 실시를 건의했다.

이에 기 실시 중인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연구용역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책임연구원 : 이윤석 교수)는 기술검증위에서 제시한 조건(풍속 14m/s, 횡풍압면적 1만3,915㎡, 항로법선 교각 30°, 예인선 배치)을 모두 반영하여 선박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 **1단계** 현행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풍속 14m/s, 횡풍압 면적 1만3,915㎡, 항로법선 교각 30°, 예인선 배치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 남방파제는 10 case 모두와 서방파제 12 case 중 10 case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별
  - 서방파제 2 case는 근접도·제어도는 이상이 없었으나 운항자 평가에서 안전성 향상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
- **2단계** 1단계 조건에 서측 돌제부두를 이동(50m, 200m) 배치 조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 서방파제 6 case 모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별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측 돌제부두 조정 시에는 15만톤급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는 국방부(해군)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기술검증회의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으나 제주도가 공사중단을 요구하여 1·2차 회의(2012.3.29·3.30)는 무산되었다. 제주도는 3차 회의(2012.4.6, 한국해양연구원)에 참석하여 기술검증을 마무리했으나 제주도 추천 전문가가 참관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요청했다. 정부는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성 재확인 등을 위해 제주도 요청사항을 수용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2012년 5월 16일 시뮬레이션 재현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제주도가 협의와 다른 조건의 시뮬레이션 재현을 요청하여 시뮬레이션 재현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제주도가 책임연구원 교체 등 시뮬레이션 시현에 대한 최종의견을 정부에 제출함(2012.10.31)에 따라 정부는 11월 15일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정부-제주도가 공동으로 구성(2012.11.28)한 시뮬레이션 시현 TF가 주관하여 2013년 1월 17~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선박플랜트연구소)에서 15만톤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을 실시했다.

6. 강정마을회 등 소송 제기 및 결과

강정마을회(회장 : 강동균) 등 반대단체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저지를 위해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4월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 450명은 2009년 1월,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2010.3 변경처분)은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제1심(2010.7)과 항소심(2011.6) 판결에서 원처분은 무효이며 변경처분은 기각(적법)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계획승인 절차 단계이므로 환경영향평가사업이라도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원처분과 변경처분 모두 적법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0년 1월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 438명은 2009년 12월 "제주도의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지역 내 강정동 중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이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제1심(2010.12), 항소심(2011.5), 대법원 상고심(2012.7)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절대보전지역 유지에 따른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자격이 없다고 판결(1심 각하, 항소심 기각, 상고심 기각)했다. 이와 같이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2개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판결됨에 따라 민군복합항 사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7. 갈등해소 노력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측와 반대측 간의 논란이 거듭되고, 민군복

합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자 이러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9월 초까지 해군기지의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했으며(2008.9, 국가정책조정회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2011년 5월「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군복합항 추진방향과 지원사업의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2011.4)하고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2011년 9월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월 총리실 주관으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고, 2012년 2월에는 크루즈선박 입출항 관련 기술검증 및 추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현 설계상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회의를 개최하고(2012.4.6), 시뮬레이션 시현을 통해 크루즈선박 입출항 논란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도, 지역주민과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합동으로 제주도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제주도지사 및 강정마을 대표주민과 간담회를 개최(2012.3.16)했고, 정부와 제주도 간 수차례 실무협의, 정부와 강정주민 간 토론·간담회(2012.7.10)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국방부(해군) 차원에서는 당초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을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했고, 2009년 4월 27일 크루즈선 부두 및 부대시설 확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부지 외곽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미설치,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기본협약서를 국방부장관-제주특별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 간에 체결했다. 또한 영외지역에 민군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사용을 약속했고, 함상공원을 조성하여 해양공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해군의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차원에서는 강정항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으며, 2007년 이후 1~2개월마다 강정마을 찬성주민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매월 2~3회 제주도민 대상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사업설명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사업부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9개월간 강정마을 주민의 영농행위를 허용(연장)했고, 지장물 철거기간에도 의견수렴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단 1건의 충돌도 없었다. 반대주민들과는 보상단계간 수시로 접촉 했고 때론 영농 일손돕기도 지원했다. 강정마을회(반대) 임원들과도 수시로 전화를 통해 의견 교환을 했고, 가끔 식사를 통한 간담회도 추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등과의 소통노력을 더욱 강화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8. 공사 추진현황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국방부(해군)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공사와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크루즈터미널 등 부대시설 공사로 구분된다.

해군기지 공사는 다시 항만공사와 육상공사로 구분되는데, 항만공사는 2012년 12월 말 현재 케이슨 제작장 조성 완료(1공구 2011.3, 2공구 2012.10), 외곽방파제 평탄화 준설(59%), 방파제용 케이슨 57개 중 17개, 부두용 케이슨 82개 중 7개 제작을 완료하는 등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육상공사 중 민군공동시설 공사는 2012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크루즈터미널 등 부대시설 공사는 2011년 10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13년 토지보상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9. 지역발전계획 병행 추진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강정지역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5월에「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2011.5.23)하고 제주도는 지역발전계획 연구용역(2011.7~12)을 추진했으며,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지역발전계획(안)」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고(2012.1~2),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안을 수립(2012.1.9~2.16)했으며,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조771억원(국비 5,787억원, 지방비 1,710억원, 민자 3,274억원) 규모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

발전계획에 따라 2012~2021년 5개 전략사업, 총 37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되,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012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5개 우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며, 2013년 농작물 비가림 시설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지원을 위하여 2013년 정부예산에 423억원을 반영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일지

일 자	추 진 내 용
2003.12	■ 국방부, 「제주해군전략기지」 건설 결정(제156차 합동참모회의)
2007.5.14	■ 제주도민 및 후보지역(화순, 위미, 강정) 주민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 · 건의(제주도 → 국방부) – 유치여부 조사결과 : 찬성 54.3%, 반대 38.2%, 중립 7.5% – 후보지별 찬성률 : 강정마을 58.4%, 화순 42.2%, 위미 36.1%
2007.6.8	■ 국방부,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 · 통보(국방부 → 제주도)
2007.12	■ 2008년 예산 국회 조건부 승인(174억원) – 부대조건 :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후 제주도와 협의하여 예산 집행
2008.4~8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 연구용역
2008.9.11	■ 국가정책조정회의,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키로 결정
2008.10.31	■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완료 – 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연산호 관련 공동생태조사(2008.11~2009.6)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심사에 반영
2008.12	■ 2009년도 민군복합항 예산(375억원) 반영 – 크루즈항(국토부) 15억원, 해군기지(방사청) 360억원
2009.1.14	■ 제주 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2009.1.21	■ 어업보상(직접보상 78억원) 실시
2009.2.9~25	■ 공동생태계 조사 – 연산호(천연기념물 442호) 군락지 생태환경 등 150개 항목 조사
2009.4.20	■ 반대측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실시계획 취소소송' 제기
2009.4.27	■ MOU 체결(국방부–국토부–제주도) → 이후 제주도의회 미협의, 강정마을 선정 시 의견수렴 조작, 도지사의 행정능력 등을 이유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의 단초를 제공
2009.8.26	■ 제주도지사 주민소환(6월 말~8월 말 소환정국) – 소환투표(8.26), 전체 유권자의 11.0% 투표 → 소환 무산
2009.9~2010.12	■ 토지/지장물/어업 보상 착수~완료(농어촌공사 → 주민)
2009.11	■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공사 기본 · 실시설계 용역 계약(제주도) – 기간/예산 : 2009.11.18~2011.10.13/13억원
2009.12.17	■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및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
2010. 3	■ 강정해안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부산항만청)

일 자	추 진 내 용
2010.7	■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관련 행정소송 승소 – 2009년 1월의 실시계획은 무효이나, 2010년 3월의 변경승인은 적법
2010.12	■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제주도 대상) 소 각하, 사업추진 가능
2011.4.11	■ 해군기지 관련 「지원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2011.8. 29	■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7.7) 및 해군 승소(8.29)
2011.8.29~10.21	■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조사소위원회 운영(회의 총괄지원 및 관계부처 이견 조정)
2012.1.18~2.14	■ 15만톤급 크루즈선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 운영
2012.2.29	■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공사계속 추진방침 천명 및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확인, 지역발전계획 확정
2012.3.20, 3.22, 4.12	■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관련 공사정지 처분 청문 개최
2012.4.6	■ 시뮬레이션 용역결과에 대한 국방부 · 제주도 간 검증회의 개최 – 제주도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 요구
2012.6.22	■ 제주도는 정부에 시뮬레이션 6개 케이스(신규 3, 기 실시 3) 재현 재요구 및 제주도 추천 도선사가 직접 선박 조정토록 요구
2012. 6. 26	■ 18대 국회 예결위가 권고한 「항만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2012.7.5	■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의 법적 정당성 인정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상고 기각
2012.7.10	■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정부와 강정주민 간, 강정마을 찬반 주민 간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한 정부–강정주민 간 1차 토론 · 간담회 개최
2012.7.20	■ 제주도는 제주 추천 도선사 참여하에 2Case* 시뮬레이션 요구 * 서측 돌제부두 無, 27노트, 남방파제 선박계류, 예인선 사용, 서방파제 좌현접안(기수행) 및 우현접안(신규)
2012.9.25,10.17	■ 정부, 제주도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시뮬레이션 시현방안 제시
2012.10.31	■ 제주도, 책임연구원 교체, 야간 시뮬레이션 실시, 검증 전 케이슨 정거치 금지 등 시현에 관한 최종의견 제출
2012.11.15	■ 정부–제주도, 시뮬레이션 시현팀을 구성,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계획 발표
2012.11.28	■ 정부–제주도, 시뮬레이션 시현 TF(책임연구원 : 이동섭 한국항해 항만학회장) 구성 및 시현 TF 1차회의 개최(시현일정 확정)
2012.12.21	■ 시현 TF 2차회의에서 야간 시뮬레이션 시현 조건 협의 및 결정
2013.1.8	■ 시현 TF 3차회의에서 시뮬레이션 시현 환경조건 및 시현순서를 확정하고 선박운항자 친숙화 훈련 실시
2013.1.17~18	■ 15만톤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제4절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1.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배경

우리나라 초·중·고 조기 해외유학생은 2007년 2만9,511명으로 2004년에 비해 290%, 유학연수 수지 적자는 49억달러로 2004년에 비해 200% 증가했다. 아울러 글로벌시대 흐름에 걸맞은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도 영어능력 향상 방안 및 민간기업의 실용영어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 대비 영어 경쟁력 수준은 2007년 TOEFL의 말하기 영역 iBT에서 134개국 중 111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적화된 영어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동북아시아 교육허브 건설' 이라는 비전을 수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탄생

재정경제부가 2006년에 발표한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2007년에 정부는 「제주영어전용타운」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동 구상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행정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과 국제학교 설립·운영 및 교육관련 제도개선 등 교육분야 지원, 기획재정부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소요예산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업대상부지를 제공하고 공립국제학교 설립·운영 등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업시행자로서 부지확보, 개발계획 수립, 부지조성 등 도시개발사업과 1단계 시범학교인 사립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을 의결하고, 2008년 6월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영어교육도시 추진방향 및 기본방안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정부지원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후 200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도시개발 콘셉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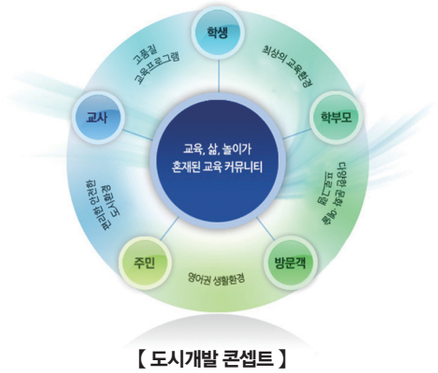

【 도시개발 콘셉트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교육기관 Zone, 대학 Zone, 문화예술 Zone으로 구성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시설의 집중 배치를 통해 교육 중심의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담이 없는 학교를 조성, 학생과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영어교육도시 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 콘셉트는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교육커뮤니티 콘셉트의 도시공간 배치로 학습, 삶, 놀이가 혼재된 복합 도시공간을 구축하고, 영어교육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 지역사회·학생·교사·학교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인 배움의 길(Street of Learning)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곶자왈(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 보존과 제주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주거·상업시설 건설과 민원·경찰·소방 등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편리한 도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범죄 예방시설과 차량통행 제한 등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 해외 유학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주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최고의 국제교육 환경과 제주의 관광자원을 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교육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학 생활과 유사한 영어상용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영어사용 환경을 제공, 해외유학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종사자 등 지역에 정착하는 정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치안, 보건 등 각종 영어행정서비스를 제공·지원함으로써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삶을 제공하는 정주인구 약 2만3,000명(학생 9,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명품 교육도시가 탄생될 것이다.

4. 영어교육도시의 위상과 역할

정부에서 '영어교육도시' 라는 새롭고 독특한 개념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비영어권 국가에서의 영어교육도시 건설' 이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징성을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해외조기유학에 따른 사회적 이슈인 기러기아빠, 유학생 탈선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 외국고급인력 및 기업유치에 필수적인 최고의 주

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영어교육도시 조성 현황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2,049㎡의 대지에 총사업비 1조7,806억원(공공 4,592억원, 민간 1조3,2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로 국제학교(초·중·고), 주거·상업시설, 영어교육센터, 교육문화예술단지, 외국교육기관(대학, 대학원), 행정지원사무소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부지조성공사는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1단계 시범학교인 NLCS Jeju와 KIS Jeju 등이 들어선 81만7,000㎡ 부지를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 2011년 9월에 부지조성을 마무리함으로써 1단계 시범학교 건축공사 및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다.

【 토지이용계획 】

부지조성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시범학교 지역이 1단계, 교육문화예술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2단계, 그리고 교육문화예술단지가 3단계이며, 교육문화예술단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공모를 통해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부지조성공사 대상 면적은 전체 379만㎡ 중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추진할 예정인 교육문화예술단지 94만3,000㎡를 제외한 284만7,000㎡(공사비 699억원)이며, 2009년 3월 부지조성공사 토목부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공사에 착공했다. 부지조성공사 외에 도시 구성에 따른 건축디자인은 세계적 건축디자이너인 이타미 준(Itami Jun)을 선임하여 도시 Master Concept 총괄조정 및 야외 공공시설 배치 계획 조정, 녹색환경 보존 방안 등 명품도시로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부지조성공사 현황 】

(2012.12 현재)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부지면적	81만7,000㎡	203만㎡	94만3,000㎡
부지조성 공사기간	2009.6~2011.9	2009.6~2012.12	투자자 모집 후 착공
주요 예정시설	KIS Jeju, NLSC Jeju, 주택·근린생활시설, 행정지원사무소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주택·근린생활시설	교육문화예술단지
공정률	완료(2011.6)	완료(2012.12)	미착공

6. 이해관계자 설득 노력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도모와 의견 청취 등 사업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08년 6월 사업대상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약 25명)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 및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대상의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다.

같은 해 6월 22~30일에 사업부지 대상 마을(구억리, 보성리, 신평리) 및 대정읍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GIS 등급 변경 결정고시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사업부지 3개 마을 이장단, 청년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에는 환경·교통영향평가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10월 7일과 28일에는 토지주, 마을주민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보상계획, 감정평가 방법, 보상가 산정원칙, 세제 문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부지조성공사 착공식(2009.6)

특히 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2009년 1월부터 900여 회의 보상협의를 시행,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해왔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이러한 다양한 설명회와 간담회,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추진한 결과, 원만한 협의와 보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특히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진행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역 및 지역 외 토지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성향분석 등을 시행, 토지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배려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보상착수 시점에서 부지확보까지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함으로써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7. 해외 명문학교 유치 활동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핵심은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이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목적인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 유학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기관 유치, 즉 해외 명문학교 유치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미국 · 영국 · 캐나다 등을 학교 유치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의 명문학교를 유치 대상으로 설정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학교 유치활동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개 기관에서 합동 유치단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이들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공동유치단은 2008년 6월 미국 · 영국 등 8개국 60개 학교에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학교 진출 제안서 발송을 시작으로 유치활동을 개시했다.

1차 사업제안서 발송 후 가장 적극적으로 제주진출 의사를 표명했던 학교는 영국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이하 'NLCS')이었다. 그 해 8월 공동유치단은 NLCS를 방문하여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학교 이사회를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학교관계자의 제주방문과 실무협상을 통해 2009년 4월 제주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6월 NLCS 정기 이사회에서 제주진출을 확정한 후 2010년 3월 제주진출 및 학교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첫 외국 명문학교가 제주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국 최고의 사립학교가 제주에 진출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학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첫 사례가 되었다.

영국의 NLCS는 1820년 설립된 여학교로, 지난 1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현재는 런던의 한국교민들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했으며, 졸업생의 40% 이상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진학하는 등 명실상부한 영국 내 최고 명문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NLCS, 브랭섬홀(Branksome Hall) 본 계약 체결

이외에도 북미사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2009년 5월에는 영미권 명문 사립학교 58개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발송, 개별 학교 대상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미국 · 캐나다 등 6개 학교가 의향을 표명해 그 해 10월 캐나다 브랭섬홀(Branksome Hall), 12월에는 미국 세인트 알반스 스쿨(St. Albans School)과 MOU를 체결했다. 캐나다 브랭섬홀(Branksome Hall)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0년 2월부터 약 5개월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여 그 해 7월 제주 진출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브랭섬홀(Branksome Hall)은 온타리오 주 여학교 중 1위를 고수하는 캐나다 최고 명문 여자학교이다.

【 국제학교 설립 MOU 체결 현황 】

체결일	학교명	국가	비고
2010.3.26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영국	여학교
2010.4	공립국제학교(YBM시사)	한국	
2010.7.7	브랭섬홀(Branksome Hall)	캐나다	여학교

아울러 공립국제학교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여 학교 위탁사업자로 (주)YBM시사를 선정, 2010년 4월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교육도시 내 시범학교 3개교의 유치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미국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 2011년 10월 미국 내 28개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발송하고, 현지 학교 방문 설명회를 통한 사전 유치활동을 시행한 결과, 5개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학교 유치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을 위한 본 계약 2건이 체결되었고, 진출검토를 위한 MOU 체결도 8건을 성사시켜 제주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해외학교 MOU 체결 현황 】

체결일	학교명	국가
2009.12	St. Albans School	미국
2011.4	Noble & Greenough School	미국
2011.9	King's School Rochester	영국
2011.12	Shattuk-St. Mary's School	미국
2012.1	Wilbraham & Monson Academy	미국
2012.1	Perkiomen School	미국
2012.4	The Hun School of Princeton	미국
2012.5	St. Johnsbury Academy	미국

미국 주요 학교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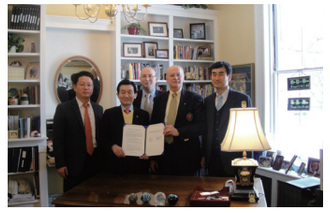

미국 주요학교와 MOU 체결

8. 국제학교 개교 및 운영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시범학교로 유치가 확정된 공립국제학교는 학교명을 KIS(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로, 사립국제학교인 영국의 NLCS는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로 정하고, 캐나다의 브랭섬홀은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로 학교명을 명명했다. 이들 학교 중 KIS Jeju와 NLCS Jeju는 개교일을 2011년 9월로 잡았고, 브랭섬홀아시아는 2012년 10월 개교를 목표로 건축공사, 학교설립 준비 작업 등을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는 정부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현안 조정 등 국제학교 개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KIS Jeju는 초·중 통합과정으로 총 18학급 정원 504명에 기숙학교로 설립되었고, 교육과정은 미국 중서부(McREL)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은 미서부교육연합회(WASC) 인증을 받았다. 학교시설은 대지면적 3만9,061㎡에 연면적 2만8,899㎡로 건축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메인스쿨과 특별활동 교실,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기숙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건축공사는 2010년 8월 착공하여 1년여의 공사 끝에 2011년 9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달인 9월 17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처음으로 개교했다. KIS Jeju는 개교 첫해 371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NLCS Jeju는 유·초·중·고 통합과정의 남녀공학으로 총 68학급 1,508명의 기숙학교로 설립되었다. 국제학위 전문기관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스위스)로부터 IBDP 인증을 받아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게 되어 해외대학으로의 진학이 보다 용이해졌다. 학교시설은 대지면적 10만4,385㎡에 연면적 8만3,486㎡로 건축되었으며, 메인스쿨(학습관, 예술관, 도서관), 주니어스쿨, 수영장, 실내 체육관, 메디컬센터, 대운동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건축공사는 2010년 8월 착공하여 1년여 간의 공사를 거쳐 2011년 8월 완공되었고, 9월 26일 개교했다. 개교 첫해에는 468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브랭섬홀아시아는 건축설계를 마치고 2011년 6월 학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10월 15일 개교했다.

학교시설은 대지면적 9만4,955㎡에 연면적 6만9,604㎡로 건축되었고, 초·중·고등학교 3개동, 기숙사 4개동, 공연장, 식당, 체육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브랭섬홀아시아 역시 유·초·중·고 통합과정의 60학급 1,212명 정원의 여학교로 개교 첫해에는 310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국제학교 건축공사 착공식

국제학교 개교식(NLCS Jeju / KIS Jeju)

국제학교 개교식(브랭섬홀아시아)

9. 정주민 지원 및 영어교육서비스

국제학교 3개교를 개교하여 운영하는 영어교육도시에는 1,500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도시 조성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정주민은 국제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부분이다. 이들 정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거주 개선 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방, 치안 등 학생 및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사무소에 상주하며 거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2011년 8월에 개소하여 거주민들의 생활민원 해소와 119구급대 등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교육시설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카페 · 회의시설 등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소통 행정을 적극 실천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협의회를 조직, 분기별로 관계기관 간 상황공유, 정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상호 의견 교환 및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어상용화를 위해 정주민 및 상업시설 종사자들의 영어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영어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10. 영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는 영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영어상용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설립 목적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환경 인프라 구축 지원과 영어공교육 선진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 정책 개발 등 영어교육 관련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정주민에 대한 특화된 영어상용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어교육 인프라의 연구 · 개발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제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영어교사를 육성하고자 한다. 센터 설립 총사업비는 188억5,000만원이며 부지면적 3만8,201㎡, 연면적 6,766㎡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9월부터 제주 현지에 센터 설립 준비팀을 구성 · 운영 중이며, 영어교육도시 내 정주민 · 공무원 대상으로 영어상용화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발전을 통해 영어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향후 계획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지원과 노력으로 제주 서귀포시에 명문 국제학교 3개교를 개교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유학수지 적자해소, 기러기 아빠 등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도시조성 사업은 국제학교를 개교함으로써 국내 학생은 물론, 주변국의 유학수요를 제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국내 영어교육과 동북아시아 글로벌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추가 유치, 외국교육기관 투자 유치, 정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도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원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6.12.12	■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재정경제부)
2007.2.9	■ 정부 '제주영어전용타운' 기본 구상 확정
2007.6.22	■ 영어전용타운 추진방향 결정 및 영어전용타운 추진 TF 구성
2007.7.29	■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 조사연구 시행(국토연구원)
2007.9.04	■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안 수립(국무회의 보고)
2007.12.18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안 의결(위원장 : 국무총리)
2008.6.3	■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 영어교육도시 추진방향 및 기본 방안 개선안 확정
2008.9.10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2008.10.2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고시(국토해양부)
2009.1.30	■ 실시계획 인가(국토해양부)
2009.3.25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영어교육도시조성 근거 마련
2009.6.17	■ 영어교육도시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3.26	■ 영국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과 CVA(협력사업계약) 체결
2010.4.29	■ 공립국제학교 위탁운영사 선정(YBM시사)
2010.7.7	■ 캐나다 브랭섬홀과 CVA(협력사업계약) 체결
2011.9.19	■ 공립국제학교(KIS Jeju) 개교
2011.9.26	■ NLCS Jeju 개교
2012.10.15	■ 브랭섬홀아시아 개교
2012.12	■ 영어교육도시 부지조성공사 완료

제5절 세종시 이전

1. 세종시지원단 설치 개요

1) 세종시 건설 · 이전사업 추진경과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및 이전업무를 총괄 ·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 3월 31일 출범했다.

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위헌결정까지

세종시 건설 · 이전 사업은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구체화되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이에 대한 지원단을 건설교통부에 설치했다.

기획단과 지원단은 사업추진 기본방향 설정,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등 각종 준비작업을 수행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2003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간의 반대도 있었다. 대표적 단체인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이 2004년 7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3개월여의 심리 끝에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사항을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추진기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추진단 설치
- **특별회계**
  11조원, 부지매입비 · 건축비 · 기반설치비 지원
-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행정 · 사법 · 입법부, 헌법재판소 등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대전 · 충북 · 충남 일원 중 지정
-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방지, 광역도시계획, 개발절차 규정**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과 본격적인 사업추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1월 8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이하 '후속대책위원회')' 를 국무총리실 산하 심의기구로 설치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민간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 경제정책수석 등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후속대책위는 2004년 11월 18일, 12월 17일, 2005년 1월 12일 등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 대안선택 5대 원칙을 확정했다. 원칙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포함하여 자족성을 갖춘 도시 건설, 연기 · 공주지역 입지 우위성 활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 수도권 발전대책 ·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 병행추진이었다. 위원회는 동 원칙에 따라 11개의 대안을 검토해서 '행정특별시안' , '행정중심도시안' , '교육과학연구도시안' 등 3개안을 유력 대안으로 압축하고 후속 과업을 국회 특위에 넘겼다.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후속대안 마련에 대한 원칙과 정부 후속대책위의 제안안을 논의했다. 그 후 2005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의원 등 151명 의원 명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특위 의결 등을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5년 6월 15일, 상기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24일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2005년 4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를 위원장(국무총리, 경원대 최병선 교수)과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시계획 · 설계 · 문화 등 8개 분야 전문가 7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설치했다. 건설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06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집행기구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2006년 1월 1일 개청했다. 2006년 7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 11월 개발계획, 2007년 6월 광역도시계획 · 실시계획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주요내용

- **추진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대통령 소속), 집행기구로 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건설청을 신설(2006년 1월, 2005년까지 추진단 한시 설치)
- **특별회계**
  국가예산 지출상한 8조5,000억원
- **이전대상**
  대통령, 외교 · 통일 · 국방 · 법무 · 행자 · 여성부 명시적 제외
- **계획수립**
  이전계획 · 기본계획 · 개발계획 · 실시계획 등 수립

다. 세종시 수정안 논의 및 국회 부결까지

①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정 및 수정안 주요 내용

2009년 11월 4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11월 27일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7명의 정부위원과 인문사회 · 국토건설 · 교육 · 과학기술 · 민간투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었다. 위원회에 대한 정부 내 업무지원 및 부처 간 의견조정 등을 위해 정부지원협의회(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를 운영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단도 설치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2009년 11월 16일 공동위원장인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2010년 1월 11일 수정안을 마련하기까지 11회, 수정안 발표 이후 후속사항 점검 등을 위해 6회 개최했다. 정부는 2010년 1월 11일 행정기관의 이전 대신 기업, 과학벨트 등 자족기능의 유치를 대폭 강화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서는 '교육 ·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로서의 비전, 5대 기본원칙과 7대 추진전략을 다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 발전방안 비전 · 목표 · 5대 원칙 】

비전	교육 ·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목표	인구 50만 자족도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	중부권 거점도시

5대 기본원칙

1.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 중앙행정기관 대신 인구유발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자족기능을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육성
- 대덕 · 오송 · 오창 등 주변도시와 연계 발전 추진

2.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 도시조성을 2030년 → 2020년으로 10년 단축
- 도시 내 주요 인프라도 2030년 → 2015년까지 15년 단축

3.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초석 마련
-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기업 · 대학 등을 중점 유치
-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이전 불허, 기 협의 중인 기능도 제외

4.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 이미 확보된 부지 · 재원 최대한 활용, 매몰비용 최소화
- 인센티브의 적정성 · 형평성 · 공익성 유지

5.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
- 2010년 내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까지 마무리
-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 내 착공 원칙

②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많은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으로 수정안 추진 관련 입장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정부의 수정안 추진 활동에 대해 지자체들은 지역별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대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종시 원안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를 지지했다.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했다.

③ 수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세종시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세종시기획단과 협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인 「연기 · 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2010년 3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6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심사했으나, 재석 31인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6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6명의 서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의원 12명의 찬반 토론 후 법률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다.

2)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배경

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부 후속조치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그간 수정안 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민관합동위원회를 2010년 7월 5일자로 해체하고, 세종시기획단도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전개된 다양한 주장 · 의견들을 망라한 백서발간 지원, 자료정리 등의 잔무 처리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2010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수정안 부결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세종시 설치와 관련하여 노영민, 양승조, 심대평, 홍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이 계류되어 있었으며 심대평, 홍재형 의원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정안 부결 후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사가 본격화되어 11월 29일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후 행안위를 통과했으며, 12월 7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공포는 12월 27일 이루어졌다.

국무총리실은 10월 중 세종시기획단 조직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세종시설치법」에 따른 실무지원단 설치 시까지 임시조직을 편성해 이·정주대책 수립지원, 세종시 설치법 입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국무총리실 내에 세종시 이전지원 TF(이하 '준비단')를 국무차장 국정운영1실 산하 1국 2팀(총 11명, 비별도) 규모로 구성해 11월 1일부터 2011년 3월말 세종시지원단이 설치될 때까지 운영하면서 세종시 건설·이전 관련 각종 현안을 검토·지원했다. 세종시 설치법 통과 전 조직을 구성하여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으며,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통한 세종시설치법 제정지원, 이전지원협의회·실무협의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세종시 건설·이전지원, 이주·정주지원, 세종시 출범지원, 기존 청사 관련대책, 이전후속조치(행정효율화 등) 등 5대 과제를 발굴해 향후 세종시 지원업무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개요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세종시설치법」 및 2011년 1월 28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지원위원회, 세종시실무위원회, 세종시지원단이 구성되었다. 세종시지원단은 「세종시설치법」 제8조제5항의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지원단의 업무사항은 위원회 기능과 직결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지원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기본방향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관련 관계 행정기관 협조·지원
- 이주대상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협조·지원
-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및 행정효율성 제고
- 세종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 일부 편입 지자체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등

구체적으로는 지원위원회 운영·지원, 세종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공무원 이·정주 지원, 행정활성화 방안·기존청사 활용 등 이전후속조치, 특별자치시 출범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관련 예산·법률 등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조정·점검하며, 특히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주최해 건설·이전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간 정책현안을 검토·조정하고 있다.

3) 세종시 건설·이전업무 추진체계

가. 심의·의사결정 기관

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건설·이전에 관한 최고 심의·의사결정 기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이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한 16명의 장관급 정부위원과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세종시 행·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편입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011년 3월 31일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간사는 세종시지원단 단장이 역임하고 있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차관급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사항은 행정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정지원 지정, 기본·개발·실시계획, 행특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간사는 건설청장이 역임하고 있다.

나. 집행기관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 1월 개청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정지역 내 행위허가,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토지공급계획 승인, 준공검사,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관리·운용, 정부청사 건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② 행정안전부 및 출범준비단

행정안전부는 세제감면·이사비 지원 등 이전공무원 지원대책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공공청사 수급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화상회의 등 다양한 행정효율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을 두고 세종시 출범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정원설계, 공문서·장부·자치법규안 준비, 편입 지자체 등과 관련한 예산이관, 세종시 지방교육자치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해산했다.

③ 국토해양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소관부

처로서 제도개선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체로서 행정도시의 공간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기타 관계부처

기재부는 세종시 관련 행특회계 및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교과부는 세종시 스마트학교 시범사업, 교육자치 지원 등과 공무원의 배우자인 교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문광부, 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도 쟁점별로 지원·협력하고 있다.

2. 세종시지원단 주요 업무 추진성과

1) 세종시 건설·이전 지원체계 구축·운영

가. 세종시지원위원회 구성

①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일단락되고 원안으로의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으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0.12.27)되었다. 동 법은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를 규정했고,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인「세종특별자치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2011.1.28)을 제정하여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을 세분화하고, 당연직위원 및 위원 임기를 명기하는 등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②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10.12.27) 직후 세종시지원단은 민간위원 인선에 착수했다.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후보자 풀(pool)을 구성하고, 기본원칙·선정기준·민간위원 후보 등을 포함한 민간위원 인선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위원구성을 규정한「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011.1.28)과 동시에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확정하였다.

5개 분야 8명의 민간위원 후보자가 확정되었으며, 2011년 3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2년 임기의 민간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었다.

나. 지원위원회 운영

①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정부는 2011년 3월 31일 제1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 회의 개최와 동시에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민간위원의 2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국무총리의 민간위원 소개, 안건보고 및 토론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무운영1실장이 심의안건인「세종시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보고안건인「세종시 건설 및 이전준비사항」과「이주대상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등 총 2건을 보고하였다.

②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연말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2012년도 중앙행정이전기관 이전일정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무원 등 이·정주 지원대책을 종합·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1년 11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세종시 건설 추진현황, 첫마을 입주 준비 및 우수 정주여건 조성 추진현황,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및 공무원 이·정주 지원대책, 세종시교육청 출범 추진현황 및 계획,「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추진현황 등 총 5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다.

③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012년 1월 30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천세영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7명과 건설청 기반시설국장, 세종시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④「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개정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의 1,000분의 36으로 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범위, 투표구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12년 4월 18일 공포되었다.

⑤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화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21일, 제3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 첫마을 입주 지원 및 세종시 중·장기 투자 계획,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추진현황,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다.

⑥「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66호, 2012.1.17 공포, 2012.4.18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을 추가하고, 위촉 민간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여 대전광역시 부시장을 추가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등의 설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2012년 3월 30일 개정했다.

⑦ 민간위원 추가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1.17)됨에 따라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되었고, 위원 구성에 관한「세종시지원위원회 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2012.3.30)」이 개정되어 위원 6명(정부위원 : 문화부·지경부·복지부 장관·대전시장, 민간위원 : 2명)이 증원되었다.

이에 세종시지원단은 민간위원 2명에 대한 인선에 착수했다.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후보자 풀(pool)을 구성하고, 기본원칙·선정기준·민간위원 후보 등을 포함한 민간위원 인선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2개 분야 2명의 민간위원 후보자가 확정되었으며, 2012년 6월 1일부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었다.

⑧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 출범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6월 25일 제4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세종시 교육자치 준비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 세종시 출범 준비현황, 1단계 정부부처 이전지원 추진현황,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2차 전수조사 결과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⑨ 제5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본격적인 중앙부처 1단계 이전을 앞두고 이전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범정부 행정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 9일 제5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고, 1단계 중앙부처 이전준비현황,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범정부 행정효율성 확보방안, 세종시 초·중등학교 발전방안, 세종시 자치입법 지원방안,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관리계획 등 5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다. 또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대한 토론이 실시되었다.

다.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의 운영

① 회의개요

- **배경** 정부부처의 이전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세종시 건설·출범과 정부부처·연구기관 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2011년 6월 세종시 지원단을 중심으로 세종시 건설과 출범에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 **구성 및 운영**

  구성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는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장 주재로 총괄기획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세종시출범준비단장, 연기군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으로 인원을 구성했다. 세종시 출범 준비를 총괄하는 세종시출범준비단에서는 각 지자체 실무준비단의 업무 상황을 종합하고, 이전준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행안부 청사관리소 국장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

  운영 및 안건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며, 각 기관의 월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쟁점현안,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 **회의 개최** 2011년에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가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총 7회 개최되었다.

2) 중앙행정기관·출연연구기관 이전 지원

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① 2012년도 중앙부처 이전일정 확정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두 차례의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 확정되었다. 2005년 10월 5일 관보에 게재된 첫 번째 고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 소요비용,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49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며, 2012년 이전을 시작해서 2014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고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로 2010년 8월 20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정부 조직법 개정(2008.2.29)으로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새로운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 이전대상을 49개 기관에서 36개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시기와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맞물려 변경고시가 보류되어오다가 수정안 부결 후 그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 조정기준은 ①이전 대상기관이 폐지되어 이전 제외기관으로 흡수된 경우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제외기관이 통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의 이전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③이전 대상기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주무부처의 이전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④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및 방위사업청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이전대상기관 이전시기 】

단계		이전 시기	중앙행정기관(16개)	소속기관(20개)
1단계 (12개)	1구역(2개)	2012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2구역(10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단계(18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3단계(6개)		2014년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 **2012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일정 확정 추진경과**

2012년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준비 관련 회의개최 고시 등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연도별 이전일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처별로 이전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관 주재로 2011년 5월 25일, 2012년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준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 행안부 담당자와 2012년 이전대상 부처에서 참석하였다.
이날 논의를 통해 행안부가 이전대상 부처와 협의 · 조정을 통해 2011년 6월 말까지 이전일정을 구체화하는 이전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키로 했으며, 2012년 이전대상 부처의 이전 소요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사물량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예비비로 충당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 세종시 이전 기본계획 수립 행안부는 2012년 이전대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부처별 구체적 이전시기를 포함한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이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2011년 9월 행안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전시기와 관련한 국회 및 지역여론의 지나친 관심을 감안해 발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일정 확정 · 공개 2011년 11월 18일 제2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행안부 차관은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보고했고, 그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에 공개되었다. 당초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원칙하에 국무총리실은 2012년 9월 중순, 기재부 등 5개 부처의 경우 2012년 11월 말부터 2~3주에 걸쳐 이전키로 했다.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일정 확정 · 공개에 따라 국무총리실 이전시기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았고, 행안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이전 기본계획」 부처 송부 등 이전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1단계 중앙부처 이전계획 추진 1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총리실 등 7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9월 14일~12월 30일에 총 324억원의 예산으로 총 5,556명이 이전했다. 기관별 이전일정을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은 2012년 9월 14일~9월 16일에 새만금기획단, 세종시지원단 등 6개 부서가 1차로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서는 12월 31일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2012년 11월 26일~12월 30일에 부처별로 2~3주에 걸쳐 이전했고, 세종시 현지에서 임차청사를 사용하던 행복도시건설청은 2012년 12월 10~16일에 정부세종청사 입주를 완료했다.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1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종시 4-1생활권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은 자체 청사 건설 후 입주를, 임차청사를 활용 중인 12개 연구기관은 세종시 내 공동임차청사로의 입주를 추진 중이다. 2012년 2월 21일 개최된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자체청사를 건립해 이전하는 4개 기관은 2013년 말까지, 임차청사로 이전하는 12개 기관은 2014년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다.

3) 공무원 이 · 정주 지원

가. 세종시 이전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세종시 이주가 현실화되고, 이전지원 관련업무가 다수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지속적인 협의 · 조정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실 · 국장이 참가하는 「세종시 이전지원협의회」와 세종시지원단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 · 과장이 참여하는 「세종시 이전지원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세제 · 융자 지원, 정주환경 조성, 연구기관 이전 등 지원 필요사항을 협의 · 조정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세종시지원단장 주재로 2012년 이전부처 운영과장 등으로 구성된 「이전현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12년 말 현재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나. 이주자 지원방안 마련

① 주택관련 지원 대책

● **특별공급 비율 상향 및 절차 개선 노력** 이주공무원의 안정적 주택마련을 위해 행복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공무원을 위한 특별분양은 세종시의 첫 번째 공급주택인 첫마을 1단계 분양주택(2010.10.29 모집공고)은 50%, 첫마을 2단계 분양주택(2011.5.20 모집공고)은 60%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첫마을 특별공급 결과, 주택에 대한 관심저하 등으로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특별분양률이 저조했으며, 특히 이전 초기(2012년) 공무원의 주택수급 불일치 문제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전시기별 주택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별분양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별분양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2011년 9월 29일 세종시지원단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 건설청 · LH공사 · 금융결제원 · 한국주택협회 실무책임자가 모여 주택공급 관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검토회의 결과, 특별분양률 제고를 위해 특별분양 신청미달 물량에 대하여 1회에 걸쳐 추가 분양신청하며, 초기 이전 공무원 등의 주택분양률 상향을 위해 2011년 10월 공급되는 첫마을 1 · 2단계 임대주택은 2012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동 검토회의 이후 2011년 10월부터 대우건설 · 극동(웅진)건설 · 포스코건설 · 한신공영 등 민간건설업체 주택과 첫마을 1 · 2단계 임대주택의 공급이 진행되었다. 개선된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청약을 실시해 특별분양률에 있어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2011년 세종시 공급주택 특별분양률 비교 】

구분		특별공급		분양완료	
		세대수	비율(%)	1차	2차까지
제도개선 이전	첫마을 1단계(분양)	791	50	473 (60%)	–
	첫마을 2단계(분양)	2,146	60	1,372 (64%)	–
제도개선 이후	대우건설	1,814	70	1,206 (66%)	1,505 (83%)
	극동(웅진)건설	512		436 (85%)	497 (97%)
	포스코건설	1,137		1,137(100%)	1,137 (100%)
	한신공영	487		438 (90%)	469 (96%)

● **2012년 이주공무원 주거안정대책 마련 추진** 2012년 이주공무원의 경우 주택(첫마을) 확보실적이 저조해서 첫마을 입주(2012.6) 후 1년여 동안 예정지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초기 이주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연금공단, 건설청,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세종시 인근지역 공무원 임대주택(227호 567인) 확보, 첫마을 및 세종시 인근지역 전 · 월세 물량(4,816호) 정보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방안 마련을 위해 2012년 5월 9일 세종시지원단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 건설청 · LH공사 · 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검토회의와 2012년 6월 8일 국무총리실 · 건설청 · LH공사 · 연금공단 관계자 간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첫마을 미분양 임대주택 211호 중 130호(방 개수 365실)를 2년간 한시적으로 이주공무원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각종 주거안정대책을 수립 · 시행함에 따라 초기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 **임대주택 공급** LH공사 및 민간업체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종시 내에 임대주택 1,661세대(원룸 384세대)를 건립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2011년 10월에 1단계 주택건설에 착공했다.

단계별	공 급 량
합 계	1,661세대(원룸 : 384세대)
1단계(2011.10~2013.12)	632세대 : 28평 318세대, 25평 138세대, 14평(원룸) 176세대
2단계 (2012.4~2014.6)	600세대 : 26평 84세대, 20평 308세대, 16평(원룸) 208세대
	429세대 : 35평 277세대, 31평 152세대

● **독신주택 확보** 부처 이전 초기에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 기존 주택 처리 등의 문제로 독신으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세종시 인근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 238세대와 LH공사의 미분양 임대아파트 130세대를 확보하여 부처별로 독신자 주택을 배정했다.

● **취득세 감면** 세종시에서 구입하는 1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소속기관 포함)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등이며, 감면내용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00%, 85㎡를 초과하고 102㎡ 이하인 경우에는 75%, 102㎡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경우에는 62.5%가 감면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세종시 내 주택 구입으로 2주택이 될 때, 종전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

● **연금대출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퇴직금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보증증권을 담보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2년도 세종시 이주자에 대한 대출(12월 말 기준)은 1,433명 291억원이며, 12월 현재 이율은 4.85%(3개월 변동금리)이다.

② 이사 및 정착 지원 대책

● **이사비용 지원 확대** 세종시 이전은 국가적 이주정책에 따른 것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생활기반을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사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2012년 1월 6일에 개정했다.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내용 】

구분	현 행	개 정
이사 화물	① 2.5톤까지 : 실비 전액(100%) ② 2.5톤 초과~5톤 : 실비의 80% ＊사다리차 이용료 제외	① 5톤까지 : 실비 전액(100%) ② 5톤 초과~7.5톤 : ① + 초과구간 실비의 50%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 **이전지원비 지급 추진**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의 문제로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정책에 부응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주지원비 지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3년 정부예산에 2012년 이전부처(6개) 공무원에 대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금액 117억원이 최종 반영되었다.

【 2013년도 이전지원비 지급기관 및 소요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소요	인 원		
		계	공무원	비공무원
소 계	11,712	4,880	4,647	233
총리실	1,166	486	438	48
기재부	2,659	1,108	1,009	99
공정위	1,022	426	391	35
국토부	3,691	1,538	1,537	1
환경부	1,394	581	541	40
농식품부	1,778	741	731	10

● **인사교류 지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주희망 부부 · 맞벌이공무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지원계획 안내(2011.6.3)' 문서를 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에 시행하여 세종시 이주공무원 배우자의 인사교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gojobs.mopas.go.kr)에 세종시 인사교류 전용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 **출퇴근 등을 위한 버스 운행** 이전 초기에 수도권 출퇴근 수요가 많아 수도권 출퇴근 버스, 기차역(KTX) 연계버스를 운영하며, 첫마을, 조치원, 대전, 오송, 공주 등지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관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국무총리실(1차 이전부서)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통근버스를 부분적으로 운영했고, 12월부터는 6개 부처 단계적 이전에 따라 수도권 주중 통근버스와 인근지역 통근버스를 대폭 확대하여 운행하고 있다.

③ 교육 · 보육 · 보건 등 정주환경 조성

● **세종시 학교 개교** 2012년도에 첫마을 6개 학교를 개교했으며, 2013년도 7개교, 2014년도 15개교를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2012년 3월 개교한 4개 학교(유치1, 초1, 중1, 고1)와 9월 2개교(유치1, 초1)에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96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세종시 학교 설립 현황 및 계획 】

연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 치
2012	6개교(운영 중)	2	2	1	1	첫마을(2-3)
2013	7개교	2	2	1	2(국제고1)	1-2,1-4,1-5
2014	15개교	6	5	3	1	1-2,1-4,1-5, 첫마을(2-3)
계	28개교	10	9	5	4	

2012년 3월과 9월에 개교한 첫마을 6개교는 이전공무원 배우자를 교원으로 우선 선발하여 이주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했다. 3월 4개교의 교원 충원을 위해 42명(유치2, 초등19, 중19, 영양2)의 이전공무원 배우자를 2012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했으며, 9월 2개교의 교원 충원을 위해 28명(유치1, 초등22, 중고5)의 공무원 배우자를 2012년 8월 17일자로 인사 발령했다.

● **보육시설 확충** 첫마을 민간 · 가정어린이집 28개소가 개원했으며, 첫마을 인근 근린공원에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와 이주공무원 자녀를 위한 청사어린이집 2개소를 2012년 11월과 12월에 각각 개원했다.

● **첫마을 보건지소 개소** 2011년 11월 26일 첫마을 보건지소를 개소했다.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3명, 간호사 · 치위생사 등 3명이 배치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에 따라 약국, 병원 등 5개소가 입점하여 운영 중이다.

④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이주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수조사(2011.1, 2012.3)를 실시해 주택 · 교통 ·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주지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이전 후 기존청사 활용대책 및 행정효율화 방안 마련 · 추진

가. 중앙 · 과천청사 활용방안 마련

2010년 8월 고시한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총 36개 기관이다. 그중 중앙청사 소재기관은 4개, 과천청사 소재기관은 6개이며, 나머지 26개 기관은 자체 또는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이후 이들 기관이 사용하던 중앙 · 과천청사 등의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과천청사의 경우 지역주민 ·

정치인을 중심으로 쟁점화되고 있어 조속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기획재정부 등 과천청사 입주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과천지역에서는 경기도·과천시·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천지역의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한 과천지원 특별법안 발의(2009.4.21),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구상안 발표(2010.8.10), 시민궐기대회 개최(2011.3.28), 국무총리공관 앞 1인 시위(2011.5.2~30) 등 과천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등 새로운 지역갈등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과천지역의 이와 같은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국무총리실에 '과천청사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등 대책협의회(이하 '과천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방안 등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제1차 '과천대책협의회'는 2010년 10월 15일에 개최되었는데, '경기도·과천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 의견교환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①과천시 공동화 문제와 관련한 대책방안은 청사이전 계획이 구체화된 후 논의키로 했으며 ②미이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과천청사에 입주시키는 방안 등 과천청사 이전·활용계획을 행정안전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구체화한 후 차기 과천대책협회의회에서 보고하기로 했으며 ③과천시가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청사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과천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나 필요시 관계부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1월 24일, 과천청사 관련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활용하되 입주기관은 상징성이 있는 중앙부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청사 앞 유휴지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여 공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역 등을 통해 유휴지 가치제고 활용방안 등을 구상·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5월 17일과 2011년 6월 9일에 제2차와 제3차 과천대책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과천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과천시와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과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청사 앞 유휴지는 행안부·기재부·경기도·과천시 등이 참여하는 TF구성 및 용역추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도시로서 과천시의 정체성 등을 감안해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는 정부안이 가시화되었다. 다만 과천시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과천시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과천청사 앞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과천시가 협의·조정해나가기로 했다.

2011년 7월 18일 주례보고를 통해 '과천청사 활용대책(안)'에 대한 정부입장에 대한 방침을 받았다. 과천청사는 과천시의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임차청사 해소 등을 위하여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되, 세종시 이전시기 확정 등에 맞추어 중앙·과천청사의 입주기관도 조기에 확정·발표(7월 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기관 중 기존청사 입주부처는 그대로 존치하되, 과천청사는 유관 장관급 위원회 및 특별행정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주례보고 내용의 주요 골자였다. 아울러 중앙청사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여가부 및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의 법정위원회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제29회 차관회의(2011.7.21)와 국무회의(2011.7.26)에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과천청사 기관 배치방안'을 보고했고, 정부는 중앙·과천청사 활용방안 및 입주대상기관을 구체화한 후 2011년 7월 26일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공표 및 과천청사 지원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부는 과천청사 활용방안의 발표 이후 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재배치 세부방안을 마련했는데, 행정안전부의 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재배치 방안(2011.11)에 따르면, 과천청사는 정부청사로서의 상징성 제고 등을 위해 청사의 개별 동에 장·차관급 기관을 분산·배치하고, 민원기관과 비민원기관을 분리·배치하되 업무특성이 유사한 기관은 인근에 배치하도록 했다.

입주일정은 중앙청사의 경우 10개 기관이 2013~2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과천청사의 경우 12개 기관이 2013~2014년에 단계적으로 기관별 이전하되, 규모가 큰 방위사업청은 2년에 걸쳐 분할 입주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정부의 중앙·과천청사 활용방안 발표 이후 과천시는 청사이전 후 도심공동화 및 지역경제의 위축을 우려해 기관별 입주일정을 알려줄 것과 청사이전 후 새로운 부처의 입주까지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과천청사의 공실기간 최소화를 위해 입주상태에서 부분공사 및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2012.12), 2013년 3월부터 당초 계획대로 예정된 기관들이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 행정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기관 간 출장이 증가하고, 의사결정 처리절차가 지연되는 등 많은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세종시지원단에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행정효율성 확보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2011년 6월,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IT기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구현을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제2회 세종시지원위원회(2012.2.21)에 '행정효율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범정부적으로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5대 분야 8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출장을 최소화하는 원격행정 구현을 위해 ①원격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②디지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출장·이동 중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행정구현을 위해 ①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②모바일 업무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대국민 서비스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넷째, 일하는 방식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①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며 ②세종시 이전공무원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다섯째, 행정효율화 수준을 진단하여 정부의 업무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조·노력하여 2012년 8월과 9월에 국무총리실장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잦은 원거리 출장,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지연 우려 등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그동안 대면으로 개최해오던 국무총리실장 주재 확대간부회의(국장급 이상 참석)를 9월 12일 처음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한 영상회의시스템은 종전의 대규모 전용 영상회의장을 활용한 방식이 아니라, 행정내부망에 연결된 업무용 PC에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간이 영상회의 방식으로써, 보안성이 확보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보고와 토론형식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 간 의사소통에 큰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되어 영상회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12년 11월 9일 제5차 세종시지원위원회 및 11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공동안건으로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범정부 행정효율화 및 행정불편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5)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가. 수립 배경

「세종시특별법」제8조제1항제1에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 제1차 세종시지원위원회(2011.3.31)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연구' 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세종시지원단에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연구' 를 착수하게 되었다.

나. 수립 과정

제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에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8일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수행연구기관으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국토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12개월의 과업수행기간 동안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을 진행했다.

① 전문가 자문회의(2011.8.30, 2012.2.22, 3.23)

연구성과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참석대상 전문가는 논의주제를 고려해 연구진이 선정했다.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2011년 8월 30일 국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영태 교수(경희대학교 건축학과) 및 황희연 교수(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등 6인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세종시 미래상, 자족성 확보방안, 타 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2년 초부터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의 세부전략수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듣기 위해 2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3월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이우종 교수(가천대 도시계획학과), 백기영 교수(영동대 도시행정학과) 등 4인의 자문위원과 행정안전부 세종시출범준비단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여 세종시 편입지역 및 주변도시와 연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②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토론회(2011.10.26, 2012.4.23, 6.7)

그동안 연구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정책현장방문'(2011.10.25~26) 기간 중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점검 및 민간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1년 10월 26일 제주샤인빌리조트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천세영 교수(충남대 교육학과) 등 민간위원 7인과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도시 성장동력 확충, 지역 간 상생발전, 교육 및 행정자치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성과(초안)에 대한 민간의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년 4월 23일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2차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 민간위원은 제1차 토론회와 동일하며, 세종시지원단 지원단장, 총괄기획관 등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진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전방안의 구성체계와 관련, 제시된 방안들의 우선순위와 실천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성, 현실적 제약 여건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관련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보완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성과를 민간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이준승 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황철주 위원(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을 포함한 총 9인의 민간위원과 세종시지원단 및 발전방안 연구진이 참석했다.

③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자문 추진(2011.11~2012.1)

2011년 10월 26일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토론회에서 지적된 민간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 활용 필요성에 따라 세종시지원단에서는 민간위원별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각 민간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별 자문과제를 확정해 11월 16일부터 1개월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2012년 1월 30일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민간위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별로 검토내용을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에 검토 반영해서 연구성과의 내실을 제고했다.

④ 세종시지원위원회 중간보고(2011.11.18)

2011년 11월 18일 제2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국무총리에게 본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가 국무총리와 위원들에게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에 대한 연구 개요, 연구 기본방향, 미래상 및 목표와 추진과제, 단계별 발전계획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회의에서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검토의 필요성, 세종시 행정기능 특성화의 필요성,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원기능을 세종시에 적극 유치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⑤ 관계부처 협의(2011.5.) 및 공청회(2012.5.29)

실무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용역 성과(초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14~2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제시된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 · 반영하여 보완한 후, 지역주민 및 관련 지자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2년 5월 29일 오후 3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⑥ 발전방안의 확정 및 이행 점검관리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안)을 2012년 6월 25일 제4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날 세종시지원위원회는 본 발전방안(안)을 의결 · 확정했다.

아울러 세종시지원단에서는 수립된 발전방안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한 소관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 보완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 ·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기관별 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 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2010. 8.20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
2010. 9.10	■ 과천 지원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	국무차장 주재
2010.10.15	■ 제1차 과천청사대책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0.11.16	■ 제1차 이전지원협의회 개최	국무차장 주재
2010.12.10	■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국무차장 주재
2011. 1.24	■ 과천대책 주요부처 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1. 3.16	■ 세종시 지원위원회 · 지원단 구성 국무총리 방침	
2011. 3.28	■ 과천대책 주요부처 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1. 3.31	■ 제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2011. 4.19	■ 제2차 이전지원협의회 개최	국무차장 주재
2011. 5.17	■ 제2차 과천청사대책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1. 5.28	■ 과천대책 주요부처 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1. 6. 9	■ 제3차 과천대책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1. 6.29	■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	국무총리
2011. 7. 5	■ 과천대책 주요부처 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1. 7. 8	■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1. 8.24	■ 제3차 세종시 이전지원협의회	국무차장 주재
2011.11.14	■ 관계차관 간담회(법안쟁점, 이주지원 관련)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1.11.18	■ 제2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2012. 1.30	■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정책간담회	국무총리실장 주재
2012. 2.21	■ 제3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2012. 4.24	■ 제2차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토론회	국무차장 주재
2012. 5.21	■ 2012년 세종시 이전부처 실장급 공무원 간담회	국무차장 주재
2012. 6.25	■ 제4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2012. 8.24	■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편입지역 현장방문	
2012. 9.24	■ 세종시 현장 방문	국무총리
2012.10.16	■ 제10차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개최	국무차장 주재
2012.11. 9	■ 제5차 세종시지원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2012.11.21	■ 제11차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개최	국무차장 주재
2012.12.26	■ 제12차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개최	국무차장 주재
2012.12.27	■ 정부세종청사 개청식	국무총리 참석

제6절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진

1. 주한미군기지 이전 개요

1) 이전사업의 배경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경기도 평택 등으로 이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반환 미군기지의 효율적인 지자체 활용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기지이전을 통해 미래 한 · 미 동맹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1988년부터 서울 중심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2003년 한미 정상 간 서울 용산기지의 조기 이전 합의라는 결실을 이끌어내면서 본격적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국책사업이자 국제적인 대형 사업은 협정서 국회비준 후 초기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갈등해결 및 부지조성, 사업기간 및 구체적인 이전비용 산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으나, 2012년 9월 현재 건설발주 및 착공 등 절차에 의거, 한미가 합의한 기간 내 이전사업 완료 목표를 향해 정상추진 중이다.

- 2003.5 : 한 · 미 정상 간 용산기지 조기 이전 합의(노무현 전 대통령)
- 2004.12 : 용산기지이전협정(UA), 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및 「평택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2006.7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
- 2007.11.13 :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기공식(대추리)
- 2007.12 : 주택공사의 기지이전사업 참여 (기부 대 양여) 결정
- 2008.1.6 : 시설종합계획(MP) SOFA 합동위 승인
- 2008.9 : 국무총리실 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정책협의회' 구성
- 2009.3 : Parcel-2B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업체(대우/GS건설) 선정
- 2009.4 : 반환미군기지(16개) 환경오염정화사업 착공
- 2012.6 : 평택지역 기지이전 건설공사 정상추진 중 (전체 진도 31%)
  - 기지 내 부지조성/기반시설공사 : 2014년 완료 예정
  - 초 · 고교 신축공사 : 2013년 완료 예정
  - 외부기반시설(도로, 철도, 전기 등 인입) : 2014년 미(未)완료 예정
  - 평택주민 지원사업 추진 : 2016년 완료 예정

2) 관련 법령

2004년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이전(YRP) 합의서(UA : Umbrella Agreement)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미2사단 등을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합의서가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아울러 동 시기에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2007년 7월 제정되었고,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존 공여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도 2006년 3월 제정되었다. 이로써 반환기지가 소재한 전국 44개 시 · 군 · 구에 대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3) 사업내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미간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하에 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로 한국측이 먼저 이전을 요구한 인천의 캠프 마켓 등 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의 기지(8개)와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9개) 등 17개 기지는 한국 측이, 경기북부 일원의 미2사단 등 23개 기지는 미국 측이 각각 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향후 평택기지에는 4만4,0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 군속들이 생활할 수 있는 510여 동의 건물과 부속시설들이 건설되는데 이 비용은 한미 양국이 각각 분담하여 건설하도록 합의했다.

1953년 10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되기 시작한 부지는 기존 2억4,198만㎡였다. 그러나 YRP/LPP협정에 의거한 미군부대 통폐합 및 신규공여를 포함, 미군기지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약 7,666만㎡로 기존 공여면적 대비 약 3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기존 공여	반 환	신규 공여	계속 유지
2억4,198만㎡(7,319만평)	1억7,794만㎡(5,382만평)	1,263만㎡(382만평)	7,666만㎡(2,319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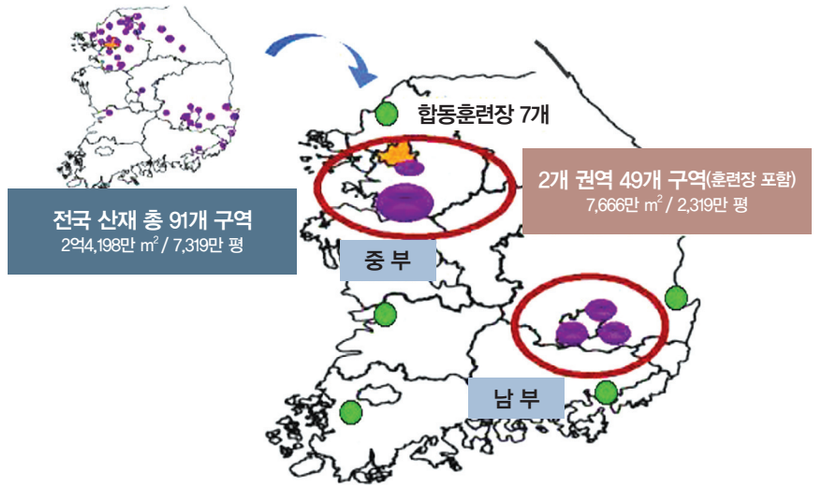

4) 사업목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지인 한반도 방호를 위해 군사 · 외교적으로 다각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008년 1월에 확장된 공여지를 포함한 평택 험프리기지 시설종합계획(MP : Master Plan)을 SOFA 합동위가 승인했으며, 2010년 양국 국방장관 간(SCM) 「전략동맹(SA : Strategic Alliance) 2015」를 통해 '2015년까지 기지건설 완료, 2016년까지 부대이전 완료' 를 합의(10.8)하여 지속 추진 중이다.

5) 조직과 인력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계획, 집행 및 법률 검토 지원 등을 효율적 ·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이전사업단')이다. 이전사업단은 사업단장 예하에 총 98명의 인원이 기획지원부(4개팀), 사업관리부(5개팀) 등 2개 부와 법무실로 각각 구성되며, 기획지원부는 사업의 지원분야인 재원확보, 사업집행의 예 · 결산 업무, 인사 · 군수지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관리부는 평택현장의 YRP(Yongsan Relocation Plan) 사업 전반과 한국 측 부담 LPP(Land Partnership Plan)사업,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평택시 지원사업 등을 담당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4개 팀 18명)(이하 '이전지원단')을 두어 국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지원단은 정부 내 이전사업관련 정책적 사항을 포함하여 재원확보, 법 및 제도 개선, 부처 간 이견 조정, 사회 갈등의 분석 · 관리 · 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 상정, 자체 「주한미군기지이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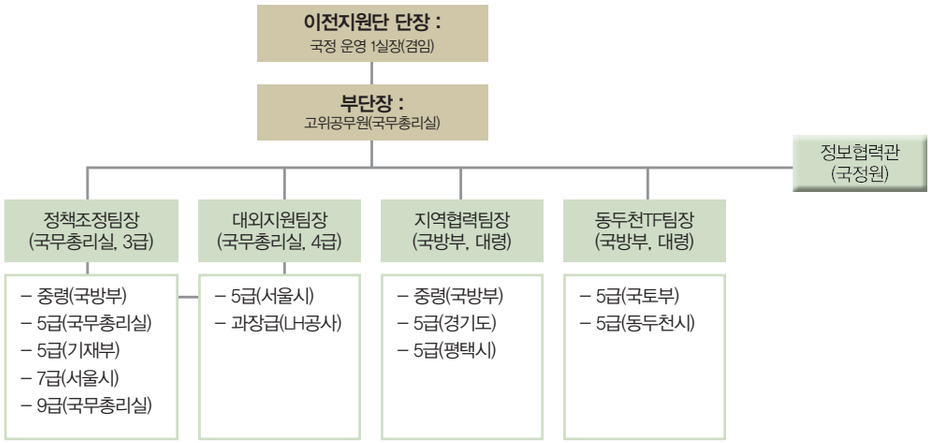

이전지원단은 이전사업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조직을 구성했다. 또한 각종 민원을 포함한 갈등관리 및 현안업무에 대한 운영 및 조정을 위한 회의 및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가. 정책협의회

「국무총리훈령」(2008.9.2 제정)에 근거하여 이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사업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 조정 및 갈등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가 간 협상문제 또는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관련 정책, 재원확보, 법령 및 제도, 부처 간 이견, 사회적 갈등분석 및 관리, 사회적 쟁점의 홍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이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환경부 · 국토해양부 ·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및 서울시 · 경기도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평택시 부시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중요 안건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및 결정에 따른 협의 조정도 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기지이전사업을 집행하는 국방부 및 관련 지자체의 다양한 요구를 협의 조정한 바 있으며, 그 실적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구 분	주요 내용
2008.10.16(1차)	① LPP 매입부지 선(先)협의주민 상업용지 공급 방안 * 2004년 11월 이전 토지매수 미(未)협의자(62명)는 차액보전특약을 적용한 반면, 선(先)협의자(79명)는 적용을 제외하여 보상방안 강구 필요 ② 평택역~평택항 철도 조기건설 추진 방안 * 미군 부대이전 선결조건으로 2014년 말까지 철도건설 필요 ③ 평택기지 입구~추팔 변전소 간 전기 인입 방안 * 추팔변전소–미군기지 입구 전기 인입 조기착공 요구(지식경제부)
2008.12.4(2차)	①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기준 설정 * 지자체 활용계획기준(가급) 정화 대 「토양환경보전법」상 지목기준 (가, 나급) 정화주장(국방부) 간 갈등 ② 마을회관 · 창고 건립비용 확보 방안 * 평택시 공동창고 등 건립비용(24억원) 국방부 부담 요구 ③ 평택기지 입구~추팔변전소 간 전기 인입 조율
2009.4.17(3차)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② 평택현장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주한미군 이전관련 쟁점대응 매뉴얼 보고
2009.8.17(4차)	① 미주동공병단(FED)부지 관리와 관련 제반사항 토의 * 기지이전 중요재원인 미FED부지의 교과부(서울대) 등기명의 경정 신청으로 부처 갈등이 법정분쟁으로 비화

구 분	주요 내용
2010.7.14(5차)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 재원확보 대책 협의
2011.2.17(6차)	① 통합주택계획(IHP) '현물출자' 방안에 대한 LH의 참여 관련, 법적 타당성 및 LH공사의 수용방안 조정 – 법률(「국유재산법」, 「LH공사법」)적 타당성 및 합의문(초안) 검토
2011.11.17(7차)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 1단계 사업 시행 '협약서' 개정관련 이견 조정

나. 현안점검 회의

이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정,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되는 회의로, 이전지원단 부단장 주재하에 현안 관련한 관계부처의 과장급 및 실무자가 참석한다. 2012년 9월 현재까지 평택현장 등을 포함해서 60회 실시했다.

【 현안 점검회의 개최 】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횟 수	60	3	19	10	21	7	소집 및 현장점검

다. 평택현장 TF회의

평택현장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 예방 및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서 국무총리실(이전지원단 지역협력팀)이 주관하고 국방부, 평택시, 국정원, 경찰이 참석하며, 필요 시 관련업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6) 재원 조성과정에서의 성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조달은 반환부지 매각대금에 의한 사업비 확보 원칙(「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04.12)에 근거하고 있다.

【「평택시지원 특별법」 제9조 :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의 설치 】

세 입	세 출
①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대금 ②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차입금 ⑤ 기타 수입금	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 및 건설비 등 경비 ② 예수금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③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④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⑤ 회계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각 시설의 실시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추산되는 기지이전사업 총사업비는 직접건설비 약 5조원과 평택시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지원하는 평택시지원비 등의 사업지원비 약 3조8,000억원 규모이다.

이 중 평택 미군기지의 선(先)건설을 위한 건설공사는 2007년부터 LH공사와 3조4,000억원 규모로 기부 대 양여방식 협약(1단계)으로 추진 중이고, 그 외 사업은 국방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부지매각대금을 포함한 국가재정예산(2단계)을 투입, 추진하고 있다. 이전사업(YRP) 예산은 평택미군기지의 건설에 따른 선(先)예산소요와 기지이전 후(後)매각에 따라 세입되는 세입예산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방부가 주관하는 재정사업에서 자체 세입인 부지매각대금 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정부재원 차입편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전사업은 매년 적정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이를 이자와 함께 일정금액을 상환해나가는 재무적 특징을 갖고 있다.

【 기지이전사업 재원확보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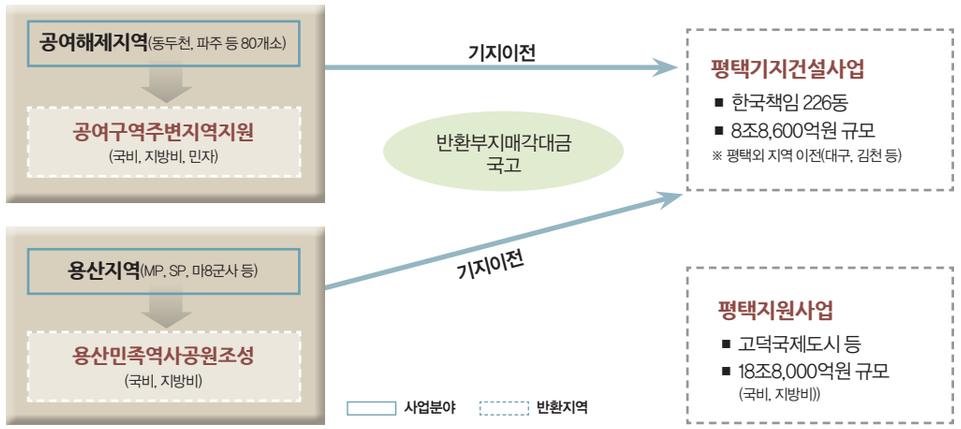

현재의 한미연합사 용산부지가 2005년「용산공원 특별법」제정에 따라 국가공원화가 추진되면서 이전사업의 반환기지 매각계획은 충분한 이전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이전지원단 주관하에 조치되어온 주요 현안으로는 미극동공병단(FED) 부지 관리전환, 파주 캠프 에드워드 부지 매각관련 이대 · 파주시 간 갈등, 미대사관부지의 매각대금 확보 등이 있다.

가. 미극동공병단(FED) 부지 관리전환

미극동공병단(FED) 부지는 기지 이전사업의 주요재원 중 하나였는데, 교과부(서울대)가 등기변경된 부지에 대한 등기의 경정신청(2009.6)을 함으로써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결국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2009년 9월 자체「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 FED 부지에 대한 관리청을 국방부로 관리전환하도록 결정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 미극동공병단(FED) 부지현황 】

소재지	면적	매각예정가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4만2,856㎡(1만2,964평)	7,414억원(2011년 감정가)	2015년 반환 예정

【미극동공병단(FED) 관리전환 추진경과】

- 1951. 6 : 구(舊)서울사대 부속국민학교 부지(을지로 소재 4만2,614.8㎡) 일부를 징발
  * 현(現) 동숭동 서울사대 부설초등학교 부지(3만1,970.8㎡)는 FED부지 대체부지로 당시 공업진흥청에서 문교부로 관리환(1980)된 것임
- 2007. 3 ~ : 국방부는 「SOFA관리처분법」 및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FED부지에 대한 관계부처에 관리환 추진
- 2007.12.28 : 국방부의 법제처 정부유권해석
  – FED부지는 국방부에 관리환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
- 2008.5 : 교과부만 미극동공병단(FED) 부지 등 관리환 거부, 총괄청 (기획재정부)에 관리환 재정 요청
  * 교과부(서울대) : 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 등 연구캠퍼스 부족시설 확충 계획
- 2009.5.25 : 국방부의 관리환 재정 신청에 대한 총괄청(재정부)의 공문 회신
  – SOFA 관리처분법에 의거 국방부에 관리환 된 재산으로 재정대상이 아님
- 2009.5.28 : 법제처 유권해석 및 재정부 회신공문을 근거로 관할등기소에 관리청 변경 등기완료
- 2009.6.16 : 교과부(서울대)는 관할법원에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서 제출
  – 법원 판단에 따라 관리청 결정
- 2009.8 :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차관 조정회의 개최(8.27)
  –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동 부지가 국방부 재산임을 확인하는 재정서를 발급
- 2009.9 : 기재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 개최, 국방부로 관리청 결정 및 재정서 발급(9.9) 및 국방부 등기 완료(9.10)

나. 파주 캠프 에드워드 부지 매각관련 갈등

파주시가 이화여대와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 이화여대의 '신규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2006.10)함에 따라, 국방부와 이화여대는 기지매각에 관해 협의(2010~2011)해왔다. 그러나 2011년 8월, 이화여대 측의 사업포기로 지자체 반환부지 개발계획의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매각 대상 중 일부 건물/연병장 부지의 토지보상가격에 대해 국방부는 현 용도(잡종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화여대는 지적도에 임야로 명시된 부분은 임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무총리실, 경기도 등이 대학유치 지원을 하면서 수차례 조정 및 협의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자체 내부사정(총장 교체 이후 학교이전 반대 분위기 대두, 반값등록금 관련 사회적 논란 등)으로 인해 파주 캠퍼스 조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한 후 언론에 발표하고 포기서를 파주시에 제출(2011.8.19)함으로써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화여대 측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에 대한 성토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화여대의 파주 캠퍼스 이전계획 포기는 경기지역 반환 미군기지로 캠퍼스 이전을 구상하고 추진해온 많은 대학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가로 부지매수를 희망하는 대학과 이전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한 국방부 간 하나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 이화여대 간 매각추진 협상 경과〉

- 2006.10.11 : 이화여대 제2캠퍼스 유치 양해각서 체결(경기도 · 파주시 · 이대)
- 2007.5.7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2008.1.14 :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확정
- 2008.3.25 : 파주시, 사업승인고시(사업시행자 이화여대, 85만㎡)
- 2008.5~2010.7 : 오염정화사업 추진(한국농어촌공사)
- 2010.3.26 : '캠프 에드워드' 매수협의 요청(이대 → 국방부)
  * 국방부 1,750억원, 이화여대 652억원
- 2010.5.31 : 사업계획변경(축소) 승인 신청(이화여대 → 파주시)
- 2010.8.13 : 사업계획변경(축소) 승인(파주시 → 이화여대) (당초 85만181㎡ ⇒ 변경 29만9,418㎡)
- 2011.4.8 : 국방부 2011년 재산가감정평가(캠프 에드워드 1,114억원)
  * 이대 감정평가액(652억원)과의 차액(462억원)은 경기도 · 파주시에서 보전하는 방안 협의
- 2011.8.19 : 이화여대 대학유치 포기서 파주시에 제출

다. 미대사관부지의 매각대금 확보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는 현 세종로 미대사관을 용산공원 내 캠프 코이너 부지로 이전키로 2005년 7월 합의(한국 외교부-미국 국무부 양해각서 체결)했고, 국방부는 미대사관 이전부지인 캠프 코이너 부지를 무상 제공키로 2010년 11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로 정책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소요재원 확보차원에서 현 세종로 미대사관 부지를 외교부에서 국방부로 관리전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부처 조정 의견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있다.

부처 의견을 종합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2010.11.14)에서는 국방부가 캠프 코이너 부지를 공여상태에서 문화재청에 관리전환하되, 미군기지 이전재원 부족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미대사관부지에 대한 부처별 입장 】

구 분	입 장
문화관광부	동 부지를 현대사 제2역사박물관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대통령께 보고(2010년 상반기)
지식경제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비전을 보여주는 '미래산업관'으로 활용방안 제시(2010년 하반기), 무상관리 전환요청(2011.4)
외교통상부	동 부지를 외교부 제2청사로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동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2010.11), 관리전환시기는 추후 이전(2015) 시 논의
국방부	어떤 형태로든 동 부지 활용으로 미군기지 이전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2. 평택기지 조성 경과 및 성과

1) 기지 조성 규모

2008년 한미는 기존의 YRP 협정 및 LPP개정 협정서를 근거로 평택기지 건설사업의 기초가 되는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에 대해 합의했다. 기존 평택 험프리 기지를 확장한 1,465만㎡ 부지에 한미 간 비용분담으로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일원의 미2사단 등의 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소요시설을 건설하고 인원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소요되는 인원은 미 2사단 장병들을 포함하여 한미 측 인원 4만4,370명이며, 소요건물은 군 지휘시설, 전투지원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 총 513동(한 측 226동, 미 측 287동)으로 각각 비용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 평택 험프리기지 시설종합계획 】

2) 기지조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평택 미군기지 조성사업은 첫째, 전국에 산재되었던 미군기지와 다수의 미군전용 훈련장 등 총 1억7,791만7,355㎡의 국토를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아 지자체가 개발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미군기지 반환 후 서울 용산의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민족공원을 조성하여 동북아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셋째, 기지이전을 위한 건설사업은 약 1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 · 건축 · 토목 · 전기 · 통신 · 설비 등 건설 및 내수산업 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평택 지역에는 연간 2,700억여 원의 생산유발 및 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주한미군기지 공여 반환지역과 주변지역 개발

1) 용산기지 반환지역 개발 비전 및 그간의 성과

가. 사업추진 경위

20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조기이전이 합의되고 2004년 7월 한미간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타결되어 그동안 주한미군기지로 공여됐던 약 390만㎡를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고, 2005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환부지 중 용산미군기지는 역사성 ·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2007년 7월「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어 용산공원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으며, 본격적인 반환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 용산공원 정비구역 범위

2016년경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대상지 기초조사(2008.6~2009.8)와 국방부 · 서울시 등 관계부처 협의(2009.8~2011.1), 공청회(2011.2.10),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심의(2011.3.29~4.29)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5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산공원조성지구(약 243만㎡, 73만5,000평)

공원조성지구는 용산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265만4,000㎡) 중 한미협정에 의해 존치되는 미대사관, 헬기장 및 드래곤힐 호텔 등 약 22만㎡를 제외한 본체 부지에 지정되며, 면적은 2.4㎢로 여의도 크기(2.9㎢, 윤중로 둑 안쪽 신시가지 면적 기준)와 비슷하다. 동 지구는 120여 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지였다는 용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가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② 복합시설조성지구(약 18만㎡, 5만4,000평)

본체 부지 주변에 위치한 산재 부지(캠프킴 · 유엔사 · 수송부)는 도시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했으며, 향후 상업 · 업무 · 주거 · 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③ 공원주변지역(약 895만㎡, 271만 평)

용산공원조성지구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접하면서 공원조성에 따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빙고아파트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후암동지역 등을 포함한 약 895만㎡의 면적에 지정되었다.

공원주변지역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지정했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용산공원정비구역 계획

다.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구상

첫째, 녹지와 수체계를 복원한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을 복원하고 공원의 녹지가 주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며, 남산에서 발원된 만초천 지류를 복원하고 주요 지점에 친수공간과 저류 및 정화기능을 하는 호 · 내 · 습지를 조성하여 공원의 녹지가 주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둘째, 경관은 숲 · 들 · 호 · 내 · 습지로 이루어진 한국적 대표경관을 바탕으로 국가적 · 지형적 정체성을 재현한다. 아울러 부지 내 표고가 높거나 주변이 열린 곳을 주요 조망점으로 설정하고 시야를 막는 시설물 조성을 제한하여 남산과 한강의 열린 조망을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공간구조와 시설은 용산공원이 지향하는 가치 구현과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6개의 단위공원으로 구분하되 유기적으로 연계 조성토록 했다.

공원의 생태 · 환경성 강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은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 활용하면서 불가피한 신규 건축물은 공원의 이념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용산공원 공간구조 – 6개 단위공원 】

① 생태축공원(Ecological Spine Park) :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 · 보행축
② 문화유산공원(Heritage Garden Park) : 역사적 시설, 복원된 만초천, 정원 · 초지를 바탕으로 한 도시적 문화공간
③ 관문공원(Gate Park) : 용산공원의 얼굴 역할을 하는 상징 공간
④ 세계문화공원(Global Culture Park) : 이태원과 연계, 다양성과 국제성을 구현
⑤ 놀이공원(Play Park) : 자연경관과 기술이 융합된 스포츠 · 레저 · 생태 프로그램 공간
⑥ 생산공원(Productive Park) : 도시농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생산 · 체험활동 공간

넷째, 교통과 동선체계는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및 보행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6개의 주출입구를 설정하고,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으로 순환동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공원경영계획으로는 공원의 자연성 · 생태성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 공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공원문화 구축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 · 운영하며, 개방 전후 단계적 홍보,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라. 공원 외 정비구역 기본구상

공원 외 정비구역으로는 복합시설조성지구와 공원주변지역이 있다. 먼저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용산기지 이전재원(3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신분당선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거점기능이 가능한 복합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캠프킴 · 유엔사 · 수송부의 자연녹지 · 3종일반주거 · 2종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이하)으로 변경하되, 구체적 높이 · 용도는 복합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서울시와 협의 · 결정토록 하는 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로써 한남뉴타운 등 주변 도시계획을 수용하고 공원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용산공원과 주변 시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마. 공원조성 시기 및 재원조달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환경치유 · 조성재원 등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 ·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 조성사업(2017~2019)은 임시 공원을 개장하고 유보지는 자연적인 생태천이를 유도하며, 대상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2단계 조성사업(2020~2023)은 공원 내 녹지축 · 수체계 복원 등 본격적인 공원조성 단계이며, 주변부와 공원 간 연계 확대를 실시한다. 3단계 조성사업(2024~2027)은 6개 단위공원을 모두 조성하여 공원 기본구상안을 실현하고, 공원 내부의 녹지 · 수체계도 완성한다. 즉 남산~용산공원~한강의 광역 녹지축을 완성하여 주변지역 개발 및 연계 마무리다.

총사업비는 기본설계를 통해 산출할 계획이나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서울시도 일부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와 서울시 간 부담비율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바. 그간의 추진성과

정부는 2016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맞추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촬영 등을 통한 기초조사(2008.6~2009.8), 아이디어 공모(2009.6~2010.11)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2009.10~2011.6)을 실시했다.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2010.11~2011.4)와 관계부처 협의(2011.2~9)를 거쳐 먼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 · 고시(2011.5.12)했고, 2011년 10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확정 · 고시했다. 종합기본계획(안) 확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 용산공원 잔류시설의 경계설정 · 국방부 활용

부지 문제 등 현안해결, 평택기지 이전비용(3조4,000억원) 마련을 위한 캠프킴 · 유엔사 · 수송부 부지 복합개발 기본방향 확정 문제로 국토해양부 · 국방부 · 서울시 간 이견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 조정 추진 중이다.

사. 향후 추진계획

2012~2013년에 기본설계를 토대로 한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 확정하고, 2016년까지 실시계획 및 설계를 완료한 후 2017년 단계별 용산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4. 평택기지 주변지역 개발 및 고덕국제도시 개발 지원

1)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

가. 지원근거 및 수립절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규정에 의거 평택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2005.12.8). 확정(18조8,016억원)하여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평택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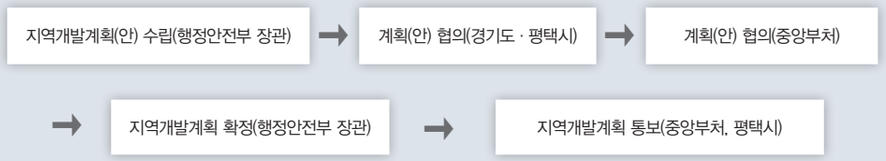

나. 사업개요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평택지역개발사업은 2006~2020년에 18조8,016억원(국비 4조4,000억원, 지방비 7,104억원, 민자 등 13조6,912억원)이 연차별 계획에 의거, 농업 · 관광 · 도시정비 · 교통 등 총 9개 분야 89개 사업(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 일반지원사업)을 교육부 · 행자부 · 국방부 · 농림부 · 국토부 등 16개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한다. 사업별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별지원사업 : 평택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특별히 지원되는 국책사업
– 1조3,082억원(국비 6,694억원, 지방비 775억원, 민자 등 5,613억원)
■ 특별회계사업 : 미군기지 편입 및 주변지역(3㎞)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방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
– 1조1,637억원(국비 1조1,205억원, 민자 432억원)
■ 일반지원사업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국가계획사업 및 자치단체, 공공 · 민자사업을 반영한 사업
– 16조3,297억원(국비 2조6,101억원, 지방 6,329억원, 공공 · 민자 13조867억원)

다. 집행절차 및 투자실적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평택시장이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주체별로 집행하며, 부문별 투자 실적은 아래와 같다.

【 부문별 투자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계	도시정비	교통물류	사회개발	농 업	제조업	관광여가	기 타
계획	건수	87	12	12	12	9	7	7	28
	예산(원)	18조8,016억	10조9,714억	4조7,043억	802억	2,204억	1조6,765억	7,058억	4,430억
실적	건수	71	8	10	10	7	6	5	25
	예산(원)	8조4,803억	4조4,144억	1조9,344억	676억	1,359억	1조5,522억	862억	2,896억
진도(%)		45	40	41	84	62	92	12	65

총사업비 18조8,016억원 중 2012년까지 8조4,803억원(45%)이 투자되어 총 87개 사업 중 2012년 9월까지 27개(31%) 사업완료, 60개(69%)사업은 추진 중이다.

① 특별지원사업 : 지역개발사업의 주된 사업으로 총 1조3,082억원 중 3,414억원(26%)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국제교류센터 및 종합보건복지센터 등 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7%까지 투자되었다. 반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첨단산업단지, 첨단농업단지,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은 여건 변화로 사업 중단 또는 답보 상태다.

② 특별회계사업 : 미군기지 편입 및 기지주변(3km) 지역 주민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국방부 특별회계 사업은 총 1조1,637억원 중 7,016억원(60%)이 투자되었다. 주된 사업인 평택기지원주민(487세대)에 대해 이주단지 4개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186세대) 완료했고, 301세대에 대해서는 고덕국제도시조성사업지에 입주할 계획이다. 2016년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된 소공원, 마을회관, 체육시설, 방음벽 설치 등 기지주변 편익시설사업(13개 분야 1,13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원, 추진되고 있다.

③ 일반지원사업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은 총 71개 사업 16조3,297억원으로, 7조4,373억원(46%)이 투자되었다. 일반지원 사업 중 민간부문 사업은 13조867억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경기(景氣) 상황에 따라 투자율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사업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총 사업비 18조8,016억원 중 기 투자금액은 8조4,803억원으로 향후 7조78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여건 변화 및 중단사업(3조2,425억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조정 검토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라. 기대효과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수용여론 확산 및 기지이전 반대시위를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고, 기지주변 전선지중화, 간선도로 건설,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편익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생활 여건 신장 등으로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힘입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업물량 특별배정으로 대기업 유치(삼성, LG) 및 민간주도 산업단지 개발이 증가했다.

또한 평택항 개발 및 광역교통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 산업발전으로 이어져 지역총생산이 증가하는 데 기여해왔다.

■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가 추이**
– 평택시 1인당 GRDP : 2003년 2,371만9,000원 ⇒ 2008년 3,504만5,000원(47%)
* 전국 평균증가율 31%보다 높으나 대규모 장치형 산업구조로 지역주민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음

2)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추진

가. 사업개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 제2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규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미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시 서정동·장당동 및 고덕면 일원으로 1,341만2,000㎡ 규모에 인구 14만4,000명(5만8,000세대)을 수용하고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민자)되며, 2008년 8월 30일~2020년 12월 31일에 LH공사(85%), 경기도(2%), 경기도시공사(8%), 평택도시공사(5%)가 공동지분으로 참여하여 3단계(1단계 299만5,000㎡, 2단계 587만㎡, 3단계 454만7,000㎡)로 나누어 추진된다.

나. LH공사 건의사항 검토

L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과도한 기반시설비용 부담,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원가(평당 조성원가 450만원 → 390만원, APT 공급가 840만원 → 780만원) 인하와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각종 부담금 경감 등의 사업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사업규모 조정(1,341만2,000㎡→1,342만1,000㎡), 사업기간 연장(2013.12 → 2020.12), 단계별 추진(1단계 299만5,000㎡, 2단계 587만㎡, 3단계 454만7,000㎡) 등 LH공사의 추진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국회간담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LH공사 건의사항 총 8건 중 3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중이며, 1건은 자체삭제했다.

【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 2005.12.06 : 평택 지역개발계획 발표(행안부)
- 2006.9.21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국토부)
- 2008.5.30 :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 2008.9.23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부)
- 2009.12.28 : 토지보상 착수
- 2012.1.03 :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면적 조정(1,341만2,000㎡→1,342만1,000㎡),
  – 사업기간 연장(2013.12→2020.12),
  – 단계별 (1단계 299만5,000㎡, 2단계 587만㎡, 3단계 454만7,000㎡) 추진
- 2012.5.21 : 지장물 보상 착수
- 2012.12 : 1단계 실시계획승인(예정)
- 2014.3 : 1단계 택지조성공사 착공(예정)
- 2014.3~2020.12 : 단계별 사업시행

① KTX역사는 국토부에서 고덕면 해창리에서 평택 지제역으로 확정하여 2015년 말 완공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다. ② 택지분양 저감을 위한 녹지율 하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협의하에 23%로 조정(당초 32%) 완료했다. ③ 자동크리넷(쓰레기 선별장) 미도입 건은 평택시와 협의로 725억원 사업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④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 경감은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LH공사 부담액을 1조7,668억원에서 1조1,244억원으로 감소(6,424억원 절감) 예정이며, 현재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협의) 중에 있다. ⑤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제18대 국회)된 상태이다. ⑥ 미군 복무정상화(주둔 2~3년, 가족동반)계획 시행에 따라 영외학교, 주거시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미 측과 지속적 협의 추진 중이다. ⑦ 지구 내 군부대 및 탄약고 조기이전 요구와 관련, 지역 육군의 사단(1개 연대 및 예하 2개 대대)은 2011년 12월 31일 부대이전 협의 및 사업방식이 승인된 상태이고, 탄약고 2개소(매그넘 탄약고, 알파 탄약고)는 이전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실시설계(2013) 중이며, 2014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⑧ 각종 부담금의 경감관련 사안은 개별법에서 정한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여 LH공사에서 건의 삭제 및 포기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는 1단계사업 조기착공 및 택지 확대개발 요건 충족으로 고덕국제도시 조성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토지보상은 2009년 12월에 착수하여 2012년 6월 현재 7,112필지/1,065만4,000㎡, 2조5,86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99%)되었으며, 등기 및 소유자 불명의 미보상토지(104필지/19만6,000㎡)는 2012년 하반기 재감정평가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장물 보상은 2012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미협의 지장물은 수용재결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라. 평택이주민 택지공급 사업

LH공사는 단계별 택지개발 관련, 평택이주민 2,000세대(평택 원주민 301세대, 고덕지구 1,454세대, 고덕산업단지 245세대)의 택지공급을 위해 단계별 택지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단계 사업 택지공급(456세대)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900세대 이상 확대개발과 택지의 단계별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성향분석(2012.12)이 필요한 만큼, 평택 원주민(301세대)은 국방부 · 평택시가, 고덕지구(1,454세대)는 LH공사 · 경기도/평택도시공사가, 고덕산단(245세대)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담, 성향분석을 하기로 협의했다.

공동사업시행자 간(LH공사, 경기도, 경기/평택도시공사) 성향분석 기준을 마련, 2012년 12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여 2 · 3단계 입주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택지공급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마. 기대효과

고덕 국제도시 조성사업은 LH공사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과도한 기반시설비용 부담,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원가 인하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8건) 해결을 추진(완료 3건, 진행 4건, 자체삭제 1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단계 사업 조기발주(착공 2014.3→2013.7)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중이다. 특히 평택미군기지 원주민(301세대) 이주택지공급도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덕 국제도시는 한미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로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

5.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

1) 지원근거 마련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됨에 따라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2006.3.3)을 추진했다.

【 발전종합계획 추진경위 】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2006.3)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2008.1)
- 발전종합계획변경 1차(2009.2) ➡ 2차(2009.4) ➡ 3차(2010.8)

2)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대상은 반환대상 총 80개 기지 중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의정부 캠프 에세이온 등 26개 기지다.

이 중 25개 기지는 지자체에서 입안한 후 시 · 도를 경유, 행정안전부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활용계획을 확정했다. 미확정된 원주 '캠프 롱' 은 국방부(주거용 등 복합개발)와 원주시(공원) 간 활용계획에 이견이 있어 지연되었으나, 원주시가 계획한 공원으로 합의되어 2012년 중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발전종합계획 확정 : 25개 반환미군기지 】

- 의정부 : 8개(라과디아, 에세이욘, 시어즈, 카일,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홀링워터)
- 파주시 : 5개(하우즈, 스탠턴, 자이언트, 에드워드, 게리오웬)
- 동두천 : 6개(님블, 모빌, 캐슬, 케이시, 호비, 짐볼스 훈련장)
- 기타지역 : 6개(하남 콜번, 화성 쿠니사격장, 부산 하야리아, 인천 마켓, 대구 워커, 춘천 페이지)

3) 발전종합계획 사업개요 및 국비지원

확정된 발전종합계획 사업은 2008~2017년 추진되며, 사업대상은 반환공여구역 활용(공원, 도로, 하천 등) 32건, 주변지역 도로사업 133건 등 총 165건으로, 총 9조2,998억원(국비 2조2,449억원, 지방비 2조8,727억원, 민자사업 4조1,8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중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지자체에서 공원 · 도로 · 하천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환기지를 매입하는 비용의 60% 이상을 지자체 재정여건, 공여구역 면적비율, 지역주민 1인당 공원 · 도로 · 하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주변지역 도로사업은 사업비의 50%를 균등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비 지원액은 지자체 토지매입비 4,174억원,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3,936억원 등 총 8,11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6%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관리했다.

4) 관계기관 이견 조정

부산광역시 소재 '캠프 하야리아' 반환기지 내 지장물 존치 여부를 합의조정하여 국비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국방부는 하야리아 기지내 건물(40동)과 수목(1,500주)을 철거하기로 계획했으나, 부산광역시가 문화 · 역사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기지 내 지장물 중 일제시대 경마장, 일본군 주둔건물, 미군건물 등과 우량수목을 역사적 유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존치토록 국무총리실에 조정 신청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관계법령을 면밀히 분석 ·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 국방부 · 행안부 · 부산시 등이 참여한 조정회의(2011.1.5)를 통해 현행법령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시민에게 보다 많은 역사 유적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존치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했다.

5) 제도개선안 검토

경기도에서 반환미군기지 활용 및 주변지역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함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실무회의(2012.6)를 통해 협의를 추진했다. 회의 결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조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범위 축소(330만㎡ 이상 → 30만㎡ 이상) 요청(안)은 관계부처(교과부, 국토부)의 이견이 없음에 따라 경기도에서 난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발부서의 내부검토 후 「공여구역 특별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했다.

의정부 도심 환경정화 완료 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반환미군기지를 공공 또는 공공용(운동장, 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관리전환 허용 요청(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도시미관 유지 등 활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상사용 승인에 따라 기지매각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만큼 경기도에서 의정부시로 하여금 춘천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계획을 작성하여 무상사용을 신청토록 조치했다.

반환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비(60~80% → 60~100%), 주변지역 도로사업(50% → 70%), 반환공여구역 기반시설(도로 · 공원 · 하천) 공사(0% → 70%)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안)와 관련,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면적 대비 미군공여지가 42%,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해 지방비 부담 토지매입비(882억원)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2010년 6월 「공여구역 특별법 시행령」제14조를 개정(국비지원율 60~80% → 60% 이상으로 상한선 폐지)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토지매입비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6) 향후 추진방향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반환미군기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유 공모제 등 수요자가 참여한 맞춤형 발전종합계획 변경추진 등 법 ·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 · 관리 및 관계기관 이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추진이 필요하다.

6.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

1) 동두천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한국전쟁 후 주한미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동두천지역에 주둔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평택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18개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내 동두천 TF를 구성(2011.1)하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18개 현안사업은 2012년 6월 현재 완료 2건, 진행 중인 16개 사업이 있으며, 전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사업별 현황
대학유치사업(3개)	1. 유엔평화대학 유치 2. 대전 침례신학대학 유치 3. 경쟁력 있는 국내대학(교) 유치
지역개발사업 (7개)	4. 청소년 수련원 건립 5. 한방약초 특화사업 추진 6.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및 국고지원 7.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8. 시가지 수해예방 사업 지원 9. 대기업 개발참여 및 입주유치 10. 캠프 케이시·호비 반환지역 활용 지원
도로개설사업 (3개)	11.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12. 국도3호선 우회도로 보상비 지원 13.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법 · 제도개선 등 기타(5개)	14. 짐볼스 훈련장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 완료 15. 동두천지역 입주기업 조세감면 16. 반환 미군기지 토지 소유권 이전 17.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 확대 18. 반환 미군기지 개발지원을 위한 정부협의체 구성 : 완료 · 국무총리실 내 동두천TF팀 설치 · 운영(2011.2~)

2) 향후 추진계획

현안사업 가운데 법 · 제도적 변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정상(조기) 추진토록 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변경이 수반되는 장기사업은 타당성 · 실효성을 검토하여 관련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 · 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18개 현안사업 외에도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7. 환경오염 정화 추진 경과 및 성과

1) 사업개요

용산기지이전(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반환 대상이 된 미군기지는 80개다. 반환 완료된 48개 기지 중 매각 대상이 된 17개 기지에 대해 한 측 부담으로 토양오염 조사 및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 현황 】

■ 사업기간 : 2008.12~2011.12
■ 시행주체 :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면적 / 오염토량 : 2736만4,939㎡ / 79만3,932㎥

구 분	수탁기관	대 상 기 지	지 역	사업비	시공회사
계		16개 기지		1,722억원	
1공구(8개소)	한국 농어촌공사	에드워드, 하우즈, 게리오웬, 자이언트, 스탠턴, 그레이, UNC, 페이지	파주 5, 서울 2 춘천 1	778억원	SK에너지 한라건설
2공구(8개소)	한국 환경관리공단	에세이욘, 홀링워터, 라과디아, 카일, 시어즈, 님블, 콜번, 매향리사격장	의정부 5, 동두천 1 하남 1, 화성 1	944억원	한화건설 SK건설

* 부산 하야리아 기지 : 부산시에 위탁하여 시행(2011.7~2012.8 / 131억원)

2) 관련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 5항에 의거,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3항에 의거,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해야 한다.

3) 추진경과

2005~2007년 반환 대상기지(48개 기지)를 대상으로 오염범위 개략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개 기지에서 유류 및 중금속 등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군 활용 6개 기지와 국토부 활용 2개 기지를 제외하고 지자체 매각 대상기지 16개 기지는 국방부 주관하에 2008년 1월, 정화사업 수탁기관(한국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을 선정하고, 5월에 정화업체(한화건설 등 3개 업체)를 선정해서 2008년 8월~2009년 1월에 오염범위 정밀조사 및 설계를 완료했다. 2009년 2~7월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 철거 등 정화사업 착수 준비 후 8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말에 완료했다. 또한 2010년 반환된 하야리아 기지는 국방부에서 부산시에 위탁하여 2011년 7월~2012년 8월에 정화를 완료했다.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 】

지 역	기 지 명	면 적(㎡)	오염/정화량(㎥)	진 도(%)	정화업체
파 주	에드워드	584,459	70,921	100	한국 농어촌공사
	하 우 즈	636,088	75,927	100	
	게리오웬	284,299	94,926	100	
	자이언트	171,179	3,337	100	
	스 탠 턴	271,000	70,389	100	
서 울	그 레 이	8,660	4,867	100	
	UNC	53,458	2,718	100	
춘 천	페 이 지	639,342	70,389	100	
의정부	에세이욘	207,637	97,367	100	한국 환경공단
	홀링워터	49,586	19,202	100	
	라과디아	136,782	17,468	100	
	카 일	145,183	135,116	100	
	시 어 즈	95,080	66,339	100	
동두천	님 블	58,274	26,794	100	
하 남	콜 번	306,772	31,754	100	
화 성	매향리사격장	23,717,140	6,418	100	
부 산	하야리아	534,933	73,464	98	부산시 위탁
계	17개 기지	27,899,872	867,396		

* 하야리아 기지(부산시) 환경오염 정화사업 지속 추진 : ~2012.8

4) 토양오염 정화 절차 및 공법

토양오염 정화 절차는 오염지역을 굴착하여 오염토를 야적 및 선별하고, 오염토의 성분 및 농도에 따라 정화공법을 선정하여 오염토양 정화 후에 정화 검증절차를 거쳐 되메우기하고, 비오염토양은 적치 후 되메우기를 한다.

토양오염 정화 공법은 오염토의 성분 및 농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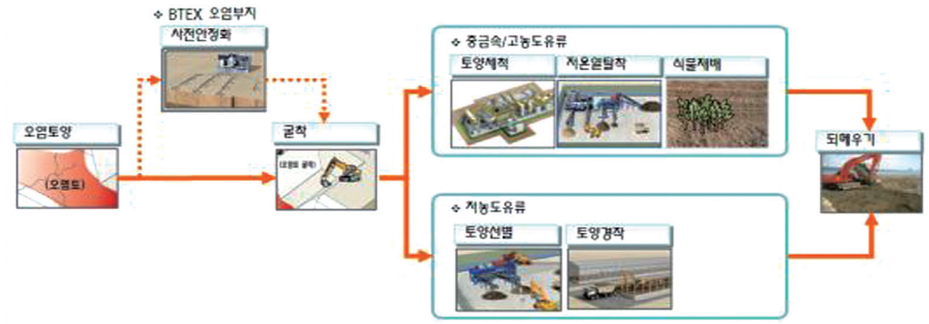

① 토양경작공법 :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유류 오염물질 분해/제거
② 열탈착공법 : 토양입자에 고온의 열을 가하여 오염물질 휘발/분해
③ 토양세척법 : 오염토양을 세척액으로 분리/제거(중금속 오염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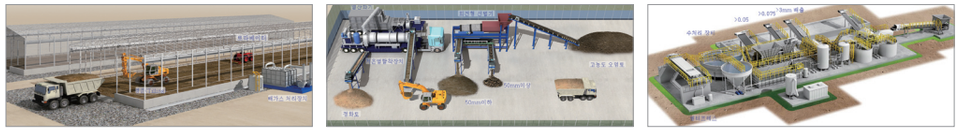

정화를 마친 후 토양오염 정화의 결과를 국가공인 검증기관에 의뢰해 검증한다.

5)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 성과

반환 완료 16개 기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완료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정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명예감독 위촉운용 등을 통해 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했다. 반출정화 대상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했고, 정화장비 개선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토양정화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환경정화 전문 기술서적을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화사업 간 습득한 전문 기술을 공유하고, 저비용 녹색정화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환경대대 운영지원을 통한 군 환경정화 능력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가 매우 지대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1.6	■ 평택 험프리기지 시설종합계획(MP) SOFA 합동위 승인
2008.2.4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위·수탁협약 체결(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공단)
2008.3.2	■ 「용산공원건립추진단」 국토해양부 이관 및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으로 개칭(6월)
2008.9.2	■ 국무총리실 내 「주한미군기지이전 정책협의회」 설치
2008.10.16	■ 제1차 정책협의회(LPP선협의주민 사업용지공급 등 3건)
2008.12.4	■ 제2차 정책협의회(반환기지 환경오염정화변경 등 4건)
2009.4.1	■ 반환미군기지(16개) 환경오염정화사업 착공
2009.4.10	■ 주택공사 2차 기부대 양여사업 불참 통보(최초)
2009.4.17	■ 제3차 정책협의회(평택현장 집단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3건)
20094.13	■ 미군가족 임대주택사업(HHOP) 부지 공여
2009.6.26	■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주택공사 2단계 사업 참여 결정
2009.7.28	■ Parcel-2B 부지조성공사 시공업체(대우/GS건설) 선정
2009.8.17	■ 제4차 정책협의회(FED 부지 국방부로 관리전환 결정)
2009.9.29	■ 평택기지 파슬-2B지역 부지조성공사 착공
2009.9.22	■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발족
2009.10.30	■ LH공사에 추가 양여부지 확보(FED)로 2단계 사업 참여 협의했으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참여 불가
2009.11.14	■ 2단계 사업 LH공사 참여관련 관계차관 간담회
2009.5~12	■ 금융권 및 투자기관(LH공사 등) 대상 사업참여 협의
2009.12.30	■ 국방부-이화여대 간 캠프 에드워드 부지평가 방식 협의
2010.1.27	■ 캠프 하야리아 미군기지 부산시에 반환
2010.7.13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포(기술제안입찰방식 적용)
2010.7.14	■ 제5차 정책협의회(기지이전 2단계 사업 재원확보 대책 협의)
2010.10.8	■ 42차 SCM시 양국 국방장관 간 전략동맹 2015 합의
2010. 11. 04	■ SCIF발주방안관련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
2011. 02. 17	■ 제6차 정책협의회(평택미군기지 가족주택계획 추진 방안)
2011. 11. 17	■ 제7차 정책협의회(1단계 이전사업 시행협약서 개정 관련)
2011. 11. 30	■ 국방부-LH공사 기부목록 조정을 통한 기부양여 재협약
2011. 12. 30	■ 환경오염 정화 대상 17개소 중 16개소 정화 완료

2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제1절 핵안보정상회의

1. 핵안보정상회의 출범 배경

'핵안보' 란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여타 방사성물질에 대한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관련 시설에 대한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행위 등을 예방하고,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당초 핵안보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말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핵안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체코 방문 특별연설을 통해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으로 평가하고, 향후 4년 이내에 전 세계의 취약한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0년 중에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2.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미국 워싱턴(2010.4.12~13)

2010년 4월 12~13일 양일 간 개최된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는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국가를 포함, 총 47개국 정상 및 UN, IAEA, EU 3개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가했다. 워싱턴 회의 결과, 정상들 간의 정치적 서약을 담은 코뮤니케(communique)와 구체 행동계획을 담은 작업계획(Work Plan)이 채택됐다. 또한 30여 개국이 HEU(고농축우라늄) 반환 및 LEU(저농축우라늄)로의 전환, 주요 핵안보 국제협약(핵테러억제협약 및 핵물질방호협약) 비준 및 가입, IAEA와의 협력 증대,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자발적인 공약을 선언했다. 워싱턴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물질 방호와 관련된 제도적·기술적 국내 조치를 소개했고, 우리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원전의 안전성 홍보에 힘썼다.

또한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의 서울 개최 발표,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계획 발표, 우리의 선진 IT기술을 활용한 방사성물질 관리·통제 체제를 여타 참가국과 공유하는 방안 제시와 같은 핵안보 체제에 대한 기여 계획을 천명했다.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모범적인 핵비확산 의무준수 및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었다.

경제 분야 최고회의라 할 수 있는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안보 분야 최고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외교 지평 확대와 국가위상 제고에 큰 기여로 평가된다.

3.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한국 서울(2012.3.26~27)

1) 개최 준비과정

가. 개최 일자 결정

정상회의의 개최 일자 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은 여타 정상회의 등 국내외적으로 예정된 대규모 행사들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최대한 많은 정상들의 참석이 가능한 시기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중 주요 정상급 회의 일정과 참가국의 국내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검토한 결과, 3월 말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4월 말에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2012년 3월 26~27일로 확정하고, 참가국 정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공식 초청서한을 5월 30일 발송했다.

나. 개최 도시 및 장소 결정

개최 도시 검토 과정에서는 50명 내외의 정상 및 각 대표단, 수행기자단 수용가능 여부, 국제회의장 등 인프라 구축여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경험 및 국가 상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최 도시를 서울로 결정했다. 서울 개최 결정 이후, 주행사장 선정을 위해 코엑스와 킨텍스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세 차례(2011.4.6, 4.11, 5.18)에 걸쳐 답사를 실시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수적인 대표단 및 기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 정상활동 편의성, 한국 이미지

전달, 주변 환경 등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1년 6월 초 코엑스를 선정하고 참가국에 통보했다.

다. 참가국 및 정상 확정

서울 정상회의에는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에서 총 58명의 수석대표가 참가했다.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기존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에 더해 해당 국가의 핵안보 정상회의에의 실질적 기여 가능성, 해당 국가의 참석 희망 여부, 지역 균형, 우리의 양자 및 다자 외교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1년 5월 인터폴, 2011년 12월 아제르바이잔 · 덴마크 · 리투아니아, 2012년 1월 헝가리 · 루마니아, 2012년 2월 가봉 · EU 집행위원장을 추가로 초청했다.

2) 준비조직

가. 준비위원회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 5일「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맡기로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식경제부 장관 · 국토해양부 장관 ·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실장 · 국무총리실장 · 방송통신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장 · 국가브랜드위원장 · 경호처장 ·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 한국전력사장 ·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11년 3월 25일과 9월 9일(이상 국무총리 주재), 2012년 2월 27일(대통령 주재) 세 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계획 수립, 준비상황 점검 및 평가, 정상회의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심의 ·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준비위원회를 통해 홍보대책, 교통대책 등 각 부처별 협조필요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2011.9.9) 진행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의제, 의전, 홍보, 부대행사 등 정상회의 제반분야에 관계된 정부부처 ·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각 부처별 의견 수렴 및 조율, 협조필요사항 공유 등 유기적 준비가 가능했다.

특히, 교통대책(국토해양부), 홍보대책(문화관광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의 분야에서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구체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국무총리실은 행사 점검단을 조직해 수시로 행사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행사 직전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장 및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등을 직접 방문해 행사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조직하여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 위험물시설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보안 및 시설 안점 점검을 수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철저한 보안 및 시설 안전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 준비기획단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정상회의 관련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2월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준비기획단은 단계별 · 사안별 대통령 보고, 준비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준비과정상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확정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3)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내용 및 결과

가. 참가대상 및 일정

① 참가 대상

워싱턴 정상회의 참가국(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과 추가 초청대상(아제르바이잔, 덴마크, 가봉,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인터폴, EU 집행위원장)을 합쳐 총 58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다. 53개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국제기구 포함) 】

대 륙	국 가
아시아(12)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카자흐스탄
유럽(23)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터키,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덴마크,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미주(6)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대양주(2)	호주, 뉴질랜드
중동(7)	알제리,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UAE, 요르단, 모로코
아프리카(3)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봉
국제기구(4)	UN, IAEA, EU(롬푀이 상임의장 · 바호주 집행위원장), INTERPOL

정상 기념촬영(2012.3.27, 코엑스)

② 일정

첫날인 3월 26일의 업무만찬 의제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래 핵안보 분야 진전 평가' 이고, 둘째 날인 3월 27일 오전·오후 세션의 의제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별 조치 및 국제 협력' 이었다. 그리고 둘째 날 업무오찬 의제는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 상호관계' 였다.

나. 주요 결과

결과문서로 핵안보와 관련된 11개의 핵심 분야에서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 실천조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e)' 를 채택했다. 아울러 53개국이 핵물질 제거, 핵안보 협약 비준 약속 등 100개 이상의 신규공약을 제시하는 실천적 성과도 있었다. 주요 공약 분야는 자발적인 핵물질(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비준,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 상호관계, 핵물질·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감식, 핵 민감 정보 보호, 핵안보 문화 증진, IAEA 핵안보기금 기여 등 IAEA활동 지원, 핵테러 방지구상 등의 다자협력체 활동 강화 등이다.

참가국의 공약은 정상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므로 차기 정상회의(2014)까지 대부분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 정상회의 시 발표된 32개국 73개 공약도 대부분 이행된 바 있다. 한편,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별국 공약과 더불어 여러 국가가 함께 핵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과물로서 13개 공동발표문이 확보되었다. 이는 국제 핵안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의의가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분야별 주요 성과를 보자면 첫째, 핵물질의 감축 및 향후 행동계획을 제시하여 핵테러 위협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각국이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계획을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국가들이 핵물질 감축에 관한 시간 계획에 합의한 것은 서울 정상회의가 처음이었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2년 간 8개국이 약 53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추가로 10여 개 국가가 핵물질을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핵무기 3,000개 분량의 군사용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했으며, 2010년 합의에 따라 핵무기 1만7,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향후 추가로 제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775개 분량의 핵물질을 안전한 보관시설로 이동 조치했다.

이와 같은 위험 핵물질 제거에 더하여, 연구용 원자로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 사용 필요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 연료용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한 성과로 추진됐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술을 토대로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기술 실증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발표됐다(한-미-프-벨 4국 공동사업). 또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2015년까지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발표됐다(미-프-벨-네 4국 공동사업).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전 세계 민수용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크게 줄이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두번째 성과는 핵테러 방지 국제규범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한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까지의 2년 동안 각각 20개국과 14개국이 개정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을 추가 비준했으며,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미발효 상태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발효 목표 연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IAEA의 핵안보활동 지원 강화라는 성과도 달성했다. 10개국 이상이 IAEA 핵안보기금에 대한 기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미국, 호주 등이 IAEA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를 통해 핵시설의 방호상태를 점검받기로 했다.

다자 핵안보 협력 메카니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9개국(아르헨티나,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가입해서 참가국 수가 8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안보리 1540 위원회와 글로벌파트너십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에는 IAEA의 주도로 핵안보 관련 다자 메커니즘 간 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원자력 이용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상호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정상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안보·안전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IAEA의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능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에 합의했는데, 이는 주로 핵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워싱턴 정상회의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핵·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및 핵밀수 대처를 위한 구체 계획도 도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운송보안 및 핵감식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터폴을 매개로 한 국경에서의 형사공조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핵 관련 정보보안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인적역량 배양을 통한 핵안보 문화의 증진에도 성과가 있었다.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15개국 이상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중이거나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 정상회의 계기 국무총리 양자회담

김황식 국무총리와 영국 클레그 부총리간 양자회담(2012.3.2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총 58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활발한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계기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동 기간 동안 정부는 정상회의 계기 역대 최대인 24회 정상회담, 9회 국무총리 회담, 12회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국무총리급 인사가 정상을 대리하여 참석한 국가나 정상이 참석했으나 대통령 일정상 정상회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양자회담을 주재했다. 국무총리 회담은 노르웨이,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영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체코, 파키스탄 등 총 9개국 총리급 인사와 이루어졌다.

이 중 노르웨이 스톨텐베르그 총리 및 파키스탄 길라니 총리는 정상이지만, 대통령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양자회담을 실시했고, 베트남 응웬 떤 중 총리 및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양국 고위인사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추가로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영국 클레그 부총리, 브라질 떼메르 부통령, 체코 슈바르첸베르크 부총리, 알제리 벤살라 상원의장, 이스라엘 메리도르 부총리 등은 정상을 대리하여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와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국무총리급 회담에서는 양국 간 주요 현안(한반도 정세, 경제·통상 관계, 원전, 교육, 문화, 인적교류, 녹색성장 등)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에 대한 깊고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양국 민간 교류 활성화 및 경제·문화·방산·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문제와 함께 기업진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라. 서울 정상회의 평가

서울 정상회의 개최는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행동조치를 제시하여 핵테러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실현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정치적 선언 단계에서 실천의 단계로 진전시킨 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의장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된 원자력 안전 문제를 핵안보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핵물질 테러뿐만 아니라 방사능 테러(소위 '더티밤')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주도하여 핵안보 논의 지평을 확대했다. 또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핵안보 강화를 위한 모멘텀 유지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안보 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를 실질적 성과 측면뿐만 아니라 회의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내, 대한민국을 지구촌 경제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위상을 제고했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4.12~13	■ 워싱턴 정상회의 : 제2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 선정
2010.10.5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립규정 제정
2011.3	■ 핵안보 준비 기획단 출범
2011.3.25	■ 제1차 핵안보 준비위원회 개최
2011.5.30	■ 이명박 대통령 명의 참가국 대상 초청서한 발송
2011.9.9	■ 제 2차 핵안보 준비위원회 개최
2012.2.27	■ 제 3차 핵안보 준비위원회 개최
2012.3.26~27	■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제2절 2012 여수세계박람회

1. 개요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펼쳐졌으며, 104개국, 10개 국제기구, 7개 대기업, 23개 지자체에서 각자 특색 있는 전시관을 마련하여 운영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박람회, 2002년 한일월드컵처럼 2012여수세계박람회도 국격향상과 아울러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 남해안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등 인류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해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2조389억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정부재정이 약 30%(5,902억원), 자체수입 약 35%(7,380억원), 민자 약 35%(7,107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박람회를 계기로 추진한 고속도로, KTX, 항만 등의 SOC 구축에 약 10조원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2조2,000억원, 부가가치 5조7,000억원, 고용창출 8만명으로 추산되었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조감도 】

2. 유치과정

실사단 입국 모습

개최지 선정당시 모습

개최지로 선정된 여수는 개발과 보존이 가장 조화를 잘 이룬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려한 도서와 청정해역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박람회의 주제인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해양수산부에 박람회 유치기획단을 구성하고 2006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를 출범했다. 당시 세계적 휴양지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모로코 탕헤르, 유럽 동부지역에서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경쟁하게 되어 국제적 지명도가 다소 낮은 여수의 개최지 선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준비능력, '해양과 기후변화' 라는 주제의 시의 적절성, 개최도시와 주제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여수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유치위원회의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으로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2007.4.9~13) 결과, '주제의 분류 및 개발 준비가 잘되었으며 그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했다' 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7년 11월 27일 제142차 BIE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회원국(140개국) 투표로 여수가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국무총리는 유치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치활동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지원했다.

3. 박람회 추진체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및 행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2008년 4월 7일 설립되

어 개막 당시에는 위원장, 사무총장, 3사무차장, 11본부, 42부 총 364명으로 운영되었다. 조직위원회는 현장감 있는 준비를 위해 2011년 6월 27일 서울에서 여수로 이전했다. 조직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위원총회를 두어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설치했다. 박람회 지원체계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국회 차원의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준비현황 점검,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정책 조정,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등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추진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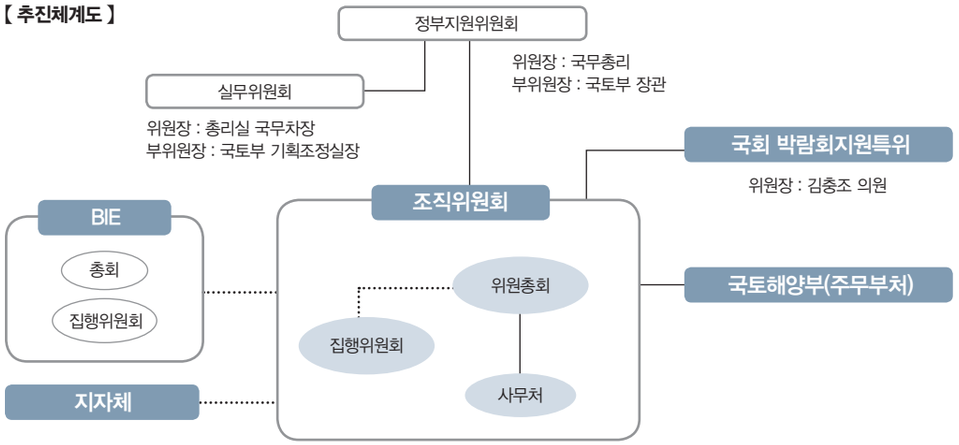

4.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의 역할

2012년 9월까지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는 총 13회 회의를 개최해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박람회 준비현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원활한 박람회 개최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막 이후에는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다. 그리고 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회의, 관계부처 이견 조정, 각계각층의 박람회 관심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지원위원회는 숙박 관련시설이 부족했던 여수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급 숙박시설 지정확충에 힘썼으며(엠블호텔, 디오션리조트 등 약 1,000실), 여수충정지구 항운노조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합리적 보상대책(대상자 97명, 총 지원금액 97억6,000만원)을 신속히 마련해 박람회장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박람회장 직접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 밖에 박람회 개최 준비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사 준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적기에 해소했다.

SOC 구축 중 여수시내도로의 경우, 박람회 개최 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여수시에서 2010년 초부터 이들 도로의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착공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여수시 및 여수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및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려웠으나, 국무총리실 주도로 2차례 관계부처 회의개최, 국회의원 설득, 지자체 협의 과정을 거쳐 여수시내도로 2개 사업(석창교차로, 여수터미널~박람회장 구간)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1]했다. 여수시내 2개 도로사업이 적기 완료됨에 따라 박람회장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역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KTX 고속화사업에 대해 고속화 연구용역 결과, 불신 및 정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반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무총리실은 조직위원회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 엑스포 지원 등을 위한 고속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그 결과 전라선 복선전철사업의 잔여사업비(992억원)를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2011.8.18)하여 2012년 4월까지 KTX 고속화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에서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제고 및 참여 붐 확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주요 기업들의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요 유치대상 기업 CEO 오찬간담회(2011.3.30)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인오찬간담회(2011.6.21)를 실시했다. 그리고 5대 경제단체장, 금융단체장, 주요 기업 CEO가 참석하는 여수엑스포 후원을 위한 오찬간담회(2012.3.16)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참여를 독려하여, 박람회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준비 막바지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현장 점검을 실시(2012.5.9)하고, 박람회 운영기간 중에도 운영현황을 확인(5.31)하여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총 8차례 여수를 방문했으며, 국무총리실 주도로 참여활성화 방안을 마련(6.19)하여 전 국민의 참여 붐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폐막 후에는 국무총리 명의로 1만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고 조직위 간부대상 오찬간담회를 실시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후활용계획 마련에 있어서도 선투자금

여수박람회 후원 오찬간담회

박람회장 준비현황 점검

1) 도로 개선사업 2건에 대한 총 지원규모 340억원

회수, 사후활용기구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이견에 대해 적극 조정하여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여수지역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5. 교통 · 숙박 · 관광 등 박람회 인프라 구축 및 관람편의 제공

국토 남단에 위치한 여수의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순천~완주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의 광역도로와 시내교통망을 확충했다. 특히 전라선 복선 전철화 및 KTX 운행(2011.10)으로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의 소요시간을 종전 4시간 40분(새마을호 기준)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중국 · 일본 등의 주요도시 전세기 운항, 김포 · 제주와의 국내선 증편 등으로 항공 편의를 도모하고, 크루즈선 등 총 6선석 규모의 국제여객부두도 조성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박람회장의 특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 또한 대폭 보강했다. 박람회장 인근 19개 지자체에서 시설 ·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박람회 지정업소(448개소, 1만2,758실)로 지정 · 관리했다. 그리고 대학기숙사(775실), 캠핑파크(250동), 텐트촌(400면), 농어촌체험마을(50마을), 템플스테이(1일 1,000명), 처치스테이(1일 5,000명), 홈스테이(150가구) 등의 임시 · 대체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2012년 4월 25일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금수준, 위생상태 점검 등을 위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개막전 박람회장 주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숙박업체와의 협조 및 소비자단체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박람회 추천 여행코스 73선 개발, 『남해안 100배 즐기기』 책자 발간 등을 추진했으며, 박람회 홈페이지 내 관광정보 포털도 구축하여 운영했다.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KTX 증편 및 요금할인(30%), 박람회장 내 교통관제센터 구축(2012.3. 완료)을 통해 교통상황 관리 및 편의를 증진시켰다. 장애인 · 임산부 · 외국인단체 우선입장제 시행, 전시관 메인 콘텐츠에 대한 4개 국어 자막 제공, 우천시 우의 · 양심우산 지원, 폭염 시 아이스팩 무료 제공, 전시관 대기열에 냉풍기 설치 등 쾌적한 관람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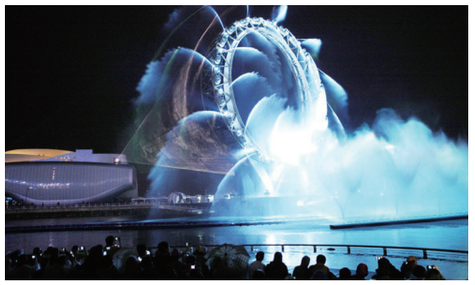

Big-O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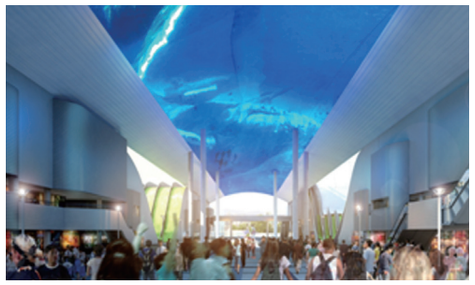

엑스포디지털 갤러리

6.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요 전시관 및 문화공연

박람회는 주최국 전시관, 참여전시관, 특화/체험전시시설로 구성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참여전시관으로, 특히 국제관은 46개의 개별관과 4개의 공동관으로 구성했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시관 현황 】

주최국 전시관(6)	주제관, 한국관,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문명도시관, 해양생물관
참여 전시관(63)	국제관(개별 46개, 공동 4개), 국제기구관, BIE관, 지자체관, 해양베스트관, 대우조선해양로봇관, 한국해운항만관, 현대자동차그룹관, 삼성관, SK텔레콤관, LG관, 롯데관, GS칼텍스관, 포스코관
특화/체험 전시시설(9)	빅오(Big-O), 아쿠아리움, 스카이타워,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에너지파크, 원양어업체험장, 연안어업체험장, 입체영상 아쿠아리움(영상관), 어린이극장

특화시설인 빅-오(Big-O)는 박람회장 중심 해상의 엑스포 상징 구조물로, 해수면 상하로 움직이는 무대, 뉴미디어 쇼, 해상분수가 조화를 이루어 관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첨단 IT기술과 조명예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문화공간인 엑스포디지털갤러리는 초대형 LED 천장영상(218m×30m)을 활용해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으며, 낡은 시멘트 사일로를 재활용한 스카이타워에서는 박람회장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스카이타워 외부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오르간(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북 등재)을 설치해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며, 그 소리가 여수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초로 러시아 흰돌고래, 바이칼 물범 등 희귀 해양생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건립된 해상 건축물인 주제관은 바다의 가치, 인류와 바다가 공존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특히 실제와 똑같이 표정 연기까지 가능한 듀공 로봇과 소년이 교감하는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전시관의 독특한 조형미는 각국의 호평을 받았다. 태극문양을 형상화한 탄소중립형 건물인 한국관은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한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국제관은 5대양의

스카이 타워

아쿠아리움

주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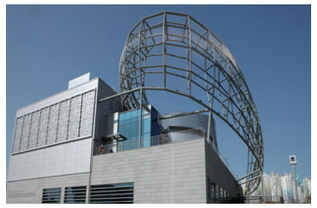
한국관

국제관

화합과 번영을 표현하기 위해 대형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각국의 다양한 전시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특정 분야별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4개 부제관에서 기후환경, 해양생물 등 다양한 해양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한국관의 강강술래, 기후환경관의 빙하체험, 해양문명도시관의 난파선 모형 등은 관람객 체험형 콘텐츠로서 기존 박람회와 차별화된 전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 회의 문화공연을 개최했으며, 104참가국, 10개 국제기구, 54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국제심포지엄(5회) 및 국제기구(OECD, FAO)와의 공동 국제심포지엄(2회)을 개최하여 총 3만5,000명이 참가했으며, 6월 16일부터는 'K-POP 콘서트' 릴레이를 개최(총 57회)하여 박람회의 대중적 관심을 한층 더 제고했다. 해상에 떠 있는 수면무대를 배경으로 빅오쇼, 수상공연 페스티벌 등 새로운 장르의 바다공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7.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과와 평가

박람회 성공의 기준으로는 흥행 정도(목표 관람객 달성), 주제구현(전시연출, 문화공연), 회장 운영(편의 및 안전), 개최도시의 경쟁력 기여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최종 관람객수 820만명 달성, 콘텐츠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 무사고 안전박람회 구현, 여수 및 국가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박람회 전반기(개막 후 47일까지) 입장객이 239만명에 불과하여 800만 입장객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입장권 권종 신설(오후권 · 야간권 · 반기간권 · 보훈대상자 특별초청권 등), 예매제 부활 등의 운영개선과 인근 지자체의 날, 여수시민 감사의 날 실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참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후반기(48~93일) 동안 입장객이 58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이 여수엑스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인구 29만명의 여수시에 82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성공을 거두었다.

전시내용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해양자원개발, 해양보전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국내외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 교육적 효과와 연출력을 호평(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여수엑스포는 주제구현에서 가장 성공한 박람회")했으며, 세계 주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문명도시관

요언론도 여수박람회에 대해 높이 평가(해외언론 565건 보도, 미국 뉴욕타임스 '한국의 모든 길은 여수로 통한다', 프랑스 르몽드 '대한민국의 보물 전남이 새롭게 빛난다')했다. 특히 스토리텔링이 있는 전시와 관람객 참여, 체험형 콘텐츠로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한 점(한국관 강강술래, 기후환경관 빙하체험, 해양문명도시관 난파선 체험 등)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5.12~8.12) 동안 각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모나코 국왕, 노르웨이 왕세자, 파라과이 대통령 등 부총리급 이상 12개국, 장관급 이상 90여 개국)가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국가브랜드가 제고되었다. 특히 해양에 대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여수선언을 채택(8.12)하여 해양리더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고속도로, KTX 등의 SOC(약 10조원 투입)는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CCTV를 통한 24시간 통합 관제 프로그램 구축과 중앙의료센터(1곳), 간이의료실(2곳), 식음료안전센터 운영은 안전한 박람회 운영에 큰 기여를 했다. 단체관람객 전담 안내창구 마련, 금연박람회 및 명품 식음박람회 구현, 전시관내 효율적인 동선관리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관람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박람회가 되었다.[2)]

한편 체류형 단체관람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의 부족, 초기 맞춤형 마케팅 부족으로 인해 다소 부진했던 초기 관람객 수,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시도했던 100% 사전예약제가 IT 소외계층 불만 증대로 전면 중단(5.28)되었다가 박람회 중반부터 전시관별 13시 이후 30% 한도로 재개(6.28)된 점, 그리고 외국인 관람객 수가 당초 예측(55만명)보다 다소 저조한(약 40만명)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2) 엑스포시민포럼 · 전남대 지역발전연구소 설문조사(6.30~8.4, 2,000명 면접조사) 결과, "박람회 내용이 다양하고 재미있었다"에 60.7% 긍정평가, 6.9% 부정평가

8. 박람회 사후활용 및 박람회장의 미래

박람회 폐막 후, 여수박람회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면서 여수를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사후활용 계획을 마련해 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2012.9.5)했다. 주제관 등은 존치시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빅-오(Big-O) ·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등 핵심 콘텐츠를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순천만 갯벌, 보성 녹차밭, 하동 섬진강, 남해, 통영 마리나 등과 연계하여 남해안권 해양 휴양 · 레저 관광지와 연계한 남해안선벨트 패키지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 · 엑스포홀을 제외한 전체 95% 부지 · 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후활용기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를 설립해 기념사업, 여수프로젝트, 남해안 관광 활성화 기능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5.3	■ 박람회 유치기획단 구성
2006.5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출범 ■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유치신청서 제출
2007.4.9~13	■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실시
2007.11.27	■ 제142차 BIE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회원국(140개국) 비밀투표로 여수를 개최지로 결정
2008.4.7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2008.25	■ 여수세계박람회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여수시청) – BIE 인정신청서,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추진현황 및 계획, 기관별 중점지원 추진과제 의결
2008.7.22	■ 여수세계박람회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서면) – 엑스포 타운의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계획(안) 의결
2008.11.25	■ 여수세계박람회 제3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정부중앙청사) – 종합기본계획(안), 직접시설의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계획(안) 의결
2009.5.12	■ 여수세계박람회 제4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여수시청)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안) 의결
2009.10.26	■ 여수세계박람회 제5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서면)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안) 의결
2010.3.8	■ 여수세계박람회 제6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서면)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안) 의결
2010.5.24	■ 여수세계박람회 제7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서면)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안) 및 사업시행자 변경(안) 의결
2010.7.6	■ 여수세계박람회 제8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서면) – 여수충정지구 항운노조원 지원대책(안) 의결
2010.9.8	■ 여수세계박람회 제9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서면)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안) 의결
2011.5.12	■ 여수세계박람회 제10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여수시청)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변경지정(안) 의결
2011.6.27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여수로 이전
2012.3.23	■ 여수세계박람회 제11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여수세계박람회장) – 여수세계박람회 준비현황 점검
2012.5.9	■ 여수세계박람회 및 개막식 준비현황 점검(국무총리)
2012.5.12	■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2012.5.31	■ 여수세계박람회 운영현황 점검 및 전시관 방문(국무총리)
2012.6.19	■ 여수세계박람회 제12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정부중앙청사) – 여수세계박람회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
2012.8.12	■ 여수선언 포럼 및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식 참석(국무총리)
2012.9.5	■ 여수세계박람회 제13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정부중앙청사)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 심의

제3절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1. 개요

정부와 NGO가 함께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환경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인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이하 WCC)가 '자연의 회복력' 을 주제로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173여 개국 1,100여 개 단체 1만5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로 '환경올림픽' 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제주 회의는 60여 년간 22회 개최된 IUCN총회 중 동북아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로, 21세기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 인류복지, 녹색성장, 21세기형 자연보전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한 '제주선언문' 을 채택했다. 특히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한 의제로서 세계적 환경자원인 DMZ와 백두대간을 비롯해 황사, 해양오염, 한반도 서남해안 생태축 보호 등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012 WCC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장면(2012.9.6)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국내외 지도자급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청중들과 함께 토론하는 형식의 '세계 지도자 대화' 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구촌 환경 이슈에 대한 견해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의의와 성과가 한층 드높아졌다.

2012 WCC에 최초로 진행된 세계 지도자 대화 장면(2012.9.11)

2.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WCC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2012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2010년 5월 제정되었다. 동 법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정부지원위원회'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2012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WCC 개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범정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환경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했다가 농림식품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추가 위촉하여 총 18인으로 구성·운영했다.

국무총리실은 2011년 9월 2일에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WCC 준비 추진상황과 부처별 지원과제를 논의했다. 논의를 거쳐 도출된 부처별 중점지원과제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은 범정부적 협조체계 강화 및 부처 간 역할 조정, 기획재정부는 총회개최 준비관련 예산지원 및 법정기부금 단체지정을 담당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사추진 예산지원, 행사장 전기자동차 도입지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지원, IUCN 회원가입 확대지원을, 외교통상부는 외국VIP의전, 비자발급, 국외 홍보지원을, 법무부는 비자발급 및 출입국관리 업무지원을,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추진 및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지원 및 WCC 관련 홍보지원(광고매체 게재, 안내책자 등)을, 지식경제부는 기념우표발행,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담당했으며, 국토해양부는 항공 및 교통관련 업무지원, 영접데스크 설치, VIP라운지 활용 등 공항공사 업무지원, 총회 개최지 온라인 전기설비 설치사업 등 예산지원을 맡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 협조, 녹색성장위원회는 주최국 행사개발 및 운영협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WCC 주요 추진사업 지원 등을 맡았다.

2012년 7월 6일에는 2012 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현황 및 부처별 지원과제의 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해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장 친환경 시설개선,

참가자 안전 및 보안대책, 교통·숙박, 의제개발, 국내외 홍보, 국외 참가자 확보방안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최종 점검 및 부처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총회 기간 중에는 행사장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문화관광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 총회의 관련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녹색성장 등 국내 발의안의 통과,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

3. WCC 개최 의의 및 기대효과

2012 WCC 개최의 의의는 크게 국제적 의의와 국가적 의의로 나눌 수 있다. 국제적 의의로는 전 세계 정부, NGO, 전문가들이 모여 자연환경보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WCC는 환경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이자 국제환경회의 중 정부와 NGO가 함께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회의로서, 다양한 주제 논의를 통해 IUCN 회원과 여러 국가의 다방면 참가자들의 생각과 실천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UCN은 이를 통해 국제환경 협약, 규정 및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간 CBD(생물다양성협약), UNFCCC(기후변화협약), CITES(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람사르(Ramsar)협약(습지보전) 등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개최된 환영 리셉션 장면 (2012.9.6)

국가적 의의로는 먼저 미래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홍보 및 그 효과[3]를 들 수 있다. 2012 WCC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제고했다. 또한 국내 환경정책 및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환경외교 분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환경보전정책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공감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 국내 환경보전 정책발전 및 국민인식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국내 녹색산업과 환경기술 전시를 통한 환경산업 수출 기회 확대, 국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소개, 총회와 연계된 생태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

3) 토마스 헬러 스탠퍼드 교수 등(2009.12.17) / 덴마크 코펜하겐,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많은 나라들이 탄소저감 노력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비의무감축국가인 한국이 의욕적으로 취한 조치는 전 세계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고 선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이다. 제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 분야 3관왕(세계자연유산,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인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WCC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환경생태 탐방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환경모델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총회 개최기념 K-POP 에코 콘서트(2012.9.8)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6.6	■ 국가회원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입
2008. 9	■ 제주도 IUCN 회원가입, WCC의 제주도 유치 건의
2008.10	■ 대한민국 IUCN에 총회 유치의사 표명 (제4차 WCC, 바르셀로나, 제10차 람사르총회)
2008.11	■ 총회 유치의향서 발송(대한민국 → IUCN 사무총장) – 한국, 멕시코(칸쿤) 등 2개 국가가 유치의향서 제출
2009. 7~9	■ WCC 지지 100만인 서명운동(130만명 서명)
2009.11.26	■ 2012 WCC 개최지로 대한민국 제주도 선정 (IUCN 73차 이사회 : 스위스 글랑)
2010.5.17	■ 2012 WCC 지원특별법 제정
2011.9.2	■ 2012 WCC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의 개최(국무총리실) – 2012 WCC 준비 추진상황 및 부처별 지원과제 협의 등
2012.7.6	■ 2012 WCC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의 개최(국무총리실) – 2012 WCC 준비 최종 추진상황, 부처별 지원과제 추진실적 보고 등
2012.9.6 ~15	■ 2012 WCC 개최(제주국제컨벤션센터) – 보전포럼, 리더스 대화, 회원총회 등 개최

제4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 대회유치 배경

울창한 수목과 공원을 보유한 대구는 2000년 국제에너지기구가 지정한 솔라시티에 선정되었으며, 제12회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포럼에서 환경상 은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인 환경에너지 도시다. 이러한 환경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대구의 경기장 시설과 대회운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노력과 열정이었다.

2003년 대구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자크 로게 IOC 위원장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 등 국제스포츠 인사들이 대구의 경기장 시설과 대회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권유함에 따라, 대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도전하게 되었다. 정부는 대구시, 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함께 전개했다.

특히 대회 유치에 있어서 약점으로 생각되던 육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부족 및 관중 확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고, 80만명이 참여하는 경기 참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육상 약체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약점을 도리어 유치 명분으로 적극 활용했는데, 대회 유치를 통한 한국의 육상 발전이 곧 아시아 육상 발전과 세계 육상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구만의 특색 있는 메시지를 개발, 홍보했다.

IAAF의 실사 과정에서도 경기장 · 선수촌 · 총회 현지 방문, 유치위원회와의 실무위원회, 2007년 3월 개최지 결정투표를 거쳐 대구가 2011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2.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부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의 핵심 인프라인 경기장 및 선수촌 건립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대회 성공과 직결되는 전국적인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입장권 판매 및 미디어 홍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를 위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1년을 '대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뮤직페스티벌 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체육 · 관광 · 문화가 융합된 축제의 장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매월 분야별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갔다.

D-100계기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김황식 국무총리
(2011.5.19, 대구 국채보상운동공원)

D-100계기 성공 개최 기원 마라톤 이어달리기 첫 주자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등과 함께 달리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또한 개최국 위상에 걸맞은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육상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코치 영입(5개 종목), 전지훈련 강화(종목별 연간 2~3개월), 체계적인 스포츠 의 · 과학 지원시스템 활용, 육상드림팀(최종 60여 명) 집중육성 등을 지속 추진해왔다. 트랙, 트레이닝장, 스포츠 의 · 과학센터 등을 갖춘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대회 이후에도 우리나라 육상 경기력의 지속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국무총리실은 2011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준비 현황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대회시설(경기장/선수 · 미디어촌 등) 건설, 홍보활동 및 마케팅 강화, 경기운영 역량 제고, 최상의 대회 운영 시스템 구축, 육상경기력 향상 방안 등 대회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에 대한 협조 · 건의사항을 토의했다. 무엇보다 대회 붐 조성이 성공 개최의 관건인 만큼 홍보 및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대구대회 D-100일이었던 5월 19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스타디움을 찾아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D-100 계기로 열린 성공개최 기원 마라톤 구간 이어달리기 이벤트에 첫 달리기 주자로 참여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붐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회 개최를 한 달 앞둔 7월 28일(D-30)에도 직접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하여 대회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관련 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 · 정 · 청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체관람객들이 실제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부 차원의 대회 홍보 및 광고 지원 등 당과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무회의 등에서 관계부처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폐막식에 참석하여 폐막선언을 함으로써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결승경기를 전국 시·도 육상 꿈나무 선수들과 함께 관람하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격려했다.

폐막 선언을 하는 김황식 국무총리(2011.9.4, 대구스타디움)

3. 대회 개최 의의 및 성과

- 기간 · 장소 : 2011.8.27~9.4(9일간), 대구스타디움
- 경기종목 : 47개 종목(남자 24, 여자 23)/장애인 종목 별도(남 · 여 각 1)
- 참가규모 : 202개국 6,821명(선수 1,945명, 임원 1,817명, 미디어 3,059명)
  * 역대 규모 최다국 : 201개국(1999년 세비야)/최대선수 : 1,895명(2009년 베를린)
- 관중규모 : 입장권 판매 46만4,688석(100%), 입장객 수 44만6,305명(입장률 91.66%)
  * 판매율 · 입장객 수 : 2007년 오사카 49.06% 25만4,000명, 2009년 베를린 70.3% 39만7,000명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11년 8월에는 올림픽 ·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육상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회원 연맹이 212개국이나 되는 글로벌 스포츠인 육상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 구분 없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승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육상 경기력은 마라톤을 제외하고는 타 스포츠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열악한 육상 환경에서 치러지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국제경기대회 운영 경험을 살려 대회기간 동안 만석(滿席) 경기장을 구현하며 대구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역대 최고 흥행 대회를 치러낸 대구의 저력과 열정은 전 세계인의 뇌리에 대구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4. 향후 과제

대구세계육상대회는 시민의 열정적인 참여와 봉사에 힘입어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런 만큼 대회 개최 이후 '이 에너지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대구와 한국 육상에 대한 개최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금번 대회가 한국 육상 사상 역대 최고의 성적(3개 종목 결선 진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권에서는 정상급에 올랐으나, 단기간에 세계 수준으로 진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과 더불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상, 수영 등 기초 종목에 대한 지역 · 학교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일부 대회의 운영 미숙, 음식 · 교통 불편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조직위 및 관계부처가 즉시 대처해 문제점을 개선 · 운영함으로써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향후에도 다양한 국제스포츠 이벤트 경험을 잘 살려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향후 개최될 국제대회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7.3.27	■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결정
2007.9.14	■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2009.6.23	■ 제1차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서면 의결
2011.5.6	■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및 안건 논의
2011.5.19	■ D-100 계기 행사 개최
2011.7.28	■ 고위 당 · 정 · 청 협의회 및 대회 현장점검 실시
2011.8.27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제5절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

1. 대회유치 배경

2005년 1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서남해안 개발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해 8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라남도는 도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대내외 투자를 촉발시키기 위해 매력적인 선도프로젝트의 발굴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업도시 사업의 초기 붐업효과 및 전라남도의 강력한 어트렉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중 하나로 F1대회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싱가포르, 상하이 등 대도시의 후광 속에서 F1대회를 치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전남 영암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암지역의 개발을 이 대회가 선도한다는 매력이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버니 에클레스톤 FOM(Formular One Management) 회장이 직접 방한해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유치가 확정되었다.

2.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하지만 F1대회는 출발이 순조롭지 못했다. F1 경주장 공사가 사실상 완료(2011.4)되었으나, 시행사인 KAVO(대회운영기업)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경주장 부지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지 양도·양수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수익구조상 상업적 성격이 강한 F1대회에 대해 국고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국무차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F1 경주장 부지의 감정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건설된 경기장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경기장 건설비 국고지원 및 전라남도의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등 해당 지자체와 관련 부처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2011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등과 함께 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운영 시 보완 필요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기업 홍보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많은 우려 속에 치러진 2011 F1대회는 전년도에 비해 홍보, 마케팅, 대회운영 등이 대폭 개선되었고, 공중파 홍보 프로그램과 국내외 언론보도 확대에 따른 대회 붐 조성이 이뤄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참여, 관람객 확보로 연결되었다. 또한 전 세계 188개국에 중계됨으로써 F1을 통해 한국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세계에 확산시켰다.

F1대회 폐막식 관람 및 우승자 시상(2011.10.16)

전라남도가 F1대회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모터스포츠 신산업을 개척하려면 적자규모 축소 등 대회 수지 개선을 통해 F1대회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는 대회운영기업과 전라남도 측에 대회와 관련해 고비용과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이 결과 F1조직위에서는 2011년 3월 대회주관사인 FOM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대회 계약 만료 기간인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납부해야 할 대회 개최비용을 절반으로 낮추는 성과(중계권 계약 해지, 대회 개최권료 할증 폐지 등)를 거두었다. 동 협상결과를 통한 안정적인 대회개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적자규모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회의 성공 개최에 관심을 기울여 2010년 첫 대회부터 매년 결선경기에 직접 참석해 대회를 관람하고, 우승드라이버 시상도 했다. 또한 대회 운영상황을 직접 챙기며, 안정적으로 대회 운영기반을 갖추고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애쓴 대회조직위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3. 대회 개최 의의 및 성과

- **대회명칭**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대회
- **기간** 2010~2016년(7년간)
- **장소**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전남 영암 소재)
- **주최 / 주관**
  국제자동차연맹(FIA) / F1대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암·해남관광레저도시의 핵심사업으로 F1그랑프리대회를 유치했다. F1대회는 세계 최고의 스피드 축제이자 모터스포츠의 꽃으로 1950년 시작되어 56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1개팀 22명의 드라이버가 매년 17~18개국을 순회하며 레이스를 펼치는 월드 챔피언십으로, 관중 동원과 TV 시청자의 규모에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기도 한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고도 F1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에서 벗어났으며, 자동차 생산 상위 10위권에 포진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F1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대회 첫해인 2010년도에는 경기장 완공이 늦어져 편의시설 등이 부족했고, 주차장·교통·숙박 문제 등이 겹치면서 대회 운영상 미숙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열린 두 번째 대회부터는 미비점을 충실히 보완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대폭 개선하여 국내에서 생소한 F1대회와 모터스포츠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4. 향후 과제

3회째 대회를 치러낸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당초 예정대로 2016년까지 7년간 연속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구조 개선이다. 2012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에 따라 적자 폭이 절반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장권 수익 확대, 기업 유치 등 마케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대회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참가선수가 없어 향후 대회 흥행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드라이버의 양성 및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전라남도가 F1대회를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주변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숙제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6.10.2	■ 포뮬러원 월드챔피언십 유치 계약
2007.2.9	■ 포뮬러원대회 추진위원회 창립
2007.7.31	■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착공
2009.9.16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통과
2009.12.15	■ 포뮬러원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2010.10.22~24	■ 2010 코리아그랑프리대회 개최
2011.5.6	■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및 안건 논의
2011.5.26~12.15	■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회의 실시
2011.10.14~16	■ 2011 코리아그랑프리대회 개최
2012.6.30	■ 2012 코리아그랑프리대회 성공기원 기념행사
2012.10.12~14	■ 2012 코리아그랑프리대회 개최

제6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1.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

2010년과 2014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2회 연속 아쉽게 패한 평창은 아시아 동계스포츠 확산이라는 명분, 온 국민의 유치 열망과 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세 번째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다. 정부는 유치신청서 제출에 앞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경기장·수송·숙박 등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의 확실하고 강력한 보증을 약속했다.

제1회 정부지원위원회 개최(2010.5.14, 정부중앙청사)

2009년 9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10년 5월 정부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회 정부지원위원회 개최(2010.12.10, 정부중앙청사)

이 자리에서 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전략 및 현황을 보고받고,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및 국도 개량사업 등 정부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10년 12월에 열린 제2차 유치지원위원회에서는 후보도시파일 및 정부보증서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후보도시파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부보증서를 지원하며, 유치 성공 시에는 후보도시 파일 및 정부보증서 기재내용 이행을 위해 원활한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는 동 회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로부터 28개 보증서명서를 받아 IOC에 제출해 IOC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에서 보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보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보증한다.

2 의무사항 계약 준수 등 서약

후보도시 유치서류에 포함된 모든 설명, 보증 및 서약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약속한 모든 사항이 후보도시를 포함한 경기 개최지에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아울러 해당 도시들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3 정부 및 관계당국의 무상지원 보증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예산부담 없이 안전, 의료, 세관 및 기타 정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것을 보증한다.

4 올림픽 안전 및 평화개최 보증

2018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 관련 각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년 2월 18~1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실사가 진행 중인 평창을 찾아 IOC 조사평가단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재하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지원 사격을 펼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 번째 도전한 평창의 저력을 소개하며 후보도시 평창의 준비상황과 개최 필요성을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민적 열망과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지속 강조함으로써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실사 방문은 정부의 강력한 유치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IOC 실사 마지막 날인 2월 19일 오전에 진행된 주제별 프레젠테이션 중 '안전 및 보안' 파트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평가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김황식 총리는 주요인사들과의 조찬간담회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IOC 실사 준비를 위해 보여준 강원도민과 체육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하고, 정부 및 유치위원회와 일치단결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또는 정상 접견 시에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측면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평창을 방문한 IOC 조사평가단의 공식 환영만찬을 주재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2011.2.18, 2.19)

2.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의의 및 성과

제1회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16개국 307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당시 경기 종목은 5개뿐이었다. 우리나라는 제4회 대회 때 3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참가했고, 제5회 대회 때부터 비로소 태극기를 앞세우고 감독과 선수들이 참가했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동계올림픽대회는 7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10개 이상의 종목을 다투는 대규모 대회로 변모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동시에 지켜보는 지상 최대의 겨울스포츠 제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지난 도전의 기억을 뒤로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전을 시도하여 평창은 결국 10년 동안 염원해온 꿈을 이루게 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현실화되면서 한국은 주요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지자체 그리고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지지하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경기장, 철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강원도는 경기장 및 지방 국도 건설 재정 지원과 조직위 인력 등 전면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평창 지역 주민의 93.4%, 인근 지역 주민의 93%, 그리고 91.4%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했다. 이처럼 평창 유치 성공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치위원회, 정부, 체육계 모두의 화합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3. 유치 결정 및 이후 대회 개최준비 지원

7월 7일(한국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다. 평창은 95명의 투표인단 중 63표를 얻어, 25표에 그친 독일 뮌헨을 크게 제치고 3전 2기의 신화를 이룩했다. 독일 뮌헨은 막판까지 평창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위협적인 라이벌이었으나, 평창은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명분과 당위성에서 경쟁 도시들을 압도하며 IOC 위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 참석, 직접 프레젠터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IOC 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최지 선정이 이뤄지는 7월 6일 밤, 남아공 더반에 직접 못 가는 대신 평창을 찾았다. 평창군민을 비롯한 강원도민, 그리고 여야 의원들과 함께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장 특설무대에서 평창군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 참석,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도민들과 개최지 결정 생중계를 지켜보았다.

동계올림픽 유치대표단의 귀국 환영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김황식 국무총리(2011.7.8, 인천국제공항)

평창의 유치가 확정되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2011.7.7, 평창 알펜시아)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의 유치가 최종 결정되자 현장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치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업을 이루고 금의환향하는 유치대표단의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대회의 성공 개최와 개최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우선 정부·강원도·체육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최적의 조직과 인력으로 조직위원회와 사무처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 체제의 조기 안정을 도모했다.

대회 준비 추진력 확보를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특별법」도 마련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비율 및 각종 인·허가 의제 및 특례 등에 대해 강원도와 부처 간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차관 주재 회의 등 여러 차례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며 이견을 조정해나가고자 노력했다.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회관련 시설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올림픽특구 지정 및 조건부 조세 특례 등이다. 또한 동법을 근거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 및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대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환경올림픽·경제올림픽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격 향상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시켜나갈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7.9.3	■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선언
2009.4.23	■ KOC위원총회에서 평창을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
2009.9.14	■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2010.5.14	■ 제1차 2018 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개최
2010.6.22	■ IOC, 2018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 선정
2010.7.6	■ 개최지 결정 D-1년 유치결의대회 개최
2010.12.10	■ 제2차 2018 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개최
2011.1.10	■ 후보도시파일 및 보증서 제출
2011.2.14~20	■ IOC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2011.7.6	■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남아공 더반)
2011.10.19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설립
2012.1.26	■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규제개혁

156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159 제2장 기존 규제의 정비
193 제3장 신설 · 강화 규제의 심사
223 제4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236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은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하므로 쾌도난마식 해결보다는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은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의 새로운 규제기법과 규제개혁 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제2절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1.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의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이는 '규제전봇대 뽑기' 로 상징되는 기업 친화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정최고책임자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약 절반 가까운 심사대상 규제를 개선 혹은 철회 권고함으로써 규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존규제, 덩어리규제, 복합규제 등 정책성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개선작업을 하여 두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도모한 바 있다.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규제개혁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배적 형평성에 대한 요구, 행정과정에 대한 불신해소, 진입규제 등의 활용을 통한 기득권 유지의 타파 등 여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공생발전 정략은 중소기업, 서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별도 비용 없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광범위하게 규제개혁에 착수했다. 2008년 3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를 설립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나 역대 정부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규제에 대해 기업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바탕에는 무엇보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성장과 형평성의 이념하에 계속되어온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경제의 효율성 및 성장잠재력을 저해했다는 판단하에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넘기는 시장 중심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규제개혁 방안 】

1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개혁일수록 이해관계집단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추진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높은 국정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토지이용 효율화,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선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2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이명박 정부는 규제 개선 건수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기업과 이해관계인을 폭넓게 참여시켰다. 규제개선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만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예산과 인력, 조직, 제도를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3 규제의 품질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 분야를 비롯한 규제 전반에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확대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알기 쉽게 개정하여 공무원이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충실하게 규제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적고, 실행이 용이한 규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4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

규제를 다루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없이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적으로 규제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평가항목 중 규제개혁으로 인한 성과의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의견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했다.

2 기존 규제의 정비

제1절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개선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를 전년도 말에 선정하여 규제정비 지침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2월 말까지 공표한다.

1. 2008년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개선

새 정부 규제개혁방향을 반영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2008년 3월,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수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각 부처에 시달했다.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발굴은 현장점검, 전경련 건의과제,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토록 했으며, 특히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된 대기업 · 금융규제 등 정책성 과제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규제의 건수보다는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 친화적 규제대안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두어 규제를 발굴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존치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되 부작용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품질을 개선토록 했다. 2008년도 주요 규제개혁과제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분야

- 산업단지 개발 시 2단계 계획절차(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는 등 개발절차를 간소화(「산업단지 특례법」 개정)
  - 기존 최장 48개월이던 산업단지 인 · 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산업단지 신규공급이 188% 증가[1)]
- 공업지역에서의 준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현행 70% 이하)을 80% 이하로 상향조정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관 승인절차 생략, 기간을 약 30여 일 단축)
  - 농업진흥지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8만㏊)하여 지역주민 민원 해소

2 창업 및 공장설립 분야

-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으로 공장설립기간 단축(「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 창투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50% →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조사 개선(「중소기업기본법」 개정)

3 국민편의 제고

-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민원구비서류 감축(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운전경력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 ·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민원인 편의 도모(민원신청건수 2009년 6억3,000만건 → 2010년 5억3,000만건)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제도 확대(여행자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도 확대운영방안 수립 시행)

2. 2009년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개선

2009년 규제개혁방향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산업 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 · 토지 · 기업 · 서비스업 · 환경 · 노동 관련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추진에 역량을 결집했다. 이러한 방향을 담은 2009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2009.1.22)해 각 부처에 시달했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했다. 규제개혁과제는 연초에 1,002개 항목을 발굴했다. 하지만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과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1,327개에 달했다. 2009년도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는 한승수 국무총리

1) 넥센 일반 산단(경남 창녕, 50만㎡)은 신청 3개월 만에 승인

1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축소[2)]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관련 후속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2009.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3)]하여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거안정 유도(2009.3,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비상장회사 공시 제외대상 회사의 자산규모를 현행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200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서민 · 취약계층 및 국민 불편 해소

- 긴급지원의 위기상황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도움 제공(2009.4,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4)]를 종합검사로 일원화해 서민층의 자동차 관리부담 완화(2009.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3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2009.2, 「중소기업 융자사업 추진요령 및 추진지침」 개정)
-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는 공장의 대상규모를 확대(1만㎡ → 3만㎡ 미만)하여 소규모 공장 설립 시의 부담 경감(2009.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3. 2010년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개선

2010년 규제개혁방향은 경제회복 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서민지원, 미래산업 대비 등을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규제개혁과제는 연초에 발표한 1,071개 과제에서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연말 기준으로 1,409개에 이르렀다. 2010년도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및 미래동력 확충

- 스포츠경기장에 문화 · 수익시설 등의 복합적 설치를 허용하여 스포츠산업 민간투자를 활성화(2010.3,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에 필요한 제도정비 마무리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기반 마련(2010.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 IPTV 사업자허가 · 승인 심사비용 부담 폐지(2010.8, 고시개정)
- 호텔 등급결정 신청의무의 예외 인정(2010.8, 「가족호텔 · 호스텔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200㎡에서 500㎡ 이상의 공장으로 축소
3)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 85㎡ 이하 7년 → 5년, 85㎡ 초과 5년 → 3년
4)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대상차량은 연간 약 67만대로, 검사일원화에 따라 연간 34억원(대당 5,000여 원) 검사비용 절감

2 서민 ·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불편 해소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5]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2010.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온라인 사증신청제도 도입(2010.2, 지침 개정)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2010.2, 「병무훈령」 개정)

3 중소기업 부담경감 및 전통주산업 활성화

-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6](2010.8, 「국민연금법 시행령」)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우대지원(2010.2, 「중소기업융자사업 추진지침」 개정)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 제조장 직매장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전통주산업을 육성(2010.3,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4. 2011년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개선

2011년 규제개혁방향은 투자활성화, 서민지원,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다.

이러한 방향을 담은 2011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2011.1.27)하여 각 부처에 시달했으며, 동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혁과제는 당초 연초에 발굴한 1,159개 과제에서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연말까지 누적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는 1,335개에 달했다. 2011년도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2011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김황식 국무총리

1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자연보전권역 입지체계 개선(201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 제한규모 폐지(201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201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 서민 ·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장애인자동차 감면제도 불편사항 개선(20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201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실시(2011.1, 「사회보험징수통합 징수지침」 개정)

5)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대상이 3만4,000명 증가(7만8,000명 → 11만2,000명)
6) 적용제외 시간제 근로자 기준 : 월 80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3 공정사회 구현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네거티브 방식 전환(2011.10, 「먹는물관리법」 개정)
-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2011.3,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안전관리대행기관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201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4 미래 성장동력 확충

- LED 조명제품 등 전기용품 인증절차 간소화(2011.12, 「시험평가결과 활용 지침」 제정)
-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2011.6, 「신기술통합인증요령」 개정)
-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 개선(2011.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5. 2012년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개선

2012년 규제개혁방향은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투자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Life-Friendly) 규제정비, 개방화 · 국제화 대비 등을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1,18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201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2012.2.7) 각 부처에서 추진하였다. 2012년도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 폐기물재활용 방법 · 규모에 따라 시설 · 장비 · 기술기준 차등 적용(2011.12, 「폐기물재활용업의 시설 · 장비 · 기술능력기준 관련 고시」 제정)
- 영세 ·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상 납세규제 완화(2012.1, 종합지원대책 수립)
-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2012.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2 투자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 재건축 부담금 2년간 한시 면제(2012.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2012.9, 「건축법 시행령」 개정)
-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 폐지 및 석유수입업자 등록기준 완화(201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3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해지 허용(2012.12,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 자동차 매매 시 번호판 변경신청 기한 연장(2012. 하반기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 취약계층 '인터넷전화요금' 감면(201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4 개방화 · 국제화에 부응한 제도 정비

- FTA 원산지 자율점검제도 도입 및 원산지 사전심사범위 확대(2012.4, 「특혜원산지 자율점검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기업 FTA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및 위반 시 제재부담 완화(2012.10,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개정)

제2절 전략과제 추진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들을 전략과제로 발굴하여 각 부처와 협의,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 규제개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기업환경 관련 규제개선, 2009년도는 한시적 규제유예의 도입, 신성장동력 산업의 규제개혁방안 마련,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2010년도는 100대 농산어촌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학력차별 완화, 2011년도는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합리화,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 2012년도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1. 2008년 전략과제

1)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규제개선

가. 추진배경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시 1개월 이상 출국 요건이 있어 사업주는 인력활용상 제약을 받고,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의 사정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재입국이 어려우며,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인해 사업주의 행정 불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개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적정 외국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약요건을 완화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시 1개월 이상 출국요건을 생략하고, 총체류기간이 5년 미만 내에서 재고용을 허용(재고용은 1회만 허용)했다.

② 근로계약기간 1년 제한을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③ 그동안 외국인력 신청부터 사업장 배치까지 소요기간이 길어 사업주 불만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할 경우 평균 79일이 소요되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무부-노동부 간의 전산연계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을 현행 37~41일에서 21~30일로 대폭 단축했다.

④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산재·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근로자 불만이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재해·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2개월까지 출국을 유예하도록 개선했다.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 규제 개선

가. 추진배경

토지 및 토지를 활용한 주택·건축 활동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정된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 관련 인·허가절차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토지이용 및 주택·건축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적기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토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총 6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건축면적 500㎡ 이상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 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는바, 의제처리를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나, 건축계획서 등 11종으로 과다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1만㎡ 규모 공장 설립 시 약 3개월)되어 실제로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등 의제처리 효과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에는 건축계획서 등만 제출하고 실내 마감도 등은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했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했다.[7]

② 도로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시장·군수 등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출입을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이 없어 점용료 전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

7) 개선 시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마련 시간 : 종전 3개월(11종) → 1.5~2개월(7종)

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민원인이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생활폐기물부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건축법」에 따라 보관시설의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므로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대신 이동식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지상층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④ 보전산지 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 · 병원 등의 진입로 개설 시,「도로법」에 의한 도로나「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은 가능하나, 공장 · 병원 등의 부대시설로서의 진입로 개설은 산지전용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진입로 확보가 곤란해져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전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시설면적의 일정한 범위(10~20%) 내에서 부대시설 진입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⑤ 도시공원 내의 우체통, 공중전화실, 쓰레기통 등의 소규모 공원시설도 도시관리계획인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반영한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하므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1~2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도시공원 내에서의 점용허가 대상 · 기준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대상 및 기준이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 10% 미만의 변경, 화장실, 쓰레기통 등 33㎡ 이하의 시설설치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녹지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설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농가에서 축사를 건축할 경우 축사 규모에 따라「건축법」상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축사의 건축 시 건축사의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종전(2006.5.8 이전)에는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건축 시 허용되던 건축주의 직접 설계도 작성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축사 포함)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여 농지 내 축사건축이 곤란해졌다. 따라서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축사 건축은 비상주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 농지 내에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는 규정 예외 인정 및 농지 내 설치된 기존 농로(3~4m)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축산업 경쟁력 강화, 설계비 절감 및 축사건축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 · 기업환경 관련 규제개선

가. 추진배경

2008년 10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117만1,000명에 달하여 전국 주민등록 인구 대비 2.37%를 차지하고, 이 중 취업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86만6,000명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체류여건 개선이 필요해졌다.

【 체류 외국인 추이 】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10	2008.10
체류 외국인 (장기체류외국인)	26만9,641명 (11만28명)	49만1,324명 (21만249명)	74만7,467명 (48만5,154명)	91만149명 (63만1,219명)	104만5,336명 (73만8,072명)	17만1,220명 (86만5,607명)
인구 대비(%)	0.60	1.07	1.55	1.88	2.04	2.37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 거주 및 활동 편의 증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40% 수준에 머무는 등 개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생활 · 경영환경 만족도(2008.7, KOTRA)

■ **생활환경 만족도**
2006 : 만족 37.4%, 보통 37.0%, 불만 25.7%, –
2008 : 만족 42.6%, 보통 42.0%, 불만 12.2%, 무응답 3.2%

■ **경영환경 만족도**
2006 : 만족 23.6%, 보통 48.2%, 불만 28.2%, –
2008 : 만족 28.8%, 보통 39.5%, 불만 23.5%, 무응답 8.2%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국내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국인 생활 · 기업 활동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심사 · 등록 · 체류업무 관리를 위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했다. 이러한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출입

이동 출입국서비스 현황

■ **개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
■ **시행지역 :** 서울 용산, 경기 성남 · 용인 · 평택 · 광주 · 안산 · 고양,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북 구미, 광주 하남, 경남 김해 · 양산
■ **처리실적(2008.1~10) :** 총 395회 출장, 5만4,400여 건 처리

국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균 주 1회 서비스에 불과했다. 이에 체류 외국인과의 유대감 강화 및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 횟수를 평균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②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 범위 내로 하며, 임대 부지의 가격을 단지조성 단계에서는 조성원가를, 조성완료 후에는 공시지가와 조성원가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부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입주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면적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 적용 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당해 지역에 100% 입주할 때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③ 외국인이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자료 확인 및 보완 등으로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보험회사 설립 시에도 강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인이 보험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 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명령제도를 폐지했다.

④ 시내버스 및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노선도는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8]의 경우에도 한글로만 안내하고, 버스노선 ·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주요 건물, 관광명소 등에 대한 영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 및 정류장의 버스노선도(안내판)에 영문 표기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어 안내방송을 추가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⑤ 철도승차권의 출발 및 도착역은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나, 열차정보(KTX · 새마을 등) 및 좌석정보(열차번호 · 호차번호 · 좌석번호 등)는 한글로 표시하는 등 철도 승차권의 주요 내용이 한글로 표기되어 외국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승차권 규격 변경 시 철도 승차권 정보도 영문을 병기하기로 했다.

⑥ 현재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 및 신고증이 필요하나,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거소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영주권자의 국내 주민등록 말소 누락 등으로 이중 등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를 영주권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서 접수 ·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8) 버스정보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및 운행 중 자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

2. 2009년 전략과제

1)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가. 추진배경

'한시적 규제유예'란 경기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다수의 기존규제를 대상으로 시도한 사례가 없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민간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모든 규제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제로 인해 이미 형성된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폐지 ·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생산적인 논란 속에서 좌초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가 극히 어려운 동안만이라도 규제적용을 유예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를 유보하고 있던 민간투자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한시적 규제유예는 실험적이고 잠정적인 문제해결 방식임을 감안하여 과제선정 과정에서 환경기준, 위생기준, 토지의 용도별 입지기준 등 환경 · 안전 및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나 그에 비해 효과가 더 큰 과제는 보완장치를 추가하여 유예하도록 했다. 그 세부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창업 및 투자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경우 현재 건폐율이 20%인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40%로 상향조정하여 전국의 13만개 기존공장 중 약 39%인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용도지역 내에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개발면적과 합산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접제한이 도입된 2003년 이전 설립된 공장의 경우에는 연접규제를 향후 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리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중에서 창업 ·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금을 감면했다.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감면이 어려운 경우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지원효과를 보게 되었다.

② 기업의 영업활동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현실화하고 영업상 불편을 주는 집합교육이나 행정검사 등을 대폭 개선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료관광용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을 추가하여 의료법인의 신규투자도 이끌어내고, 환자들의 편의도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관광특구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등 식품·공중위생업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향후 2년간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를 5%에서 3%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에 2년간 60억원 이상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방의 창업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기간을 2011년까지 2년 연장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약 1,70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가져왔다. 서민을 위해서는 대출 학자금이 연체된 학생(약 1만명)에 대해 현행 6개월 연체 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던 것을 졸업 후 2년까지 등록을 유예토록 했으며, 생계와 취업이 극히 어려운 실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의 지원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연간 약 6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를 얻었다.

총 28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한 이후,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약 1개월 만에 절반이 넘는 150건의 하위규정사항을 개정했고, 6개월이 경과된 2009년 12월 말 기준 90% 이상의 과제를 완료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한승수 국무총리 (2009.5.27)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당시 OECD가 조사한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로 국내 경제에 작용했으며,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른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식 도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규제개혁 시도라고 높이 평가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2)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가. 추진배경

정부는 2009년 5월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위기대책과 함께 위기극복 이후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의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2009~2013) 2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9]·관광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은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이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완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17개 신성장동력 중 우선 제도개선 필요성이 큰 분야에 초점을 두고 ①기술개발에 맞추어 기술기준 등의 선제적인 마련이 필요한 분야 ②시장형성과 수요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③사업자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애로가 되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글로벌 헬스 등 규제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를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중점분야별로 전문가 TF 구성 및 전문가 간담회, 각계의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총 55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총 175건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분야 53건, 방송통신분야 24건, MICE·관광분야 14건, 그린수송시스템 관련 16건, 신재생에너지 관련 15건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주요과제 현황 】

분 야	주요 내용
의료분야 (글로벌 헬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 시 GMP 인증기간 단축 ■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 ■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의무평가 → 자율신청평가) ■ U-헬스 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줄기세포 이용 화장품 원료배합 허용 ■ 방사성의약품의 신약재심사 대상 면제요구

9)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 컨벤션·전시산업

분 야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사업'에 바이오 디젤 생산업종 포함 ■ 바이오가스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제정
방송통신	■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체계 개선 ■ 이동통신 설비기준 마련 ■ 방송통신분야 수평적 규제체계 개선
그린수송시스템	■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 관련 전기요금 반영방안 마련 ■ 경량전철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
MICE/관광	■ 고궁 등 문화재를 국제행사 시설로 제한적으로 개방 ■ 국제회의 개최시설 기준완화(옥내 면적 2,000㎡ → 총면적 2,000㎡) ■ 전시장 보세설영 행정 간소화(매 건당 신청 → 1년 단위 신청)
기타	■ LED를 이용한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대한 결제한도 제한 개선 ■ U-City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자가통신망 연계제도 마련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통하여 그동안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인증·인가, 입지, 인허가 절차, 지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추진하여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은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있어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창의적 기술혁신 등이 필요한 신성장동력의 특성상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3)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가. 추진배경

불필요한 투입·과정상의 규제준수로 인한 기업 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매체별 총량관리 및 최종 배출기준 준수 등 성과 중심의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별 사업장 규모기준의 입지제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내 규모에 따른 일률적 사업장 입지제한 합리화, 총량관리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시설 설치 시 과정상 중복규제 개선,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대기 분야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전 가능 배출한도 확대, 대기분야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시설 확대 등 7개 과제를 추진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대기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장의 인수합병, 증설 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인수합병을 제한하던 것을 개별 시설별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했다. 또한 대기기본부과금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 시에도 부과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의 70% 저감 시에만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의 경우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 삭감 시 인센티브 도입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급변하는 경제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대기 지역배출허용 총량제도도 현재 여건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배출량을 할당하고, 발전소 등 초대형사업장을 지역배출허용총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 통합관리토록 개선했다. 수질분야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변경·개축을 허용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간 개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배출권 교환을 촉진하고, 오염 총량계획 수립 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삭감 여력 등을 감안하여 부하량을 할당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3. 2010년 전략과제

1) 사업자 등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가. 추진배경

영업·종사자 교육은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안전 확보 등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일부 교육은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교육주기·대상 등이 과도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안전 및 전문성 확보'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대폭 정비하고, 교육내용·방법 등을 개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교육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법정교육제도 합리화는 다음과 같은 3대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첫째, 교육의 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은 인정하되, 대상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교육은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교육방식의 적절성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이론 및 정신교육 위주 교육은 지양하거나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교육시간과 집합교육을 최소화하

며, 대신 인터넷 교육 등을 활용하게 했다. 셋째, 교육기관의 경쟁성 기준을 통해 독·과점적 지정·운영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경쟁기관 필요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교육으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나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어 필요성이 크지 않은 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폐지했다.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	개선안	조치사항
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국토부)	20만명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 부담을 완화 또는 면제하되, 법규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교육대상을 한정 (법규 미위반자에 대한 정기교육 폐지효과)	교육지침시달
②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문화부)	1만7,077명	신규 및 정기 의무교육 폐지 (불참과태료 폐지, 시군구가 필요 시에만 실시)	법률 개정
③ 동물판매·장묘업 종사자 보수교육 (농림부)	800명	폐지	법률 개정
④ 정수기제조업자 교육(환경부)	50명		시행규칙 개정

② 잦은 교육주기를 완화하고 교육시간을 단축했다.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	개선안	조치사항
① 제과점영업자 교육(복지부)	1만2,243명	1년 1회 → 2년 1회	법률 개정
② 유흥주점영업자 교육(복지부)	2만9,000명		
③ 유흥주점종사자 교육(복지부)	2만2,500명		
④ 단란주점영업자 교육(복지부)	1만3,000명		
⑤ 공중화장실관리인 교육(행안부)	3만명	1년 1회 → 3년 1회	시행규칙 개정
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품질관리인 보수교육(식약청)	70명	1년 1회 → 2년 1회	시행규칙 개정
⑦ 정수기제조업품질관리인 교육(환경부)	50명	1년 이내 1회 → 2년 이내 1회	시행규칙 개정
⑧ 공중위생영업자 교육(복지부)	15만3,000명	1년에 4시간 → 3시간	시행규칙 개정
⑨ 소독업무종사자 교육(복지부)	1,900명	3년에 16시간 → 8시간	시행규칙 개정
⑩ 중소기업지도사 교육(중기청)	170명	신규교육 시 120시간 → 100시간	시행령 개정

③ 온라인 교육방식을 확대하여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방법 대신, 교육내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거나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대상 교육명(부처명)	대상인원	개선안	조치사항
① LPG차운전자 교육(지경부)	17만명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또는 병행 (실습교육은 제외)	시스템 도입
② 소음·진동, 대기, 수질환경관리인 교육(환경부)	3만명		시스템 도입
③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행안부)	1만6,000명		시스템 도입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노동부)	4,000명		고시 개정
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노동부)	2,200명		고시 개정
⑥ 저수조청소업종사자 교육(환경부)	6,000명		시행령 개정
⑦ 하수도기본관리자 교육(환경부)	5,000명		시스템 도입
⑧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소지자 교육(교과부)	500명		고시 개정
⑨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방사능 방재교육(교과부)	350명		시스템 도입
⑩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재교육(교과부)	300명		시스템 도입

평가·점검 등을 통해 우수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면제 등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대면집합교육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교육의 시기를 조정했다. 특정 협회·단체 등에서 독점하고 있는 교육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타 기관이 교육실시를 희망할 경우 복수화를 허용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FTA 등으로 우리 농림어업/농산어촌은 근본적 변화에 직면한 상황이며, 더욱이 '이상기후에 따른 냉해 등 농작물 피해', '구제역 발생', '쌀값 하락' 등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저탄소 녹색시대에 우리 농림어업은 체질전환 및 녹색산업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이 필요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농림어업 관련 제도 및 규제 측면에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농림어업인 불편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개선분야는 농업·농촌분야, 수산·어촌분야, 식품분야, 산림분야로 세분하여 농산어촌현장의 애로사항 과제, 농림어업 및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관련 과제,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

성 확보 관련 과제, 농지 · 산지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련 과제에 집중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농업 · 농촌분야의 경우,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작이 어려운 농지(영농여건불리지역)는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말농원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쉼터(원두막)의 설치면적을 20㎡ 이하로 하되 신고사항으로 허용했다. 농산물 생산 ·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인하했으며(거래액의 0.5% → 0.3%), 버섯재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버섯재배 원료 수입 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팽이와 양송이버섯의 표준등급규격 기준을 완화(4단계 → 3단계)했다.

【 농산어촌 현장애로 및 제도개선 】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농업 · 농촌	(1)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2) 농산물 생산 · 유통비용 절감 등 관련 제도 합리화 (3) 축산물 생산 · 유통비용 절감 등 관련 제도 합리화 (4) 농자재(농기계, 농약, 종자 등) 관련 제도 및 규제 합리화 (5) 기타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복지 · 생활여건 개선
수산 · 어촌	(1) 수산업 종사 관련 규제합리화 (2) 양식업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식품	(1)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2)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검사 관련 규제완화 (3) 식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합리화
산림	(1) 산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2) 산림 보존 ·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완화

또한 낙농가 희망 시 목장형 소규모 유가공공장의 자가 원유사용을 허용했고,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양돈분야 사육농가에 대한 배점기준(40점)을 5,000두에서 3,000두로 완화했다. 일정규모 및 시설 등을 갖출 경우 축협 외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에도 가축시장 개설을 허용했다. 이 밖에 닭, 오리 등에도 법정 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폐사피해를 보상하는 피해구제 보험 상품 개발 등 축산물 생산 ·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관련제도를 합리화했다.

더불어 농용로더(사료운반용 기계) 구입 시 농기계구입 융자지원대상을 현행 2톤에서 4톤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확대(현재 150개소 → 2012년까지 시군별 2~3개, 총 220개소 목표로 증설)하는 등 농자재(농기계, 농약, 종자 등) 관련 제도를 합리화했다. 또 농촌출신 대학신입생의 학자금 대출 신청 시기를 등록금 납부전(2월 → 1월)으로 앞당겨 등록금 납부 전에 융자되도록 했으며,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규모 제한 폐지 등 농산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복지 · 생활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② 수산 · 어촌분야의 경우,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하여 별도의 주소지 변경신청 없이 일괄 변경등록 처리, 어선 공간 확대를 위한 어선 선미부 · 상부 구조물 연장증설 부분(물받이)에 대해 어선검사 인정 허용범위 설정, 5톤 미만 해녀운송어선의 최대승선정원 상향 조정(10명 → 약 25명) 등 수산업 종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했다. 미역과 다시마의 복합양식어장의 시설비율을 어장면적 대비 15~20%까지 확대했고, 복합양식어업면허 양식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전복+해삼', '어류+전복'을 허용했다. 멍게, 피조개, 홍합의 신규어장 개발 허용 등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품종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선박계류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 등 양식업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③ 식품분야를 보자면,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 뒷다리 분할판매를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전면위탁생산도 허용했다.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산물 가공업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된장 ·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개월마다 1회 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작업장 정기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 징수 없이 연1회 이상 HACCP 준수 여부 등을 조사 · 평가하기로 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1년) 설정제도도 폐지했다.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및 축산물 HACCP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에 대하여는 One-Stop 심사토록 유사항목 통합 등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검사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또한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주류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실주 · 약주 외에 탁주 · 청주를 주류 품질인증 실시제품으로 확대했다.

100㎡ 이하 음식점에도 쌀 · 김치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실시했다. 밀가루와 같이 입자크기에 따라 쌀가루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입도(grain size) 조절형 쌀가루 기술개발 추진 등 식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를 합리화했다.

④ 산림분야에서는 양안 5km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대상 축소)했다. 산림 벌채 시 최대 벌채면적을 상향(30ha→50ha)하고, 수림대 존치의무 대신 ha당 일정 본수(50본) 이상 남기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산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농림어업인 ·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 · 농기계창고 · 집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산지 전용 수수료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를 사업 착수시점까지 연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3년 이내 분할 납부토록 개선, 국유림 사용료를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증가상한액을 9%로 규정하는 등 산림 보존 ·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3)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가. 추진배경

학력차별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과열 사교육 같은 여러

교육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나가고자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력규제사례 1차 현황 조사(2010.3~4)를 통해 정부부처 · 공공기관의 채용 · 승진 · 보수 등에서 학력에 의한 진입 · 차별규제 294건을 발굴해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력규제 유형별 개선의 기본방향(2010.4)을 제시했다.

그 후 학력규제사례 2차 현황 조사(2010.5)를 통해 정부부처 · 공공기관의 학력에 의한 진입 · 차별규제 최종 316건을 발굴하고, 개별국가자격 응시요건 중 학력규제 58건을 발굴했다. 최종적으로 사례별 세부 학력규제 개선방안 및 학력차별 완화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제도적 규제개선사항을 마련(2010.7)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공공부문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를 개선했다. 정부 ·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우 학력규제를 폐지(104건)하고, 승진 · 보수 산정에서의 학력가점을 폐지(92건)했다.

또한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완화(91건)하고, 관련 자격증 · 경력 등을 병행하도록 조치했다. 최종적으로 공공부문 내에 남아 있던 채용 · 승진 등에 관한 학력규제사례 316건 중 196건(62%)이 폐지되고, 91건(28.8%)이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② 자격증을 학력과 구분해서 사회진출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상의 학력요건을 개선했다.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자격요건에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조치를 우선 폐지하고, 서비스분야(24개 자격)에서 학력규제가 남아 있던 9개 자격 중 자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2개(임상심리사 1, 2급) 자격을 제외한 7개 자격의 학력규제를 폐지했다.

개별국가자격(132건)중 학력규제 보유자격(58건)의 경우, 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미 학력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3건을 폐지하고 1건을 완화했다.

③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규제 개선을 병행 추진했다. 전문계고교 졸업자 중 취업자에 대해 2012년부터 기업규모 및 업종 구분 없이 입영연기제도를 확대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 명목으로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학력기재란을 그대로 사용하여 학력차별의 원인이 되므로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묻는 일이 없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시달(2010.7)했다.

또한 정부부문에 한하여, 전문계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시행했으며, 2011년부터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전문계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 시행토록 유도하고, 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부터 4%로 확대하도록 했다.

4) 식 · 의약품 분야 선진화

가. 추진배경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민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식품 · 의약품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 의약품분야를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 관행적 규제를 정비하여 민간의 자율을 확대하는 등의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분야는 민간자율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식품관련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업소가 HACCP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의 맞춤형 HACCP 기준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미미하거나(즉석제조식품) 사전 위해관리로 완제품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HACCP) 등은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식품이물, 유해물질 저감화 및 합성첨가물 대체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매뉴얼을 제공 및 공급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어린이 식품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숙취해소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해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며, 매장 내 일부구역을 설정하여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수판매업소[10]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관련 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과도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창고 바닥에 양탄자 설치금지 규제와 유통전문 판매업소의 반품 · 교환품 보관시설을 영업신고한 사무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두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위생 및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타 법령으로 이관하는 등 현실을 고려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정비로 영업의 새로운 이윤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② 의약품분야는 WTO, FTA 환경에서 내수 위주 국내 제약기업의 국가성장 동력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신제품 연구개발, 허가 및 해외시장진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적으로 의약품 수출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서 수출용 의약품 허가기간을 단축(70일 → 25일)하고, 국산의약품의 잠재적 진출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입 등 현지현황, 등록절차 및 문제점 등

10)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준
현행 :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함 → 개선안 :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일부 구역을 설정하여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일정구역을 '어린이기호식품 전용 판매코너'로 설정, 그 장소에서만 고열량 · 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조치할 수 있음

을 분석하여 제공했다.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포치료제 특성을 고려하여 자가세포치료제 비임상시험자료일부(면역독성 등)를 면제하는 등 허가·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심사제를 폐지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여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도입했으며, 국제기준 ISO-GMP [11]에 부합하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0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초기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등 0상 임상시험제도 도입으로 임상시험 실패율을 줄임으로써 제품 개발 비용 절감 및 기간을 단축[12]했다. 아울러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제품화 촉진에 기여하고, 치료제의 신속 공급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와 효과성을 제고했다. 난치성 암 질환[13] 치료제의 신속허가를 위한 독성시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비임상시험자료를 면제했다.

한약품질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생약·한약제제 특성에 맞는 품목허가·신고기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등 세부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한약재 품질제고로 사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GMP[14]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③ 의료기기는 IT 기술 발달 및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융·복합 등 기술발전에 맞춰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수요에 대비해 첨단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래수요 대비 첨단 의료기기 맞춤형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15]을 개발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간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 개발 시 관련 규정 미비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수입제품을 대체할 국내 제조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분류에 'U-헬스케어 의료기기'[16]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로 품목분류함으로써 원격의료 시행(「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에 대비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수가 적용으로 U-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인 휴대폰, 자동차 등에 의료기기 기능을 결합한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했고, 1등급 의료기기의 사전신고 폐지 및 GMP 심사를 면제하여 자율관리를 확대했다 2등급 의료기기의 민간위탁품목 범위를 지속 확대(2011년 80%, 2012년 95%)하고, 심사기간을 단축(55일 → 25일)하는 등 저위험 의료기기(1, 2등급)에 대한 사전관리를 합리화했다.

이상과 같이 식의약 분야의 규제개혁은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과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규제가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4. 2011년 전략과제

1)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

가. 추진배경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우월적·독점적 지위로 인해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에서 행정기관과 유사하게 국민에 대하여 규제를 행사하는 유사행정규제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규제심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산재되어 있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제도적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은 2010년 3~10월에 10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약관·정관 등 전체 내부규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대한석탄공사 「광해(鑛害)처리규정」 제15조에서 광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및 「광업법」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단축된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를 안 날로부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개선했다.

대한석탄공사 「석탄대금채권 담보지침」 제11조에서 석탄사업 수행을 위한 연대보증은 연탄제조업자 및 광업권이 있는 자에게서만 보증을 받도록 제한하던 것을,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을 확대했다.

1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12) 개발비용 : 36억원(1상) vs 6억원(0상), 1기간(1상의 경우) : 18개월(1상) vs 6개월(0상)
13) 유효한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을 보이며, 혹은 현 치료법이 유익성을 주지 못하는 진행성 암(ICH 가이드라인 S9, Step5, 2010.6)
14)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부터 보관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15) 의약품 · 의료기기 복합제품 예 : 항균골시멘트, 보존제가 포함된 혈액저장용기, 항응고제가 코팅된 카테터 등
16) IT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로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결과를 원거리 병원에서 확인

②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

한국마사회「질서유지업무세칙」제7조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자에 대해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입장을 금지(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입장 금지)하던 것을 해당자 판별이 사실상 곤란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상기 입장거부 사유를 폐지했다. 한국마사회「경마시행규정」제5조의 2에 한국마사회 회장이 마주(馬主)등록 심의위원회 위원을 한국마사회 임직원, 마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던 것을 자격요건을 구체화 · 객관화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요인을 방지토록 개선했다.

③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

독립기념관「출자회사와 임대업체 관리내규」제25조에서 독립기념관 내 임대업체 종업원은 용모 단정해야 하며 항상 청결 ·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하고, 독립기념관은 임대업체 종업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해당 종업원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업원의 용모단정 등 의무조항 및 위반 시 기념관의 해고 요청권한을 폐지했다.

④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4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검사업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제34조에서 보건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을 외부 광고,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시험성적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전문을 기재토록 개선했다. 이와 같은 규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시설물 입주업체,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불투명한 운용관행,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2)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

가. 추진배경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발굴하고 2011년 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했다. 동 과제 511건은 부처 발굴(2010.10~12), 국민제안 접수(2010.11), 연구기관 · 지자체 건의과제 접수(2010.10~11), 부처 협의(2010.12)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고,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다.

개선과제 총 511건을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사회적 약자 75개, 농어업인 83개, 소상공인 82개, 서민 271개 과제이며, 법률개정 과제가 48개,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개정 과제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26개이다. 주요 개선과제 25건은 다음과 같다.

나. 주요 25개 과제 개선내용 및 효과

과제명	주요 내용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합리화	■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획일화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발생 → 부양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한 사례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
2.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 임산부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이어서만 사용 가능 이때 산후 45일 이상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 →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산전 및 산후에 각각 분리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선
3. 신용미달자 직업훈련 지원	■ 신용미달자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참여가 배제됨 → 직계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신용미달자 직업훈련비 지원
4. 예약진료비 환불절차 마련	■ 예약진료비 환불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안을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권고함 → 예약진료비 미환불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5. 공공도서관대출증 발급나이제한 폐지	■ 일부 공공도서관은 도서대출증 발급을 초등학생부터 가능토록 제한 → 나이제한은 국민의 자유로운 시설이용을 제한하므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증 발급규정을 개선
6.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도 개선	■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 배출 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 → 대형폐기물 배출 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번호 등으로 표시토록 개선
7.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개선	■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유아동반자까지 사용가능하나, 실제 장애인 전용으로 국민들이 인식 → 장애인화장실 표식을 개선하여 임산부 등의 활용을 제고 〈표식개선〉
8. 자동차 검사기일 맞춤형 안내	■ 자동차검사 안내를 제때에 받지 못해 과태료 납부대상이 되는 사례 발생 → 휴대전화번호 활용에 동의한 소유자에 대해서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검사기일을 안내할 계획
9. 임대주택 입주기준 합리화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매입 ·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가구원이 많은 영구임대주택(23.1~36.3㎡) 거주자는 매입임대주택(46.3㎡) 등으로 이주 허용
10.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조정	■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지역과 관계없이 6,000만원으로 상한 설정 → 수도권은 8,000만원까지 가능토록 조정
11. 군입대 휴학 시 등록금 선납 관행 폐지	■ 군 의무 수행을 위해 휴학 시 일선대학에서 반기 등록금을 선납토록 관행적으로 처리 → 군입대 휴학 시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
12.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부 국가기술자격시험 외국어로 시범실시	→ 국가기술자격 중 3종목(미용사(일반), 제과 · 제빵기능사)에 대해 중국어 · 베트남어로 출제

과제명	주요 내용
13. 케이블방송A/S 개선	■ 케이블방송 시청자가 주말에 A/S를 요청할 경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 처리하는 사례 많음 → 방통위에서 처리를 지연하는 케이블방송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개선할 계획
14. 경찰관 사건현장 진술조서 작성 개선	■ 범죄, 민원신고 시 경찰관이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기 위해 참고인 등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음 → 순찰차 내 진술조서 양식 등을 비치 · 활용하여 사건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참고인 등의 경찰서 동행부담을 경감
15.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의 중복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들에 각각 보험금 청구(피보험자가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 부담) → 동일 보험사건은 1개 보험사에 청구하여 여타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6.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하여 민원편의 제고
17. 산나물 채취대상 지역 제도 도입	■ 농산촌 주민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산림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실제로는 산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관리하여 일정기간 산주 동의 없이도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18.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개편	→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된 유사인증제도 통폐합 * 농산물 지리적표시 + 수산물 지리적표시 = 농수산물 지리적표시 →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표지(로고) 개발 · 적용 → 인증제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표지(로고)를 식별력이 높은 공동표지(로고)로 단일화
19.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 확대	■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통상 3~11월에 시행 → 농업인 교육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에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일정 개선 현재 3~11월 교육실시 → 개선 1~2월에도 교육실시
20. 중복 승선조사 축소를 통한 조업편의 제고	→ 중복 승선조사 방지를 위한 홍보용 스티커 부착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인한 어업인의 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스티커를 승선조사 시 부착함으로써 중복조사 지양)
21. 생계형 위반조업에 대한 경고제 도입	→ 경미한 위반어선에 대하여는 1차 경고제 도입(생계형 어업인의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계도 차원에서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단속)
22. 재택창업시스템 절차 간소화	→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한 법인등기 시 제출서류(8종)에 일괄 전자서명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승인 절차를 9단계로 축소
2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범위 확대	→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의한 벼, 채소 등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에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24.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2가지 서비스를 동일 시간에 받을 수 없음 →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5.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소 소재지변경 신고민원 개선	→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하여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 영업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개선

3) 민원서류 간소화

가. 추진배경

민원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가 때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의 과도한 자료 요구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이 초래된다는 면에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 · 처 · 청 · 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원 접수 시 제출받는 서류의 필요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이용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업무에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출 자료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가능한 민원업무 제출서류를 확정하고,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민원서류의 유형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행정내부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 20건, 해당 민원업무 처리에 불필요한 서류 8건, 기타 내용중복이나 불명확한 자료 요구 등 4건 등으로 총 32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대표자 이력서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신청 등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액경정통지서를 민원인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고용노동부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시 법인설립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수급과 관련된 업무에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수급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③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할 때 비료나 농약으로 이미 등록된 제품은 등록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방위사업청에 등록해야 하는 국내소재상사는 등록 시 기무사령부에서 받은 보안측정결과서를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고, 기무사령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직접 문서를 송신하도록 했다.

⑤ 산림청에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 토지의 이용계획과 토지조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산지매수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대장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⑥ 경찰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명단,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된다.

⑦ 식약청은 HACCP 적용 지정신청 시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와 1개월 이상 운영실적자료의 제출을 없애기로 했고, 방통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시 신고자의 자격증 사본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키로 했다.

4)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가. 추진배경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 국내건설업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도급금액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 평균 약 73%에 달할 정도로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한 사회실현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산업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의 근절 및 상호협력적 하도급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유형을 확대하여 하도급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확산하고자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험료 미지급·하자담보책임 전가·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 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 비용전가, 민원에 관한 책임전가 등이 부당특약유형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법률상 추가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하도록 했다.

② 하도급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납품 계약이 있는 경우 시공계약만을 하도급으로 보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③ 하도급자의 권리 주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규정에 의할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하도급 계약 시 이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해야 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하도급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④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보증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면서, 하도급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 등 지급보증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 등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및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선급금 지연 지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자의 하도급공사 착공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했다. 현행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급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기한이 없어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하도급자의 원활한 공사착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⑥ 하도급자가 건설공사의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건설공사의 검사완료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개선조치 전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금지급 등을 위해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급자가 10일 내 검사를 완료하고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는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하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⑦ 상호협력평가제도에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중소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을 꾀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 대·중소 건설업체 간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상생협력에 필수적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⑧ 하도급대금 금액 및 지급 관련 정보를 발주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을 방지하고자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을 확대했다. 이와 같은 개선 이전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공사내용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공사관련 정보

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17]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도급 관련 주요핵심 항목이 빠져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저가하도급 등 부적절한 하도급계약을 통제하기가 곤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⑨ 건설하도급 분쟁의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을 모색하고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게 했다. 현행은 건설공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도 가능하지만, 건설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조속한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⑩ 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종합건설업 등록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서 전문기관(사업자단체)으로 위탁하기로 했다. 위탁기관으로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지정·고시했다. 개선 조치 이전에는 등록업무를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자본금 심사가 강화되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사업자단체 등 전문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내실 있는 등록심사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로 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관련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

가. 추진배경

국무총리실은 그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형평을 고려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특히 동일한 규제를 대·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규제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즉 기업규모 등으로 규제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차등적용(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하고, 규제대상을 구분하기는 곤란하지만 해당규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

17) www.kiscon.net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규제적용 차등화는 고용규모, 매출액, 공사액 등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차등적용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기준, 절차, 시기 및 주기, 제재 등에 있어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기준' 차등화),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인 통신사업자를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약식으로 인가받게 되고('절차' 차등화), 규모가 작은(종업원 수, 매출액 등) 식품업체는 2014년까지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받게 되고('시기 및 주기' 차등화), 수입이 적은 어린이집은 차등화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제재' 차등화).

②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 중소기업 다수업종 규제도 개선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 개선안으로서, 대형·고급 택시 사업면허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인가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중소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AEO(국제물류 안전표준) 인증업체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가물품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③ 중소기업 다수업종 규제 개선안으로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지자체 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며,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교육을 받던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했다.

5. 2012년 전략과제

1)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가. 추진배경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학교의 편의시설물은 개방해왔으나, 공공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국무총리실에서 한전·LH공사 등 5개 기관(소속기관 포함)의 시설물 개방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개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주민 편의 증진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주차공간, 운동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되 공공기관의 성격, 주요시설 보호,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방 범위 및 방식, 이용료 등을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보안, 임대건물, 주변 환경(이용수요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시설 등), 기관 특성(외부오염을 차단해야 할 연구·실험시설 등) 등을 고려하여 개방하기 부적합한 기관들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으로서 이용수요가 높은 주차장, 운동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을 우선 개방 대상으로 했고,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3월에 국무총리실의 개방계획이 발표된 후 한전,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보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서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는 총 847개 기관(중앙부처 소속기관 710개, 공공기관 137개)의 편의 시설물이 확대 개방되었다. 편의시설에는 주차 공간(17만 5,521면), 운동장(247개소), 교육시설(356개소), 체력단련실(207개소)뿐만 아니라 테니스, 축구, 농구, 스케이트 전용 시설과 함께 컴퓨터실, 도서관 등의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을 계기로 주말을 포함하여 추석·설날 등의 연휴기간 중 일시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육시설, 도서관, 수련원 등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생들의 주말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강당, 대형 회의실, 야외잔디밭과 실외시설 등을 결혼예식과 웨딩사진 촬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 검소하고 모범적인 예식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가. 추진배경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①투자촉진 및 창업 활성화 ②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③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애로해소라는 3대 기본방향하에 시행령 개정 등 정부 내 절차만으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으며, 경제단체·지자체·각 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단계를 거쳐 총 236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분야별 과제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① 투자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수도권의 경우는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억원(수도권 240억원, 지방 160억원)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공장증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업종별 입주구역을 구분 없이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융·복합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산학연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현물출자 규모제한(자본금 50%)을 폐지하고 영업인가 시 6개월 이내에 주식의 30% 이상 공모의무를 1년 6개월 이내로 연장해줌으로써 부동산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조성 면적제한을 기존 10만㎡에서 5만㎡으로 완화하고, 기존 장사시설(葬事施設) 내 또는 연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② 기업의 영업활동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상 불편을 주는 중복교육 및 수수료 부담 등 각종 제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 영업자가 2개 이상 유사업종(예 : 식품소분·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 위생교육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부과 유예(6개월) 및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 각종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동일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영업수행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여 중복적인 행정제재도 개선했다.

③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상공회의소 회비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즉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특별시 소재 340억원, 광역시 소재 100억원, 시·군 소재 50억원)인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부담(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450만원)했으나, 연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회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민의 애로해소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입 응시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고3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입 전형료 등을 2014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는 39개 국립대학의 경우 입학전형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미한 건축설비(전화설비, CCTV 교체 등)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입주민이 자유롭게 교체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시설 내 예식행위 규제로 인해 도시공원 내 결혼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결혼식을 장려하여 건전한 결혼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기업현장 및 서민 생활현장에서 즉시 시행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전체 236건 중 195건, 82.6%) 위주로 선정했다. 규제개선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 시행령(42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조치를 완료(2012.10.29)했으며, 나머지 법령 개정작업은 소관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

가. 추진배경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데 반해,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여 노령 빈곤과 부양 부담 증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각종 일자리 연령규제는 고령층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유사 차별 시정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정부사업 일자리 지원,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이·통반장 지원 시 연령상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주요 개선내용 및 효과

주요 개선내용으로, 돌봄·자원봉사 등 정부 일자리사업 중 관행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28개 사업의 규제를 개선하여 약 6만5,000개 일자리에 대한 고령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환경미화원·조리원 등 357건 1만5,000여 개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연령 제한 폐지 및 동일직종에 대한 기관별 편차를 제거토록 했다. 또한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 정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57~60세까지 기관별로 상이한 것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에 맞추어 60세로 연장토록 했다. 그리고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80개 지자체가 조례·규칙 등으로 이·통반장 연령상한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토록 하여 67개 지자체(3만7,000여 일자리)가 폐지·개선했다.

【 연령규제 개선 현황 】

구분	사업	채용	정년	위촉	계
중앙부처	28	123	27	0	178
지방자치단체	0	226	55	70	351
계	28	349	82	70	529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에 따른 고령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진입장벽 제거로 약 11만7,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고령층의 고용기회 제공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확충' 등과 연계될 경우 고령층 대상 일자리 제공이 늘어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지역별·기관별로 존재하던 불합리한 차별과 편차 개선은 사회의 형평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각종 연령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고령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민간 유사 직역으로 확산되어 고령사회에 따른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총 20~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2012.12.31 기준) 】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정부위원 (6)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법제처장
민간위원 (15)	이병진	경상대 객원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이사
	사공 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박영일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백윤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영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학태	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2.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지원 기능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이 수행하고 있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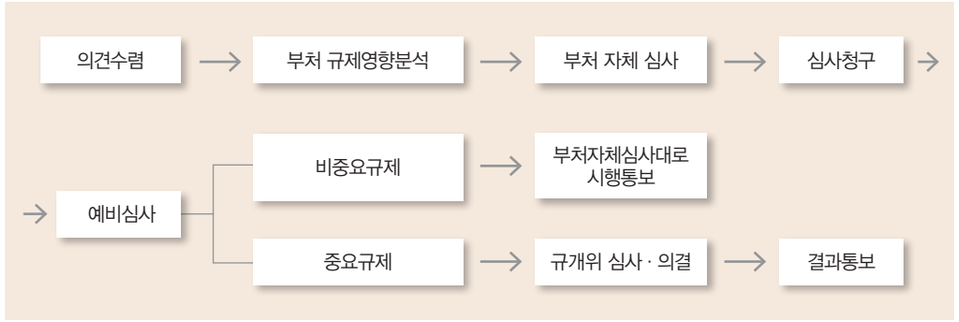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78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김황식 국무총리(2012.1.26)

제2절 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금융위원회

2008년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등 2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8건, 강화 34건 등 총 7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53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17건은 개선권고, 2건은 철회권고했다.

2009년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2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7건, 강화 32건 등 총 6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62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6건은 개선권고, 1건은 철회권고했다.

2010년도에는 「예금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31개 법령에 대해 신설 103건, 강화 11건 등 총 11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98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6건은 개선권고, 10건은 철회권고했다.

2011년도에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0개 법령에 대해 신설 26건, 강화 22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5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41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5건은 개선권고, 5건은 철회권고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행법」 개정안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은행 등 금융기관 현 상임임원, 2년간 금융기관 상임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 최근 2년간 당해 은행의 상임임원이었던 자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은행이 겸영 · 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은행업무와 구별하여 별도 장부 및 기록문서를 보유토록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겸업 · 부수업무(판매대행업, 신용카드업 등)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무를 완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과 같이 고객과의 거래 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낮춘 후 거래하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동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권고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증권시장의 안정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증권거래소 규정)에 의해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2009년 2월 4일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령」에서 인정되는 차입공매도를 하위규정인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단일조치보다는 특정종목, 업종, 전면금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매도를 제한하는 원칙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매도 금지기간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동성 감소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기간을 정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개선권고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 및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시행령, 신용카드 등의 이용조건 등을 허위·과장하여 설명하는 행위, 카드사 임직원 등에 과도한 성과금, 강제할당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하고,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감독규정,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 지급행위, 신용카드 신규 출시 이후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축소변경 금지 및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을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영업직에도 성과금 지급 금지행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업직 임직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모든 고객이 부가서비스 변경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고지방법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했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 범위를 자산 70억~100억원인 주식회사 가운데 ①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업체 ②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 또는 ③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외감대상 선정기준은 전체적으로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매출액 기준의 경우 경기상황, 환율 또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외감대상 기준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외감대상 선정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을 제외하도록 개선권고했다.

5)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보험업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규정한 ①보험계약의 중요사항(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 ②계약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과정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보험금 체결 단계(모집종사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보험금 청구단계(담당자 및 예상심사기간 등), 보험금 심사단계(심사지연 사유 등), 보험금 지급 단계(지급일자 및 지급방식 등))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분야가 보험인 점을 감안할 때 동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①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소비자의 법적 구제방법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 포함하고 ②설명의무가 보험관련 각 과정단계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이 아닌 유선 등을 통해 항목별 문답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가 내용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보완토록 개선권고했다.

6)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저축은행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한 내용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권고했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등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단계 대부중계가 대부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고객을 모집하여 중개하는 자가 미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다단계 중개 금지의 대부금리 인하 효과가 의문시되고 중개업체를 통한 대부업체의 고객모집비율이 현재 약 8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규제가 서민들의 자금난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제 등 대부금리 하락을 위한 여타 규제가 도입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철회권고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조항(과징금 부과)을 신설하여 위법성은 낮으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2차 정보수령자의 시장정보 이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제재토록 한 심사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과도하게 포괄적인 내용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과잉규제하고 시장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①'동 정보가 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자' 로 규제대상을 한정하고 ②'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주문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의 예시를 추가하는 등 하위 시행령 작업 시에 정상적인 거래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③'우려' 라는 막연한 표현을 삭제하고 ④구체적 위반행위는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 필요성이 있는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당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의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법위반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 내용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건전성 규제의 경우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전법」 등 전 금융업권에서 과징금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체계를 전금융업권에 통일되게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정안은 소비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권익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①금융회사가 감독충실 입증 시 과징금 부과 면제 조항 ②과징금 부과 결과에 불복 시 이의제기절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개선권고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08년은 개선권고 4건, 원안의결 6건, 비중요규제 17건 등 8개 법령 총 27건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6건, 원안의결 2건, 비중요 20건 등 9개 법령 총 32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0년은 개선권고 4건, 원안의결 42건, 비중요규제 38건 등 14개 법령 46건에 대하여 심사했으며, 2011년은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1건, 원안의결 30건, 비중요 26건 등 11개 법령 32개 규제에 대해 심사를 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탈취·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규제내용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 규제(안)」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증거를 통해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 시에는 수급사업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와 지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재계약 어려움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일몰제(2년)를 적용하고 규제도입의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나. 「하도급대금의 원칙적 감액 금지 규제(안)」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부당한 감액의 사유를 삭제하고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감액으로 간주하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은 보장해주면서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에 따른 장기계약 기피, 해외업체로의 거래선 변경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제를 철회권고했다.

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개 규제(안)」

규제개혁위원회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에 대

해 심사한 결과,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와 달리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어 명단공개가 더해질 경우 중복처벌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근거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개는 과도한 권리 침해로 판단하여 철회권고했다.

2)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부의 편법적 증여를 행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규모 내부거래의 계약체결 방식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대규모 내부거래가 경쟁입찰에 의한 거래인지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지원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제안한 개정안의 조문 해석으로는 상품·용역거래뿐만 아니라 자금·자산·유가증권 등의 거래까지 모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계약체결 방식의 공시항목 추가는 '상품·용역거래'에 한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또한 미리 건별로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여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공시대상 기업들이 분기별 합산액(개별 계약 건을 합산)으로 추정하여 일괄 공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유형별로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2008년에는 개선권고 7건, 원안의결 8건, 비중요규제 65건 등 45개 법령 총 80건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도에는 개선권고 5건, 비중요 62건 등 53개 법령 총 67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0년은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5건, 원안의결 62건, 비중요규제 57건 등 35개 법령 69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1년에는 개선권고 8건, 원안의결 139건, 비중요 126건 등 60개 법령 147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를 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안

지경부는 공산품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등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섬유제품 제조월일 표시 의무화'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섬유제품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는 행정예고 절차 누락으로 인한 흠결이 있다는 점, 지경부 내 관계부서와 협의가 미흡한 점, 섬유제품 관련 국제적 추세와 달리 한국에만 동 규제를 도입함에 따른 비관세장벽 논란 및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 대립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조연월 표시 의무화를 철회권고했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지경부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공급의무자 대상, 의무공급량 및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의 할당량 등을 규정하는 내용과 경제성이 매우 높아서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 허용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대수력, 기존 방조제 활용한 조력, IGCC, 부생가스 등에 대해서는 비거래인증서를 발급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급의무자의 대상, 의무공급량 중 태양광에너지 공급할당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한 기술적 규정으로 원안 의결하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지경부의 안대로 하되, 3년마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또한 IGCC 및 부생가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충당한도 제한 규정은 모법에 의무공급량 충당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둘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권고했다.

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

지경부는 공표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서, 정량에 미달 판매,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 중단(감축), 최고액 또는 최저액 위반 판매, 폭리 목적의 사재기 행위,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과 수요를 위해 특정 불법행위 위반자에 대해 처벌할 뿐만 아니라 위법사실을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 중단 또는 감축' 의 경우 기업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판단했다.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재량적 악용의 우려가 있어 공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권고했다.

제4절 국토 · 해양 분야(산림분야 포함)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항공법」개정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27개 법령의 신설 · 강화규제 696건을 심사하여 632건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39건은 개선권고, 22건은 철회권고, 3건은 부대권고했다.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는 반면, 주택건설단지 내에 자전거보관소가 부족하여 자전거 유지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다(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30대/100세대, 기타 시 · 군은 50대/100세대). 자전거주차장은 동별 출입구 및 경비실 주변에 설치하며, 아크릴 · 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지붕 및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제를 신설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결과, 자전거주차장 설치여부 및 규모 등은 주민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회권고했다.

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국토해양부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로부터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층에 한하여 수돗물을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화장실을 제외한 공용공간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설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 도입취지가 음용수용 배관설치 의무화를 통해 수돗물의 위생적 공급 및 음용률 향상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효과가 적고 건축주의 불필요한 부담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보다는 오히려 음용수용 배관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비규제 대안의 활용을 통해 수돗물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권고했다.

3.「항공법」개정안

국토해양부는 개발예정지역 지정 ·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 통상 1~3년이 소요되는바,

이 기간 중 예정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로 보상비 증가 및 사업수행 지연을 방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항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예정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명문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 의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용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예정지역 내에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토록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행정환경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또한 항공교통사업자의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업정지 등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금액 상한을 2,000만원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며, 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결과, 정부는 19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한행정사회 등 35개 사업자단체의 설립 강제와 회원가입 강제를 폐지한 바 있고, 복수의 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을 제한하고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협회의 독점적 지위를 고착화하여 담합을 조장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며, 시장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큼에 따라 철회권고했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 창고시설에 대해 종별 면적을 차등 제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에 대해 면적을 제한하며, 준주거지역 내 운동시설 · 축사와 준공업지역 내 축사에 대해 도시계획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의 범위를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 등 1차 생산물을 가공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 으로 한정하되,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지정 목적,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건축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종별 허용건축물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시행령(안) 제37조제3항)함으로써 법령을 일탈하고, 주민들의 반대 또는 찬성을 이유로 님비(nimby)현상 또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을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으로 제한할 경우 식품공장의 입지가 실질적으로 곤란해지고, 용도지역 행위제한 강화와 관련한 주민민원, 소음, 교통영향 등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철회권고했다.

6.「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토해양부는 현행 건축물 중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1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및 지진구역,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지진에 대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은 건축물 중에 신고대상 건축물(신축 제외),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1개 층의 증축(증축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 한정)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결과,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전체 건축물로 구조안전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나,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확대에 따라 건축물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 · 개축에 적지 않은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 등을 고려할 경우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지진발생이 적고 피해도 적으므로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철회권고했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재결서 송달 시 현행 공시송달의 요건은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재판장이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을 한국 대사 · 공사 ·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할 수 없는 송달의 경우, 즉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반송되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익사업 수용재결의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의 요건을 확대코자 하나, 행정절차의 편의성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위헌적 문제

의 소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며, 현행 공시송달의 요건은「민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나 그럼에도 개별 법령에서 요건을 확대할 경우 하위법령이 아닌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법률 간 형평에 합당하고 또한 동 개정안에서 공시송달 요건으로 추가하려는 '수령 거부'는「민사소송법」제186조에 따른 '유치송달'로도 대안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철회권고했다.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해양부는 종전 택시업종에 한하여 범죄경력자의 자격취득을 제한하던 것을 여객자동차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버스업종의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 가중처벌 특정범죄 및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간, 택시업종의 경우 범죄경력자 자격취득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 가중처벌 특정범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성범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20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종사자가 택시를 이용한 살인 등 강력범죄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버스업종의 경우 버스업종의 범죄경력자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범죄와 버스업종 종사자 간의 연관성, 범죄발생 통계분석 등 사전 연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상대하는 버스의 일반적 운송양태를 고려할 때에도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했다.

택시업종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대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고,「성매매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경력자가 운송사업 종사 시 성범죄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조항 삭제토록 개선권고했다.

9.「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토해양부는「물류정책기본법」제61조에서 국내 물류기업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할 세부규정이 미비해 글로벌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육성기업 선정기준으로서 종합물류기업인증을 취득하고, 매출액이 1조원 이상, 해외매출비중이 총매출의 1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또한 지원기업 선정기준은 종합물류기업인증을 취득하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해외매출비중이 총매출의 30% 이상일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매년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 미달인 경우 대상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자격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견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해외매출비중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해외진출 실적·계획 등 정성적 평가기준을 추가하고, 자격심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제5절 농림·수산 분야

2008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2건, 원안의결 4건, 비중요규제 66건 등 43개 법령 총 74건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5건, 원안동의 2건, 비중요규제 85건 등 29개 법령 총 53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0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5건, 원안의결 88건, 비중요규제 82건 등 39개 법령 94건에 대하여 심사했고, 2011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8건, 원안의결 97건, 비중요규제 107건 등 46개 법령 107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

현행「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9조에 의하면 수산동물양식자 등이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수산동물전염병 확산방지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여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산동물이 취합·교류되는 수산동물집합시설 관리자에게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결과가 있는 수산동물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산동물양식자뿐만 아니라 위판장, 활어공판장,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수산동물집합시설 관리자도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시설관리자가 수백 개 이상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수산동물

의 전염병 감염여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위반 시 과도한 제재(형벌)가 가해지므로 수산동물 집합시설 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철회권고했다.

2.「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 신청에 의해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경쟁조업으로 인한 자원남획 등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구조이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변화, FTA 추진 등 우리나라 어업 환경은 어업구조 개선을 필요로 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률 제정안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어업구조개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업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중 어업구조개선 사업희망 정도,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수산관계 법령의 준수정도를 고려하는 선정기준을 담고 있다.

강제감척에 대해 일부 업종별 수협(기선 권현망 수협, 대형기저 수협)에서 직권지정에 대한 내용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 및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결과, 공유자원은 남획될 소지가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정부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시 개별 사업대상자의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정책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대상자 선정 후 불이익 처분 관련 조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사업대상자의 생계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최소한의 제한조치만 하도록 개선권고했다.

3.「농지법」 일부개정안

유휴농지는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저해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경작자 지정제도[1]를 도입했으나, 농업 인력의 감소, 지자체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해당제도를 보완하고「농지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서 농업인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휴경지)의 소유자에게 그 농지의 임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를 청구한 농업인은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법률 제20조에 따라 대리경작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결과, 유휴농지는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저해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휴농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임대청구를 사인에게 직접청구 시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1) 대리경작자 지정제 : 지자체장이 유휴농지에 대해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

4.「축산법」 일부개정안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국무총리실 주관)으로「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1.3.24.)이 수립되었다.

농식품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등록제로 관리 중인 부화업, 계란 집하업, 종축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업(소·돼지·닭·오리) 등 축산업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있다. 축산업의 허가는 부화업,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도록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검토 결과,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금지를 위해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되,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관련 제20조 제1항 제7호(「동물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경우 축산업의 영업정지)는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5.「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식품부는 2010년 배추파동 등을 계기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기능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껴 농수산물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가격안정을 발하여 경매를 중단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통제가 공급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급조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중기청은 시장왜곡 및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관련 협회 또한 생산농가가 붕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격안정명령제가 농산물 생산자 및 산지 유통인들에게 과도한 손실을 부담시키고 시장가격 결정기능, 유통구조의 왜곡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 곤란 등 규제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여 가격안정명령제 도입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제6절 방송통신 분야

2008년에는 개선권고 14건, 원안의결 8건, 비중요규제 28건 등 17개 법령 총 50건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도에는 개선권고 6건, 원안동의 2건, 비중요규제 15건 등 9개 법령 총 23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0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8건, 원안의결 28건, 비중요규제 16건 등 14개 법령 37건에 대하여 심사했으며, 2011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5건, 원안의결 47건, 비중요규제 43건 등 18개 법령 53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를 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방송법」 개정안(2009.12.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상파 DMB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개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사용채널의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운용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직접사용채널[2]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상향입법했으며, 운용계획서 미제출 등 법규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시행령에서 규정 예정)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 처분도 본 개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규제만으로도 직접사용채널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규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직접사용채널의 운용계획서 제출은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방송법」 개정안(2011.9.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편적 시청권[3] 보장을 위해 기존「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방송법」으로 상향입법하고, 신설되는 사전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확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를 중계권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추가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자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계방송권자에 사전 확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2호)과 관련하여 가시청가구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방송하는 행위는 이미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의 금지행위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조항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개정안 제4호)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정당한 사유' 의 정의와 기준, 사례 등을 추후 시행령에서 명확히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서비스가 다양화하면서 한정된 번호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번호자원의 관리를 위해 이미 부여된 번호의 변경이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에 따라 운영되던 번호의 회수 및 변경 정책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전기통신번호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번호 변경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번호변경 ·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신번호이용자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와 번호통합정책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철회(삭제)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변작 또는 거짓으로 표시되는 번호의 차단 또는 정정, 국외발신 번호에 대한 안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 위법행위자(보이스피싱) 적발 시 5,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고려할 때 통신사업자에게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행위자와 동일한 벌칙(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했다.

2) '다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당해 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지역채널은 제외)하는 방송채널'로 명확히 규정
3) 보편적 시청권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방송법」 개정안 제2조)

제7절 고용노동 분야

2008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4건, 원안의결 4건, 비중요규제 36건 등 28개 법령 총 45건에 대해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1건, 원안동의 1건, 비중요규제 23건 등 17개 법령 총 27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0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38건, 원안의결 27건, 비중요규제 24건 등 15개 법령 31건에 대하여 심사했으며, 2011년에는 개선권고 2건, 원안의결 33건, 비중요규제 32건 등 14개 법령 35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는「ILO 협약(중대 산업사고 예방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95년부터「공정안전보고서제도(PSM)」를 시행해 화학설비의 운전 중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제반 안전보건관리를 문서화하여 실행해왔다. 제도가 정유·화학업종에 도입되어 재해 감소효과를 상당 부분 거두자, 이를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선박 건조업에 확대(200인 이상 사업장 예정)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경총 및 주요 조선업체에서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고용노동부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업주들은 정유·화학업종과 달리 조선업은 적용설비의 범위가 넓고 이동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화학업종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공정안전보고서를 조선업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주장했다.

현재의「자율안전수준평가제도」만으로도 재해 감소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조선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률 개정이 진행되어 산재 감소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류작성 등 사업주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서 의견을 조율하여 본 규제안을 철회권고했다. 규제도입 절차의 문제와 현재의「자율안전수준평가제도」를 통한 보완가능성을 고려했고, 재해율과 사망률이 조선업에 비해 높은 업종이 다수 있는 현실에서 조선업에 동 제도가 도입되면 이는 결국 타 업종으로 확산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2.「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현행 공인노무사는 등록 전에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은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실시의 법적 체계가 미흡하여 공인노무사 및 고용된 직무보조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첫째, 다른 전문자격사의 유사 법률을 고려할 때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되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둘째, 직무보조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사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고용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직무보조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을 감안할 때 공인노무사의 자율적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규제안을 철회권고했다.

제8절 환경 분야

2008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5건, 원안의결 6건, 비중요규제 58건 등 37개 법령 총 71건에 대해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7건, 원안동의 5건, 비중요규제 59건 등 41개 법령 총 72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0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12건, 원안의결 85건, 비중요규제 77건 등 36개 법령 99건에 대하여 심사했으며, 2011년에는 철회권고 3건, 개선권고 14건, 원안의결 88건, 비중요규제 75건 등 37개 법령 105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를 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자본금 규모를 강화하여 기존 5,000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000만원 이상)을 1억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저자본금 기준은 법인(또는 회사)이 위험 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부도 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의 폐지 또는 완화가 일반적인 추세이며, 자본금 강화가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활성화 및 부도 시 방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보증보험 가입 등 별도의 제도가 있으며,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보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2.「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부에서는 중수도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동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수도 설치의무는 중수도 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사업 중 정부·지자체·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신설 부분과 관련하여 재이용시설 설치·시공에 필요한 기술 능력 등을 정하는 것 외에 등록자격을 일부 업종에만 한정하는 것은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했다. 재이용수요금은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3.「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해 허가를 내줌에 따라 수변구역 내 공장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오수발생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변구역에서의 설치 제한 시설에 공장(단, 농산물 가공업종 일부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추가하고자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수변구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입지를 제한하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폐수비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즉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다만, 제1호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로 농산물 가공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수 있다' 로 개선토록 권고했다.

4.「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환경부는 석면비산 우려가 있는 석면건축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건물 소유주의 자발적인 석면 해체·안정화 관리 등을 유도하고 석면비산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신청에 의한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을 도입하여 3년마다 갱신토록 하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갱신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토록 했다. 또한 석면안전건축물 인증기관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 위법·부당 행위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였으나 노출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 '석면안전건축물 인증' 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후 안전성을 재점검하게 하고, 위법·부당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은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증갱신제도는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정부의 관리비용과 민간의 준수비용만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5.「수도법」 일부개정안

환경부는 효과적인 물 수요관리 및 절수제품 보급을 위해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에 대해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했다. 세부 개정사항은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물 사용기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하위 법령에서 물 사용량이 표시 대상 항목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결정을 위해 물 사용량 측정 및 보고 의무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하고, 물 사용량 표시의 법적 근거만 「수도법」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광고 시 물 사용량 표시를 포함토록 하는 것은 여타 에너지(전기 등)의 경우 동일한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현재 「수도법」상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을 뿐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절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경우 설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절수설비 설치검사 의무는 이미 설치의무와 불이행 시의 처벌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감독 기관이 건축 준공검사 등을 통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연간 6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신축 건물에 대해 별도의 검사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산업 폐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인근 하천과 수생태계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3종 사업장 및 시설 용량이 일일 200㎥ 이상 700㎥ 미만인 공동 방지시설에까지 폐수배출시설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골재협회 등 관련업계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3종 사업자의 영세성, 시설운영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국가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폐수배출업소 등의 오염물 질량 측정 및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배출기준 준수여부 감시가 주목적임에도 측정기기 구축·운영비를 사업체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설치·운영비용 분담 및 완화방안 마련 등 시행 여건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제9절 보건복지 · 식약 분야

1. 보건복지부

2008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27건, 원안의결 30건, 비중요규제 138건 등 58개 법령 총 197건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에는 철회권고 9건, 개선권고 16건, 원안동의 20건, 비중요규제 135건 등 60개 법령 총 180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2010년에는 철회권고 12건, 개선권고 19건, 원안의결 88건, 비중요규제 68건 등 48개 법령 119건에 대하여 심사했으며, 2011년에는 개선권고 9건, 원안의결 103건, 비중요규제 100건 등 45개 법령 112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를 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의 오 · 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제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의약분업 예외기관에서 제외되어 의약분업 약국이 됨으로써 지역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그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문의약품 오 · 남용에 대한 객관적 ·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여 철회권고했다.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서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아니된다' 고 일반적인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종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는 직무수행 중 실종노인임을 알게 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실종노인의 빠른 발견과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실종노인의 빠른 발견과 실종노인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종노인과의 접촉기회가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업무 · 고용관계로 사실상 노인 보호 · 감독자' 에게는 다시 한 번 신고의무를 특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불법 부당한 보호시설 이용의 근절방안으로 선량한 의료인 등 일반인에게 실종노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제10절 일반행정 분야

1. 국무총리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무총리실 소관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신설규제 17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10건은 개선권고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정부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별로 목표를 설정 ·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 결과를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개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한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의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고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기반이 필요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기업에 대해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보고의무를 정비할 계획인 점, 개선명령 이행 시 지원제도가 병행된다는 점,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동 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했다.

다만 정부의 개선명령에 대해 관리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작성,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량 감축 담합 등의 반(反)경쟁행위 가능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의 평균이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 또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회사의 경우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사용량 전체를 합산하여 지정하되, 회사 전체로는 배출 기준량에 미달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을 배출하는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규모 직영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지정 · 고시 때 제외여지를 열어두는 보완장치로서의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배출량 최소기준에 근접하는 소규모 관리업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관리업체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목표관리제의 실질적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관리업체의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관리업체의 경우 차년도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등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 말까지 센터를 통해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리업체가 다수 부처로부터 이중으로 규제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을 단일화하고, 지속적인 업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관리업체별 합리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행계획서 수정 명령 기한을 12월 말로 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명세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영업비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별도지침을 마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권고했다.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는 제1차 배출권 계획기간(2013.1.1~2015.12.31)의 시작 전까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며, 신규 진입자를 위해 예비분을 확보해야 하며, 할당 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전 배출권 배분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는 무역집약도,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권을 신청한 경우 정부는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톤당 100만원 이내에서 배출권 평균가격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제1차 배출권 계획기간 도입시기를 국제동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2013~2015년 중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예상치 못한 신·증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배출권 할당량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후는 국제동향·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톤당 평균가격의 3배 이하로 완화하고 톤당 100만원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며,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을 준비여건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할당 대상 업체,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 등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고 계획기간 내의 이행 연도에 한하여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대하여 정부는 승인할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유상할당량의 조기경매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할당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배출권의 이월을 계획기간 간에도 허용하되, 1차 계획기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1차 → 2차 기간 간의 이월에 한하여 금지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계획기간별 유·무상 할당비율,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할당대상 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 중 2차 계획기간(2018~2020)의 3% 유상할당 부담이 과도한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 고려, 거래시장의 가격지표 기능 제시, 향후 유상할당제 본격도입에 대비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경험 축적 측면에서 배출권 일부의 유상할당이 필요하다는 점, 외국은 처음부터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거나 1차는 일부 유상, 2차는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추세임을 감안, 배출권의 3%를 유상할당하더라도 민감업종으로 인한 부담 유예, 조기감축 실적, 상쇄, 이월, 차입 등의 규제완화조치를 활용하여 유상 할당분을 구입하지 않고도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녹색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 결국 온실가스 감축업체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3% 유상 할당은 원안동의했다.

탄소시장 가격의 급등락 방지를 위해 배출권의 시장 공급량 또는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시장안정화 조치 중 차입 한도, 상쇄 한도, 최고·최저 매매가격 설정은 외국의 사례도 있으므로 원안동의했고,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 설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이월 한도 제한은 동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안정화 조치 방법인지 의문시되고, 업체의 감축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권고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검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나 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검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는 법률 위임 범위 내의 규정이며, 검증기관의 10억원 이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외국사례, 유사입법례를 감안하고, 보험료가 검증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했다.

그러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검증기관의 업무정지나 제한, 동일업체 3년 초과 연속 검증 금지, 할당 대상 업체의 검증기관 선정방법 고시위임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권고했다.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미보고 시 주무관청이 배출량을 10~20% 가산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벌칙적 성격의 규제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고,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권고했다.

2. 법무부

2009년도에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국적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등 6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1건에 대해 개선권고했다. 2010년도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호사법」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2건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5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철회권고, 1건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 관리법」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의 수집·관리를 통해 외국인 범죄·사고, 불법체류 등을 억제하고 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17세 이상 입국 외국인의 지문·얼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여론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정하고,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정보제공 예외 범위를 '외교·경제·국방상 지문제공이 부적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학술·문화행사 입국자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외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정부부처, 각종 경제·사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했다.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법무부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영치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치대상 범위(누적금액, 위반횟수)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3. 소방방재청

2008년에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2건, 원안의결 1건, 비중요규제 22건 등 13개 법령 총 26건에 대해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에는 개선권고 1건, 원안의결 1건, 비중요규제 6건 등 7개 법령 총 8건에 대해 심사했다. 2010년에는 철회권고 3건, 개선권고 4건, 원안의결 25건, 비중요규제 22건 등 9개 법령 32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2011년에는 철회권고 2건, 개선권고 6건, 원안의결 32건, 비중요규제 21건 등 19개 법령 40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를 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대부분이 구획된 실과 통로를 가지는 구조이고 지하층에 많이 있어 화재 시 농연이 발생하면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내장식물 변경 시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적법한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확인·지도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현행 다중이용업주에다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까지 확대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첫번째 규제는 기존의 소방점검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적법여부의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철회권고했다. 두번째 규제는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점검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입점 등을 기피하게 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의 협조를 얻어 다중이용업주가 점검하도록 개선권고했다.

4. 경찰청

2008년에 원안의결 1건, 비중요규제 1건 등 2개 법령 총 2건에 대해 규제심사를 했으며, 2009년에는 원안의결 2건, 비중요규제 2건 등 1개 법령 총 4건에 대해 심사했다. 2010년에는 철회권고 1건, 개선권고 2건, 원안의결 10건, 비중요규제 4건 등 10개 법령 13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2011년에는 철회권고 1건, 원안의결 10건, 비중요규제 7건 등 5개 법령 11건의 규제에 대해 심사를 했다. 주요 개선권고 및 철회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가능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원동기의 구조나 운전방법은 자동차와 전혀 달라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일본·프랑스·독일 등 일부 국가는 자동차운전면허로 50cc 미만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업계와 중소기업청은 본 규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동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부족과 취약한 교통안전교육시스템이 근본 원인으로 면허제도와 무관하고, 원동기의 대부분은 스쿠터이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동기 단독사고 사망자 중 무면허(43%)와 원동기 면허소지자(28%)가 71%를 차지하고,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원동기를 운전하다 사망한 비율은 2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첫째, 운전면허 종류와 원동기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둘째, 2008년 이륜차 교통사고의 법규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전의식 부족이라고 파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4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제1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 규제개혁위원회와 국가경쟁력위원회 쌍두마차 체계

1. 시장원리의 잣대로 본 규제개혁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제에 대한 답은 뜻밖에 간단한 발상의 전환에서 나왔다. '규제개혁의 다양한 추진주체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여러 추진주체가 규제개혁이라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즉 시장에서의 경쟁원리를 규제개혁 추진에도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이라는 시장에서 규제개혁 소비자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이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여러 공급자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단일한 규제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장보다 규제개혁 소비자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질 좋은 규제개혁 상품이 빠르게 공급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 규제개혁의 새로운 경쟁자들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기존의 공급자들을 그대로 두고 새로 탄생한 새로운 공급자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다만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혼

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규제개혁의 거시적 방향 설정과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운영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기존 공급자인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규제개혁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와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분담은 단지 규제개혁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지 양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법정조직인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에 명시된 규제개혁에 관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밖에 규제개혁 관련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명확하게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법제처 등 규제개혁위원회 이전에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중앙부처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본연의 업무영역 안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영역을 넓혀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바야흐로 규제개혁시장에 언제라도 새로운 선수가 등장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만든 것이다.

3. 규제개혁 연합군 탄생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규제개혁의 쌍두마차를 앞세우고 느슨한 영역 구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부처별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 다수의 적토마를 거느린 규제개혁 연합군을 구성한 것이다. 규제개혁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규제개혁의 쌍두마차가 지휘하고, 유사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광역화된 개별부처들이 각각의 편대를 구성하여 저마다의 위치에서 규제개혁의 선봉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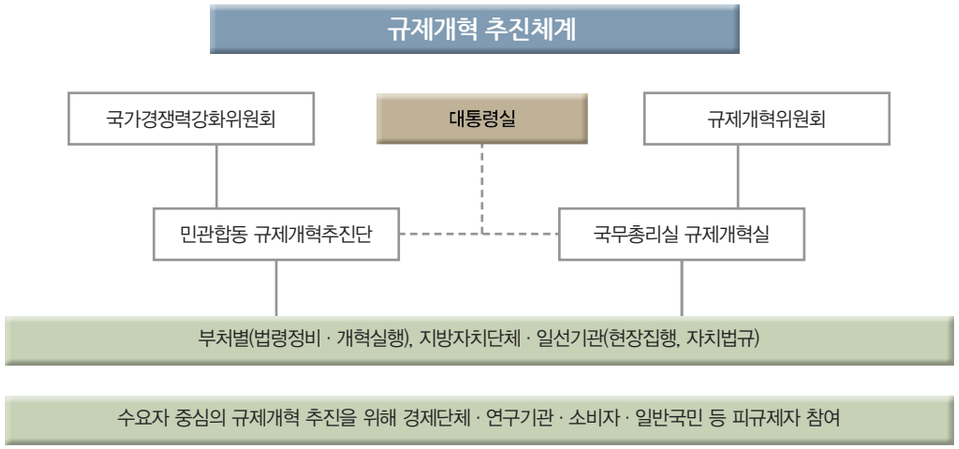

출처 :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이야기』 (2011)

제2절 규제등록제도 내실화

1. 규제 등록제도 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1999년 이후 등록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를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등과 함께 부처별·유형별·성격별로 분류된 규제통계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규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업종별·규제활동별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로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 등록했던 기존의 기준을 바꿔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해 등록토록 해 규제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등록규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등록규제 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1998년 8월 총 1만717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작업으로 2008년 말에는 총 5,18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09년 규제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작업을 통해 2,27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해 등록한 결과 등으로 2011년 말 현재 6,951건(주규제 기준)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등록규제 수(2012.12.31 현재) 】

부처명	2012	2011	2010	2009	2008
경찰청	124	124	122	97	97
고용노동부	313	330	321	304	221
공정거래위원회	208	198	161	115	116
관세청	31	30	32	30	36
교육과학기술부	419	417	494	488	247
국가보훈처	51	51	52	24	16
국무총리실	4	4	4	0	0
국민권익위원회	2	2	1	1	2
국방부	20	16	22	22	9
국세청	14	14	9	9	9
국토해양부	1,530	1,477	1,574	1,634	929
금융위원회	747	714	708	707	759
금융감독원	1	1	0	0	0
기상청	16	16	16	16	8
기획재정부	146	129	124	124	113
농림수산식품부	687	703	675	641	416
농촌진흥청	12	13	10	10	5
문화재청	55	55	49	50	33
문화체육관광부	219	222	222	238	160
방송통신위원회	170	182	195	133	138
법무부	116	113	116	69	72
병무청	3	3	3	3	6
보건복지부	524	512	536	535	616
산림청	105	78	76	76	67
소방방재청	126	132	133	110	108
식품의약품안전청	111	109	110	99	86
여성가족부	77	59	62	59	17
외교통상부	11	10	19	20	20
원자력위원회	77	77	0	0	0
중소기업청	89	89	88	86	35
지식경제부	399	400	424	407	295
통계청	5	5	5	5	3
통일부	15	15	18	16	20
특허청	30	30	30	29	17
해양경찰청	45	37	41	41	37
행정안전부	193	189	208	153	146
환경부	393	396	395	389	327
전체	7,088	6,952	7,055	6,740	5,186

제3절 규제일몰제 확대도입

'규제일몰제(sunset legislation)' 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의 존속기한 설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일몰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규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규제존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규제 실패를 방지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규제일몰제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법령이 영구 존속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몰제의 적용실적 및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한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당시 존속기한의 설정이 곤란했던 규제가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존 규제일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 새로운 일몰유형인 '재검토형'을 도입함으로써 규제일몰제를 확대했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기한 도래 시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하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이다.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와는 달리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 규제일몰제 유형 】

효력상실형 일몰제	재검토형 일몰제
■ 일몰기한 도래 시 효력을 상실 ■ 기한 연장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 필요	■ 일몰기한 도래 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을 재설계 ■ 재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 불필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09년 2월 민간 건의과제 973건 중 201건에 대해 재검토형 일몰제를 시범 도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9년 11월 1차적으로 28개 부처 총 2,148건의 경제적 규제 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존의 일몰제인 효력상실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14건(2.5%)이며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544건(97.5%)으로, 새로운 일몰방식도입에 따라 일몰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일몰주기별로는 3년형이 92.5%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이 5.4%를 차지했다. 부처별로 보면 평균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했으며, 관세청, 중기청, 환경부 등은 규제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일몰을 적용했다. 일몰규제 건수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266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했다.

2010년 6월에는 2차적으로 28개 부처 총 4,692건의 사회·행정적 규제 및 추가등록규제 중 1,044건(22%)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존의 일몰제인 효력상실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66건(6.3%)이며, 재검토형 일몰이 적용된 것은 978건(93.7%)으로 새로운 일몰방식 도입에 따라 일몰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일몰주기별로는 3년형이 84.8%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 등이 15.2%를 차지했다. 부처별로 보면 평균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했다.

재검토형 일몰제 시범적용 및 1, 2단계 확대를 통해 등록규제 총 7,256건 중 1,773건(24.4%)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고, 주기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몰기한 도래 시 규제의 존속여부 및 타당성을 점검하여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

제4절 규제정보화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관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규제와 관련된 정보나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필요한 규제정보의 검색도 어려워 규제관련 정보관리와 규제등록관리, 규제심사 등 규제개혁업무에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2008년 3월 규제개혁차관회의 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되었다. 국무총리실은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2008.4)하고, ISP사업발주 및 연구용역을 수행(2008.7~11)했다. 이렇게 수립된 규제정보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9년 2~8월에는 1단계 사업으로 규제심사지원시스템,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규제과제관리시스템 등 기본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0년 4~10월에는 2단계 사업으로 부처자체심사시스템,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규제정보포털 등을 구축했다.

2011년 3~9월에는 3단계 사업으로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 확대, 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능고도화사업을 진행했다.

2012년 6~12월에는 지자체 규제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령과 규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규제등록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2. 향후 추진계획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규제개혁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규제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 규제정보화 사업 내용 】

1 부처자체심사시스템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자체심사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부처의 신설 ·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검토, 상정, 심의 등 부처 자체심사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지원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2 규제심사지원시스템

부처 자체심사를 거친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분과위/본위원회 회의를 통해 규제의 정합성을 심사하여 규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심사업무 절차를 전산화하여 규제심사관련 자료와 심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난 심사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통계자료 제공 등으로 효율적인 심사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3 규제등록관리시스템

규제의 등록 · 변경 · 폐지과정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규제내용, 규제심사결과, 규제성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규제과제관리시스템

매년 부처에서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라 발굴하여 추진하는 규제개혁과제,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각종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등 과제의 종류별, 완료시기별 등으로 실적관리, 이행상태 점검, 과제관련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제관리를 규제등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5 규제건의관리시스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온라인 규제건의와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된 오프라인 규제건의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건의된 규제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SMS와 메일 등으로 알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련한 규제건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대국민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6 국민불편개선과제시스템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제별 부처의 추진상황을 규제정보포털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개선과제에 대한 부처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했다. 이로써 개선과제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7 규제정보포털시스템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규제정보포털로 확대 개편하여 국민에게 좀 더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규제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규제등록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업종별 ·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는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주 1회 규제관련 최신정보를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제5절 행정조사 정비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국가안전, 국방, 조세, 형사, 근로감독, 금융감독, 공정거래 조사 등은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다. 둘째,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셋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넷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주기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출석 · 진술 요구서, 보고 · 자료제출 요구서 및 현장출입 조사서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행정조사의 정비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조사만 존치시키고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는 폐지한다. 둘째, 행정조사 대상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행정조사의 횟수, 주기 등을 완화 · 조정하며,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한다. 기술발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온라인 등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는 등 조사방법 개선을 개선한다. 셋째, 기업 및 사업자 단체 ·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이 되는 행정조사를 발굴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행정조사 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 · 신고하면, 이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행정조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섯째, 행정조사의 근거가 원칙적으로 법령에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상의 명확한 위임 없이 자의적, 편의적인 지침 · 계획 등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금지하며, 개별 행정조사의 근거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운영계획에는 조사종류, 조사근거 및 목적, 조사방법, 조사주체 및 대상,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22개 부처에서 총 419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80건의 행정조사를 정비했다.

2009년에는 22개 부처에서 총 393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59건의 행정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47건을 정비완료했다. 2010년에는 총 397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4건을 정비완료했다. 2011년에는 21개 부처에서 총 338건의 행정조

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3건의 행정조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2건을 정비 완료했다.

2012년도에는 24개 부처에서 총 405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58건의 행정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4개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자료 감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총 122건의 과제를 선정하는 등 행정조사의 투명성 · 효율성 ·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했다.

제6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 OECD와의 협력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세계무역 확대 및 세계경제의 성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OECD가 운영하는 26개의 위원회 중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국제협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정책위원회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규제관리시스템 · 도구 · 제도 등을 평가하고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등 각국의 원활한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대표 중 7~10명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2010년에는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이, 2010~2012년에는 박장호 경제규제관리관이 의장단에 참여하면서 규제개혁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의장단은 주로 매년 2회 개최되는 규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활발한 참여를 주도하고, 필요 시 서면 또는 전화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현 정부는 규제정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 · 정책 · 수단에 대한 추진성과와 현황을 전 세계에 정확히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2008년 4월과 10월에는 규제개혁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12월에는 규제정책그룹회의(Group on Regulatory Policy)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규제품질지수, 규제개혁의 중기 전략방향 및 규제감독기구 비교연구, 행정 간소화, 규제의 위험분석과 관리 등을 주제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토대로 위험분석 도구, 정책단계별 위험관리 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2009년 5월과 9월에 규제개혁작업반회의에 참석했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분야 규제 개선, 행정부담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09년 11월부터는 규제개혁작업반회의와 규제정책그룹회의가 규제정책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운영되었다.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단기적 경제회복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OECD 측에서 2008년에 실시한 규제관리지수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규제심사, 일몰제, 규제감독기구 역량, 투명성과 규제접근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월과 10월에 규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전자입법과 열린정부, 규제개혁 국제협력 확대방안, 행정 간소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영문 안내서를 배포 ·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규제개혁에 대한 사례발표를 했다. 2010년 6월에는 OECD 규제 인지도조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만족도조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규제만족도 측정항목 세분화, 조사대상 확대 등 개선된 조사설계의 주요 내용과 이를 적용한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결과를 제시하여 회원국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1년 4월과 11월에 개최된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규제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OECD 권고안, 러시아 OECD 가입심사, 규제지출 원칙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OECD 각국은 우리나라의 재검토형 일몰제, 규제정보화시스템,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건의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9월에는 OECD 규제성과측정 워크숍에 참석하여 회원국의 규제개혁 성과 평가동향 및 OECD에서 마련한 규제정책 성과 측정방법 초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2년 4월에 개최된 규제정책위원회에서는 규제정책과 성장의 관계, 법치주의, 러시아 OECD 가입심사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한 결과, 경제위기를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6월에 개최된 OECD 규제성과 측정 워크숍에서는 규제 순응비용 절감방안 및 규제편익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규제비용 · 규제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2. APEC과의 협력

비정기적이기는 하나, 규제개혁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EC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APEC도 무역 원활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규제 이슈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APEC 3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지역 경제적 통합 강화 및 무역 증진', '녹색성장 촉진' 등과 함께 '규제협력 확대 및 규제 컨버전스 증진'이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 8월에 개최된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구조개혁의 정치적 도전,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활발한 논의와 공동성명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 성공 요인 및 새로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구조개혁 경험을 소개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0년 9월 APEC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에서는 구조개혁 정상의제 진전평가 보고서 초안 승인 및 관련분야 재편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이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OECD와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최근 한국의 규제개혁 성공요인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리더십을 꼽았다.

2011년 3월 APEC 경제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규제개혁을 홍보하는 영문안내서를 배포했고, 규제영향분석 활용현황, 규제협력 확대 및 규제 컨버전스 증진 등에 대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졌다. 5월에는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에 참석하여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에 대하여 발표했다. 사례발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이었다. 이에 대해 회원국 대부분은 한국이 규제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PEC 측은 우리나라에 11월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규제협력 및 수렴 진전'을 주제로 대통령 주재 오찬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오찬회의를 주재하면서 2007년 30위였던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지수가 2011년에는 8위까지 급상승하는 등 한국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2년 2월 APEC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뉴질랜드 주관하에 규제수렴 워크숍(Regulatory Coherence Workshop)이 개최되었다. 뉴질랜드 측에서 우리나라에 동 워크숍 공동후원국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무역활성화와 투자원활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 등 공동후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현재 APEC에서는 2011년 이후 경제위원회 등에서 진전되어온 논의결과를 토대로 산하 위원회별로 규제원칙 및 규제협력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무역, 기술, 환경, 에너지 등 이슈별로 규제개혁 및 규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이 보다 활발한 규제협력을 이루어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3. 규제개혁 경험전수 사업 추진

우리나라는 OECD,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후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경험이 주요 교훈이 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 경험전수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영국과 태국의 규제개혁 관계자가 방문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과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와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2009년에는 2회에 걸쳐 방글라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 규제영향평가, 규제개혁 성공요인 등에 대해 소개했다. 10~12월에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등을 소개했다.

2010년에는 9차례에 걸쳐 인도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 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 전략, 규제개혁 추진체계 등 우리나라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했다. 특히 멕시코는 기존규제 감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관련 면담을 실시했다. 이후 멕시코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공유가 매우 유용했음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 튀니지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등 16개국 공무원 156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 규제심사 절차, 규제개혁 성공요인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1년에는 규제개혁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모듈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대내 · 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경험이 개도국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단계별 규제정책 변화와 성과, 성공 및 실패 요인, 개도국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전략 등을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규제개혁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보다 체계적인 경험전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규제개혁 평가 개요

매년 자율적, 적극적, 효과적인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 개선했나' 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 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31개 중앙행정기관의 1년간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부 단위(18개)와 청 단위(13개)로 구분해 평가했다. 다만 31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통계청과 병무청 등 9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항목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이행실적과 효과, 고객만족도로 크게 나누고, 계획과 집행보다는 규제개혁의 효과와 만족도 등 산출과 결과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제2절 연도별 규제개혁 평가결과

1. 20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08년 규제개혁을 평가하자면 '경제살리기' 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총 1,79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법령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 IT기술, 제도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계획 1,249건 대비 73%).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조사 정비도 전체 행정조사의 20% 수준을 정비함으로써 기업부담 감축에 일조했다.

기업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는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 부문의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의 품질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가 61.9점으로 20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했으며, 규제개혁 종합점수도 66.9점으로 2007년(63.5점)보다 3.5점 상승했다.

다만 규제개혁 조치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했고, 금융위기 등 여건 변동과 이해관계집단 반대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규제개혁과제들도 일부 있었다. 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등 규제의 합리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은 양호한 반면,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과 효과 등 규제개혁의 성과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2009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09년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미래산업 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토지·기업·서비스업·환경·노동 관련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추진에 역량을 결집했다. 2009년에는 총 1,327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그중 963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경기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2009.5)하여 280개 과제를 발굴했고,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창업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성장기

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추진(2009.11)하여 175개 과제를 발굴했다.

미등록 규제정비와 일몰제 확대적용 등 규제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기반을 구축했다. 전 부처「미등록 규제」를 일제조사 · 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했다. 모든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확대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높였다.

기업 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 · 강화규제는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 · 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 부문의 신설 · 강화규제는 규제의 품질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가 64.1점으로 2008년 조사결과(61.9점) 대비 2.2점 상승했다.

【 국무총리실 만족도 조사결과(2009) 】[1)]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2007	2008	2009	증감	2007	2008	2009	증감	2008	2009	증감	2007	2008	2009	증감
전체	54.8	59.5	62.9	↑3.4	63.0	66.3	66.5	↑0.2	60.7	63.6	↑2.9	58.8	61.9	64.1	↑2.2

다만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계류 중임에 따라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부처에서 홍보 및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기관 중심의 일방통행식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평가항목별로 비교해보면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적실성과 규제개혁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신설 · 강화규제의 적절성, 홍보와 의견수렴 등 시행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2010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0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관광 · 방송통신 등 서비스산업, 국토 · 환경 관련 규제를 포함 총 1,375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838개 과제를 완료(계획 969개 대비 86.5%)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등 중소기업 애로해소(2010.5, 14건),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2010.6, 100건)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정부 · 공공기관 등의 채용 · 승진상의 학력규제 287건을 발굴 · 개선(2010.7)키로 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도입하여 규제의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했으며, 각 부처 자체규제심사 지원 기능 신설 등 규제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설 · 강화규제 심사의 투명성 및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에 소극적이고,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후 정책 환경 변화, 관련기관 협의미흡 등으로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이 미진한 경우도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는, 계획단계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적극성' 등의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집행단계의 '규제개혁과제 홍보의 적극성', 산출 · 결과단계의 '규제개혁의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2011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1년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국민부담 경감 및 공정사회 구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했다. 2011년에는 각 부처가 총 1,1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했다. 또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일제 점검, 개선하고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2011.5) 및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2011.10)을 마련하는 등 공생발전을 위한 규제정비를 추진했다. 또한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로 불합리한 규제형성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 강화규제 총 1,271건을 심사, 중요규제 264건 중 139건을 개선 또는 철회권고했다.

그간의 각종 규제개혁 성과 및 현장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2011.7). 각 부처의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를 일제조사하여 등록(690건)하고, 업종별 규제정보(43개 업종 7,000여 건)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기업 · 국민이 뽑은 Best 10-10과제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상승했다. 2011년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만족도 조사결과, 규제개혁만족도가 67.2점으로 2010년 조사결과(66.4점) 대비 0.8점 상승했다.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2011) 】[2)]

구 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2009	2010	2011	증감	2009	2010	2011	증감	2009	2010	2011	증감	2009	2010	2011	증감
전 체	62.9	64.8	65.0	↑0.2	66.5	70.7	72.6	↑1.9	63.6	63.9	64.1	↑0.2	64.1	66.4	67.2	↑0.8

또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1)가 8위로 전년도(16위)에 비해 8단계 상승했다.

1) 누적완료 478 + 2010.4분기 완료 95 + 정상추진 517

2) 증감은 2010년 대비

5. 2012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2년의 규제개혁은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민생친화적(Life-Friendly) 규제환경 조성', '경기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각 부처가 총 1,473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기관의 입찰 · 계약규정을 정비(2012.2)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2012.10) 등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했다. 또한 경제위기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2012.9) 등 시의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했다. 또한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형성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 강화규제 총 1,643건을 심사, 중요규제 190건 중 101건을 개선 또는 철회권고했다.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규제개혁만족도 조사결과, 5년 동안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61.9점 → 69.4점, 총 7.5점 상승)하여 2012년도에는 전년(67.2점) 대비 2.2점 상승한 69.4점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지]

2008년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189회 (2008.2.14)	복지부	「한약도매 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리학과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1	0	0	1
	규개위	2008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규개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부담 측정 · 감축정책 도입방안	보고				
제190회 (2008.3.21)	규개위	2008년 규제개혁추진 지침 수정안	의결	1	0	0	1
제191회 (2008.821)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192회 (2008.9.1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규개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193회 (2008.10.2)	규개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194회 (2008.10.16)	공정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유인여부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1	0	0	1
	공정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0	1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문화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제195회 (2008.10.30)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의결	재상정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1	2
	환경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상정			
제196회 (2008.11.13)	환경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0	2	0	2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의결	5	4	0	9
	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결	3	3	0	6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0	0	2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0	0	2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0	1	0	1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197회 (2008.11.2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의결	2	0	0	2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0	0	3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0	1
제198회 (2008.11.25)	지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의결	1	0	0	1
	국토부	「항공법」 개정안	의결	1	3	0	4
	규개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199회 (2008.12.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상정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1	0	0	1
	규개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00회 (2008.12.18)	국토부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의결	0	0	1	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0	0	2
	교육부	「외국인학교 등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총리실	2009년 규제개혁추진 지침	의결	1	0	0	1

2009년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01회 (2009.1.22)	공정위	2009년도 경쟁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규개위	20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제202회 (2009.2.5)	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2	1	6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2	8
	국무총리실	2008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 계획	보고				
제203회 (2009.2.12)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의결	2	1	0	3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재상정			
제204회 (2009.2.19)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1	1	0	2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04회 (2009.2.19)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0	0	1	1
제205회 (2009.3.19)	복지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재상정			
제206회 (2009.4.9)	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재상정			
	환경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관련 기존 규제 심사	의결	0	1	0	1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0	3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	의결	1	3	0	4
제207회 (2009.5.21)	복지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1	0	4
	행안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208회 (2009.6.11)	문화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0	0	2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0	0	1
	규개위	한시적 규제유예관련–소비자 경품규제 폐지	의결	1	0	0	1
	규개위	상반기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제209회 (2009.6.25)	행안부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규개위	미등록 규제 정비 방안	의결	1	0	0	1
제210회 (2009.7.7)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	1	0	1	2
	지경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행안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의결	1	1	0	2
	복지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의결	0	0	1	1
	규개위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의결	1	0	0	1
제211회 (2009.7.23)	방통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의결	0	1	0	1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3	2	7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0	1	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212회 (2009.8.13)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상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0	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213회 (2009.8.27)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상정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규개위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 수정안	의결	1	0	0	1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14회 (2009.9.10)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1	0	0	1
제215회 (2009.9.24)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2	0	3
제216회 (2009.10.8)	지경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1	3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의결	0	1	0	1
제217회 (2009.10.29)	권익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0	1	0	1
	환경부	「4대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1
	식약청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재상정			
	규개위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제218회 (2009.11.12)	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	의결	재상정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19회 (2009.11.19)	규개위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제220회 (2009.11.26)	복지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권익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0	1	0	1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재상정			
제221회 (2009.12.3)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1	2	0	3
	규개위	2010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의결	1	0	0	1
제222회 (2009.6.25)	금융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식약청	「보고대상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규개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보고				

2010년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24회 (2010.1.14)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24회 (2010.1.1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3	1	5
제225회 (2010.2.1)	국무총리실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국무총리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규제환경 개선	보고				
	법무부	국격 향상을 위한 외국인관련 규제개선	보고				
	행안부	2010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중기청	201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제226회 (2010.2.18)	행안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진철회			
	국무총리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27회 (2010.2.25)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2	3
제228회 (2010.3.18)	국무총리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재심사			
제229회 (2010.3.25)	국무총리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2	0	3
제230회 (2010.4.8)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1	0	4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0	0	3	3
제231회 (2010.4.22)	문화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법무부	「여권법」 개정안	의결	0	0	1	1
제232회 (2010.5.6)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국토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33회 (2010.5.20)	국토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의결	0	0	5	5
	문화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34회 (2010.6.3)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2	3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문화부	폐광지역 카지노영업장 운영지침	의결	0	0	1	1
제235회 (2010.6.10)	국무총리실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방안	보고				
	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국무총리실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35회 (2010.6.10)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의결	5	0	0	5
제236회 (2010.6.17)	국토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0	0	4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1
제237회 (2010.7.1)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재심사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	의결	3	0	1	4
	지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38회 (2010.7.15)	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39회 (2010.7.22)	국무총리실	기업호민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0	0	4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	0	0	2
제240회 (2010.8.12)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0	0	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기간의 180일 신설	의결	1	0	0	1
	식약청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 저영양식품	의결	재심사			
제241회 (2010.8.26)	식약청	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 저영양식품	의결	1	0	0	1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	2	0	7
제242회 (2010.9.9)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의결	재심사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0	1	1	2
	지경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개정안		0	0	1	1
제243회 (2010.9.30)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경찰청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1	0	0	1
	방통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 절차 ·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의결	재심사			
제244회 (2010.10.14)	여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식약청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45회 (2010.10.28)	방통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 절차 ·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의결	1	1	0	2

회 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45회 (2010.10.28)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전문병원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46회 (2010.11.11)	복지부	「전문병원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0	1	0	1
	국토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복지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47회 (2010.11.25)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금감원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48회 (2010.12.8)	국무총리실	신의약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보고				
	국무총리실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방안	의결	1	0	0	1
	국무총리실	전기자전거 등 기술규제 합리화방안	의결	1	0	0	1
제249회 (2010.12.9)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	재심사			
	국무총리실	2011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의결	1	0	0	1
제250회 (2010.12.23)	국무총리실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국무총리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총리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2011년

회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51회 (2011.1.13)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의결	0	1	1	2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심사			
	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의결	1	0	0	1
	교과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1	0	0	1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의결	1	0	0	1

회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52회 (2011.1.27)	국무총리실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국무총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보고				
	행안부	2011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중기옴브즈만	2011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제253회 (2011.2.10)	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0	7	2	9
	지경부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	의결	1	0	0	1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2	0	4
제254회 (2011.3.10)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방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1	0	0	1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 분야 선진화 관련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혁 추진(안)」	보고				
	중기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보고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안	보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55회 (2011.4.14)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56회 (2011.4.28)	방재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1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의결	0	1	0	1
	문체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외통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2	0	2
제257회 (2011.5.12)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안	의결	1	0	1	2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58회 (2011.5.26)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의결	재심사			
	문체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1	2	0	3
제259회 (2011.6.9)	교과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의결	재심사			
	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행안부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재심사			

회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60회 (2011.6.23)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국무총리실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개정안	보고				
	문체부	「관광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감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61회 (2011.7.7)	금감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의결	0	2	0	2
	교과부	「유아교육법」 개정안	의결	0	2	0	2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문체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0	2	2
제262회 (2011.7.21)	행안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1	0	0	1
	농림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문체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2	0	2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1	0	0	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63회 (2011.8.11)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	의결	3	2	0	5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재심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0	3
제264회 (2011.8.25)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1	0	3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국무총리실	2011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	보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65회 (2011.9.8)	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1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 시행령 ·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2	0	1	3
	금감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1	1	0	2
제266회 (2011.9.22)	법무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0	0	3

회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67회 (2011.9.29)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1	1	0	2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0	1	0	1
	농림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0	2	2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의결	1	0	0	1
	경찰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68회 (2011.10.13)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0	0	2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1	2
제269회 (2011.10.20)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1	0	3
제270회 (2011.11.3)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0	2	1	3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사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2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1	2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1	1	1	3
제271회 (2011.11.17)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4	0	4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재심사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결	0	1	1	2
	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국토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국토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72회 (2011.11.24)	지경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0	3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0	0	2
	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심사			
제273회 (2011.12.1)	기재부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1	0	4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1
	국무총리실	2012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보고				
제274회 (2011.12.15)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1	1	0	2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1	0	1
	기재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심사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0	0	1	1

회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75회 (2011.12.29)	기재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의결	1	1	0	2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4	1	0	5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행안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2012년

회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76회 (2012.1.16)	국무총리실	201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보고				
	행안부	2012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중기옴부즈만	2012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계획	보고				
제277회 (2012.2.23)	국토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의결	0	1	0	1
	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78회 (2012.3.8)	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3	2	6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의결	0	1	0	1
제279회 (2012.3.22)	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0	1	0	1
	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의결	1	0	0	1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0	0	2
제280회 (2012.4.5)	지경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3	0	4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81회 (2012.4.19)	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0	4
제282회 (2012.5.3)	방통위	「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	의결	5	0	1	6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4	7	0	11
제283회 (2012.5.17)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1	2	0	3
	농림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0	2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회차	부처명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84회 (2012.5.31)	지경부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85회 (2012.6.14)	지경부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의결	4	3	1	8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86회 (2012.7.5)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87회 (2012.7.19)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고시 등 개정안	의결	4	0	0	4
제288회 (2012.8.16)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89회 (2012.8.30)	국무총리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2년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실적	보고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290회 (2012.9.13)	지경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1
제291회 (2012.9.27)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2	0	3
제292회 (2012.10.11)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93회 (2012.10.25)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0	4
제294회 (2012.11.8)	국무총리실	2012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제295회 (2012.11.22)	지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1	2
제296회 (2012.12.7)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1
	국무총리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결	1	0	0	1
	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1
제297회 (2012.12.21)	국무총리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256 제1장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개요
257 제2장 정부업무평가 체계 및 운영 성과
337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및 운영 성과
340 제4장 향후 발전방향

1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개요

정부업무평가는 '계획(plan)-집행(do)-평가(see)'로 이루어지는 정책집행과정 중 평가에 해당한다.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활동이 계획이고,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집행이라면, 평가는 일반적으로 집행된 정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 제1호는 평가를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를 보면,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성과관리'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이들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과제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목표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의 최종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평가의 부처 자율성 및 특정평가의 전문성 제고다. 자체평가는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항목과 지표를 합리화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특정평가를 통해 부처의 핵심과제, 녹색성장,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둘째, 주요 현안 분석의 강화이다.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가의 엄밀한 분석적 평가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책정보 생산 및 제도개선을 도모한다.

셋째, 통합적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이다.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는 평가체계의 안정적 발전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는 지양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하고, 성과관리 우수사례 활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정부업무평가 체계 및 운영 성과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1.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정부업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해당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 및 시책 등에 대해 국무총리가 하향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는 정책현안과제 분석도 있다.

1) 자체평가

가. 자체평가의 개념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장의 책임하에 기관의 기능을 대표하는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성과관리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자체평가가 얼마나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재정사업 평가는 다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에 관한 평가[1](이하 '일반재정사업')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사업')에 관한 평가로

1)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지칭

나뉜다. 행정관리역량 평가는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조직, 정보화관리 등에 대한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의 자율성 보장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총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자체평가 지표 및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을 스스로 선정하되, 그 기관의 임무 달성에 기본적·필수적인 정책,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 자체평가 결과와 조직·예산 등 성과관리를 위해 연계가 필요한 정책 등을 포함해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해 평가 담당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나. 연도별 변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3개 부문을 평가했으나, 2011년 행정관리역량은 특정평가로 이관하고,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은 주요정책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행정관리역량을 자체평가로 이관하고,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를 자체평가 부문으로 다시 환원했다.

【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

연도	2008~2010	2011	2012	평가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2]
부문	주요정책	주요정책	주요정책	중앙행정기관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사업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역량	* 특정평가로 이관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다. 평가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된 정부업무평가시행기획에 기초해서 평가 대상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인사 등 활용하는 방안을 담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매년 4월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 또는 자료 추가제출 필요 시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자체평가계획의 충실성을 높이도록 한다. 자체평가는 평가실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연도에 추진된 정책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이 자체평가위원 대상의 정책설명회 개최, 정책추진 현장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의 활성화와 자체평가의 내실화 부문을 별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자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자체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확인·점검 결과, 객관성·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의 활용

정부업무평가결과를 환류(피드백)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 시 반영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실행력을 갖춘다.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당해 정책의 중단·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평가결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포상·성과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표창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정책의 성과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2) 특정평가

가. 특정평가의 개념

특정평가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성과, 국민만족도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에 의한 하향식 평가라는 점에서 자체평가와 구별된다. 평가대상 부문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 총괄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부문별 총괄행정기관 – 주요정책부문 : 국무총리실,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기관역량부문 : 행정안전부).

나. 연도별 평가부문 변화

【 연도별 특정평가 부문 변동 현황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가부문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핵심과제	핵심과제	핵심과제
				서민생활안정과제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일자리창출과제	일자리창출과제	일자리과제
		정책소통 · 홍보	정책소통 · 홍보	정책홍보	정책홍보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 및 민원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 특정평가 부문별 개념 】

부 문	개 념
핵심과제	기관별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점검 · 평가
서민생활안정과제	친서민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평가
녹색성장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중앙부처 추진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
일자리창출과제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
정책홍보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
정책관리역량	기관의 주요 업무추진 관련 필수적인 정책활동의 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
규제개혁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중점평가
국민만족도	부처의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각각 평가

다. 평가절차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 · 대상 · 방법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평가방법, 기준, 지표 등을 마련해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특정평가 부문별로 평가에 필요한 실적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의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정책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총리는 평가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대상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확인 · 점검토록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평가의 부문별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무총리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 평가결과의 활용

특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부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 정책현안과제 분석

가. 정책현안과제 분석의 개념

정책현안과제 분석이란 다수부처가 관련된 시책,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통해 유용한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정책 ·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동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 및 제20조에 근거한 특정평가의 한 유형이다. 평가주체 면에서는 국무총리 주관하에 실시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소관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되며, 평가시기 면에서는 연중 수시로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게 되므로 연중 계획된 절차에 따라 부문별로 실시되는 협의의 특정평가와도 구분된다.

나. 연도별 변화

정책현안과제 분석은 '특정과제 평가' 라는 명칭으로 1998년도부터 실시되었다. 이후 '특정시책 평가', '수시현안 평가' 등의 명칭으로 실시되어오다 2011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정책현안과제 분석' 또는 '정책현안 평가' 로 지칭되고 있다. 명칭은 다양하게 변화되어왔지만, 종래 기관평가의 틀을 벗어나 다수부처가 관련된 주요시책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기본 목적은 같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정책현안과제 분석 ·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 행정이 복잡 · 다기화되면서 다수부처가 관련되는 이른바 '융합행정' 의 사례가 증가하고, 기존의 정규적 평가로는 정책의 신속한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 평가결과 활용

정책현안과제 분석 · 평가 보고서에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는데, 개선방안은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평가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거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과제를 마무리하기도 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과 개선방안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2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성과

1. 총 론

'자율과 책임' 이라는 성과관리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업무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와 방법을 각 기관이 스스로 설계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인사 · 보수와 연계하여 내부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체평가를 통한 정부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정책현장 방문 ·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자체평가가 관대해지는 경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 주요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우수사례 공유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평가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결과

1) 2008년

2008년 자체평가 개요

■ 주요정책부문, 재정사업부문, 기관역량부문 세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수준의 확인 · 점검 대신 운영실태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자체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 주요정책 부문

2008년은 자체평가 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한 중요한 해였다. 평가지표와 배점을 각 기관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평가지표' 를 도입했으며, 각 기관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국무총리실이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수정하는 재평가 형태의 확인 · 점검 대신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정책과제' 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 점검을 폐지하는 대신 운영실태 위주로 점검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 인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시 우수—다소 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등 5개의 상대등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2008년도 주요정책과제 2,090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 점수는 90.8점으로 2007년 91.9점보다 다소 하락했다. 상대등급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317개(15.2%) 과제는 우수, 538개(25.7%) 과제는 다소 우수, 817개(39.1%) 과제는 보통, 300개(14.4%) 과제는 다소 미흡, 118개(5.6%)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 부처의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11개 우수 부처를 포상했다.

나. 재정사업 부문

정부조직 개편 및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2008년 R&D사업 평가에 이어 정보화사업 평가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부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체 사업을 매년 3분의 1씩 평가하는 일반재정사업 평가방식으로 통일하고, 재정 · R&D · 정보화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의 명칭, 구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했다.

일반재정 부문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65.9점으로 전년도 대비 0.8점 하락했다. 평가등급별 분포를 보면 우수 이상 5.5%, 보통 73.7%, 미흡 이하 20.2%로, 전년도에 비해 미흡 이하 6.8%, 우수 이상 8.8% 감소했으며, 보통은 15.6%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은 전년 수준인 98점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가 지속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전년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집행의 효율성' 과 '성과목표 달성도' 항목도 점수 하락과 함께 미흡상태가 지속되었다.

R&D사업 부문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79.2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점 하락했다. 평가등급별 분포는 우수 이상 10%, 보통 68.6%, 미흡 21.4%로, 2007년도에 비하여 우수 이상은 14.4% 감소하고, 미흡 등급은 9.2% 증가했다. 이는 평가결과의 예산연계를 강화하면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 · 점검을 엄격히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별로 '사업내용 타당성', '추진체계', '집행관리' 등의 점수는 상당히 양호(100점 대비 92~97점 수준)하지만, '성과관리 적절성',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점수는 상당히 미흡(58~77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사업 부문의 전체 평균점수는 79.8점으로, 전년 대비 큰 폭(11.55점)으로 하락했다. 평가등급별로 보면 우수 이상 20.3%, 보통 55.6%, 미흡 24.1%으로 평가되었고, 평가항목별 점수는 R&D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은 양호한 반면, '성과지표 · 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기관역량 부문

2008년 기관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정책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직, 인사, 정보화,

변화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관리역량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정보화수준(88.58점), 정보공개(88.03점), 조직관리(86.62점) 분야의 운영실적은 높았으나 변화관리(84.97점), 인사관리(82.06점), 재정운용(73.68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변화관리 추진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이 다소 지연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등 현안문제로 인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국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등 7개 기관이 6개 분야 전반에서 균형 있게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2) 2009년

2009년 자체평가 개요

■ 주요정책부문, 재정사업부문, 기관역량부문 세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주요정책 부문은 모든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고, 행정관리역량은 평가항목을 통폐합하고 평가지표를 축소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 주요정책 부문

2008년도에는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를 혼합·설계하도록 했으나, 2009년부터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평가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정책과제' 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2009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 점수는 87.7점으로 2008년도 90.9점보다 다소 하락했다. 각 부처가 1,945개 과제에 대해 5개 등급을 적용 평가한 결과, 271개(13.9%) 과제는 우수, 510개(26.2%) 과제는 다소 우수, 770개(39.6%) 과제는 보통, 286개(14.7%) 과제는 다소 미흡, 108개(5.6%)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등 자체평가 운영이 우수한 11개 부처를 선정, 포상했다.

나. 재정사업 부문

일반재정, 정보화 각 부문에 대해 별도의 평가지침을 적용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문 모두 12개 공통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또한 종전에는 평가실익이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평가해왔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됨에 따라 광특회계 중 지역발전계정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각 부처가 2009년 전체 재정사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평가하되,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했다.

일반재정 부문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도 대비 3.7점 떨어졌으며, 예산사업에 비해 평균 2.2점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4.7%, 보통 70.8%, 미흡 이하 24.5%로 2008년도에 비해 미흡 이하는 4.3% 증가하고, 보통 및 우수는 각각 3.5%와 0.8% 감소했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 전년 수준인 98.7점으로 양호하고, '사업관리의 적절성' 은 조기집행 강화 등의 원인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 과 '성과달성 및 환류' 점수는 전년보다 하락하여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D사업 부문 평가 대상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66.0점으로 전년도 대비 13.3점 하락했다. 등급별 분포는 우수 이상 10.0%, 보통 70.0%, 미흡 이하 20.0%로 2008년도에 비하여 우수 이상 등급은 동일하나, 미흡 이하 등급은 다소 감소(21.4% → 20%)했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점수는 상당히 양호(100점 대비 95~97점 수준)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 의 점수는 상당히 미흡(22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사업 부문 평가 대상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63.2점으로, 79.8점인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5.1%, 보통 73.4%, 미흡 이하 21.5%로 전년도에 비해 우수 이상과 미흡 이하 비율은 각각 15.2%, 2.6% 감소한 반면, 보통의 비율은 17.8% 증가했다. 평균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이 감소한 것은 R&D 사업과 마찬가지로 평가등급 및 기준점수 변경에 따른 것이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92.1점)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86.8점)은 전년도 수준으로 양호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 (51.9점)과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1.9점)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기관역량' 의 명칭을 '행정관리역량' 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평가분야도 변경했다. 업무 연계성과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기존 평가분야를 6개(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공개, 변화관리, 정보화수준, 재정운용)에서 4개(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재정운용)로 전환했다. 40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자체평가운영 수준은 전체 평균점수 77.9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3) 2010년

2010년 자체평가 개요

■ 주요정책부문, 재정사업부문, 기관역량부문 세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부처에 자체평가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적극적인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평가 관대화 경향을 완화하고, 주요정책과제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실태점검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는 컨설팅 형식으로 실시했다.

가. 주요정책 부문

201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주요정책부문,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3개 부문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과 방법도 2009년과 동일하게 운영했다.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 점수는 81.4점으로 2009년보다 6.3점 떨어져 관대하게 평가하는 관행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2,122개 과제에 대해 5개 상대등급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290개(13.7%) 과제는 우수, 531개(25.0%) 과제는 다소 우수, 861개(40.6%)과제는 보통, 304개(14.3%) 과제는 다소 미흡, 136개(6.4%)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은 컨설팅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부처 등급화는 하지 않았다.

나. 재정사업 부문

종전에는 예산사업별로 매년 3분의 1을 선정·평가해왔으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3분의 1을 선정하여 해당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과제를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관대하게 평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상대평가제도(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를 도입했다(단, 평가 사업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적용 제외).

일반재정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 62.0점으로 전년도 대비 0.2점 하락했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6.7%, 보통 63.2%, 미흡 이하 30.1%로 2009년도 대비 우수 이상과 미흡 이하가 각각 2%, 5.6% 증가했으며, 보통은 7.6%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목별로는 '성과계획의 적정성' 과 '성과달성 및 환류' 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은 전년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D사업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 65.7점으로 전년도(66.0점)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6.9%, 보통 78.2%, 미흡 이하 15.0%로, 전년도 대비 우수 이상은 3.1%, 미흡 이하는 5% 줄어든 반면, 보통은 8.2% 늘었다. 보통 등급이 늘어나고 미흡 이하 등급이 준 이유는 집행 및 결과단계에 부분배점 도입, 전년도 미흡사업 수정평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92.8점)은 비교적 우수하나, '성과계획의 적절성' (21.3점)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며, '사업집행의 적절성' (86.8점)에 비해 결과단계의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활용' (61.3점)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사업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 65.8점으로 전년도(63.2점)에 비해 다소 올랐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7.5%, 보통 76.4%, 미흡 이하 16.1%로 2009년도 대비 우수 이상이 2.4%, 보통이 3% 늘었으며, 미흡 이하는 5.4%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로 볼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87.4점)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 (85.5점)은 매우 양호한 반면, '사업관리의 적절성' (63.1점)과 '성과달성 및 환류(57.5점)' 는 저조하며, '사업관리의 적절성' 은 전년 대비 예산집행률 배점(5점 → 15점) 및 확인·점검 강화에 따라 점수가 전년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진(86.8점 → 63.1점)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행정관리역량 부문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등 3개 영역에서 22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부처에서 평정근거 제시 노력과 평가결과 충실성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자체평가 운영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미흡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2011년

2011년 자체평가 개요

■ 성과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자체평가 부문을 주요정책으로 일원화하고, 행정관리역량은 특정평가 부문으로 이관했다.

평가부문에 관계없이 주요정책 부문만 자체평가에서 평가하고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재정사업 부문은 자율평가 형식으로 별도 실시했으며, 행정관리역량은 특정평가로 이관해서 평정했다. 또한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했다.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정책과제' 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관리과제 단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단위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단위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점수는 80.3점으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추세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는 자체평가결과를 재평가하여 기관을 서열화했던 종전의 확인·점검 제도를 운영실태만 점검하는 제도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40개 기관이 2,168개 과제에 대해 7개 상대등급을 적용 평가한 결과, 95개(4.4%) 과제는 매우 우수, 335개(15.5%) 과제는 우수, 330개(15.2%) 과제는 다소 우수, 652개(30.1%) 과제는 보통, 340개(15.7%) 과제는 다소 미흡, 290개(13.4%) 과제는 미흡, 126개(5.8%)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법무부, 농촌진흥청 등 운영이 우수한 10개 부처를 선정·포상했다.

5) 2012년

2012년 자체평가 개요

■ 기관의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3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가.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에 적극 환류될 수 있도록 기관별 환류 강화 방안을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대상기관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이고 평가대상과제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정책과제' 이다.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각 부처에서는 중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서 2013년 1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

나. 재정사업 부문

각 부처는 재정사업 및 R&D사업에 대하여 2013년 1~3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3년 4~6월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 행정관리역량 부문

2011년도에 특정평가로 운영된 행정관리역량은 2012년도에 다시 자체평가로 전환되었다. 평가대상은 총 42개 기관으로, 2012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조직 · 인사 · 정보화별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자체평가로 다시 전환된 만큼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각 부처는 행정관리역량에 대해 2013년 1월 최종 평가 실시).

제3절 특정평가 운영 성과

1. 총 론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의 평가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전문가 평가단과 부처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또한 각 평가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했다.

핵심과제 등 정책부문 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과제를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등으로 신축적 · 전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정과제 달성을 뒷받침했고, 평가과정에서 업무특성 · 조직특성 · 규제 수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피평가기관 그룹화, 모집단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성 · 정량지표를 상호보완되게 활용하여 지나치게 계량화된 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결과

1) 2008년

2008년 특정평가 개요

- 새 정부 출범 첫 해로 '창의와 실용'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확산과 기관의 구체적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을 둔 평가를 시행했다.
- 주요 국정과제, 현안정책 등에 대한 수시 분석 ·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실용성을 제고했고, 평가부문 ·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축소 · 조정하여 부처 부담은 경감하되 평가완료 시기를 단축하여 평가 효율성을 확보했다. 또한 종합기관 서열화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평가 타당성을 제고했다.
- 2008년 특정평가는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부문에 대해 실시하여 새 정부 1년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가. 규제개혁

2008년 규제개혁 평가는 새 정부 1년간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

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미비점을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보완하기 위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908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성과를 달성(계획 1,249건 대비 73%)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조사 정비도 전체의 20% 수준으로 하고, 기업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는 가급적 억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부문의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의 품질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주력했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7년에 비해 3.1점 상승한 61.9점이었으며, 규제개혁 종합점수도 66.9점으로 2007년보다 3.4점 높아졌다. 다만 규제개혁 이행을 위한 법률안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점, 일부 규제개혁 과제가 금융위기 등 경기여건 변동과 이해관계집단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점,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등 규제의 합리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 기관이 평균 68.6점, 청 단위 기관이 평균 64.7점으로 부 단위 기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단위에서는 금융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평가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전략목표)의 주요정책 만족도 평균점수는 7점 척도에서 '약간 만족'(5점)에 비교적 근접한 4.70점으로, 2007년 대비 0.14점 상승했다. 이는 '의견수렴도와 투명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효과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민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로는, 19개 부 단위 기관 종합점수 4.58점은 '보통'(4점)과 '약간 만족'(5점) 사이로 국방부가 가장 높은 반면, 통일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개 청 단위 기관 종합점수 4.82점은 '보통'(4점)과 '약간 만족'(5점) 사이로 병무청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8년도 39개 중앙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 평균점수는 7점 척도에서 '약간 만족'을 조금 상회하는 5.02점으로, 2007년 대비 0.13점 하락했다. '신속·정확성', '신뢰·공정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하락하여 행정서비스처리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일처리가 요구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기관별로는 19개 부 단위 기관 종합점수 5.03점은 '약간 만족'(5점)을 조금 상회하는데 행정안전부가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개 청 단위 기관 종합점수는 '약간 만족'(5점)에 해당하며 기상청이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반면, 문화재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 2009년

2009년 특정평가 개요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행정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각종 평가제도를 신축적·전략적으로 운용했다.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정책소통·홍보, 국정관리역량의 평가부문을 신설하는 등 특정평가를 강화했고, 국가 중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분석·평가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함으로써 정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 2009년 특정평가는 2008년도 대비 3개 부문을 신설,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정책소통·홍보, 국정관리역량, 정책 및 민원만족도, 규제개혁 5개 부문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실시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정책부문(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위주로 중간점검을 실시해 7월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그 결과를 각 부처 하반기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종합평가는 5개 부문 평가결과 전체를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조치했다.

가. 핵심과제

2009년도 평가는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선진화 등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부 단위 경제분야에서는 7개 기관 21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대응,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 등 4개 과제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농·수협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등 3개 과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6개 기관 18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 3개 과제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절감, 생명력 넘치는 국토환경 보전과 생태체험 활성화 등 4개 과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일반행정분야에서는 6개 기관 18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북한 대남위협 대응 등은 우수한 성과를 냈으나, 국방개혁 조정·발전 및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 단위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8개 기관 16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및 수요자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의 성과가 우수하며, 경제살리기 통계 개발 및 통계생산 방식 선진화,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 단위 일반행정분야에서는 11개 기관 22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과 생계형 침해범죄 근절대책 등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보훈 의료서비스 확대, 병역의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징병절차 개선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녹색성장

2009년도는 녹색성장 평가를 처음 실시한 해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달성을 위해 관련 부처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녹색생활 부문에서는 환경부의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 이 우수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문화부의 '녹색성장 선도 관광산업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과제는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 정책적 장치가 부족하여 미흡과제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 ·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경부의 '에너지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농진청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기상청의 '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 역량 제고 및 신성장 동력 개발 지원' 과제는 한반도 기후변화감시 관련 적정한 목표체계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과 중소기업 녹색 R&D 투자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의 취약한 녹색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한 점에서 중기청의 '녹색 중소 벤처기업 육성' 이 우수과제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의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과제는 구체적 대책 미비, 정책 연계성 부족 등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 국정관리 역량

2009년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2009년 부처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2008년 중점관리법안 및 2009년 입법계획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관계역량 · 개혁역량 · 입법추진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했다.

관계역량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 국회에 대한 지지확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반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확보 노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치중되고, 비판적인 시민단체 · 언론 등에 대한 설득 · 지지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혁역량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비상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새롭게 대두된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에게 개혁이 내재화되지 못해 부조리한 관행이 나타나고, 국가위기상황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입법추진역량에서는 정부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2009년 정부중점법안 55건 중 5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계획이 빈번하게 수정(추가, 철회 및 일정변경)되어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가, 청 단위는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정책소통 · 홍보

2009년 정책소통 · 홍보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반영한 중앙행정기관의 대내외 소통 · 홍보성과를 측정하고 정책홍보를 통해 추진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 따라서 집행적이고 관리적인 홍보활동 위주의 기계적 · 정량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소통의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산출 · 결과 위주의 정성적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각 부처는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및 친서민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홍보협력을 강화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지지기반과 추진동력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소극적 언론활동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정책형성-집행-사후홍보' 라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정책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소통 ·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대변인 회의, 국정과제 전략협의회 등을 활용해 홍보상황을 공유하고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이나 정책블로그 등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과 스토리텔링 기법, 입소문 마케팅 도입 등 홍보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과 언론대상 정책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외신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국내외 선순환 홍보를 추진하고 정책간행물 품질을 향상해 매체 활용도를 높인 점, 주요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가 확산되고 기관장이 적극 홍보활동에 나서면서 위기관리 대응성이 향상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다만 부처 간 협력홍보나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 정책 특성별로 차별화된 홍보대책 등은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보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해 부처 간 · 당정 간 정책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책추진 이후의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주요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슈관리가 필요한 정책이나 보다 많은 정보제공이 필요한 정책 등 정책의 특성에 따라 홍보수단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매체활용 홍보나 정책홍보 품질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주요정책의 기획홍보 성과, 정책기사 반영도 등 정책소통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 단위 기관 중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청 단위 기관 중에는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규제개혁

2009년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산업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 · 토지 · 기업 · 서비스업 · 환경 · 노동관련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9년에 정비할 규제개혁과제 총 1,327개를 발굴하여 855개 과제를 완료(계획 800개 대비 106.9%)했고, 경기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 ·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해 창업 ·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영업활동상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280개 과제를 새로 발굴했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 창업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미등록규제를 일제조사 · 등록(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 2,011건)하고 불필요한 미등록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개혁의 체감도를 높였다. 또한 모든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도입해 규제의 현실 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인 점, 규제심사와 규제등록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은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법률개정과 같은 후속조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성과가 일부 미진하고 규제개혁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투자환경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일부 부처에서 규제개혁 홍보나 의견수렴이 형식적이거나 기관중심의 일방통행식 홍보를 실시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평가항목별로 볼 때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적실성과 규제개혁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신설 · 강화 규제의 적절성, 홍보와 의견수렴 등 시행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기관이 평균 67.7점, 청 단위 기관이 평균 69.3점으로, 청 단위 기관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부 단위 기관 중에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 단위 기관 중에는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정책 및 민원만족도

2009년도의 국민(정책 · 민원)만족도 평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주요정책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009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2008년 대비 0.3점 상승한 60.97점으로 나타났다. 부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81점으로 2008년 대비 0.91점 상승했으며, 청 단위 기관은 62.07점으로 2008년 대비 0.15점 하락했다.

과제별 · 업무유형별 평가결과를 보면, 부 단위 경제 분야에서 7개 부 단위 21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지식경제부의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64.19점)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54.62점) 과제가 가장 낮았다.

부 단위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6개 부 단위 18개 과제 중 환경부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63.50점)이 가장 높았고,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55.37점)은 가장 낮았다. 부 단위 외교안보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6개 부 단위 18개 과제 중 국방부의 '북한 대남위협 대응'(62.0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행정안전부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일자리 신규 창출'(56.05점) 과제가 가장 낮았다.

청 단위 경제 분야에서는 8개 청 단위 16개 과제 중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64.44점) 과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국세청의 '경제살리기 ·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58.72점) 과제가 가장 낮았다.

청 단위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12개 청 단위 23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소방방재청의 '소방 119 구조 · 구급 서비스 고도화'(67.80점)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질없는 건설사업 시행 및 자족기능 유치기반 조성'(54.91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2.36점으로 2008년 대비 5.33점 상승했다. 이는 일반민원 · 인터넷민원 만족도 동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일반민원의 상승폭(3.88점)에 비해 인터넷민원 상승폭(5.85점)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면, 부 단위 19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68.27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0.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부는 62.10점으로 부 단위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청 단위 20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5.54점으로 중소기업청이 90.4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국세청은 66.19점으로 청 단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3) 2010년

2010년 특정평가 개요

- 정부업무평가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로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가속화를 지원하고,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뒷받침했다.
- 정책과제 부문에 2010년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추가하는 등 특정평가를 확대하고, 부처 업무부담 경감과 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2010년 업무계획 전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주요 정책과제와 국정관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책과제별 과제의 중요도 · 난이도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 타당성을 높였다.
- 2010년 특정평가는 2009년 대비 1개 부문을 신설,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핵심과제 · 일자리 창출 · 녹색성장 · 정책관리역량 · 정책홍보 · 규제개혁 · 정책 및 민원만족도 7개 부문에 대해 부문별 '전문가 평가단'(총 200명)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하반기 종합평가 결과는 2010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등급화(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로 부처 간 경쟁을 유도했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가. 핵심과제

2010년도 평가는 기관별로 등급화하면서도 정책단계별, 평가지표별로 평정점수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화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성장률 등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경제분야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반행정 및 사회문화 분야는 무난한 평가를 받았으나, 국민적 우려가 집중되었던 국방 및 외교안보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단계별로는 모든 기관이 정책형성, 집행, 성과단계의 추진실적 등이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형성단계(부 74.6점, 청 77.7점)보다는 성과단계(부 78.9점, 청 79.1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기관의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설정 및 연계가 미흡하고, 정책집행단

계에서는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논란 방지 등 전략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정책성과단계에서는 정량적인 정책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질적인 성과달성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 부 단위 77.7점, 청 단위 78.9점으로 청 단위 기관이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 단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청 단위에서는 특허청과 해양경찰청이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나. 일자리 창출 과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도부터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포함해서 실시했다. 각 부처는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간병·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실물경제 활성화로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의 선순환 기반을 복원하여 고용률 향상과 실업률 하락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숙제로 남아 있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별 평가결과, 중소기업청 및 지식경제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녹색성장

2010년도에는 2009년도와 달리 녹색성장 정책추진 여건이 성숙된 만큼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적절히 병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녹색성장 특정평가를 통해 부처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녹색성장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선정' 사례나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평가대상 부처로 새로 선정되거나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적은 일부 부처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는데, 방위사업청의 '친환경·저에너지 국방기술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분야 녹색성장 기반 마련' 등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평가대상 부처에서는 과제선정의 부적절,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 부족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부처의 기존 업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평가과제로 제시한 'Green Wash' 사례가 발견되었고, 일부 부처는 중요한 녹색성장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이 용이한 평가과제를 제시하는 등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평가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추진과정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성과 달성도에서 부처간 편차가 발생했으며, 특히 성과지표를 무의미한 정량지표로 제시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인 부처, 성과의 질적 충실도가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평점이 낮게 부여되었다.

라. 정책관리 역량

정책문제에 대한 이슈 대응, 정책집행 관리·지원, 입법 노력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단위 기관은 조정·통합 능력보다는 이슈 대응 및 입법 성과 등이, 청 단위 기관은 이슈 대응 능력보다 집행관리·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책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전·사후 대응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조정·통합 능력을 키워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통계 역량 및 주요업무과제 추진상황 관리, 중요 입법 등 쟁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 강화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 정책관리역량 최우수기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되었고, 부 단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가, 청 단위는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정책소통·홍보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라는 범정부 차원의 홍보기조하에 각 부처는 핵심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국격 제고, 친서민정책, 저출산 대책 등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부처 간 유기적 협력홍보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정부출범 2주년과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범정부적 사전 홍보기획 및 다양한 홍보활동이 돋보였다. 또한 정책블로그의 민간포털 연계 활용 이외에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정책홍보에 적극 적용하고, 스마트폰 확산에 발맞추어 선도적으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앱을 개발해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반기별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홍보 기획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고, 정책현장방문, 방송프로그램 출연, 개인 트위터 활용 등 기관장의 정책홍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주요 정책홍보 시 민관 홍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정책특성을 반영한 홍보콘텐츠 구성·활용노력 등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문으로 평가되었다. 홍보전략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민간전문가, 관련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의견수렴과 협력홍보가 긴요하나 대체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일방적 정책정보 전달 위주의 홍보책자 발간 등 공급자 중심으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점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처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규제개혁

2010년도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관광·방송통신 등 서비스 산업, 국토·환경 관련 규제를 포함하여 총 1,375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10월 말 기준으로 837개의 과제를 완료해 계획(969개) 대비 86.5%의 진척도를 나타냈으며,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 등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114개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채용 및 승진상의 학력규제 287개 과제를 새로 발굴·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도 정비했다. 일몰적용 검토대상 규제 4,692건 중 1,044건(22.3%)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는 등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확대도입하여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 자체규제 심사위원 지원기능 신설 등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신설·강화규제 심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에 소극적이고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후 정책환경변화나 관련기관 협의미흡 등으로 인해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는 계획단계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적정성' 등이 양호한 편이나, 집행단계의 '규제개혁과제 홍보의 적극성', 산출·결과단계의 '규제개혁의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기관이 평균 66.4점, 청 단위 기관은 평균 66.9점으로 청 단위 기관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었으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산림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사. 정책 및 민원만족도

2010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핵심과제)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92점으로 나타났는데, 부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40점, 청 단위 기관은 60.39점이었다. 2009년까지는 정책만족도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2010년도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가 소폭 하락함으로써 평균점수도 전년도에 비해 1.05점 하락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19개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3.6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56.60점으로 가장 낮았다. 청 단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통계청이 68.6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방위사업청은 53.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0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4.4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7점 상승했다. 민원 종류별로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모두 동반 상승했고, 특히 일반민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 단위 기관 평균은 70.39점, 청 단위 기관 평균은 78.17점이었다. 부 단위 19개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가 84.0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58.40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청 단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85.90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검찰청이 59.69점으로 가장 낮았다.

4) 2011년

2011년 특정평가 개요

- 활기찬 경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평가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 2011년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서민생활안정과제 부문을 신설하고, '나눔과 배려' 관련 평가(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을 정책관리역량 부문에 포함했다. 또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통한 온라인상 자료입력·제출·의견교환 등을 활성화해서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 2011년 특정평가는 2010년 대비 1개 부문을 신설,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핵심과제·녹색성장·일자리창출과제·서민생활안정과제·정책관리역량·정책홍보·규제개혁·국민(정책 및 민원)만족도 8개 부문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205명) 평가단을 구성하고 참여 전문가 간 상호 검증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2011년 12월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38개 전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기관장들이 부처 정책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 핵심과제

2011년도 평가결과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으며, 통화스와프(중국·일본) 체결로 외환유동성을 확대했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둘째, 서민금융 지원 등 서민가계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담당인력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보증 및 자금지원을 확대했으며, 납품단가 조정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넷째,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했으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투자를 확대했다.

다섯째, 적극적인 정상외교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한-EU, 한-미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가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전·월세난, 가계부채,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정책성과 체감도가 낮았으며, 산사태 피해, 공공시설 내 석면함유물질 발견 등 안전관리 미흡과 정전사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한 점, 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사립대학 구조조정, 군 지휘구조 개편 등 개혁과제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추진 지연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나. 일자리창출 과제

평가 결과, 각 부처의 일자리창출 정책추진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 및 실업률 지속하락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설정하는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열린고용사회구현 방안,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통해 고용시장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다만 청년실업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하는 경우 미흡한 점이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은 전체 임금의 약 50% 수준인데다, 임시 일용직 비율이 전체 평균의 약 2배로 나타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서민생활안정 과제

서민생활안정 과제평가는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기조인 '서민생활안정' 구현을 위해 추진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친서민정책에 대한 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부문으로 신설되었다. 경기회복 흐름에도 물가와 전월세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의 경기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생계비 부담완화 대책추진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민우대금융 확대 등을 통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과 더불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도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민생활안정 정책의 추진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거나 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과 통신요금, 각종 금융수수료 등의 경감대책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고, 소상공인 점포개선과 신용보증 그리고 중소 영세기업 지원정책은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으며, 전월세 안정대책과 저소득층 대상 문화바우처 사업은 당초 목적에 비해 정책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녹색성장

평가 결과,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9년 11월에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2020년 배출기준량 대비 30% 감축)한 후 후속조치로서 부문별(업종별)·관리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발표하고,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총 2조7,412억원으로 2010년 2조5,012억원 대비 2,400억원 증가)했으며,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핵심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분야와 녹색생활분야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린카드제도 도입,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 녹색 농업기술 개발, 녹색금융 활성화,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 등 녹색성장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그린스쿨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주민 반발, 재원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기온상승·강수량 증가 심화에 따른 국민건강관리, 재해예방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추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녹색마을 조성사업(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산림청), 녹색길 조성사업 (행안부, 문화부, 환경부, 산림청)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각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함으로써 국회 및 언론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다.

마.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각 부처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활동의 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를 통한 정책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의 경우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나눔과 배려', '공직기강 확립 노력', 조직·인사·정보화 관리 등의 '행정관리역량'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일부 부처에만 해당되어 결측치가 많았던 '갈등관리', '위기관리', '법령 준비', '주요법안 처리'는 제외했다.

평가 결과,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대규모 정전사태·한미FTA 비준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현안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정책과제 발굴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적시성·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정부적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동대응이 늘어나고,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도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통계의 정책 활용도가 향상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이 달성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에 솔선했다.

다만 정치권 대립 등으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워 주요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기 대처가 지연되거나 대증적·소극적 대응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부처의 경우 온정주의적 처분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패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했다.

기관별 평가 결과, 정책관리역량 최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이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정책홍보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어디가 활성화되면서 대국민 정책정보 제공유형이 다양해지고 정책이슈의 파급력이 증가했으며, 한미FTA, 4대강 등 범정부적 국정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한 부처 간 협력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대변인제도 활성화, 공직자 SNS 활용 가이드라인 도입 등 범정부적 온라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점, 스토리텔링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처별 기획홍보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공감대를 한층 높인 점, 기관장의 정책현장 설명회와 트위터 등 SNS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한 점 등은 주요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나 조정절차 없이 단독보도를 추진하거나 부처 간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다. 또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생산이나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 등에 주로 의존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홍보기법 활용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관별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사. 규제개혁

미국 · 유럽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기업경영상의 애로요인과 서민 ·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 ·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총 1,434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928개 과제를 개선(계획 942건 대비 98.5% 완료)함으로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과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했다.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개선, 건설산업 하도급 규제개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부담능력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규제적용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 신설 ·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불합리한 규제형성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한 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활성화와 규제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과 시장경제 왜곡을 최소화한 점 등은 주요성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규제개혁과제는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미진해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도출에는 다소 미흡하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의 미흡과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일정이 지연[3]된 점, 일부 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기관별로는 국토해양부와 관세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나타났다.

아. 정책 및 민원만족도

2011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114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3.22점으로 나타났는데, 부단위 기관은 61.81점, 청 단위 기관은 64.56점이었다. 2011년도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함으로써 정책만족도 평균 점수도 3.3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19개 기관 중에서는 여성가족부가 67.1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통일부는 58.05점으로 가장 낮았다. 청 단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기상청이 68.8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방위사업청이 59.24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2011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3.72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71점 하락했다.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 단위 기관 평균은 68.84점, 청 단위 기관 평균은 77.68점이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19개 기관 중 행정안전부가 82.5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60.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청 단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92.2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대검찰청이 64.95점으로 가장 낮았다.

3) 2011년 10월 기준 완료대상 규제개혁 과제 942건 중 142건이 계획 대비 지연

5) 2012년

2012년 특정평가 개요

- 친서민 · 공생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 부처가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중심의 수시 정책 점검 및 분석 강화로 정책의 개선을 도모했다.
- 중앙행정기관 신설(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을 39개에서 41개로 조정하고, 서민생활안정과제를 핵심과제로 통합하는 등 평가부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간소화했다.
- 핵심 및 일자리과제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상반기 평가를 강화해(상반기 평가결과는 7월 31일 국무회의 보고), 미흡원인 등을 적기에 개선토록 조치함으로써 연내 국정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하반기 종합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보고회(11월 22일)를 통해 발표했다.

가. 핵심과제

평가대상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각 부처의 정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하되, 특히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및 부처별 업무보고 핵심실천과제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면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적극적인 물가대응, 서민 · 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 주요성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비상대응 체제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FTA를 통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으며,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복지 · 교육분야 제도개선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우수 성과로 평가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경제적 약자 및 취약계층 권익구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하고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112신고 대응, 다중이용업소 화재, 개인정보 유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불안을 야기한 사건 · 사고 등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 보호에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금융시스템 선진화, 군 지휘구조 개편, 통일재원 마련 등 국회의 입법지연과 관련된 과제들은 이해관계자 지지확보를 통해 하반기 중 개혁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개 과제에 대해 3등급(우수, 정상 추진, 보완 필요)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장관급 기관

은 60개 과제 중 우수 18개(30%), 정상 추진 32개(53.3%), 보완 필요 10개(16.7%)로 평가되었고, 차관급 기관은 38개 과제 중 우수 11개(29%), 정상 추진 23개(60.5%), 보완 필요 4개(10.5%)로 평가되었다.

하반기 종합평가의 경우에도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의 4단계로 등급화했는데, 최우수 2개, 우수 9개, 보통 24개, 미흡 5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 · 취약계층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 · 고용의 안정세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FTA 성과 가시화, 재정건전성 등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 둘째,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 · 중소기업 지원 강화, 보육 · 교육 · 의료비 부담 경감,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 셋째, 4대강 사업 마무리,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및 신산업 창출기반 확충 등을 통한 미래 경쟁력을 제고했다. 넷째, 런던올림픽에서의 선전, 한류 확산 등 국가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가 확산되었다. 다섯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 · 미 미사일지침 개정,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분야의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 고용 · 교육 · 안전관리 · 안보 분야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즉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이 향후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 · 장년층 고용대책과 대학구조개혁 관련 낮은 체감도,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원전 · 방사선 안전관리 및 성범죄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와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 · 보고체계 등에 문제점이 노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나. 일자리과제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개선 ·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일자리과제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했다. 전년도 일자리창출과제 평가에서 지적된 부처 간 연계 노력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부처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평가지표를 수정했다. 상반기 평가 결과, 주요 일자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취업자 수가 2,500만명을 돌파하고 6개월 연속 6,000개 이상의 신설법인이 생성되는 등 창업 증가세도 지속되어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탈수급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고교 직업교육 강화, 차별요소 제거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공 · 민간의 열린 고용이 확산되었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재 활용도가 낮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종합평가 결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취업자 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의 단계별 취 ·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창업이 증가했으며, 고교 직업교육의 강화와 선(先)취업-후(後)진학을 지원함으로써 열린 고용문화를 확산시켰다. 또한 직접일자리 지원 중 73%를 취업계층에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에도 기여했다.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청년 체감고용개선과 장년층 고용연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고용안정지원사업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노력도 개선 · 보완 필요 사항으로 나타났다.

다. 녹색성장

2012년도 녹색성장 평가는 녹색성장 비전선포(2008.8.15) 이후 4년 성과를 마무리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성장 성과 및 국민적 체감도를 집중 점검 · 평가함으로써 정책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전년도 평가방식을 개선, 부처별이 아닌 정책분야별로 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평가과제에 대하여는 과제별로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과제 간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종합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녹색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 · 녹색기술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 건물에너지 통계 DB 구축 등을 통해 녹색생활화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 출범, 녹색 ODA 확대 발표 등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입지를 강화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예상배출량 설정 시 적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을 보완해야 하며, GGGI의 국회비준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정책관리 역량

2009년부터 실시된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각 부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성과 창출을 촉진해왔다. 2012년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을 조정하고, 2011년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전문가 · 피평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기존에 특정평가로 시행해오던 '행정관리효율화 노력'을 자체평가로 전환하

여 기관의 자율적 평가역량 제고를 도모했다. 종합평가 결과, 정책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관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고용 확산, 비정규직 차별시정, 하절기 전력관리 등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논란 확산을 방지했다. 부처협력 부분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성폭력 및 학교폭력 대응, 주 5일제 전면실시 등 부처 간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이해관계자 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국회통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실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극적 설득을 통해 갈등관리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직기강 및 재정집행 분야에서는 비리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 및 예년대비 집행률 개선 등을 통해 청렴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일부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부처협력 및 공동대응 미흡 등으로 효과성 있는 대책마련이 지연되었으며,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급박한 사고발생에 대해 부처 간 협력 및 공동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책조정·통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효과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규제개혁

2012년도에는 과정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부처의 전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와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중점과제 성과평가'로 평가를 이원화해 실시했다. 또한 부처별 등록규제 수의 차이와 규제개혁의 가능성, 등록규제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했다.

종합평가 결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내수시장 위축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기업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자·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전체 발굴 과제 총 1,473건 중 2012년 9월 현재 완료대상 과제는 총 1,122건이며, 이 중 946건을 이행 완료(이행률 84%)하여 기업활성화 지원, 국민 부담 완화에 규제개혁이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도·산간 등 취약지역이나 영세·중소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 완화·차등 적용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규제개혁 성과 홍보 강화, 국민·기업애로 제기사항의 수용률 제고 노력 등으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69.4점으로 전년 대비 2.2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부처의 경우 등록 규제건수 대비 발굴 과제건수가 10%에 미달하는 등 규제개혁 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영향분석 강화 필요성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정책홍보

2012년은 그간 수행해온 정책과제의 실질적·가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인 만큼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 성과확산에 우선 목표를 두고 평가하되 기획·협력, 소통활동 및 성과확산으로 평가를 범주화하여 실시했다. 또한 전년에 비해 정책성과백서 등 정책기록 지표를 추가하고 평가배점을 일부 조정했다.

종합평가 결과, 국민의 관심영역 확장,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홍보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체별·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존의 SNS 홍보수단 외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앱을 정책홍보에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기관장 중심의 창의적·능동적 대국민 소통이 정책 인지도 제고에 기여를 했다. 다만, 주요정책 및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홍보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형화된 홍보기법을 지양하고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등 정책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 정책 및 민원만족도

2012년도 국민(정책·민원)만족도 평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주요정책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은, 민원난이도 측정 시 종전과 같이 민원인들이 직접 난이도를 부여하지 않고 사전에 마련된 난이도 분류유형에 따라 민원 난이도를 측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만족도 조사 시 일반국민의 체감만족도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30% → 50%)함으로써 조사집단별 특성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도 41개 중앙행정기관(98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4.23점으로 나타났는데, 부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63.25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65.26점이었다. 금년도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가 모두 상승함으로써 정책만족도 평균도 전년도에 비해 1.01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21개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청 단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산림청을 비롯해 기상청, 병무청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였다.

2012년도 40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5.74점으로, 전년도의 73.72점에 비해 2.02점 상승했다.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이 모두 상승했다. 부 단위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2.21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78.95점이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20개 기관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이 높은 민원만족도를 보였다.

제4절 정책현안과제 분석 운영 성과

1. 총 론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수부처 관련 정책,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요사업 등을 분석과제로 선정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지엽적인 과제는 지양하여 분석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책수요자 ·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분석의 효과성을 제고했다.

전문가 평가단 운영과 정책 현장점검을 통해 시의성 있는 문제분석 및 대안을 이끌어냈다. 현장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관련자료 확보, 현장점검단의 효율적 운영, 점검 대상의 적절한 선정 등을 통해 질 높은 현장점검을 확대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보고서를 다수 산출했다. 또한 전문가 평가단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선정과제의 추진상황 파악과 중복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실 내 관련 부서 및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성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현안과제 분석 결과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2. 연도별 분석 내용 및 결과

1) 2008년

2008년 정책현안과제 개요

■ 2008년에는 총 9개의 과제를 평가했다. 장애인 · 다문화가정 · 재외동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다룬 과제가 많았다. 또한 '방과후 학교', '영어마을'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정부 정책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가.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글로벌 경제가 확대되면서 해상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서해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방지조치, 초기대응, 복구 및 주민지원 등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분석 ·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사고방지조치 및 예방시스템 운용분야를 살펴본 결과, 사고요인을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상관제시스템이 미흡했다. 무엇보다 현행 관제시스템은 항해 정보만 제공하는 소극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고위험 인지 시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 또한 중소형 선박의 경우 관제센터와 교신 주파수(VHF 16)를 맞추지 않거나 관제사항을 청취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가 많아 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둘째,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분야를 분석한 결과, 사고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셋째, 주민지원 및 피해보상 부분을 확인한 결과, 조기에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지원금 증액요구, 지급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배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사고요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항만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는 현행대로 항만청에서 운영하되 유조선 등 위험선박 운항이 많은 연안지역의 VTS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에 대해서는 VHF(초단파) 통신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사고초기 현장지휘 시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업무 총괄지휘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처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셋째,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 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의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 전까지 피해주민 생계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 생태계 복원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 · 운영 정책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무의탁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시설에 수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314개소이며 입소자는 2만1,709명에 이른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정책이 장애인 복지개선 종합대책의 일부로만 추진된다는 한계점과 함께 생활시설 공급량 부족, 운영비리, 일부 인권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 공급확대, 예산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 대책이 요구되었다. 또한 장애

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도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정책과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② 문제점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장애인 생활시설 대책의 장기비전 · 전략부재를 들 수 있다. 즉 탈시설화, 자립생활, 사회복귀 지원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리 등 당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하여 시설의 대규모화만 초래하게 되었고 거주기능뿐만 아니라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교육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동일 생활시설 내에서 제공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 이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역작용도 낳았다.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사업 추진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생활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계획 대비 시설 확충 실적이 저조하고, 개별 이용자의 생활시설 선택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입소자 수 중심의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에 이양했으나 필요 금액보다 적게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 재정부족은 물론,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시설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포함된 기본계획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의 수립이다. 둘째, 장애인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통합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 분류체계의 개편, 기존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과 함께 소규모 시설 및 개인 신고시설의 제도권 흡수를 제시했다. 셋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서비스 최소표준 기준마련, 서비스 가정의 체계화, 시설 등록 및 등록 취소 체계의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이용자 부담방식도 적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합리화와 입소자 권리 보장 지침 · 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 제정은 물론, 시설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이용자의 권리보장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고 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 재외동포 교류 · 협력사업 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국가경쟁력 강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등을 위해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 ·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한인기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교류 활성화,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관련사업 중복, 비체계성 및 종합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협력 사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동포 네트워크 교류협력 사업의 단계별 · 연도별 로드맵과 중간목표를 제시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통합적 전략이 없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이 미약해서 관계부처 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지고 사업이 중복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특정분야에 편중 구축되었으며, 네트워크 간 횡적연계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세대와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소 미흡했고, 세계한상대회 등 오프라인 교류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했다. 셋째, 재외동포들의 인터넷 이용 증가추세에 비해 이용환경이나 편의성이 매우 열악했으며, 이미 구축된 재외동포 포털의 콘텐츠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재외동포 교류협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분야별 ·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적인 통계DB 구축, 네트워크 간 연계강화 등 재외동포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국내 인터넷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포털사이트 구축과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 모국과 거주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토록 했다.

라.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방과후 학교'는 학생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이다. 2006년 이후 방과후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 · 중 · 고의 99.9%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 중이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운영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

라 교육현장에서는 사업 축소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 형식적 운영, 사교육비 경감 효과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② 문제점

분석·평가결과,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학교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사업축소 우려가 제기되었다. 둘째, 단위사업별로 재원이 상이하고 지원방식이 복잡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고, 세수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각 부처가 방과후 학교 유사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보육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를 정규교육의 연장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근거법을 마련토록 했다. 둘째, 예산외 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교부 시 반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셋째, 유관업무 수행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협의체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넷째, 초등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기관의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영어마을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용영어능력 제고, 학교 영어교육 보완 등을 목적으로 2004년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5월 현재,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21개 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높고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은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대규모 영어마을을 신규로 건설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일부 지자체는 교육수요 및 적정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교과부·교육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영어체험학습센터와 투자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지속적 어학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농어촌 및 중소도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어민 강사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어마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교과부는 영어체험 교육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마을과 영어체험 학습센터 조성 현황 및 계획, 교육수요 등을 종합 분석해서 지역별 영어체험 교육시설 수급관련 예측자료를 작성·제공키로 했다. 셋째, 예측 결과에 따라 영어마을이 없고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교육부 및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영어체험 학습센터 등을 중점 설치하기로 했다.

바. 케이블방송산업 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케이블방송은 1995년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기술발전·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생활정보 등 다양한 방송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매체로 발전해왔다.

또한 2000년 1월 통합「방송법」제정 이후 각종 신규매체 등장에 따라 '규제완화'가 진전되고 매체 간 시장경쟁 심화와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케이블 TV·위성방송 등 신규매체가 증가하는 등 케이블방송 산업정책이 변화해왔다. 최근 '방송통신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공정경쟁과 매체 간 균형발전을 통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해 케이블 방송산업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규제체계의 전환이 요구됨에도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즉 '유사·동일 서비스에 상이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규제형평성, 규제중복·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다. 둘째, 방통융합이라는 현실에 부응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역량이 미흡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서비스가 새로 나타날 때마다 개별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셋째, 엄격한 경영규제를 '가입자 기반의 시장점유율' 규제로 전환·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한 입법절차 지연, SO 간 인수·합병에 대한 방통위 및 공정위 간 중복규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주파수 대역 부족이 불러온 의무제공 아날로그 채널의 단계적 축소 등 케이블방송 관련 규제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방송 및 통신분야를 망라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로의 전환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Action Plan)을 수립 · 추진하도록 했다.

둘째, 방송과 통신의 규제가치(공익성 대 산업성) 조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동시에 '방송통신 통합법제' 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셋째, 의무제공 채널 축소 등 채널 구성 · 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중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사.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식품 이물질 발견,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식품 육성 관련 주요정책의 추진실태를 분석 · 평가하고 친환경 농식품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유통 ·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선정과정 및 추진기간 등 사업 추진방식이 다소 비합리적이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가 유기농법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곡류, 채소류 등에 집중되는 등 양적 확대에 치우쳐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다소 미흡했다.

둘째, 인증단계에서는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산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정책적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너무 많고 타 인증제도와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인지도가 저조했다.

셋째, 유통 · 소비단계에서는 체계적 유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어려웠고, 유기가공식품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산 유기농산물 가공판매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단계별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시한을 5년까지 연장하는 등 직불금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 사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브랜드 개발 · 마케팅 등에도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단순화하고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하는 등 유기가공식품 인증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셋째, 학교급식 등 대규모 수요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매물류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여성결혼이민자 · 외국인이주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재학생 자녀가 해마다 급증하여 2008년 4월 현재 약 2만1,000명에 달하는데, 다수부처의 다문화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교 · 가정생활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 · 자녀의 효과적 교육지원을 통해 언어 · 문화 · 학습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사전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이주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되어 차세대인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위한 별도 전담부서가 없는 등 정책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한국어 및 문화교육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정책조율 부족으로 복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부 국립국어원 등이 한국어교육 등을 중복 운영하는 등 예산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다. 셋째, 부처 차원의 주도적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중복 및 전시성 · 일회성 프로그램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공교육과 연계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방과후 학교 및 취학전 아동 한글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부모의 자녀 학습 지도능력 함양에 주력하기로 했다. 둘째,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 지역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국내정착 및 동화를 위한 시혜대상자로 보는 소극적 정책관점에서 탈피하고, 출신 모국어와 문화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국가인적자원으로 양성해나가는 전향적 정책관점을 확산키로 했다. 셋째, 교과부, 복지부, 문화부 등 부처 간 관련업무 분장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서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 국제행사 유치 및 사후관리 현황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의 대외이미지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국제행사 유치 · 개최 건수가 1999년 505건에서 2007년 1,028건으로 8년 동안 2배나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유치경쟁의 과열 및 유사행사 중복, 사업비 과다, 방만 운영 등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행사 유치 · 운영을 지원 · 관리하기 위해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해왔으나, 국제행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 등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행사개최 이후 평가 등은 미흡한 상태여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한국관광공사, KOTRA 등의 기관이 국제행사 지원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국제행사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유·조정하는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주관기관이 유사한 노력을 중복 투입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

둘째,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는 규모·파급효과,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추어 국가 차원의 중요행사로 간주되지만 공식 추진주체는 국가가 아닌 도시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의견상충이 발생하거나 복수의 지자체가 동일·유사한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셋째, 국제행사 시설물 건립·관리·운영에 국고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활용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국제행사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중앙부처-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둘째, 지자체 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국제기구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기 전 예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셋째, 시설물 건립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2) 2009년

2009년 정책현안과제 개요

■ 2009년에는 가장 활발하게 정책현안과제 평가가 실시되었는데(19건), 청년인턴, 대학생 창업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1998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통해 연간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전략이 미흡해 기관별로 제각기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R&D 지원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전략이 부재하고 기관 간 지원과제 중복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R&D 지원제도(KOSBIR)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본 제도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에서 기관별 기능에 대해 조정·연계해야 하지만 단순히 지원계획 및 지원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둘째, 기관별로 R&D 성격·기능 등이 다양하지만, 권장지원비율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효적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중소기업 R&D 지원과제의 85.5%가 개발연구에 지원(2007년 기준)되고 있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범정부적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국가적 지원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중소기업 R&D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지원금액 규모와 지원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R&D 예산에 대한 권장지원비율을 '의무지원비율'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당 지원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중소기업 R&D 지원전략 수립 시 기초연구 비율 결정과 기초연구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첨단기술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약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나. 항만현대화 기금 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항만현대화 기금은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인천항 등이 1996년 11월에 항만 노사간 자율협약으로 5년간 200억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기금의 재원은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임대료 10%와 항만하역요금의 1% 등 주로 항만 사업자가 부담하게 했으나, 항만물동량 감소로 하역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첫째, 노사간 협약 시 기금적립 종료시점을 협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하역작업 인력이 이미 상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었다. 또한 당초 기금의 사용목적을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으로 규정했으나, 항만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력에게도 생산 장려금 또는 복지 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상용화된 항만의 경우 본래의 기금조성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금 조성을 중단하되,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존중해 일정기한 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둘째, 항운노조로부터 항만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항만은 향후 상용 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기금 조성 후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항만별 소요자금, 연간 조성액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기금사용 용도 제한과 관련하여 당초 합의한 기금의 목적인 '항만근로자 고용안정' 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정했으며 상용화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은 고용안정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비상용화된 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후생복지비는 오히려 상용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폐지하도록 했다. 적립된 기금의 잔액은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했으며, 추가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토록 개선했다.

다. 북한이탈주민 교육 · 취업지원 대책

① 현황 및 평가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부족 등 경제사정 악화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해 2008년 말 현재 1만5,057명에 달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응 교육, 주거 · 교육 · 취업 등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실업률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범정부적인 체계적 종합대책과 함께 지자체 · 민간의 역할 강화, 취업지원 내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했다.

② 문제점

첫째, 그동안 추진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대책은 현안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단기 보완대책 수준으로, 정책의 장기비전 ·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책 관련 협의 · 조정기구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협조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저조했다. 셋째,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내용이 불충분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넷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 민간 등 지역사회의 정착지원 기능이 부족했다. 다섯째, 일용근로자 비율 과다 등 취업의 질도 여전히 낮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사회적응 교육, 취업지원, 고용촉진 등 관련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경로 확인 등 생애주기관리 추적시스템을 마련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부처 간 업무 협력을 강화했다. 셋째, 취업 준비도 제고를 위해 성별 ·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 30개소를 지정 · 운영하여 지역사회 초기 적응교육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기로 했다. 다섯째,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 및 고용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라. 의료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2004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훈련된 평가단이 현장방문을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준 충족여부와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도한 바대로 진료와 운영체계 측면의 향상을 가져왔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성과도 있으나, 일부 병원의 과다경쟁, 중복평가 등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동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2기 평가가 끝나는 2009년 중에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② 문제점

평균적인 고객만족도가 매년 같은 수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급형태에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매년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기관도 대규모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 도모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대형 의료기관과 중소의료기관 간의 질적 수준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한편 평가 주체의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를 정부가 주관함에 따라 관료주의로 인한 평가 형식화와 한정된 예산, 인력지원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성 한계도 제기되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특히 임상질 지표(폐렴,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부문의 14개)와 고객만족도 지표(예약 및 접수절차, 의사의 진료서비스, 검사 및 처방, 병원내 환경, 전반적 평가 등 23개)는 일부 지엽적인 내용을 측정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평가결과도 원칙적으로 공개되고는 있지만 상시적이지 못하고 병원순위 중심으로 알려짐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계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가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지는 못했다.

③ 개선방향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를 비롯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평가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평가대상 확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기준 · 지표의 개선과 함께 환자들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수시조사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평가결과 측면에서도 사용 목적에 따라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특히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의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결과 활용 및 평가제도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즉 평가결과의 제공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열악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품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기제 개발이 중요하고 건강보험 등 각종 정부정책과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기타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즉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별로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외에 주변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다면 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행 등급제 방식의 의료기관 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평가제도에 대한 대내외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 위기청소년 보호 · 관리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각종 비행과 가출 등으로 학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이나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위기청소년(9~19세) 보호를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과 부처별 정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 보호 · 관리정책은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고 재원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처별로 추진 중인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 및 부처 간 연계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 · 관리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했다.

②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단위학교 상담실 운영은 교사 상담능력 및 상담교원 운용체계가 미흡하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경우에는 일부 학교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기대응 및 관계기관 간의 연계 대처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 보호 ·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고위기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위기청소년별 지지자를 만들어주는 청소년 동반자사업과 위기청소년 발견시스템 운영사업(헬프콜! 1388)은 CYS-Net사업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었다.

한편 법무부와 관련해서 소년보호관찰사업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통한 대상자들의 인식개선 등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청소년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미흡했다. 소년원은 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라 교정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저연령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했다. 소년교도소로는 천안교도소를 운영 중인데, 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충분한 기회제공이 없어 향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③ 개선방향

위기청소년 종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및 지원시책 대폭 확대를 중심으로 크게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이다. 복지부 주관으로 교과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CYS-Net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둘째,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 연차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하며, 위기청소년 상담 · 지도 활동에 퇴직교원 등 전문상담인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셋째, 사회에서의 보호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을 구축하고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통합관리하도록 주문했다. 넷째,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 대책으로서 청소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및 소년원 시설 개선, 재소자 컨설팅,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조치했다.

바.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세계적인 국제행사는 통상 6~8년 전에 유치가 확정되나 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 4년 전에 유치가 확정되어 준비기간이 촉박하며, 개최지인 여수지역은 도시 인프라가 미흡하고 국제행사의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짧은 기간 내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여수시, 전남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첫째, 행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타 국제행사보다 준비기간이 촉박한데다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 임의로 '엑스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외교적인 마찰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엑스포 명칭 사용 난립으로 인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위상과 인지도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둘째, 박람회장 내 시설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침체로 인해 아쿠아리움, 콘도 건립 등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박람회장 외 기반시설 측면을 분석한 결과, 여수공항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시내 도로망 확충을 두고 국비지원 근거 논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무총리실 내에 가칭 '국제행사 정부지원점검단'(단장 : 국무차장)을 구성·운영하여 준비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지원하도록 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시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 '박람회', 'EXPO'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둘째, 박람회장 내에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5,902억원 재정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추후 상환 조건으로 4,846억원의 선투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그리고 민자 유치를 위해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참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개선했다.

셋째, 여수박람회장을 연결하는 교통 체증구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조기에 국비를 반영하여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된 오염물질 총량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8년 이래 환경부가 주요 하천의 과학적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수요가 많은 자체단체의 경우 동 제도에 의해 할당되는 개발 허용량이 부족하여 지역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목표수질은 자치단체별로 향후 발생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국책사업 및 지자체장의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사업은 사전 추정이 곤란하여 목표수질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악지역 등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오염삭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재정·인력 등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법령에 있음에도 제도의 의무 실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이 미흡했고, 공무원들의 기피 등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일선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목표수질 산정 시보다 수질 악화를 불허하는 원칙(anti-degradation)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목표수질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오염삭감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오염삭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도록 '오염삭감계획 수립 제외지역'을 설정하고,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주기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해서 도시계획의 총량지표(인구·토지 등)를 고려하도록 했다.

셋째, 재정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를 부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확보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 중소기업 청년인턴 운영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청년실업자(15~29세)는 37만5,000명, 실업률은 8.8%로 전체 실업률 4%의 2배가 넘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대책 차원에서 2009년 1년 사업으로 운용했으며, 2009년 4월 말 기준 계획 대비(1차 사업) 33.6% 채용률을 달성했다.

② 문제점

첫째, 계획단계에서 사업 성격상 1년 한시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한 면이 있고, 청년실업자를 중소기업 인턴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며, 유사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둘째, 모집·선발 단계에서 인턴 참여자와 실시기업의 참여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했고, 인턴의 구인-구직 간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으며, 인턴 채용 후 중도 포기 및 정규직 전환에의 어려움 등이 발생했다. 셋째, 운영·관리 단계에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이 경직되게 운영되었으며, 지나치게 민간 운영기관에 의존하고, 운영관리·행정절차가 복잡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계획단계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촉진 및 관련 사업을 연계·통합하여 추진한다. 둘째, 모집·선발단계에서 인턴 참여자/실시기업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모집홍보 및 충실한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운영·관리 단계에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인턴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고 운영기관 채용을 독려하며, 운영관리·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자. 대학생 창업지원 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국제 경제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취업지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대학생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문제점 발굴 및 신규 또는 예정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사전에 도출함으로써 향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제도운영에 활용하고 정책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은 창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관심 제고에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공적인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궁극적 정책효과는 미흡했다. 둘째, 대학생 창업강좌 지원이 정규교과로 개설되어 대학 내 창업 붐은 조성되었으나, 대학마다 강좌내용이 유사하고 분야별 특화가 부족했다. 셋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일괄지원 방식을 택함으로써 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업평가 및 환류과정에서 해당지역 지방 중기청의 역할이 미흡했다. 넷째, 뉴미디어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희망 청년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뉴미디어 창업스쿨 운영은 실제 창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자금지원 부족과 관련기관 간 협력부재로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동아리활동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원액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둘째, 대학·지역·성별·전공·학년별 특성에 따라 창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수업내용을 질적으로 심화하고, 기초·전문반 또는 초급·중급·고급 과정 등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강좌 전문성을 제고토록 했다. 셋째, 현지 사정에 밝은 지방중기청을 활용하여 사업성과 평가에 적극 활용하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넷째, 초기투자 규모가 비교적 큰 뉴미디어 창업 아이템에 대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임셰어링(Time-sharing) 지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차.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을 기반으로 스포츠 경쟁력을 확보하여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으나, 소수의 우수 선수들에게 체육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육성하는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특히 2009년 당시 초·중·고 학생 선수들의 (성)폭력·학습기회 박탈문제와 체육·입시비리 등 학교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훈련연습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보호·관리가 미흡했다. 둘째 학기 중 대회 개최로 인한 학생 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화되고 있으나 학교의 개선노력은 미흡했다. 셋째, 특별전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체육특기자 대학선발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는 등 부조리도 있었다. 넷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질관리가 미흡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했다. 다섯째,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종목별·연령별 표준훈련기준시스템이 부재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성)폭력 행위자를 퇴출하고 방과후 운동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추진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개최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최저 학력제'를 도입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셋째,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구분 관리해 체육특기자의 대학선발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토록 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을 제정해서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넷째, 경기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선발해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의무적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잠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또한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사회적기업」육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일자리와 사회적기업 관련 개별사업의 급속한 확대 속에 정책범주(scope) 설정, 총괄·조정,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반적 체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2가지 정책개념이 혼재되어 사업 중복 등 정책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 점,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별 관리체계 및 정책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사후관리가 형

식화된 점, 정부재정의 투자효율이 낮은 '보호형'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한 점 등을 확인했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인증요건으로 인해 신청을 제약하며, 사후관리가 미약해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게 되고,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우선 구매 및 컨설팅 지원 등이 부족하며, 정부와 민간자원의 연계가 미약한 점 등이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혼선을 유발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폐기 및 「사회적기업」의 조기 활성화에 정책자원 및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목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시장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TF를 내실화하여 재원배분 및 근로조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적극 조성하여 재정지원 방식을 선진화하며, 프로보노 등 민간자원 연계활동 체계화를 꾀했다.

타. 취약계층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취약계층 직업훈련사업은 취업준비자,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대상에 따라 훈련기관, 지원내용 및 방식 등이 상이하다. 취업준비자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 등 정부 소속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 제조업 기간산업 분야 위주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훈련기관에 훈련물량을 배정(물량배정방식)하여 실업자, 미취업자 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취업난 가중에 따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② 문제점

첫째,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이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효과가 저해된다는 점,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 산업체 등과 연계·협조가 미흡한 점, 훈련의 질을 감안하지 않는 경직적인 단가체계로 인해 대학, 사업체 훈련기관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의 참가가 부족한 점, 자활훈련 대상자에 특화된 훈련과정이 거의 없어 취업 의욕 제고와 취업률 향상이 어려운 점 등이 있다. 둘째, 여성대상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여성 가장실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훈련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 등이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훈련계획 수립 시 지자체 및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며, 자활훈련 활성화를 위해 취업 이후에도 종전의 혜택을 유지하는 등 직업 훈련 체계를 개선한다. 둘째, 훈련과정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수요자 및 현장 위주 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자활훈련 대상자에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셋째, 여성대상 훈련에 기본경비 차별 폐지, 여성가장에게 가계보조금 등 제공, 여성 특화 훈련과정 제공 등 실효성을 제고한다.

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1995년부터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체복무제도의 일환으로 종전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목적 수행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무이탈과 그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및 복무 장기화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기 복무중단 방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실태에 대해 분석·평가했다.

② 문제점

공익근무요원은 대상자원의 자질, 공익근무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복무이탈의 유인이 많고 정상적인 복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복무기관의 관리체계 미흡 및 관심부족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곤란한 실정이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 평가 결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이탈 및 장기 복무중단으로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및 무단 이탈자 색출·검거를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복무 부적격자로 인해 대다수 건전한 근무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민업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공익근무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제도를 신설하고, 복무 부적합자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법조계, 의료계, 유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근무부적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 둘째, 복무관리 및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형사처분 종료자의 신속한 재복무를 위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형사처분 종료사실 확인 및 통보 절차를 개선했으며, 복무중단자의 복무관리 실태 확인·감독 등 2차 관리책임 부여, 복무지도관 교육과정 개설·시행 등 병무청의 복무관리 기능 확대 및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복무관리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부여와 복무기관의 복

무관리 실적을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교과서 검정제도란, 민간출판사가 교과서를 연구·개발한 후 교과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는 제도이다. 교과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 검정교과서 개발 및 선정을 추진하여, 검정교과서 시장 규모는 약 1,106억원, 검정교과서 참고서와 학습지 등을 포함할 경우 시장규모는 약 9,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교과서 선정 자체는 발행사에 큰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나 수익성이 높은 참고서 또는 학습지 선정을 사실상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발행사들의 불법·과당 경쟁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교과서 선정절차 및 방식이 학교에 따라 상이했으며 교사, 학부모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당사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둘째, 일선학교의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이 매년 여름방학(8월) 중 1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져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교과서 선정 심의 시 이해 관계인의 제척규정이 없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셋째, 일선학교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참고자료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공정성 시비 등을 우려해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넷째,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개념, 유형, 처벌 등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어 불공정행위를 적발해도 처벌하기가 곤란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교과서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교사, 학부모 등 참여를 확대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했다. 둘째,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이해 관계인 제척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셋째,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 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했다. 넷째, 불법행위 유형을 명문화하고 상위 법률에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거.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2006년 6월 도입된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의 운영과정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선발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 FTA 체결 다각화 등 해외에서의 외교업무 수요가 증가했으나 적기대응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운영·평가 등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부위원 중 외교부 외에는 인사·예산 담당부처의 국장급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어 전문성 심사기능이 취약하고 민간위원의 전문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운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행 주재관 임용대상자의 교육훈련이 주재관 직무수행 적합도를 제고하기에는 질적·양적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 대한 체계적 사전학습이나 정보습득의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정세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주재관 보강과 감축 등 정원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주재관 직무역량과 성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노력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현행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업무분야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추가 위촉하는 한편, 주재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작성 시 특정분야의 업무 전문성 외에 상황판단능력, 조정·협상능력 등 통합적인 정책관리역량도 고려하도록 보완했다. 둘째, 주재관 부임 전 교육을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구분해서 총교육기간을 확대하되, 현행과 같이 상·하반기 연2회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어학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셋째, 현재 개별 주재관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는 직위존속 여부, 직급 적정성 심의와는 별도로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분야별·재외공관별·지역별로 통합적 주재관 직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교부-행안부 합동으로 주재관 직위공모제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도록 했다.

너. 서민생활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대내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2009년 7월 서민금융, 영세상인, 보육·교육, 의료복지, 여성, 주거복지 등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정책효과 창출을 위해 당초 발표된 6대 분야를 서민경제, 사회복지, 주거복지 3대 분야로 조정하고, 현장 위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서민생활 지원대책 추진상황의 중간분석·평가 결과, 전체 27개 지원대책 중 12개는 '정상' 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11개 과제는 집행과정상 '일부 보완 필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 및 대화의 장 마련」 등 영세상인의 지원정책이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10만원 신규지원」 등 보육지원 관련 대책에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셋째, 주거복지분야의 경우 주거안정화는 대다수 서민의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계층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대다수 서민계층의 상대적 소외감을 초래하여 정부정책의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대기업의 대형수퍼마켓(SSM) 진출계획 제공을 통해 갈등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규정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대상을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인 소득하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아동 연령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까지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지원을 확대토록 하고,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함께 거주하는 연립주택으로 점진적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중간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효과성 등 정책과정에 대해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 경제자유구역 분석 · 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전 세계적으로 과감한 규제완화 · 투자유인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특구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국가전략사업으로 6개 경제자유구역(FEZ)을 지정, 규제완화 및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그간 법령 · 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전략의 중복, 지역개발사업으로의 변질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의 시험대, 외국인 투자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분석과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구역 지정 시 지리적 위치, 면적, 규모 등 지정요건 부재로 과대 · 과다 지정 및 부적합 지역이 다수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정된 6개 구역 간 차별화가 미흡했다. 둘째, 구역개발 · 운영에 있어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부문 등 개발, 실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지연 및 당초 지정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일부 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거,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등 지역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셋째,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의 유치체계 부재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활동을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중복 ·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 병행 운영되어 외국 투자유치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 생활여건 부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자격 및 승인 절차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비해 엄격하다는 모순점이 나타났고, 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기본적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하여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 주택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미분양세대를 내국인용으로 전환하여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주요 정책, 제도개선 등 심의 · 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제도적 ·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자체 예속화가 불가피하며 잦은 직원 교체 등으로 업무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구역별 핵심사업 선정 및 부적합 지구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개발 ·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방지하고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기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 단계별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 체계를 정비하고, 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등 기존 투자유치 유사지역을 정비했다.

넷째, 외국인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구별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수요에 부합한 주거 공급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조직 ·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러.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을 추진했다. 대규모 예산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에 대한 점검 · 분석을 실시했다.

② 문제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제불황으로 생계위기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표적 친서민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견됐다. 첫째, 재산이 과다한 사람이나 비경제활동 인구처럼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가 상당수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임금 대신 지급되는 상품권 비중이 누구에게나 전체 임금의 30%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유통기한도 3개월 정도로 짧아서 노인, 자급자족 가족 등 생활비 지출이 적은 가구는 상품권 소비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셋째, 생산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료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당시 지침상으로는 재료비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했다. 또한 생산적 사업을 이끌어줄 전문기술 인력의 임금이 정부노임단가 80% 이내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전문인력들은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업초기에는 단순취로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다가 2009년 7월부터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총 1만2,005개 사업 중 생산적 사업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③ 개선방향

우선 2010년에는 차상위계층 · 실업자, 휴 · 폐업 자영업자, 여성가장 등 저소득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소득과 재산의 상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둘째, 농어촌 · 도서지역 등 상품권 소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상품권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재료비 비율을 25% 이내에서 40% 이내로 조정하고, 전문기술인력 임금을 정부노임단가 8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생산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머.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도시민의 여가 활용과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농림부, 행안부, 산림청 등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미흡 등으로 인해 체험마을별 특성화가 부족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동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조성단계에서는 대상지역 선정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졌다.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체험마을의 조성주체, 체험 · 숙박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 · 관리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둘째, 시설이용단계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의 마을별 특성화가 미흡하고, 체험마을 대부분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설 활용이 부진하거나 방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체험마을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조성 완료 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이 소홀한 상황이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각 사업 주관부처별로 사업계획을 재검토 · 보완하도록 하고, 시 · 군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체험마을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체험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입지 여건 등 필수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경쟁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중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타당성 검증을 강화했다. 둘째, 조성이 완료된 마을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수준진단을 실시한 후 향후 지원 ·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체험 · 숙박 등 관련시설의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셋째, 수익금 배분 등 운영 · 관리와 관련 마을주민 간 내부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적 공통지침을 마련 · 제공하도록 했으며, 체험마을 운영기반의 확립을 위해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3) 2010년 평가

2010년 정책현안과제 개요

■ 2010년에는 총 8개의 과제를 평가했는데, 서민생활 지원대책, 전통시장 활성화, 노인 장기요양제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가 많았다. 아울러 한약재 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 서민생활 지원대책 종합 점검 · 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정부는 대통령 3대 국정운영기조 및 국무총리 5대 핵심 아젠다인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2009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국민 신뢰 확보 및 정부정책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대책추진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점검 · 평가를 실시했다.

② 문제점

서민생활 지원대책 종합 점검은 서민생활 지원대책 추진상황 중간분석 · 평가와 연결되는 과제이다. 특별히 문제점이 있기보다는 중간평가 시 개선 · 보완사항으로 저신용 근로자에 대출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완화,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 등 21개 과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서민생활 지원대책 종합점검 결과, 향후 보다 나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미소금융 대출 창구의 지방창구 확대와 일반국민이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책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학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 인하 등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방지 대책 검토와 보육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연령 ·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따른 투기 발생 억제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 투기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춘 분양 · 임대비율을 조정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대상을 자가 소유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실거주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단독주택 위주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나. 한약재 생산 · 유통 관리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국내 한방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4조5,600억원이며, 세계시장에서 2.6%가량 차지하고 있다. 유통방식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약용작물은 산지수집상이나 도매상이 구매해 제조업소, 도매업소를 거쳐 한약 규격품으로 유통하고 있으며,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약재는 수입 시마다 관능검사를 거친 후 유통된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의 소득기반 마련 및 참살이(well being)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으로 한약재 및 한방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반면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 · 변조 등 한약재의 유통과정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해졌다. 이에 국산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 · 평가를 통해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했다.

② 문제점

제1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2005~2010년)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한약 유통구조의 실질적인 개선도 미흡했으며, 특구지정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괄 · 조정 기능도 수행되지 못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제도는 도입 초기 상태이며, 까다로운 기록관리 의무로 인해 농가 참여도가 많이 적었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수급조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수급조절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도 부실했다. 또한 한약 규격화제도도 도입 목적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했다.

한편 중독우려 한약 지정 품목이 20개로 한정되어 있어 독성한약재 품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었으며, 독성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등 관리지침이 부재하고 일반인이 농산물로 구매가 가능하여 중독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③ 개선방향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1~2015) 수립 시 해소방안을 포함토록 했으며, 한의약 관련 지역개발사업도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품종개발 및 유기적인 종자보급 체계 구축 한약재 계약재배 및 직거래 활성화, 국산 한약재 품질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제시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복지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권고했으며 한약재 생산 및 소비 통계 조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최종 소비처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에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및 원산지 위 · 변조 우려가 큰 식용 수입 한약재의 유통이력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유통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중독우려 한약재 확대, 중독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관리 의무화, 불량한약 회수율 평가제도 도입 및 제조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 금지 등 독성 · 불량 한약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다.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결과, 수혜대상자와 요양 인프라의 증가, 수급자 가족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기관 간 협조 미흡과 요양기관의 불법 · 부당 비용 청구 및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② 문제점

노인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커지고 요양기관의 불법 · 부당 비용청구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 반면 요양기관의 부당 유인 ·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효성이 미흡했다. 또한 시설요양기관 내 응급 ·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곤란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통 불편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나, 재가 요양기간의 진입장벽은 낮아 소규모 · 영세 기관이 난립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증 · 개축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기존 시설의 증 · 개축은 부진했고 증 · 개축 대상인 기존 시설은 노후 건물 공사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었다.

한편 수가 측면에서도 「본인부담금」이 동일하여 우수시설 편중현상이 지속되었고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등급개선장려금」도 실효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어 부적격자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질저하가 초래되었으며,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유발되었다.

③ 개선방향

우선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요양서비스 수혜범위 및 수혜대상 확대 시기를 수요 추계분석과 재정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자녀유무 및 자녀숫자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 방안도 검토하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며,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알선행위 등 부당·편법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 요양시설 내 제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일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입원·외박 허용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고려하여 시설·인력기준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인력기준은 강화된 규정(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유지하고 시설기준은 유예기간 내에 충족하도록 유도하되,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이어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주고 등급 개선장려금 조정을 통해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연령기준, 결격사유, 최소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를 다른 사업에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라. 출산장려사업 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우리나라 출산율(2009년 1.15명)은 최근 20여 년간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평균 1.6명) 중 최하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및 국가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중앙·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미흡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체감도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이에 그간 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추진상황 및 지자체 대책의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② 문제점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도 지자체 출산 장려금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보육·교육비 지원사업과 잘 연계되지 않아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간 예산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 범정부적인 총괄·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앙과 지자체 간 공동의 정책개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검진시간 부담 등을 이유로 검진요일 및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유아 검진제도 이용 불편 사례도 빈번했다. 또한 출산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기간 중 취업 촉진을 위한 장려금 제도 도입(2007)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실적은 저조했다.

③ 개선방향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수교육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확인·점검하고, 매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을 관계부처에 제시했다.

보육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보육·교육비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광역·기초지자체 간 보육비용 지원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 검진기관의 진료요일·시간제한 운영실태를 전면조사하여 개선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민간 병·의원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육아와 관련된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적이 저조한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방안, 특히 여성취업 전담기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맞춤형 홍보강화와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 사업 마련을 강구토록 하고, 지자체도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총괄 추진체계 마련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외식문화의 확산과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국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를 도입·시행해왔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산·정착 및 농축수산물의 안전과 유통질서의 질적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식생활 변화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및 방법 변경이 미흡했고, 농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대 시행도 다소 미흡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시 표시방법 위반업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

둘째, 농산물 이력제와 관련하여 쇠고기 이력제 전산신고 대상업체 및 적용품목에 사각지대가 있고, 이력제 시스템 간 연계·통합성 결여로 효율성이 떨어졌다.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이력제 기반도 미비했다.

셋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제 관련, 수산물 원산지 표시율이 매우 저조하고,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추진이 부진했다.

넷째, 축산물 등급표시제 및 식품이력제 관련, 쇠고기의 등급표시가 불합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식품이력제가 임의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농산물 원산지 표시품목을 반기 또는 연단위로 조사하여 적기에 관련 고시에 반영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섭취하는 부위의 원산지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둘째, 쇠고기 이력제 전산신고 대상업체를 연평균 종업원 5인 이상 업체까지 확대하고, 돼지고기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해 시범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셋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율 제고 및 이력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수입량, 국내산과의 가격차이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선정해 연차별 의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넷째, 식육판매업자의 육질(량)등급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식품이력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식품이력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바. 가축분뇨 처리 및 지원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 2006.3.24)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환경부 · 농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수립 · 추진했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대책 추진의 효율성, 적절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② 문제점

첫째,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현황관리가 미흡하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시설 처리능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둘째, 공공처리시설은 지자체장 관심도 등에 따라 지원 대상지역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처리비용이 저렴해서 자체처리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자원화보다는 정화처리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자원화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었다.

셋째, 공동자원화시설은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해 시설 완성도가 낮고 사후관리 미흡 등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 사례가 있었고, 대량 해양배출 지역 등 필요지역 위주의 설치지원이 미흡했다.

넷째, 불량 퇴 · 액비의 유통에 따른 작물 재배농가의 부정적 인식과 액비 이용관련 규제 등으로 액비의 유통 활성화가 미흡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개별처리시설 전수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배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액비화시설 등을 집중 지원했으며,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해양배출이 많은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셋째,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형태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처리공법 재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우수 공법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넷째, 비료성분, 부숙도 등 품질관련 항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액비에만 액비 살포보조금을 지급하는 품질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액비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액비품질관리 전문가를 배치해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유통환경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2002~2009년 8년간 2조2,600여 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량, 편의시설 설치 등 일부 쇼핑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책 추진이 전반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② 문제점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 없이 연례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이 반복되었고,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시설 개선에 예산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에 비해 경영현대화 지원 시장의 매출상승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원액의 90% 이상이 시설개선에 투입되고 있었다. 둘째, 고객편의시설 설치가 시장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시장과 취급은행이 적어 사용이 불편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셋째, 상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장도 시설개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적절한 효과분석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구노력 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국무총리실은 주례보고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시설개선 중심에서 경영개선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긴요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재설계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유형 분류를 세분화하여 수준별 맞춤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시장과 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끝으로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배후상권과 고객분석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상인의 자구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제를 도입해 예산지원액이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4) 2011년 평가

2011년 정책현안과제 개요

■ 2011년에는 총 7개의 과제를 분석 · 평가했는데, 지자체 경전철 조성사업, 농공단지, 장사제도, 물류시설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거나 잠재적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을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가. 지자체 경전철 조성사업 추진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지하철 ·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투자 효율성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대체할 신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이 「녹색 도시교통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 · 부산 · 용인 · 천안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개발 활성화 및 도시 간선 연계 교통수단으로 경전철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전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경전철은 기존 지하철에 비해 저렴한 건설비, 환경보전 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을 지닌 녹색교통수단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절한 사업이지만, 1990년대 이후 각급 지자체에서 민자사업 형태로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소홀, 민간투자사업 관리능력 부족, 재정 부담을 간과한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전철 개통을 앞둔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지에서는 막대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책효과 달성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전철이 많은 장점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급 지자체의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통이 임박한 단계인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해 신규 교통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추가 인하 등 협상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 책임하에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둘째, 이미 착공한 서울, 광명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고비용 · 저효율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사업비 절감 노력 등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셋째, 사업추진 여부 검토 단계인 천안, 창원 등 91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기타 신교통시스템과 철저히 비교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모호한 법령을 정비토록 했으며, 최적의 신교통시스템(경전철 · BRT 등) 도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

나.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체계 개선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농공단지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종이다. 2010년 12월 현재 전국에 421개 단지가 운영 · 조성 중이며, 그간 불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단지조성비 · 세제 등에서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농어촌지역 고령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 ·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에 의존한 선심성 · 경쟁적 단지 조성으로 인해 농공단지의 과다 공급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산업입지법」 등에 규정된 중장기적 관점의 공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다공급 방지를 위한 단지조성비 심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미분양률 등 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에도 조성비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적정 단지 공급을 위한 제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그간 농공단지 정책이 단지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둔 반면, 기 조성된 단지에 대한 운영 · 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 · 보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된 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었고, 조성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부실단지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단지 지정해제 · 부실기업 입주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농공단지의 가동률 등 통계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등 현황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농공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특화 단지를 제외한 신규단지 조성 시 국비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의 경우에도 지역특화업종 입주기업 비율 등 지정요건과 기조성 단지의 분양률 · 가동률 등 조성비 지원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 지자체 합동평가 ·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노후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상시적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조성 이후 분양률 · 가동률이 저조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등 정비를 추진하며, 단지 운영현황의 정

확성을 제고하는 등 이미 조성된 단지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다. 장사제도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저출산 ·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장사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장사제도와 시설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수요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 장례식장 및 상조서비스의 불공정 관행 등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 평가를 실시했다.

② 문제점

첫째, 지역별로 장사시설 수급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나, 각 지역의 장사시설 수급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었다. 택지개발과 묘지 재정비 등으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부족했다.

둘째, 자연친화적이고 위생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장사방법으로 자연장이 부각되고 있었으나, 자연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기준과 설치가능 용도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자연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산골(散骨)이 관행적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부 부처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셋째, 장례서비스에 과다한 요금이 적절히 단속되지 않고, 장례용품 규격화와 표준화가 부실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③ 개선방향

국무총리실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첫째, 각 지역의 사망자 수, 장사방법 선호 추이, 장사시설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개장화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직접 화장할 수 있는 기준과 현지화장이 가능한 이동형 화장로 보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장지 조성면적과 구역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산골에 대한 불법논란을 해소하고 민원 피해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정비 등을 통해 해양장 불법 논란을 해결하기로 했다.

셋째,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장례물품 강매, 추가부담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신문고제도와 장례용품 규격화 · 표준화를 추진하고, 장례식장의 구체적인 서비스내역과 가격비교가 온라인상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라.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기부식품 제공사업(food bank)이란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용 가능한 식품을 기탁받아 식품기부 사업자를 통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되다가 2006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본격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수요자가 원하는 식품을 편의점 형태의 마켓에서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푸드마켓(food market)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사업 시행 후 10여 년이 지났어도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기부식품 제공사업과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가능성, 전달체계의 비효율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정낭비의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정책대상자,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 · 관리체계를 점검, 분석하여 동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② 문제점

시행 10여 년 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주무관청의 관리부실도 주요인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전담부처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했고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부족도 일선현장의 사업부실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 또한 지역여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적으로 푸드마켓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푸드마켓의 경우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기초 푸드뱅크 관련 인프라 및 지원 미비로 인한 운영상 애로가 발생했다.

한편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의 상당 규모가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 · 단체 등으로 배분되는 등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기부식품 대부분이 기초수급 대상자에 지원되고 있어 기초수급지원과 더불어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부식품 제공 측면에서도 기업의 식품기부에 대한 유인기제가 부족했음은 물론, 기업을 포함해 식품기탁자에 대한 발굴이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그 시행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 점검 기능이 매우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개선방향

효율적인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즉 사업 대상, 전달 및 지원체계, 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사업인력 관련 지자체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 인력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토록 했다.

푸드마켓의 난립과 운영상 비효율 해소방안으로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푸드마켓 신규

설치계획을 재정비하고, 난립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간 통폐합을 유도했다. 아울러 푸드마켓 설치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재검토 및 푸드마켓 설치지원예산을 이동식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변경토록 했다.

그리고 복지시설 · 단체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2015년까지 개인이용자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며, 기초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선정 시 비수급자 우선선정 지침을 마련케 했다. 또한 식품기부 확대를 위해 우수기업 상훈 등 기업의 식품기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푸드뱅크와 유사단체와의 협조 및 연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총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시행을 주문했다.

마. 스포츠산업 육성 · 지원정책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우리나라는 스포츠 4대 국제행사를 모두 유치한 스포츠 강국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와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스포츠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스포츠산업에 대한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스포츠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스포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이 전담부서 부재, 인력부족 및 부처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인해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② 문제점

첫째, 스포츠산업은 콘텐츠, 특허, 교육, 레저, 방송, 세제 등 다수의 부처와 관계된 범정부적 과제이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단독으로 추진하여 주요과제의 세부계획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스포츠산업 육성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진행이 매우 부진함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평가해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

둘째, 대규모 경기장 건립을 위한 사전 심사과정에서 사후활용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대회 이후에도 적자발생이 지속되는 스포츠시설 관련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재하여 관련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스포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등을 적절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둘째, 스포츠시설 건립 시 사후활용계획을 포함한 건립기준을 마련해 심사에 활용하도록 했고, 정부재원이 투입된 일정규모 이상의 경기장을 대상으로, 매년 경기장 활용계획 수립 ·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바.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나눔 · 봉사 관련 미담사례와 각종 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기부금 유용사례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4]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기부금 사용 · 관리 및 단체운영 실태를 점검 · 분석하고, 관련부처 · 관계단체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② 문제점

첫째, 기부금대상단체의 관리주체가 주무관청, 지자체, 기재부 및 세무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부금대상단체 중 일부는 기부금 사용 및 단체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내용 · 기간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셋째 주무관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체 운영 실태에 대해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부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및 당해연도 기부금 5억원 이상 기부금대상단체(종교법인 제외)의 사업계획 · 실적, 예 · 결산 자료(인건비 내역 포함), 기부금 수입 · 사용 내역,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단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해 기부금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했다.

둘째, 재정현황 위주로 공시되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에 단체의 공익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공개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넷째, 사문화되어 있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학술 · 장학 · 자선단체)의 회계감사 기준[5]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기부금대상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다섯째,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 관련 법 제 · 개정 및 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용사례 발생(2009년 법인카드 유흥주점 등 이용 3,300만원) 후 모금실적 감소 : 2,242억원(희망2010캠페인) → 2,112억원(희망2011캠페인)
5)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사. 물류시설 조성 ·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경제성장, 교통망 확충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물류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 전체적인 물류비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관련법 제 · 개정, 물류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하지만 그간 물류시설 조성 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설 수요와 공급 간 괴리, 물류시설 간 중복개발, 비효율적인 시설운영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물류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첫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부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물류시설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물류시설 공급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시 물류수요(물동량)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시설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제반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수요지와의 낮은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연계 미흡 등 불합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물류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부처 간 유사 물류시설의 경쟁적 조성과 물류시설 중복개발 방지시스템 부재 등에 따른 시설 중복투자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입지선정과 시설개발 위주의 정책추진에 따라 시설운영 측면의 활성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 공동화 사업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개선방향

물류시설의 조성과 운영 측면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신규 조성되는 물류시설(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신규조성에 대한 국고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수요-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물류시설 중복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류기본계획수립과 물류시설 조성 시 관계부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물류정책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기 조성 · 운영 중인 물류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물류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물류시설의 사후 평가방안 및 물류공동화 사업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5) 2012년 평가

2012년 정책현안과제 개요

■ 2012년에는 총 9개의 과제를 분석 · 평가했다.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더불어 민간 응급이송체계,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등 장래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있는 분야를 개선하고자 했다.

가. 이륜자동차 관련제도 점검 · 분석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이륜자동차는 유지비용이 적고 이동이 편의한 장점이 있어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증가되어왔다. 이에 2012년부터 기존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치사율, 소음 ·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높은 보험료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 ·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늘어나는 이륜자동차 사용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사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를 실태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륜자동차 사용중단 및 폐기 차량에 대한 사용폐지신고 관리 부실로 실제 사용차량 현황파악이 불가능해 과태료 처분, 보험가입 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퀵서비스 · 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가정용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50cc미만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초과는 '소형면허'로, 이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차량의 중량, 성능, 기능 및 안전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면허시험(기능, 필기)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폐지차량을 일제 정리하도록 했다.

둘째, 자동차보험 할인상품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50cc미만 사용자 중 농어촌 고령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을 강구하도록 했다. 셋째, 배기량별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면허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신고포상금제도는 위·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그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을 받는 제도로, 정부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도의 효율성으로 인해 각 행정기관이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현재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0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2012.3 기준).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입 및 운영과정에 있어 운영성과평가 및 환류 부재 등 관리체계 미확립에 따른 효과성 미흡, 법적근거 미비, 전문신고자의 활동에 따른 폐해 등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신고포상금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환류체계가 없어서 일단 도입되면 운영 실적이 없어도 관성적으로 존치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내부지침 또는 기관장 지시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이 저조해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는 활발했으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은 사회·문화적 여건, 환경변화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셋째,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들이 등장하고 신고포상금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부업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부실 서비스 제공 및 장비 강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신고포상금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편성·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근거규정이 법령에 없는 신고포상금의 경우, 중앙부처 소관은 법령에, 지자체 소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했다. 둘째,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거나 상황변화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확보하여 유지되는 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경미한 위반 신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셋째,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으며,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의 일정 비율(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신고자가 수입원으로 인지하고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탈루하지 않도록 철저히 과세하여 공정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

다.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수산식량자원 확보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생산 비중이 높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인공어초 투여 및 수산종묘 방류 등에 총 1조2,548여 억원의 정부재정을 투자한 결과,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점진적으로 회복추세이나, 아직은 1960년대 자원량의 약 57% 수준에 불과해 동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970년대 이후 9,441억원을 투자해 온 인공어초사업이 그동안 발주시스템 미확립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자원회복을 목표로 하는 TAC의 경우 대상어종 자원량의 증감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탄력성이 부족하고, 해마다 산란기가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금어기가 고정되어 있어 산란기 중 보호받지 못하거나 산란기가 끝나 조업이 가능함에도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적정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한 어선감척시 어획량이 많은 어선들의 감척기피로 인해 감척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넷째,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방식이 유사함에 따라 중복 및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인공어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을 신설해 발주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어초 사업방식을 개선해서 인공어초가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설치된 이후에도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둘째, 자연 자원량이 감소되는 등 변동성이 큰 어종은 자원 재평가를 통해 TAC를 재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종묘방류종 등을 신규 TAC 어종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산란기에 따라 금어기를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어선감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넷째, 유사한 환경개선사업은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라.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3조2,000억원(2010)으로 연평균 8.1% 성장하는 등 그 수요와 관련산업이 크게 신장했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04)하여 과학적 검증을 통해 건강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성행, 일부 관리기준 미비, 과도한 유통 판매규제와 부작용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도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첫째, 건강식품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기능성(건강기능식품)과 유용성(일반건강식품) 표시 구분이 모호하여 건강식품의 허위표시와 과대광고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일반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이중규제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과도한 판매시설 규제 때문에 영업장 판매보다는 방문·다단계 판매가 유리하여 영업장 판매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영업자 신고와 교육, 시설기준 등에서 일반식품 판매업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방문·다단계 판매 성행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셋째,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운영되고, 제품 표시면에 부작용 신고기관 연락처도 표기하지 않는 등 부작용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현행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이 유사한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의 구분을 없애는 한편(기능성으로 통합관리), 영업관리 등은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판매업신고, 판매자 교육 등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장 규제를 제품의 품목, 유형 및 매장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체계를 개선했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 표시면에 부작용 신고기관 연락처 표기를 강화하고, 복잡한 부작용 신고창구도 일원화하도록 했다.

마. 민간 응급이송체계

① 현황 및 평가배경

고령화와 생활여건 변화로 인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하나인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대에 의해 주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공공(public) 응급이송과 주로 병원 간 이송하는 민간(private) 응급이송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 일환으로 응급이송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119구급대체계의 조직개편 등 공공부문 응급이송 체계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경우는 관심과 지원 부족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심도 깊은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② 문제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는 구체적인 규정과 방식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실상 구급차 관리·감독 및 책임주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의 관리기능도 미흡하고 민간 응급이송체계와 119구급대와의 연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구급차에 탑재된 의료장비의 내용연수 기준도 없고 구급차 자체에 대한 차령 제한 규정도 없었다. 또한 이송요금 산정체계도 부실하여 불투명한 요금징수가 지속되고 있었다.

응급차의 구비기준에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선 민간 응급이송업체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각각 24명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업체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구비 의약품도 소독제 외에는 의사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등 구입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에 우수한 민간 응급이송업체를 발굴·지원하는 인증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해 인증제도도 도입되지 못했다.

③ 개선방향

각기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감독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 중 한 곳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해서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구입·변경·폐차 시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응급이송 부문과 119구급대 간의 역할조정을 통해 열악한 민간부문의 이송 분담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간 구체적인 이송지침 마련 및 민간이송업체가 환자 이송 시 소

방방재청에 문의하여 이송에 필요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구급차에 대해서도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 「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한」 기준을 설정하게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안을 정기적으로 상정하도록 추진해 이송환자의 요금징수 투명화를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하도록 했다. 과도한 인력기준과 의약품 구비기준도 개선하도록 했는데, 특히 구급차가 구비해야 할 필수 의약품 중 의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의 처방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외에 우수업체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등으로 이송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실태 점검 · 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비만 유발이 우려되는 식품을 '고열량 · 저영양 식품'으로 관리하는 등 선도적 정책들을 시행해왔으나, 학교 주변의 저가식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주요 제도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별법 시행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② 문제점

첫째, 식품별 영양정보가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어린이들이 인지하기 곤란했다.

둘째,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은 일관된 영양측정의 어려움으로 고열량 · 저영양 식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영양측정 단위인 '1회 제공량'이 광범위해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셋째,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에 의거한 제품이 극히 저조한 점 등 품질향상 제도들이 부실 운영되고 있었다.

넷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 주변 200m 이내로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놀이공원, 학원 등 어린이 출입이 잦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했다.

다섯째, 학교 등에서 식생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개선방향

첫째, 어린이들이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깔로 표시토록 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둘째, 조리식품 중 영양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100개 이상의 체인점의 어묵, 튀김 등을 고열량 · 저영양 식품 판정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1회 제공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화하기로 했다. 셋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선행요건인 HACCP 요건을 완화하여 기준을 현실화했다. 넷째, 학교 밖 200m 지역 외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섯째, 초 · 중등 교사대상 어린이 식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분석 · 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사료 · 퇴비 등으로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제품 품질관리 미흡, 생산된 제품의 유통체계 미확립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생산한 사료 · 퇴비 중 불량제품 유통에 따른 농가피해와 무단매립 · 소각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사료 · 퇴비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유통과정상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셋째,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에 대해서 감량화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부실 재활용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서 처리업체 선정 시 재활용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재활용 능력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하고 품질 평가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을 관리하고, 농식품부 · 농진청 · 농협 등 품질관리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단계에서 비닐 등 이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전용비닐봉투를 이용한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시장 차별이 없도록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쓰레기 퇴비 간 국고보조금 지원 차별을 개선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순화된 용어(가칭 '식품재활용자원')를 신설하도록 했다.

셋째, 재활용 등으로 음폐수 배출량이 적은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관련 R&D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 · 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운용되던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2001.12)하여 운용 중이나, 여전히 과다 ·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갖는 부담금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부담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 ·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② 문제점

첫째, 다른 부담금에 비해 피납부자에게 과도한 부담(개발제한구역 부담금, 시설 부담금)을 주거나 부과 목적이 기존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3%)보다 높아 조정이 필요(과밀 부담금 등 18개)하고, 징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해양환경개선 부담금) 등 관리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한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징수실적이 평균 징수율보다 크게 낮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배출 부담금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부담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준(準)부담금 중 일부는 징수액이 변동요율로 정의되어 피규제자가 납부액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 납부액 또한 타 부담금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의 산정식 수정을 통해 징수액을 경감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조세와 통합하여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둘째, 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국세 요율 이하로 조정하고,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부담금이 징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에 '운행거리 연동제', '부담금 경감 규정'을 도입하고, 배출 부담금의 산정식을 조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했다. 넷째, 준부담금의 변동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하고, 납부액이 과도할 경우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도'를 도입하여 피규제자를 보호했다.

자. 귀농귀촌 지원 실태 분석 · 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발달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귀농귀촌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고령화 해소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본격화와 함께 귀농귀촌은 은퇴 등 결정 후 평균 2~3년 이내 실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농귀촌 활성화는 시급한 준비가 필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존 귀농귀촌 지원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 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② 문제점

첫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 육성'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귀농귀촌 사업의 법적근거 미흡에 따른 신규 사업 도입 · 확대와 지자체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고, 특히 귀촌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대상에서 퇴직예정자와 귀촌인이 제외되어 있고, 도시지역 거주자와 달리 도농복합지역 거주자는 귀농에 따른 농지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규모(20세대 이상), '뉴타운조성사업'의 입주자격(55세 이하, 영농소득 1,500만~3,000만원) 제한으로 소규모 귀농귀촌인은 입주할 수 없게 돼 있고, 이주 전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임시거주 · 체험공간 및 농어촌의 농지 · 빈집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한 상태이다. 넷째, 귀농귀촌 교육과정이 수요에 비해 적고, 교육기관도 서울 · 경기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비 자부담률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 일자리 정보 불충분 등으로 이주 초기 소득창출이 어려운 귀농귀촌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많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별로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귀농귀촌인의 선택권 제한 소지가 있다. 또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도 부족한 상황이다.

③ 개선방향

첫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귀촌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전담팀 · 전담인력 지정으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둘째,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사업기준을 완화하여 퇴직예정자와 귀촌인까지 자금융자를 확대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귀농하여 농지를 구입 시 취득세(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규모를 10세대 이상으로 하고, '뉴타운조성사업'의 연령제한은 폐지 및 영농소득기준은 완화토록 했으며, 농어촌체험마을, 폐교 등을 임시거주나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빈집과 유휴농지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넷째, 교육과정 부족과 지역적 편중문제 완화를 위해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했으며 교육비 자부담도 취약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다섯째, 고용부의 워크넷, 새일찾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 정보와 알선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여섯째,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일관성 있게 하고, 귀농귀촌 조례 제정이 확산되도록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 · 보급하게 했으며, 포괄보조사업인 농산어촌 개발사업(농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항목을 신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실시를 유도했다.

차. 문화유산 보존 · 관리실태 점검 · 평가

① 현황 및 평가배경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보존 · 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의 도래로 문화재는 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주요 문화유산의 멸실 · 훼손 등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허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문화유산 보존 · 관리 실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 분석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② 문제점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지정범위가 상이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인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현상변경허가라는 유사한 절차를 이중으로 신청 · 허가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둘째, 문화재 지표 · 발굴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일반 용역 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종류 및 전문분야인 문화재의 조사에 적격한 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문화재 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문화재 수리의 보수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넷째, 50년 이상 된 중요 근현대 문화유산인 경우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근현대 유산은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보존지구를 통합하여 보존지역에서 행해지던 개발행위허가 및 현상변경 허가를 통합하여 운용토록 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국민이 규제여부 및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문화재 조사기관의 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조사기관 선정 시 문화재 특성 및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문화재 수리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수리기술자에 대해 자격분야, 참여사업, 교육훈련 등을 표기한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관리를 체계화했다. 넷째, 「(가칭)예비문화재」를 도입하여 50년 미만 근현대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지정하고, 보존 · 관리토록 했다.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및 운영 성과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성과관리계획 수립 - 집행 · 점검 - 평가 - 환류' 체계로 구성된다. 정부 각 기관은 기관의 임무와 목표, 구체적 실행수단을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진한 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정에 환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기관은 기관별 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과 '성과관리 시행계획' 을 수립하며, 정책집행을 통하여 사전에 계획된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정책개선, 예산, 조직,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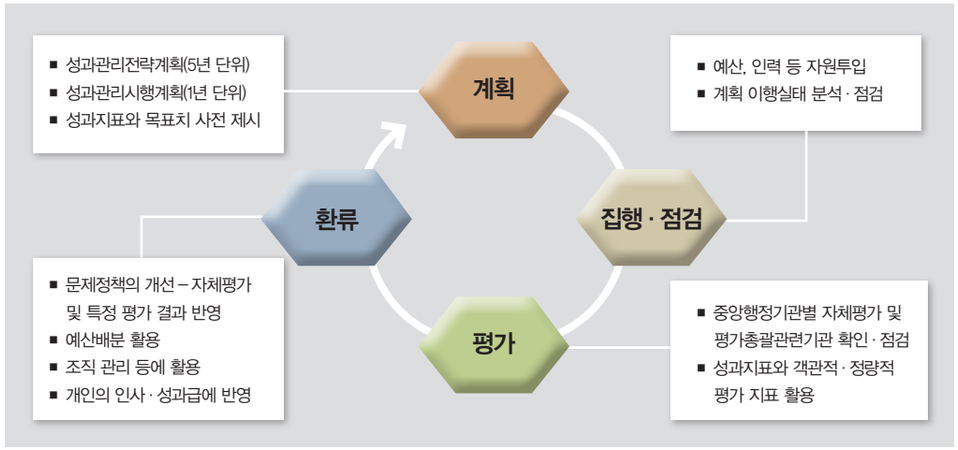

1. 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1년 단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최초 수립 이후 최소 3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동 계획과 관련이 있는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과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계획 수립 후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해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집행·점검

중앙행정기관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정부 내 성과관리 발전을 지원·유도할 수 있다.

【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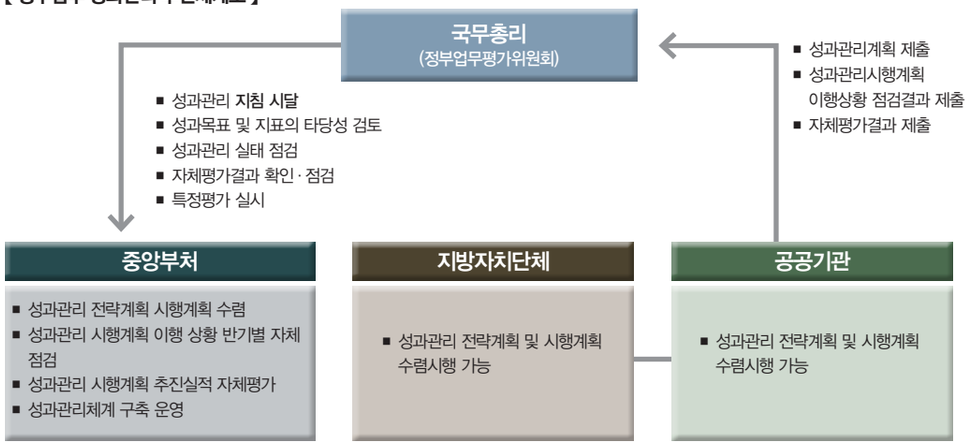

3. 평가(자체평가, 특정평가 등)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3월 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된다. 국무총리는 정부 내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책, 다수부처 관련시책, 현안시책 등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환류

기관 차원에서는 정책개선 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조직관리에 활용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거나 성과급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예산과의 연계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미흡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성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업무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획, 평가, 보고 등 부처 업무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관리수단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부처의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간 추진실적에 대해 부처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예산·정책반영 등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인 성과관리 역량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성과관리 계획 수립 지침 제공 및 전문가에 의한 성과관리계획 검토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성과관리계획이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등의 수정기회를 부여했으며, 각 부처의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4 향후 발전방향

정부업무평가의 향후 발전방향

1 범정부적 국정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 · 평가 시스템 구축

단일 정책 · 사업에 연관되는 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평가 · 연두업무계획과제 점검 · 국정과제 점검 등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 ·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특정평가 제도 개선으로 통합적 · 효율적 국정관리 지원

특정평가 부분 간 중복 및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평가부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국무총리의 통합적 · 효율적 국정관리 지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평가결과의 부처 환류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집행–평가–환류' 등 정책평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3 개별평가 통합 ·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확립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평가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정책에 대한 개별부처 차원의 평가를 통합하고 간소화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 정부업무 평가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개별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4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효율성 · 책임성 제고

자체평가위원회 등 자체평가 조직 운영을 내실화하여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체평가 부분(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및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 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을 보완해서 자체평가제도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자체평가 결과의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정책현안 분석 활성화로 시의성 있는 평가정보 제공

잠재적 · 구조적 정책현안을 선정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현안 분석을 활성화하여 평가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1 통합적 성과관리 강화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과정에서 단순히 평가결과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업무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는 총괄기관 및 평가의 초점 등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차원에서의 평가 · 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이 최상위 정부업무 평가기관으로서 통합시스템을 제시하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정과제, 다부처사업 등과 같은 범부처 정책과제의 경우 현행 성과관리 체계상에서는 국정과제를 부처 단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어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괄적 성과관리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미래지향적 성과관리 기능 강화

성과관리가 성과평가에 치우쳐 있어 전년도 실적에 따른 보상 ·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과평가 또한 업무개선을 위한 인과관계 분석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미래의 성과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관리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성과에 따른 처벌 · 보상 위주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는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과관리 환류체계 확립

현행 성과관리체계상 성과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를 통한 정부 사업성과의 향상 도모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 보완을 통한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추진

344 제1장 추진배경
351 제2장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구축
360 제3장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369 제4장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 추진
377 제5장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 · 지원

1 추진배경

제1절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세계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활동이 아닌 창의성, 감성, 연구개발(R&D)과 같은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기업인 애플의 무형자산 가치는 2010년 기준 194조원으로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IBM의 경우엔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만 해도 순자산 23조원의 2.8배인 65조원에 달한다. 지식기반 경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파생시장도 창조하고 있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디자인-플랫폼-네트워크-콘텐츠-브랜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선점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진 기업들은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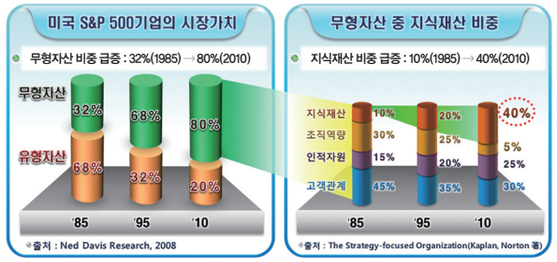

【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

지식재산이란?

-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은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 디자인 · 상표,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 저작물, 소프트웨어는 물론 식품품종 · 유전자원 · 전통지식 · 빅데이터 등 모든 분야에서 창출된다. 특히 경제 ·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이라고 한다.
-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등으로 세분된다.

제2절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동향

1. 미국

미국정부는 자국의 우수 지식재산권이 대내외적으로 불법복제 및 위조 등의 침해에 노출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정책방향을 창출 및 활용 중심에서 보호 및 집행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식재산권 집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08년 9월 PRO-IP법[1]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에 따라 2009년 백악관 관리예산처[2]에 장관급인 지식재산집행조정관[3]을 신설하고, 2010년 6월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수립했다.

2. 일본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지적재산입국'을 선언한 이래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신설된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 총리)」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을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은 연구활동이나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일본의 상황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3. 중국

중국의 지식재산전략은 제10차 및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2005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산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를 통해 혁신형 국가건설 및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목표로 지식재산을 중국경제 3대 핵심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국가적 역량을 지식재산에 집중하고 있다.

1) 미국 PRO-IP법 :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에 관한 법률
2) 백안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3)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제3절 국내 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1. 지식재산 '창출' 분야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 · 상표 · 디자인 · 실용신안 등)은 2011년 말 등록 기준으로 총 335만1,175건이 창출되었다. 1948년 특허 등록을 시작한 이래, 1998년 100만건, 2005년 200만건, 2010년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100만건 달성에 각각 50년, 7년, 5년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등록 산업재산권의 56%가 최근 10년간 창출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국내 특허등록은 2010년 12월 3일에 100만건[4]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단기간 기록을 수립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문학 · 영화 · 음악 · 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 2011년 12월 등록 기준(1987년부터 통계 작성)으로 총 31만8,209건이 창출되었으며, 저작권에 기반한 콘텐츠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도 기준 288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2011년도 공공 및 민간부문 전체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49조8,904억원으로 세계 6위(GDP 대비 비중 2위), 특허출원 4위(GDP 및 R&D투자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 1위, 2010년도 기준), 과학기술 논문 수 11위(2010년도 기준)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는 2000년도 25억3,000만달러에서 2010년도 58억2,000만달러로 지속 확대되고 있어 질적인 측면의 성과제고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 · 기업 등 사례 ; 「창출」 분야

지식재산 창출의 주요 사례로, 국가 기술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특허 분야와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K-POP의 위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우선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AP(Application Processor)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퀄컴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퀄컴은 표준과 특허를 잘 조합한 '스냅드래곤(Snapdragon)'이라는 원칩(one chip) AP를 개발하여 LTE(Long Term Evolution)서비스가 나온 이후 스마트폰 AP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통신산업의 경우 거의 모든 기술분야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허관리전문회사 혹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가 제기한 소송의 약 80% 이상이 IT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콘텐츠분야에서는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산업적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K-POP'이 정식 단어로 등재되었으며, 더불어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차트 '빌보드'에 아시아 국가 음악으로는 두 번째로 K-POP 차트가 2011년 8월 신설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 수 9억 건(2012.12.7 기준)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를 차지했고, 문화부는 '금융지원 활성화', '스마트 콘텐츠 · 차세대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2010.12.3 특허등록된 ㈜다이아벨의 '힌지(Hinge)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단말기' 기술이 100만번째 특허로 등록됨

2. 지식재산 '보호' 분야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보호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 순위는 아직 세계 31위 수준(2011년 IMD IP보호지수, 위조상품 · 불법상품에 대한 집행력 평가)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보호집행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시 판결되는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아[5] 소송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특허소송 관할이 이원화된 탓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판결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 중재 제도의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 및 국내 기업의 핵심 ·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 · 기업 등 사례 ; 「보호」 분야

1. 지식재산 보호 관련 시장 상황 : 우리나라,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4년 연속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탈피한 이래, 4년 연속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USTR은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2.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2010년 4월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자, 특허청은 같은 해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상표특사경')'를 출범시키고 3개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했으며, 2011년 12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장비를 갖춘 '온라인 수사반'을 출범시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상표특사경 출범 이후 2011년도에만 위조상품사범 13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점을 압수하는 등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도입 이전에 비해 월평균 형사인원은 약 6배, 압수물품은 약 10배 정도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문화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해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불법 저작물을 영리 · 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추적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집행해왔다. 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 대구 등 지역 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왔으며, 지속적 단속활동을 통해 최근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이 감소(2008년 22.3% → 2010년 19.2%)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마닐라저작권센터' 개소 및 IP-DESK 운영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0년 5월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저작권센터' 개소식 및 '저작권 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동남아 한류 열기와 저작권 보호의 시급성, 현지 문화산업 시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저작권센터를 신설했으며, 양국의 저작권 법제 정보교류,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현지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법률컨설팅, 저작권계약 지원 등 한류 저작물 보호와 진흥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IP-DESK는 현재 중국 등 3개국,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침해방지를 위해 전문가 상담, 각종 등록비용의 지원,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P-DESK는 침해조사지원을 통해 2011년에 21억원의 모조품을 몰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5) 2009~2011년 판결된 손해배상액 중앙값(median)은 약 5,500만원으로 미국의 250만달러의 2% 수준이다.

3. 지식재산 '활용' 분야

공공 연구기관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산업적 · 상업적 활용 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부문 R&D생산성(우리나라 1.48%, 미국 4.32%, 2010년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져서 특허관리 · 활용 전략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저작물의 경우도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한 민간 수요가 증가(2007년 39.3% → 2010년 51.6%)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 자체를 독립적인 수익창출 수단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NPE : Non Practicing Entity 등)이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 및 가치평가 시장, 금융시스템 등의 발전을 통한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전략적 육성과 환경조성이 절실하다. 또한 지식재산 활용의 다양화 · 고도화에 수반되는 정보조사 · 분석, 평가, 교육, 번역 등과 같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정책 수립과 집행도 필요하다. 한편 지식재산 활용의 주체인 산업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 · 유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 ·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 · 기업 등 사례 ; 「활용」 분야

대표적인 NPE 연구 사이트 'patent freedom'(2012)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NPE로부터 제소당한 기업 수는 5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11년 들어서 4,500여 곳으로 9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간 NPE로부터 제소당한 3위, 9위 기업에 한국의 대기업이 랭크되어 있다고 한다. 즉 지식재산 비즈니스 발달과 동시에 NPE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지식경제부가 국내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수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2010년 7월 민관합동 지식재산 전문관리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를 설립하여 오는 2015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수행 중이다.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차세대 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스마트TV, 롱텀에볼루션(LTE), 리튬 2차전지, 융합 바이오 등 28개 주요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IP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이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당한 국내기업 3곳의 분쟁 대응을 통해 특허를 발굴해 권리를 찾아준 바 있다. 나아가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될 2차년도 사업에서 25개 IP 포트폴리오를 추가 구축하고, 대형 IP 매입 및 중견 · 중소기업 풀 조성, IP 연구개발(R&D)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4. 지식재산 '기반' 분야

우리나라는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의 세계적 선전, 'K-POP' 열풍 등에 힘입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선도국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흡하고, 지재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인식수준이 낮다는 점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 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걸림돌로 꼽힌다. 일례로 사내직원의 발명을 촉진시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38.2%(2010)에 그치고 있다.

또한 발명가 ·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선진국 기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 · 변호사 등의 법률 서비스 인력, 기술금융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 경영전문가, 창의적 발명을 할 수 있는 창작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지식재산 관련 정책 인프라도 여전히 불충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 · 기업 등 사례 ; 「기반」 분야

1.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특허출원이 급증한 사례로, 특허출원 4,000건을 돌파한 국내 대형 조선 3사를 들 수 있다. 2011년 기준[6] 국내 전체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나,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년 대비 242%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는데, 자체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세분화하고 보상금액을 높인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2. 지역 중소기업 지원(해외브랜드 개발사업)

비영어권 국가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지어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 사례로 (주)코스메타코리아(대표이사 조임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주)코스메타코리아는 2010년 충북지역 특허스타기업에 선정되어 2년 연속으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는데, 2010년 중동지역에 적합한 신규 브랜드 개발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313억원 → 408억원)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28%(125명 → 160명)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5. '신지식재산' 분야

신지식재산이란 '과학기술 · 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향후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새로운 지식재산' 을 의미한다. 신지식재산 분야는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체계적 확보 ·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굴 ·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정책 관련 시장 · 기업 등 사례 ; 「신지식재산」 분야

식물신품종의 경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관련 법령 · 제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진행되었다. 종자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2012년 6월 분리 · 제정되어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이 구성되어 2012년 4월에 발족함에 따라 미등록 종자업자의 생산 · 판매 및 수입 판매, 품질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6) 2012.12.9 특허청 보도자료

한편 지역 특산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대표 특산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등을 통해 특산물 명칭의 권리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총 151건(2012.10 기준)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동래파전', 울산의 '강동 돌미역', '울주 미나리', 인천의 '까나리 액젓' 등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 중이다. 특히 특산물의 권리화에 이어 이를 중심으로 지역향토 및 농식품 산업 발전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신안 새우젓'의 경우 2011년 어업회사법인 신안 새우젓(주)이 출범함에 이어 2012년 4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했으며, 젓갈 판매점 및 저온저장시설, 홍보전시실 등을 갖춘 젓갈타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역 특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이 보유한 고유자원,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브랜드의 활용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도 차원에서 2012년 '토종자원 보존 ·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식량, 채소류, 축산, 약용작물, 수목, 해조류 등 분야별로 토종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하여 유전자원 · 신품종 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기능성 분석을 통해 이들 자원을 산업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4절 범정부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세계경제는 토지 · 노동 · 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 · 저작권 ·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 선진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개발 · 축적에 집중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특허소송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대응전략 및 역량이 미비한 중소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로 특허소송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미흡하여 국격(國格) 향상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산업화시대를 주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넘어 녹색성장 · 신성장동력 등 여타 국가발전 전략 성과물의 재산적 가치를 시장에서 권리화 · 사업화하는 지식기반 시대의 국가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시대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더라도 지식재산 분야야말로 우리의 우수한 청년인력들에게 질 높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창(窓)이 될 것이다.

2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구축

제1절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1. 「지식재산 기본법」 입법 경과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이 논의되었고,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범정부적 입법 추진을 위해 2009년 10월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했고, 1년 여의 노력 끝에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해 2010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2011년 4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 공포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2.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의의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관련 기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조정 · 협력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위상(G20)에 맞는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며, 지식재산을 통한 개도국 지원 등 국격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였다.

3. 「지식재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 기본법」은 모두 5장 40조로 이루어져 있다. 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의 선언, 용어의 정의 등 법 전체에 총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제1장 총칙에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제2장에 규정하고, 다음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은 보칙으로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 재원의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지식재산전략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도록 함으로써 내각의 통할 및 민간과의 의사소통을 동시에 가능토록 하였고, 사무기구를 두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지자체(광역)가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3)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의 연계 강화,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제16조~제19조). 그리고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에 부응하여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체계를 정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고(제20조~제24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체계 확립 및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제25조~제28조).

4) 친(親) 지식재산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초·중등, 대학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기관 등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기반 구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 추진 및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2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활동 현황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세계경제가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 · 저작권 ·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하고, 우리 경제도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표출함에 따라 창의성과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지식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요구되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신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개발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지식재산 정책을 다수 부처에서 분산 · 추진함으로써 총괄 ·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 조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1년 7월 28일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0명[1]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더불어, 대통령이 각계 지도층 인사 중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미래 지식재산 분야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1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와 분야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민간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 기반 · 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을 위해 21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장급 공무원으로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정책의 심의 · 조정 · 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①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명확한 장기 비전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②민간 연계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식재산에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해 해결 · 제안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③주요 분야별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효과를 점검 ·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토록 운영하고 ④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전략 추진 상황 및 산업 · 경제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⑤CEO, 연구자,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모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1) 정부위원 10명은 국무총리실장을 간사로 하여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외교통상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이며, 2012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했다.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현황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2012.1.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이후 2011년 7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7회의 회의를 통해 16개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2011년 11월 22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최초의 국가전략이자 지식기반 시대에 대응한 21세기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의결했다. 2012년 1월 31일에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의결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 · 민간위원, 청년리더, 지식재산책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의 본격적 추진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거행했다.

전문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창출분과는 10회, 보호분과는 13회, 활용분과는 8회, 기반분과는 7회, 신지식재산분과는 10회 등 총 48회 개최했고,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관련 각종 안건들을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 · 의결 안건 】

구 분	안건번호	상 정 안 건
제1차(2011.7.28)	1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안)
	2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
	3호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제2차(2011.11.22)	4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12~2016)
제3차(2012.1.31)	5호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6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7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안)
	8호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안)
제4차(2012.4.24)	9호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안)
	10호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 방향(안)
제5차(2012.7.27)	11호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안)
제6차(2012.11.2)	12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연장 운영계획(안)
제7차(2012.12.12)	13호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14호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3~2017)
	15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16호	2012년도 지재권 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보고)

제3절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가동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설립

지식재산 정책의 현안에 대응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부처뿐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 산학연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와 협력을 구체화하고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4월에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 지식재산 관련단체 등과 함께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KIPnet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를 구성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는 참여기관 간 간담회, 포럼, 컨퍼런스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각계각층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를 통해 폭넓은 수요자가 지식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네트워크를 각 지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의 주축으로서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제1차 컨퍼런스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부처의 업무영역 경계를 넘어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먼저 2012년 4월 5일, '제1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8개 부처 지식재산 정책담당자와 70여 개의 지식재산 유관기관의 기관장 및 업무담당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IP-R&D분과, IP-보호분과, IP-금융분과, IP-인력·교육분과, IP-인식제고분과 등 5개 분과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식재산 유관 기관 간 자유로운 주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표준특허 창출·확보 분야, 지식재산 보호·금융 분야, 지식재산 인력양성·교육 활성화 분야 등 3개 분야에서는 기관 간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2]했다. 컨퍼런스 당일 체결된 업무협력협정(MOU)의 후속조치로서 '표준특허 창출·확보 분야' 는 16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표준특허 전략 협의회' 를 개최했으며, '지식재산 보호·금융분야' 는 협정체결기관 간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지식재산 인력 양성·교육 활성화 분야' 는 제1차 컨퍼런스의 IP-인력·교육 분과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및 담당자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제1차 컨퍼런스(2012.4.5)
업무협력협정(MOU) 체결

2) ①표준특허 창출·확보 분야 :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②지식재산 보호·금융 분야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벤처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③지식재산 인력양성·교육 활성화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연수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3. 제2차 컨퍼런스 개최

2012년 12월 3일에는 지난 1년간 국가지식재산 정책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5개 분과 중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3개 분야(R&D, 보호, 금융 분과)의 동향과 향후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로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특허청 등 21개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50여 명의 유관기관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참여하여 당초 네트워크를 지역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실현하였다.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분과에서는 향후 지식재산의 활용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부실권리와 높은 무효화율 문제의 개선방안과 IP권리 침해의 손해입증 방법 및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자 하며, 향후 지식재산 유관 네트워크(IPMS, KINPA 등)와의 컨퍼런스 공동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4. 유관기관 교류·협력 활성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구심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 내에 분과별로 담당 사무관(전문관)을 지정하고, 간사기관을 선정하여 분과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간사기관[3]은 분과별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의 상시적 네트워킹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SNS 페이지[4]를 개설했다. SNS 페이지에 네트워크의 참여기관이 직접 관련정보와 기관소식을 공유하도록 하여 쌍방향 네트워킹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참여기관뿐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개인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3) R&D 특허센터(IP-R&D분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IP-보호분과),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P-금융분과), 한국발명진흥회(IP-인력·교육분과), 한국저작권위원회(IP-인식제고분과)
4)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IPnet, 트위터: http://twitter.com/KIP_net

제4절 국제교류 · 협력체계 구축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경쟁 가속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공조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국가 간 업무협력 및 국제적 지식재산 규범형성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1년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3회에 걸친 해외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1. 유럽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프랑스 · 벨기에, 2011.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유럽 지식재산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체계 구축과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프랑스 특허청 등 7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면담을 했다. 유럽의 주요 지식재산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EU 단일특허 및 공통특허법원 설립 등의 단일시장 전략추진에 따른 유럽 각국 특허청의 기능축소 또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한-EU FTA가 체결된 시점에서 향후 EU와의 직접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특히 유럽 단일 특허시장에 관련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기관들은 지재권 강국인 한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정책 결정 · 조정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일본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2012.4)

우리보다 앞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한국의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일본 지식재산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특히 위원회의 주요 현안인 특허소송 공동대리, 소프트웨어 특허보호 등에 대한 일본의 개선 사례와 효과를 직접 조사하고, 일본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현황 및 주요 정책과 평가체계 등에 대한 선행사례 벤치마킹(bench-making)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0년에 걸친 일본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특히 특허소송 대리인 전문성 강화, 소프트웨어 특허 등과 관련한 일본의 선례를 잘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에 대한 공유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3. 중국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201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한국의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한-중 FTA의 주된 쟁점으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 등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 및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의 국내 지재권 보호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방문의 주요 과제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위원회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제도가 한국과 유사함을 느꼈고, 양국간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 ·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4. 미국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2012.12)

우리보다 앞서서 지재권 분쟁 해결제도와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금융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현황을 확인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의 지식재산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지식재산 유관기관을 방문하였다. 미국 특허청 등의 방문을 통해 미국의 특허소송제도와 인력양성체계, 특허변호사 제도,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5. 영국 지식재산 유관기관 방문(2012.6)

위원회는 산학 공동연구에서의 합리적 성과배분 등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협약촉진 사례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정착 방안을 도출하고, 지식재산 분쟁해결 선진화를 위한 영국 사례 분석 및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영국 특허청 · 변리사 협회 등을 방문하였다. 방문을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연구의 활성화, 소송의 전문성 강화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간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국제교류 ·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적극적인 국제교류 ·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제1절 기본계획 수립 의의 및 경과

1. 기본계획 수립 의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부가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전략으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체계화하는 종합계획이며, 정부가 국민·기업·시장에게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 수립 경과

2010년 3월 「기본계획 TF」를 구성하여 동 TF에서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기본계획이 2011년 11월 22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제2절 정책비전 및 목표

1.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첫째,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획·수행·평가의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및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R&D-특허-표준' 이 일관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콘텐츠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기기-콘텐츠-서비스' 가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이다.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의 개선 및 외부자원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발생 시 공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품질 제고,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권리의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산업기술·영업비밀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디지털화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국경조치 강화 및 수사인력 확충을 통한 역량 제고 등 지재권 침해 대응체계를 재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관적·체계적인 지재권 통상대응 체제를 구축코자 한다.

3.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첫째,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성과확산 전담기구(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선진화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하며, 공공정보·공유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육성해 모

범사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장 등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이 탈취·유용되지 않는 공정한 환경을 구축하고,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해나갈 것이다.

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첫째, 지식재산 소양교육을 통한 범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강화 및 산학연 공동 연구 시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둘째, 인력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재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지식재산 정보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넷째,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및 전방위적 국제협력의 확대, 남북한 지식재산 조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로드맵)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5.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확립

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의 달성을 위해 신지식재산 분야는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고, 분야별로 ①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②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③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④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이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제3절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1. 지식재산 '창출' 분야

1)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중에서도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표준특허, 핵심·원천특허의 확보 및 창출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16개의 정부 및 관련기관은 표준특허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해 2012년 5월「제1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표준특허 전략적 확보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응용·개발 연구과제의 경우 2010년 31% 수준에 머문 특허동향 조사·분석을 2016년까지 100%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2) 콘텐츠산업 등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현재 콘텐츠산업은 '3D화, 스마트화, 융복합화'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 급성장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가상현실, 3D콘텐츠 및 CG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활성화 여건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IPTV, 디지털 케이블 TV 등 양방향성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방통융합형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R&D프로그램 확대, 신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개발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기술혁신의 토대가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실현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개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고수익형(High Risk-High Return) 연구를 확대하며,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해서는 국가 R&D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고도화를 위해 우수 지식재산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 지식재산 '보호' 분야

1) 지식재산 심사 · 등록의 안정성 제고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최적화를 추진하고,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심사처리 기간의 합리적 관리, 심사품질관리체계의 고도화,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저작권 등록 심사역량 강화 및 허위등록 방지를 통해 저작권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추진해나가는 등 지식재산 심사 · 등록의 안정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지재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온 · 오프라인상에서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보호 집행력을 강화하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기반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3)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를 조사하는 등 보호기반을 조성하고, 침해대응 현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간 국제공조체제 확립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4)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지재권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관할집중 등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신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제출, 손해 규모의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과 관련해 침해 재발방지에 미흡한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한다.

3. 지식재산 '활용' 분야

1)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우선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를 위해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및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확대 발전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술사업화 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를 확충하고자 한다.

2)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우선 2010년 조성된 민관 합동 창의자본(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이하 'ID')을 비롯한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관리회사(NPEs : Non Practicing Entities), 지식재산 신탁형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발굴 · 육성하고,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인프라로 작동하는 가치평가시장을 선진화 · 다변화하며, 특허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 · 융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 실태 조사 · 분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독자적 분류체계 마련, 관련법령 정비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기반을 조성코자 한다.

IP · 기술 가치평가 현황과 이슈 포럼(2012.5.3)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특허청과 합동으로 「IP · 기술 가치평가 현황과 이슈」 포럼을 개최하여 기술 ·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3)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며, 동반성장협약을 유도하는 등 지식재산 공정거래를 촉진코자 한다.

4. 지식재산 '기반' 분야

1)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첫째,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지식재산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확대 등을 시행해나갈 것이다. 둘째,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정당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 작업,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산학연 공동 연구 시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연구 성과물의 권리 귀속 및 보상합리화를 해나갈 것이다.

2)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첫째,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화할 것이다. 둘째, 창조적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 · 중 · 고교의 발명교육 등 창의성 중심교육을 강화해나가며,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강좌 개설을 확대 지원해나갈 것이다.

3)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첫째, 정부부처의 협조를 통해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공 · 민간, 산학연 등을 포괄하는 유기적 정책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행정체계도 정비해서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 연구기관 · 산업계 · 직능단체 등의 연구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세미나 및 포럼을 활성화하며, 지식재산 및 정책 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식재산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식재산 연구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4)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첫째,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 선진화 및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지역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통한 법적 ·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셋째,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 지식재산 법 ·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남북한 지식재산 제도의 단계적 접근방안(로드맵)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5. '신지식재산' 분야

1)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종자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서는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 강화 및 실효성 증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생물자원 보존 · 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생물자원은 의료, 에너지, 환경, 식량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체계적 발굴 · 확보가 미흡하여 보유 생물자원의 다양성 및 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생물자원 발굴 ·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 지원, 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전통지식 · 전통문화표현물 등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통자원이 지닌 잠재가치의 발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전통자원 기반 창작 ·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지리적 표시' 및 '퍼블리시티권'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 신지식재산의 발굴 촉진 및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식별표지의 창출 · 활용 강화 및 보호제도 개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절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2012~2016년의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조1,53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연평균 약 2조307억원에 이른다. 분야별로 보면 창출분야가 7조5,631억원(74.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활용 9,631억원(9.5%), 신지식재산 8,986억원(8.9%), 보호 4,145억원(4.1%), 기반 3,140억원(3.1%)순이다. 예산규모가 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창출분야에 집중 포함되어 창출분야의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

(단위 : 억원)

분 야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창 출	13,217	14,621	15,666	15,971	16,156	75,631
보 호	731	808	836	868	902	4,145
활 용	1,494	1,883	2,069	2,193	1,991	9,631
기 반	591	609	627	646	666	3,140
신지식재산	1,464	1,964	1,841	1,828	1,888	8,986
합 계	17,497	19,885	21,039	21,506	21,603	101,533

4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 추진

제1절 추진경과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제8조)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제9조)하도록 되어 있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기본계획 아래,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된다.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 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에서 심의 · 확정된다. 2012년도 시행계획의 경우,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마련했다. 수립경과는 아래와 같다.

【 시행계획 수립경과 】

추진 내용	추진 기관	일정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국무총리(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11.10
▼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안) 수립 · 제출	관계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2011.10.~12
▼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안)을 종합 · 조정, 시행계획(안) 마련	국무총리(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11.12~2012.1
▼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국무총리(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12.1
▼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심의 · 확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1

제2절 12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

201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주도하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국내 기업 · 대학 · 출연연 등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 시장 및 정책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결상태인 과제, 조기에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특허청과 지경부, 교과부 등 15개 R&D 수행부처는 원천 ·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R&D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예산 172억원)을 진행하여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국제표준 획득을 목표로 하는 「R&D 표준특허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2012년 5월 16일 제1차 전략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부처 간 역할 설정, 정보 공유,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2. 차세대 콘텐츠 ·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3D ·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MC(Digital Media City) 내 3D영상제작센터 지원사업, 3D 중계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콘텐츠(1,000억원),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600억원), 한국영화 다양성(100억원)에 각각 투자하였다.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불형 서바이벌 R&D', '소액 도전형 R&D' 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R&D 투자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수요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및 기술자산 거래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뱅크 설립에 130억원을 지원하였다.

3. 지식재산 침해대응력 확보

첫째,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ICOP)을 확대해서 콘텐츠산업 분야별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주관으로 문화부 ·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특별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저작권, 상표 등 분야별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지재권 전담 검사실과 분야별 특사경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둘째,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속인력의 수사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셋째,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 내 산업보안학과를 개설하였다. 정기적인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안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을 확대 · 구축할 것이다. 또한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을 확대하였다.

4.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순위는 59개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어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특허침해에 대해 최근 2, 3년 동안 판결된 손해배상액 중앙값(median)은 약 5,500만원으로, 250만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2% 수준[1]이며, 이 금액은 소송 시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송 시 국내 현실에 알맞은 적정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시스템을 강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일실이익(逸失利益) 인정 범위 확대, 증거조사 제도 개선,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 마련, 증액배상제도의 도입, 대리인 비용 보전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도출

1) 2009~2011년 중앙값 기준

된 대안들에 대해 법무부 ·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한편 지식재산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방안의 후속과제로, 위원회에서는 지재권 소송에서의 증거절차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

최근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간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내외 법적 분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허분쟁은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기업,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지재권 보호의 궁극적 보루인 특허소송 선진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등 지재권 소송은 크게 특허 등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결취소소송(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 등)' 과 특허 등의 침해여부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으로 나뉜다.

그런데 양 소송의 관할법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소송의 전문성 ·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쟁점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법 · 기술 전문가의 소송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어왔다.

【 관할법원의 이원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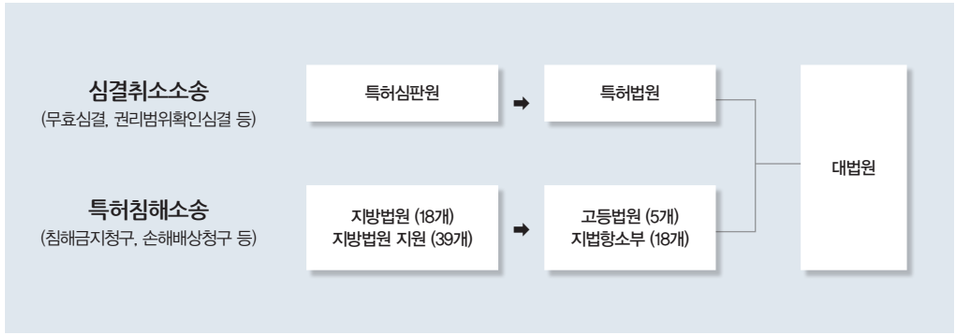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지만, 세부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주요부처 · 단체 ·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6.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기술평가보증 50% 이상을 창업 및 초기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한다.

지경부는 창의자본 활용 확대를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2012년 상반기 현재 700여 건의 우수특허 매입)하고, 2012년 중 창의자본을 1,200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문화부는 지식재산권 전문펀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활성화 등 민간의 투 · 융자 시스템 확충을 추진하였다.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정위와 중기청은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탈취 및 기술자료 부당요구 · 유용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와 전문상담 ·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강화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였다.

문화부 · 공정위 · 방통위 등은 S/W 및 콘텐츠 분야에서 권리자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노력하였다.

8.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양성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소양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우선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를 수행하면서 인력 수급현황을 조사해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9.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첫째,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확인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문화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가 협력하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산학연 협력연구의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를 발족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가이드 라인' 을 지재위에 상정(2012.12) 하였다.

10.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였다. 그 출발점으로 2012년 4월 5일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을 구축하고, 특허정보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7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IP-표준, IP-보호 · 금융, IP-인력 · 교육 등 3개 분야에 걸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속 발전 ·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다.

1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우선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4개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도시' 인증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지역 중소기업을 선정, 글로벌 IP스타 기업으로 지정하여(2011년 311개사 → 2012년 481개사)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12.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신지식재산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신지식재산 보호 · 육성 체계 정립' 이라는 기본계획상의 중 · 장기 정책방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다. 신지식재산 분야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이라, 창출 · 보호 · 활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기본계획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인 2012년에는 지식재산 사이클 전반에 걸친 신지식재산 제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부 분야별로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신품종 육종지원, 해조류 품종 관리기반 조성),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 확보 및 관리 · 활용기반 구축(고유생물자원 발굴, 분야별 생물자원 확보, 생물자원 관리기반 구축), 전통자원의 발굴 · 기록 및 관리체계 구축(전통지식 표준화, 지자체 전통자원 확보,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지역 브랜드 창출지원,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3절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자체는 2012년 중으로 총 1,15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285개 관리과제를 추진하는데, 기관당 평균 13.6개에 이른다. 이를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출 53개(18.6%), 보호 53개(18.6%), 활용 43개(15.1%), 기반 54개(18.9%), 신지식재산 82개(28.8%)이다.

5대 분야별로 관리과제 수가 높게 나타난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창출분야는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6.3%), 보호분야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23개, 8.1%), 활용분야는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13개, 4.6%)이며, 기반분야는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6개, 5.6%), 신지식재산분야는 생물자원 보존 · 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50개, 17.5%)이다.

【 분야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 】

분 야	창 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합계
성과목표(개)	25	27	27	30	38	147
관리과제(개)	53	53	43	54	82	285

제4절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16개 지자체의 추진계획은 110개의 전략목표와 249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869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대 전략목표 중 지자체의 성과목표가 가장 많은 것은 콘텐츠, 브랜드 ·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41개, 16.5%)로, 각 지역의 브랜드 · 디자인을 활용한 수익창출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 지식재산 인식제고, 인력양성 및 행정체계 구축(전담부서 설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규정 제 · 개정) 등 기반 조성 과제(68개, 27.3%)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 · 지원

제1절 지식재산의 효율적 투자전략 수립 · 추진

1.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지식재산 기본법」제6조 제2항에 의거, 정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여 국가재원의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한편,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9조1,000억원(국가연구개발 7조8,000억원)이며, 정부 총예산 309조1,000억원의 2.9%를 차지한다. 지식재산 분야별 사업 규모로 살펴보면, 창출분야가 7조4,500억원(82.0%)으로 가장 많고, 활용분야 8,849억원(9.7%), 인프라분야 6,442억원(7.1%), 보호분야 1,069억원(1.2%)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 사업을 수행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3조7,000억원, 40.5%), 교육과학기술부(2조2,000억원), 중소기업청(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재위 4차 회의(2012.4.24), 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 심의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4대 기본방향, 즉 ①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식재산 투자의 전략적 확대 ②분야별 · 동태적(중장기 투자방향 포함) 투자전략 수립 ③지식재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정부 · 민간 간 역할분담 포함) ④국가재정운영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 등과의 정합성 유지를 기반으로 하여 10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했다.

[1] 표준 · 원천특허 창출 및 지원 ■ 지식재산 – 연구개발 연계 전략에 대한 정부지원 지속 및 확대 ■ 연구개발 기획 시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 제도화, 연구노트 활용도 제고 투자 확대	**[2] 지식재산 침해예방 · 대응강화 및 공정한 이용촉진** ■ 전체예산 대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보호분야 전반에 투자 확대 ■ 디지털 · 온라인 분야 침해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 기술적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 투자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지속적 · 안정적 지원
[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존중문화 조성 ■ 학교 교과과정 연계 체험적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라인 교육 강화 ■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전시회 · 경진대회)을 기술사업화와 연계하여 질적 효과 제고 ■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지재권 전략 연계	**[4]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촉진** ■ 기술활용 창업 단계별로 자금 지원 및 성공하지 못한 경험도 존중되는 환경 조성 ■ 저작권을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 개발 ■ 청년층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교육부 · 노동부 등) 간 협조를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5] 지식재산 이전 · 사업화 역량 강화 ■ 바이오 · 의료 분야 등 전 세계적 보호가 필요한 특허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핵심특허 선별 · 평가 · 지원 ■ 산업별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미활용 특허의 관리 ·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업 투자 확대	**[6] 신지식재산 기반 구축** ■ 신지식재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적극 추진 ■ 사업 기획 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채널 확보
[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 기획 · 조정하여 시너지 창출 및 효율적 재정 운용 ■ 지식재산 인력의 원활하고 균형적인 수급을 위해 인력 수요의 구체적 특성과 인력 풀 등에 대한 파악 및 분류 추진	**[8]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 · 유통 및 활용 촉진** ■ 지식재산 기초정보 생성, 지식재산 정보관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인프라 구축 성격의 사업에 중점 투자 ■ 농업분야 정보화를 통한 고품질 종자생산 지원 및 국가 유전자원 주권 선점 등의 사업 추진
[9]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역 지식재산 활동 핵심주체들의 체계적 연계 · 협력 및 구심조직 구축 ■ 지자체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 ■ 지역 대학 · 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 발굴 및 창업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10] 투자효율성 제고 분야** (기술이전 · 거래 전담조직 지원 · 육성 관련) ■ 자생력이 미흡한 기술이전 · 거래 전담조직(TLO)의 역량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추진

2.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범부처 차원에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과 각 부처 예산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각 부처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실

효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도 지식재산중점투자방향' 을 수립하고, 2012년 4월 24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3년도 국가재정의 효율적 투자 운용을 위한 지식재산 투자목표[1]와 3대 투자전략[2]을 설정하고, 이러한 투자목표와 전략 기조를 기반으로 2013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했다.

【 2013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방향 】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2]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3]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5] 신지식재산의 육성 기반 구축	**[6]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7]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8]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3.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2013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에 근거하여 332개 정부 재정사업을 지식재산 사업으로 분류하고, 정부재정 투자가 시급한 8대 분야별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동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①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②각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③재정사업 운용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라는 3대 심의 원칙하에 82개 심의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각 부처의 자율성과분석 및 전문가로 구성된 6개 심의반(33명)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30대 핵심사업을 선정했으며,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용상의 차별화된 정책 컨설팅도 제공했다.

지식재산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을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의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의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의 전략적 확대, 핵심 지식재산사업 중점 지원,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의 개선' 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요성 대비 투자가 미흡한 분야인 지식재산 분쟁대응, 침해물품 단속, 지역 역량강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관리 강화 등에 있어 소규모 예산 투입으로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별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1)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토대 구축
2) ①구조적 취약성 해소 및 현안 대응 ②인적기반 강화 및 정책 조기착근 기제 확보 ③지방 및 취약계층 · 기업의 역량과 접근성 제고

제2절 쟁점 현안과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1월 31일 열린 제3차 회의를 통해「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안)」을 의결했다. 상기 안건의 내용을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학계 · 산업계 · 과기계 · 발명계 · 변호사계 · 변리사계 · 정부부처를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으로 2012년 3월 7일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현 직위
위원장 (과기계)		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석좌교수
민간(6인)	학계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전문가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발명계	김흥기	지식센터 대표
	변호사	권영모	법무법인광장 IP팀 파트너
	변리사	김성기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산업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부(3인)	지재위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법무부	박근범	법무부 법무심의관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 위원 위촉과 함께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특위의 목표와 지향원칙 및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위는 3월부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안과제인 '특허소송 관할집중' 과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라는 2 가지 아젠다를 집중 논의(여타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은 보호 전문위원회 등 상시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향후 논의원칙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 변리사 등 특정 직역이 아닌 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차 회의 개최 시 위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참석한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그간 직역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전이 미진했다" 면서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된 특위가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로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해줄 것" 을 당부했고, 이광형(KAIST 석좌교수) 특위 위원장은 "2012년 국가 R&D로 16조원을 투입하지만 지재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될 것" 이라며 특위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2012.5.30)

특별전문위원회는 출범 이후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소송당사자 ·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5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과기계 · 산업계 · 변호사계 · 변리사계 · 정부 등 다양한 배경의 참석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위는 당초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논의과정 중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지재위 본 위원회의 서면의결을 받아 당초 운영 시한인 11월 6일에서 4개월 후인 이듬해 3월 6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특위 연장과는 별개로 특위 출범이후 2012년 한 해 동안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제7차 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2012.12). 주요내용은 2012년도 12월 초를 기준으로 총 9차에 걸친 특위의 회의개최 실적과 공청회 개최(5.30) 및 국회 토론회 개최지원(11.7, 지경위 · 교과위 · 법사위 공동) 등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 특위 논의에 대한 사법부와의 정보공유 및 지속적 협의 추진 활동 등 운영경과에 대한 보고였다. 특위는 2013년 3월 6일까지 두 가지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으로 이후 가장 먼저 개최되는 지재위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재위 본위원회 의결을 얻고 나면 법무부 및 사법부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제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원천기술 등 강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기술간 융 · 복합 추세 등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재권 귀속,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상호간 시각차가 협력 연구 · 개발(R&D) 등 개방형 혁신 활성화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여 협력연구의 비중이 감소[3]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업 R&D 지출 중 산학 공동연구 비중 : 2006년 21% → 2007년 16% → 2008년 6% (출처 : 지경부, 2010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안) 용역보고서)

이러한 산학연 협력연구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2009~2010년 정부(지경부) 측 주도로 선진사례 검토를 통해 등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을 마련하는 등 선행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재권 소유의 형태 결정 등에 대한 첨예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협의 도출이 무산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식재산 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에 부합하고 산학연 각계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3월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동 특위활동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은 시장기회를 넓히고, 학·연은 연구역량을 높여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R&D의 양적·질적 도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동 특위의 주요 역할과 목적은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 협상 시, 기업·대학·연구소가 상호 준거(mutual reference)로 활용할 수 있는 협약가이드라인 및 모범협약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위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민간위원 9인(산업계 2, 학계 2, 연구계 2, 변호사 1, 변리사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5인(지재위, 지경부, 교과부, 특허청, 국과위) 등 총 15인으로 산학연 특위를 구성했다.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현 직위	비고
위원장		박영일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제23대 과학기술부 차관
민간 (9인)	산업계	이동근	삼성전자(주) IP전략팀 기획그룹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최근수	(주)딜리 대표이사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장협의회 부회장
	학계	김화중	경북대 산학협력단 단장	경북대 건축공학전공 교수
		강성구	서울대 박사(화학)	호서대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계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경영실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창출전문위원
		하성도	KIST 기술사업본부장	KIST 나노시스템연구단장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변리사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지재위원	박재근	한양대 전자통신공학부 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
정부 (5인)	지재위	이상진	지재위 지식재산정책관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 인사과장
	지경부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지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국장
	교과부	최은옥	교과부 산학협력관	교과부 친서민정책추진단 단장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청 기획조정관
	국과위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특위에서 마련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에 대해 관련기관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 9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총 7회에 걸쳐 특위가 개최되었으며, 특위에서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와 '산학연 개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12.12).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연구에 대한 협약 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총 6개의 계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협약 당사자가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을 제시하여 산학연 연구 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도모했으며, 앞으로는 지방 군소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협력연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지식재산 전략의 체계적 관리 및 조정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책 마련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이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유럽 지역으로의 확대가 전망되고 분쟁의 대상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제12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특허분쟁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상정,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재권 분쟁상황을 평시-경고-대응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분쟁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분쟁 단계별 대응 지원계획은 분쟁 징후가 아직은 없는 평시 단계에는 기업 CEO 대상 포럼 확대, 지재권 융복합(특허+상표+디자인) 전략 등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력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분쟁 징후가 나타나는 분쟁경고단계에는 분쟁예방 컨설팅 우선실시, 소송보험 가입 유도, 기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경험 공유 및 공동대응 유도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제특허분쟁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재위에서는 2012년 4/4분기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재권 법률자문단 구성(법무부), 고용창출지원금 대상에 지재권 담당자 추가(고용부), IP-R&D 확산지원본부 신설(특허청), 현지대리인 표준 DB 구축(지경부), 주요공관에 지재권 담당관 지정(외교부) 등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종합 계획

제1차 계획(2008~2012)의 종료와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적 지식재산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투입계획을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는 지식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부각하는 등 최근의 시장 환경 및 현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경쟁국들의 정책동향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체계화한 종합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 지식재산 대중화 및 친지식재산 문화 구현을 목표로 5대 부문 21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5대 부문은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반 구축 등이다. 향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연도별로 '제2차 계획'을 반영하고, 각 소관부처의 분야별 인력양성 계획과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3. 2012년 시행계획 평가

「지식재산 기본법」 제10조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 및 개선의 견을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한 것이다. 2012년은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로 추진하는 시행계획임을 고려하여,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수범사례 확산 및 애로사항 발굴 등을 통한 장애요인의 신속한 제거 등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의 중복을 예방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방식 및 지표 설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평가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기관인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며, 과제분야는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핵심과제인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396개), 관리과제(1,154개) 등도 필요 시 평가대상과제와 연계하여 점검한다. 점검대상 과제 수준은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체(광역)의 관리과제(209개) 수준이다. 세부평가지표는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의 기본체계를 활용하되, 지식재산 정책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4.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제정 논의 참여

법무부에서 발간한 『2010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범죄는 해마다 등락이 있기는 하지

만 2005년 3만3,348건에서 2009년 6만8,893건[4]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점증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부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공청회 패널 참여[5], 양형기준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공식 의견 전달을 통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균 1년 내외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지식재산권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3년[6], 국외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대 5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기존의 양형관행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확정 · 의결했고, 제정된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제정으로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앞으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해 전 세계적인 대응강화 추세 및 국내의 처벌 강화요구와 개별 지식재산권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더욱 진일보한 형사 사법적 정책의 수립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5. 2013년 시행계획 수립

1) 2013년 시행계획 개요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총 70개 전략목표, 131개 성과목표 및 256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17개 광역 지방자치단계의 추진계획은 총 109개 전략목표, 254개 성과목표 및 866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총 2조4,411억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조6,0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정부예산제출안 기준).

4)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사범이 대다수를 차지
5)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6차 공청회(2012.3.26)
6)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의 최대 가중적 형량범위

2)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위원회는 2013년도에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8대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주요내용 】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 원천 · 표준 특허 창출 확대 ■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 글로벌 ·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소프트웨어 · 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소 · 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확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신품종 · 생물지원 · 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조세심판업무 추진

390 제1장 조세심판원 일반현황
394 제2장 조세심판업무 추진성과
411 제3장 주요 조세심판 사례

1 조세심판원 일반현황

제1절 조세심판원 연혁

종전에는 1975년 4월 1일 (구)재무부 소속으로 설립된 국세심판소(2000.1.1 '국세심판원' 으로 변경)에서 국세의 심판업무를, (구)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세심판업무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국세심판소(국세심판원)는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상급기관인 (구)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역시 (구)행정자치부의 소속위원회로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과세관청에 대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재결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조세심판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구)재정경제부와 (구)행정자치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조세심판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행정심판 단계의 조세불복 사건을 80% 이상 담당하는, 명실공히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조세심판원은 그 설립근거 등에 대한 사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조세심판원 연혁 】

제2절 주요 기능 및 운영

1. 조세심판원의 주요 기능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기간(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국세기본법」제55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이를 심리·재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세심판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통상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를 국민의 선택에 맡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앞서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 를 취하고 있는 점이 일반적 행정심판과 다르다. 국세기본법상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즉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함으로써 그 판단을 거친 후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 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는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납세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행정소송 중 다수를 차지하는 조세소송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크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면서 무엇보다 행정부 내에서의 최종적 구제제도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헌법」 제107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법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 조세심판관의 신분보장, 제척·회피·기피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불복제도 개관 】

구 분			국세(내국세 및 관세)	지방세
사전구제(처분청)			■ 과세전 적부심사	■ 과세전 적부심사
사후구제	행정심	1단계 (처분청)	■ 이의신청 [임의적]	■ 이의신청 [임의적]
		2단계 (재결청)	■ 선택적·필수적 전치주의 • 조세심판청구 • 심사청구(국세청, 관세청) •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	■ 선택적·임의적 전치주의 • 조세심판청구 • 자치단체 심사청구(시장, 도지사) •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
	사법심(법원)		3심제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3심제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2. 조세심판원의 운영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회의'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심리·판단한다. 이는 소수의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다수결 제도를 통해 재결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조세심판절차의 흐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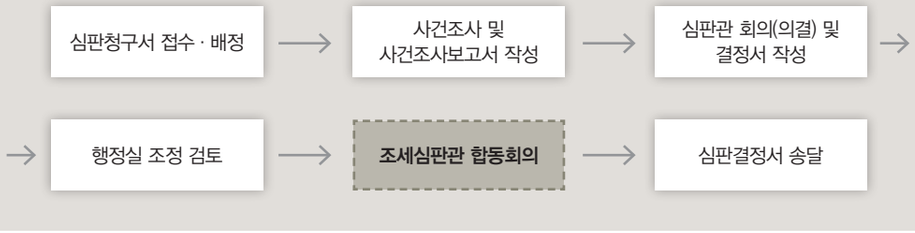

'조세심판관회의' 란 조세심판의 의결 주체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주심조세심판관을 지정한다. 현재 조세심판관회의는 내국세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5개 심판부, 관세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1개 심판부, 지방세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1개 심판부 등 총 7개 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통상적으로 1주일에 각 1회 개최되고 있으며, 관세심판부의 경우에는 청구사건 수 등을 감안해 보통 월 단위로 개최한다.

대부분의 심판청구사건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해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심판청구 대상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심판청구금액이 국세 3,000만원, 지방세 1,000만원 미만) 경미한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해서 결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여 사건을 심리·판단한다. 이러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상임심판관 6인과 상임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되며, 통상 월 1~2회 개최되고 있다.

'조세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공무원인 상임심판관과 달리 외부의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조세심판에 대한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현재 총 27명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임명되어 있으며, 주로 변호사, 교수, 전직 관료 등 조세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심판관은 조세 관련 공무원 중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및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무역학·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조세심판업무 추진성과

제1절 심판청구 처리현황

조세심판원은 매년 5,000여 건 이상의 심판청구사건을 접수 · 처리하는데, 매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내국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국세청 및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조세심판원은 전체 내국세 불복사건 중 약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적 기관인 조세심판원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의 성향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리현황 】

(단위 : 건)

구 분(년)	합 계		국 세		지방세	
	접 수	처 리	접 수	처 리	접 수	처 리
2012.9	4,787	4,219	4,134	3,380	653	839
2011	6,313	6,296	5,336	5,425	977	871
2010	5,224	5,373	4,265	4,317	959	1,056
2009	5,851	5,664	4,499	4,430	1,352	1,234

【 조세불복사건(내국세) 중 조세심판원의 비중(처리건수) 】

(단위 : 건)

구 분	전 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2011(점유비)	6,143	5,160(83.9%)	876(14.2%)	107(1.9%)
2010	4,948	3,973	896	79
2009	5,065	4,156	835	74

제2절 조세심판의 심리원칙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굳건히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심리원칙에 따라 조세심판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 조세심판관회의 비공개 원칙 (「국세기본법」 제72조제4항)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경우 그 심리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조세심판관회의 공개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나 재산거래현황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문제점이 있어 그 공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자유심증주의 적용 (「국세기본법」 제77조)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적 사실에 대하여 문서 등과 같은 증거만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 사실관계를 자칫 그릇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 각종 관련 증빙을 완전히 구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3. 불고불리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제1항)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는 심판청구사건 처리과정에서 설령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소액심판제 (「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심판청구된 사건 중 청구금액이 작은 일부 사건[1]의 경우 등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 질문 · 검사권 (「국세기본법」 제76조)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 · 검사권을 통해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 · 처분청 ·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및 그 장부 등에 대한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은 이러한 질문 · 검사권 행사를 통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 등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7. 제척 · 회피 · 기피제 (「국세기본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국세기본법은 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해 조세심판관 등에 대한 제척 · 회피 · 기피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위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이거나 친족 또는 사용인이었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조세심판관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기피의 이유,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은 문서로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조세심판관에 대한 제척 · 회피 · 기피 규정은 조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한 심리 및 토의

1) 3,000만원(지방세는 1,000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등

제3절 조세심판 주요 제도개선 및 활성화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납세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소액 또는 지방에 소재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1. 소액전담 심판부 제도 신설 · 운영

1) 소액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의 중요성

조세심판원에는 2011년에 6,313건의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6,000여 건 안팎의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된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들은 저마다 모두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기를 기대하지만,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인력부족 등에 따라 사건처리가 많이 지연되어 2011년의 경우, 법정처리일수는 90일이지만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181일이나 되었다. 사건처리 지연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가산금 중과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큰 재산적 ·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소액 · 영세납세자의 경우 세금문제는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큰일로 느껴지므로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더욱 절실하게 바란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판과정에서의 논리적 대응에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소액 · 영세납세자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소액 · 영세납세자에 대해 신속하고 따뜻한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은 없는지 고심한 끝에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소액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액 ·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는 조세부문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가치로서, 소액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조세심판원이 가진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강조한 국무총리 】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영세납세자들이
세금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2011.2.14 김황식 국무총리,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조세심판원 방문)

2) 소액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보루, 소액전담 심판부

조세심판원은 종전에는 고액사건이든 소액사건이든 심판사건 청구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모두 일반 7개의 심판부(내국세 5개 심판부, 관세 1개 심판부, 지방세 1개 심판부)에서 함께 처리했다. 일반 심판부에 배치된 직원들이 고액사건과 소액사건을 모두 함께 처리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인력부족 등으로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히 소액 · 영세납세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의 고민을 덜어줄 방안은 없는지 검토한 끝에 2011년 2월부터 소액전담 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액전담 심판부는 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의 내국세 소액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면서 소액 · 영세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세심판원 내에서 경력이 많고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소액전담 심판부에 배치하고, 이들을 내부 인사 등에 있어 우대조치 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실적평가를 통한 순환배치로 업무의욕의 저하를 방지했다. 그 예로 심판관의 경우 심판원 경력이 가장 많은 심판관을 우선 배치했고, 심판조사관의 경우도 업무실적 최상위자를 우선 배치하며, 사무관 등의 경우도 업무실적 최상위자 및 승진대상자 등 우선 배치를 추진했다.

심판부 의결 후 선결정례 등 배치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실 조정검토과정에 있어서도 소액심판부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소액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원에 제출된 서면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액 · 영세납세자가 주장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직권심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적극 유도하며, 소액 청구인들에 대해 의견진술을 적극 안내하여 조세심판에 대한 참여를 확대했다. 또 심판조사관 등이 과세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듣거나 심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획득하는 활동인 현장확인조사를 수시로 실시했다.

내국세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소액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소액전담 심판부에 이어,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도 소액 ·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2012년 3월에는 지방세에도 소액전담처리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세 심판부에 지방세 소액(1,000만원 미만) 전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액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는 한편, 직권조사 및 직권심리를 적극 강화해오고 있다.

3) 소액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성과

조세심판원은 소액 · 영세납세자 권리보호를 목표로 기대와 우려 속에 2011년 2월 처음으로 소액전담 심판부를 출범시켰고, 그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1,000여 건의 소액사건을 법정처리일수에 근접한 평균 97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인용률이 23.4%로 소액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액전담 심판부 운영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약자인 소액 ·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소액전담 심판부 운영 이전(2010)에는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가 169일, 인용률이 21.1%로서 소액전담 심판부 운영 이후 사건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며, 현장확인조사 및 직권심리 강화 등에 따라 소액 ·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에도 크게 기여했다.

소액납세자 적극 구제의 일례로 조세심판원 공무원이 과세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당한 임차료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조심 2011서2590, 2011.10.18).

한편 조세심판원의 문화나 관행도 개선되었다.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무관이 사실상 주요 · 고액사건을 전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영세 · 소액납세자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국세 분야 소액전담 심판부의 뛰어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분야에도 소액전담처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소액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조세심판원은 지속적인 소액전담 심판부 운영을 통해 소액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직권 증거조사로 소액 · 영세납세자 등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원거리 소액 · 영세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판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심판청구인에게 심판관회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의견 및 증빙을 반영하여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9년 4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동 제도는 본인 주장이 조세심판관회의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가지는 의구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조세심판 결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열람기간은 사전열람자료 수신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사전열람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담당조세심판관 지정 통지서에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회의자료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3. 의견진술제도 및 컨퍼런스콜 제도(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 운영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로서,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국세기본법」 제58조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운영하고 있다.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심판청구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조세심판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 중인 조세심판관들에게 심판청구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컨퍼런스콜(Conference Call)'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전화를 통한 진술 내용은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심리자료로 활용된다. 조세심판원은 담당조세심판관 배정 통지서에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컨퍼런스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담당심판조사관이 휴대전화 문자송신을 이용해서 청구인에게 최초 심판관회의 개최일시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견진술 및 컨퍼런스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청구인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현장확인조사제도 운영

조세심판원은 지방의 납세자가 청구한 사건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을 방문하기 어렵고 심판원 스스로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확인할 필요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판조사관 및 사무관이 광주·전주·대구·부산·대전 등 지방 소재 심판청구인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탐문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찾아가는 심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자에게 현장확인조사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한 후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조세심판관회의 자료에 반영하여 심리하고 있다.

【 연도별 현장확인조사 실시내용 (2011~2012) 】

연도	일자	지역	주요 확인내용
2012	2.10	군산	상품의 제조시설, 거래단위, 포장형태 등
	6.15	포항	국내 제철소에 상주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의 실제 업무 파악
	6.27	군산	법인의 사업장 운영형태 및 반입물건의 관리형태 확인
2011	3.3~4	대구	재산세 과세내역과 과세토지 현황 등
	4.11	부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명위개서 경위 등
	6.24	대전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
	7.15	거제	토지상 밤나무와 대나무 식생면적 등
		안성	유사물품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11.11	포항	법인으로부터 사급자재가 공급되는 공사의 스크랩 발생량에 대한 처리현황 등
		청원군	농지를 실지로 자경 여부 등
	11.18	부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증빙 등
	11.28	부산	법인의 거래형태에 대한 확인 및 자료 확보 등
	12.5	평택	토지의 수목 식재 여부 등
	12.6	경기 광주	토지 양도와 기부채납토지 사이의 연관성 등
	12.12	김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개발현황 등

5.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 도입

2012년 3월부터는 현지확인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구인의 의견진술권과 조세심판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적극 보장하고, 소액·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 소액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이 직접 청구인이나 과세물건이 소재한 지역에 방문하여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제도인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확인조사가 심판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는 조세심판관이 직접 청구인 소재 지역 등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당해 사건을 직접 심리·판단함으로써 조세심판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부산·광주·대구 등 원거리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국세·지방세 각 분기 1회 소액사건 순회심판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노령 또는 장애 등을 가진 납세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 등 근거리 납세자에 대해서도 소액사건 순회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순회심판에 따라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실 조정검토 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6. 행정실 조정업무의 세목별 전담제 실시

종전에는 심판결정의 통일성·일관성 여부나 선결정례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는 행정실 조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 세목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는 행정실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목별 전담제로 전환했다. 세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정업무 담당직원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신속한 조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행정실 조정업무에 있어 법인세 사건을 기획팀, 조정1팀, 조정2팀에서 담당하고 종합소득세 사건을 조정1팀, 조정2팀에서 담당하는 등 동일한 세목의 사건임에도 여러 조정팀에서 사건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를 세목별로 분장하여 기획팀은 상속·증여세, 관세, 국세기본법 등 사건을 담당하고, 조정1팀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건을 담당하며, 조정2팀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목 사건을 담당하고, 조정3팀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7.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조세심판원 훈령) 제정

1975년 6월 27일 「국세심판원운영규정」이 재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이래, 8차(1999.12.31 「재정경제부 훈령」 제80호로 개정)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변화된 심판사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2008년 2월 29일 (구)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업무와 (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 심사업무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설립되었으나, 종전 운영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방세 심판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회의자료 사전열람이나 순회심판 등 여러 새로운 제도들이 마련·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제도 등을 훈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그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초부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정작업을 시작하여 7월 초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 10일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했다.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정목적을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으로 명시(제1조)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조세심판업무 제도·절차 등을 「조세심판원 훈령」으로 통합(제2조~제32조)했다. 이로써 시행 중인 회의자료 사전열람, 심판관회의 진행절차, 사건배정절차, 회의자료 내용 등 조세심판에 관한 세부 절차·제도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심판 당사자인 납세자와 처분청의 조세심판업무에 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도모했다.

셋째,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조사에 대한 기한 규정(제13조)을 마련하여 담당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청구사건을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했다.

넷째, 담당심판관이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심판하는 지역순회심판에 대한 근거규정(제18조)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역순회심판제도 운영으로 원거리 납세자 등의 의견진술권 및 조세심판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적극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8. 「조세심판관 윤리강령」과 「조세심판원 윤리규범」 제정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의 조세불복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조세심판관의 독립성과 청렴성은 조세심판제도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청렴하고 깨끗한 신뢰사회 구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법·제도의 운영이야말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인 점을 깊이 공감하고, 4인의 조세심판관 합의체가 개별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조세심판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 모두에게 법관에 준하는 보다 강화된 직무윤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은 2011년 3월 4일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하여 조세심판관의 공정성·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을 윤리강령에 채택했다. 또한 조세심판 과정에서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금지하여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과 심판대리인 또는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관련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러한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 · 시행은 조세심판원이 2011년 2월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영세납세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실시한 소액전담 심판부의 운영에 이어 공정사회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세심판관의 강화된 직무윤리의무 부여는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이를 통한 명실상부한 통합 조세불복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실무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윤리규범」을 제정, 조세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종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우편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신고센터(민원실,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9. 심판결정서의 예외 없는 전면공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고, 당해 심판관회의의 심리 · 의결에 따라 심판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인 납세자와 처분청에 발송한다. 원칙적으로 당해 심판결정서는 동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심판결정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세법해석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종전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의 판단하에 일부 심판결정서에 대해 비공개하기도 했으나,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2010년 6월 8일부터 심판결정서 전면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10.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검색기능 강화 및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심판결정서의 전면공개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검색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그동안 심판결정 관련 정보(예 : 법령, 대법원 판례 등)의 일괄 검색 시스템이 미흡했고 검색속도가 느리며 외부자료와의 연계가 부족해서 납세자 불만 및 조세심판 업무처리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을 개시했다. 내 · 외부 이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속도 및 심판결정서 검색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하여 민간 포털 수준의 검색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선결정례 · 판례 · 예규 등 심판관련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건 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2011년 9월 중 기본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후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특히 검색시스템 개통 이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 대한 외부접속 건수가 개통 전 월평균 1만건에서 2012년 3분기말 현재 월평균 7만건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심판결정문 검색시스템 개통 전후 월평균 외부접속 건수 】

개통 이전(~2011.9)	2011.10~12	2012.1~3	2012.4~6	2012.7~9
1만건	1만9,000건	2만9,000건	6만7,000건	7만1,000건

제4절 신뢰받는 조세심판원이 되기 위한 기반조성

1. 지속적인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강화

조세심판원이 설립된 2008년 일과 전 2시간씩 직무교육을 실시(6개 전문 과목, 총 142시간)했으며, 희망직원에 대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설강좌의 사이버 수강을 개시했다. 2009년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을 활성화했다.

주요 세법에 대한 내용 중심의 교육은 물론, 주제별 · 유형별 직무교육 강화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켰다. 2010년에도 내부 전문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매주 2회씩 업무개시 전에 세목별 청구빈도가 높은 쟁점에 대한 심화직무교육을 실시(오전7시 30분~9시)했다. 법인세(김완석 교수), 증여세(김완일 세무사), 합병 · 분할분야에 대한 법인세(이철재 회계사), 양도소득세(안수남 세무사) 및 국제조세(백제흠 변호사) 등 해당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를 초청, 조세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최근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종사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했다.

2011년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주식상장절차, M&A 및 회계감사 등 외부 및 내부 전문교육(주 2회 일과 전 직무교육)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력을 확장했다. 6월에는 민간사설학원 인터넷 교육과정(세법, 회계) 등과 연계된 상시 교육과정을 마련해 직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2012년의 경우, 직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세법교육은 민간사설학원 등의 인터넷 강의를 통한 자율학습으로 전환했다. 이는 특히 일과 전 집합식 직무교육이 피로도를 높여 업무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심판업무 특성상 대법원 판례 등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서 청구빈도가 높은 심판사건의 핵심쟁점을 세법별로 발췌하여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한 핵심쟁점 심화교육[2]을 실시하고, 세법별 심판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과 발표 · 토론을 실시(판례분석 발표 · 토론)했다. 그리고 청렴교육, 건강강좌 등 일반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민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의 이해(소순무 변호사), 매출누락, 가공매입, 횡령 등 사외유출액 회수에 대한 소득처분(이창희 심판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이철재 회계사), 부동산 및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최봉길 세무사), 명의신탁 과세 시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가능성 인정여부(박요찬 심판관),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비과세 및 감면(김영인 세무사) 등

2. 심판결정문 간소화

심판결정문은 심판사건의 처분개요,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심판부의 판단을 기술한 것이나, 그 작성과정에서의 일부 동일한 내용의 중복 기술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근거 파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된 결정문을 통해 납세자가 심판결정 이유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정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결정문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처분개요'나 '청구인 주장' 또는 '처분청 의견'에 기술된 내용을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 등, 결정문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결정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그 경감된 시간과 노력으로 청구인 및 처분청에 대한 질문, 사실관계 확인 등 사건 조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3. 청렴성 제고 노력

1) 장기근무자 등의 인사교류 확대

조세심판원에 장기근무한 직원의 경우 다양한 사건의 처리 및 세법지식 확대 등으로 전문성이 강화되는 면은 있으나, 불복전문 대리인 등과의 유착에 따른 불공정 업무 처리의 가능성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5년 이상 당원 장기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행정사무관 대상 정기인사가 매년 2~3월경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시기에 인사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내부청렴인식 확산 및 내재화

조세심판원 내부의 청렴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종사직원들은 개인별로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며, 보통 분기별로 청렴분야에 대해 외부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청렴도를 자체평가하고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 매월 자체 반부패회의인 Clean TT(Tax Tribunal)를 개최해 부패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3) 외부 피드백 강화를 통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조세심판원의 청렴도를 상시 보완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를 우편 발송할 경우 담당자의 친절도, 향응 요구 및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를 수시로 동봉하여 우편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회수된 설문지는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개봉하여 처리한다. 이외에도 2011년 이전에는 매년 1회 실시하던 자체 전화만족도 조사(Happy Call)를 확대하여 연 2회(상 · 하반기) 불시에 실시해 종사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4.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축소 대책 마련

조세심판원은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10일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나, 전체 심판청구사건 중 약 80%가 수도권 거주 납세자들로부터 청구되고 있어 의견진술 등과 같은 납세자 참여와 관련하여 그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창성동 별관에 영상회의장을 마련하여 세종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5.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참석해 당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과세관청의 예규를 신속히 확인하여 세법규정에 대한 과세관청과 심판원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해석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피해를 제거하고, 유사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했다.

또한 종전에는 국세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 답변서 등을 한글파일로 제공하지 않아서 사건조사서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2011년 11월부터는 처분청으로부터 심판청구 답변서를 전자파일로 제공받아 조사관실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했다.

6. 해외기관과의 교류

1) 외국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방문

① 일본 내각성 (2010년 7월 15일)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조세권리구제제도 현황과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내각성 행정쇄신회의사무국 노자와 야스시 실장보좌 외 2인이 2010년 7월 15일 조세심판원을 방문했다.

② 몽골 국세청 연수단 (2011년 8월 26일)

몽골 국세청 튀야세칸 외 9명이 2011년 8월 26일 한 · 몽골 국세청 공무원 교육훈련협정의 일환으로 조세심판원을 방문, 우리나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몽골 측의 조세제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③ 파키스탄 국세청 · 재무부 연수단 (2011년 9월 20일)

파키스탄 재무부 무하마드 압잘 외 14명이 2011년 9월 20일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의 '파키스탄 조세관리과정' 의 일환으로 조세심판원을 방문했다. 한국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수를 위한 이들의 방문에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청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2)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방문

① 종전 조세심판원과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간 교류

일본 국세불복심판소는 조세심판원과 같이 일본에서 국세불복청구 등을 심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국세청의 특별기관으로 준사법기관은 아니나 집행부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본부와 12개 지부(7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2007년 7월 3일 일본 국세불복심판소(당시 소장 이노우에 테츠오)를 방문하여 일본의 조세불복제도 및 국세불복심판소의 운용상황 등을 논의했다.

② 방문 계기

일본 국세청 국세불복심판소장은 2011년 10월 5일 조세심판원을 방문한 후지타 에리코 국세심판관을 통해 '양기관 간 정기적 교류를 희망한다' 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세심판원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납세자 권리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심판원과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간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제도의 개선과 장기적 발전방안을 공동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수락했다.

「일본 국세불복심판소」와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③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방문

조세심판원장을 비롯한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등 4인은 2012년 2월 23일부터 3일간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본부 및 도쿄국세불복심판소를 방문했다.

동 방문에서 조세심판원장은 고우하시 히로시 국세불복심판소장과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방안과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고바야시 겐지 도쿄국세불복심판소장으로부터 국세불복심판소의 업무추진내역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 조세심판원장은 카와키다 치카라 일본국세청장과 후루야 가스유키 재무성 주세국장과 면담했다.

④ 성과 및 향후 과제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방문의 성과는 무엇보다 조세불복제도에 있어 선진적 제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던 일본으로부터 조세심판원의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있었다. 특히 일본 측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및 심판결정서의 예외 없는 공개에 대하여 진일보한 조세불복제도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 기관은 매년 상호 방문(2013년에는 일본 측이 조세심판원을 방문)을 통해 양자 간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

3 주요 조세심판 사례

제1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기여한 사례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은 모두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헌법과 세법이 정한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실질과세원칙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세법을 해석해왔다.

다만 과세관청의 경우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세무조사권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온 반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 해당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 및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두루 살펴보고,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에 부합하면서도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세법 해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왔다. 아래에서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세법 해석 방식이 적용된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①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례(조심 2009중2755, 2010.6.17)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부동산 시가가 취득가액으로서 그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매매한 가격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고시되는 기준시가(3억여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시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6개월을 초과한, 2년 이내에 사고관 금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참조했다.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록 상속

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매매한 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아도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7억여원)이 있고 사망시점인 상속일까지 시가의 변동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이라면, 어머니가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실제 지불한 금액을 청구인이 상속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하나를 상속받고 양도했을 뿐으로, 어머니가 당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실제로 지불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이 가액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며 심판청구했던 사건으로,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②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례(조심 2008서2840, 2010.6.21)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를 양수한 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었으며 당해 양도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통상의 경우 기준시가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음).

조세심판원은 과세특례규정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특례규정의 취지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에 협조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자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양도한 자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를 양수받은 자는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후 실제로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정을 실질적이면서도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다.

③ 저수지, 수로 등 수리시설의 관리인으로 일한 농민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조심 2008중749, 2010.9.7)

청구법인이 저수지 또는 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인근 거주 농민들을 당해 수리시설의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그에 따른 관리 수당을 지급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위 수당이 농민들의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관리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관리인들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세법 규정을 실질적이면서도 유연하게 해석하여 농가부업소득을 비과세하는 취지가 농가부업을 활성화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했다. 농민들이 위와 같은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위촉받아 일하는 기간이 5~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그 관리업무도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에게 지급된 수당도 1인당 월 30만원, 연 2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고, 이러한 수리시설 관리업무의 성격이 주업인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와 같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관리수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④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조심 2011서722, 2011.1.20)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려면 먼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관련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법」등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함

- 요건 : (사전)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토지 취득(사업자등록시점과 토지취득시점의 선후관계 불명확)
  (사후) 5년 이내 사업승인

조세심판원은 위 과세특례규정을 실질적이면서도 목적에 적합하게 해석했다.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3~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특례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관한 요건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에 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시기상의 선후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

여 청구법인이 설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과 토지 취득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 현황과 종합부동산세의 특성 등을 고려한 목적적합한 해석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분양가 상승요인을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주택수요자에게 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⑤ 무주택자인 아들(청구인)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해온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지만, 아들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별도로 주택의 일정지분(최대 지분 보유자는 아님)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아들이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례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1주택에서 동거한 것은 맞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주택 소수지분(2/15)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취지 :** 부모의 동거 · 봉양을 유도
- **요건 :**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10년 이상 동거 + 동거주택이 1세대 1주택 + 상속인(자녀)이 무주택자
- **혜택 :**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과세관청은 관련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상의 1세대 1주택 개념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위 관련규정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그 요건(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관련규정상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일정 주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일정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관련규정상의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부모와 동거한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제2절 과세행정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사례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심판의 일종인 조세심판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과세관청의 과세행정에 대하여 적법성 통제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과세행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상속인들(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당해 주택과 같은 단지에 소재하지만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가 매매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문제된 사례(조심 2009중301, 2009.9.25)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고 같은 면적인 67평형 아파트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례가 없어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15억8,000만원)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해, 과세관청은 같은 단지이지만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57평형 아파트가 매매된 가액(28억원)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비록 과세관청이 적용한 아파트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아 그 아파트의 매매된 가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불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의 매매된 가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면적이나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할 것으로, 면적과 기준시가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인근 아파트(과세관청이 적용한 아파트) 가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취소를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 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 서 및 각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동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러한 심판결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시 인근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받거나 증여받

은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함에 있어, 비록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보다 작은 면적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면적 차이가 많은 경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과세관청 등에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그러한 인근 주택의 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제시하여 과세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가 유사 면적 외의 매매된 가액까지 조사한 후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②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받은 경우, 그 받은 배당금 중 원금과 약정 기간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조심 2009부 1208, 2010.6.30)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관련 경비 인정 등을 통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위 사례에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갚기로 한 날까지 갚지 않는 경우,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약속한 이율이나 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받은 배당금 중 약정된 기간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판단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추후 경매로 받은 금액 중 원금과 약정 기간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③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조심 2009서3459, 2010.9.7)

청구법인이 소유 부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1999년, 2001년에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했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실시 후 청구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9년 4월에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 작성만 했을 뿐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통상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0년이라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고, 납세자에게도 이중계약서 작성 시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기업이나 사업자가 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 · 당좌거래보증금에 대해 최종 입 · 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국심 2007서1205, 2008.6.11)

그동안 각 은행은 최종 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했으나, 위와 같은 당좌예금 등은 성격상 차이가 있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당좌예금 등도 보통예금과 달리 볼 대상이 아니라 하여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당좌예금 등은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보통예금과 달리 예금자가 발행할 어음·수표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좌계정거래에 관한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예금주가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당좌예금 등을 과세관청이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당좌예금 등에 대해서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과세관청에 분명히 하는 한편, 세법의 해석에 있어 은행과 당좌예금 등을 개설한 고객 간에 이루어진 계약과 관행을 인정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 데 그 의의가 있다.

⑤ 과세관청이 상속인 5인 중 3인에게만 특정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가 누락된 2인(인지소송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의 상속세액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가 고지된 위 3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조심 2010서3837, 2012.6.27)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서 각자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연대납세의무)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위 사례에서 연대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세 고지 시 누락된 2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 없는 세액까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고지가 누락된 2인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상속세가 고지된 3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인 만큼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 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 상속인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구)「상속세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3절 심판결정의 취지가 법령개정에 반영된 사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해당 심판청구인과 처분청만을 구속하나 사실관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예상되는 여러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어떻게 세법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자료로 활용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을 통해 세법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관련 세법이 입법 또는 개정될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아래의 사례들은 조세심판의 결정취지 등이 관련 세법 개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① 조세심판원은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같은 건물 내에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그 산후조리용역은 그 용역의 제공자 및 형태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고(조심2008광1959, 2009.4.21 외), 기획재정부는 2012년 2월 2일 이러한 심판결정의 취지 등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관련규정을 신설

종전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여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같은 건물에서 산모 등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고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해 왔다(국세청 법규과-2972, 2008.7.2. 등).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 달리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 설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2년 2월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산후조리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도록 신설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② 신주를 저가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증자 후의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낮아짐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을 감안하여 유상증자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고(조심 2008서4077, 2009.11.27 외), 기획재정부는 2011년 7월 25일 이러한 심판결정의 취지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규정을 개정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증여일 등)로부터 3년 이내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무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발행주식총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저가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희석효과가 발생함에도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증자 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그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 으로 보아 저가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도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2011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규정을 개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개정 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후]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면혜택만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고(조심2010구2880, 2010.11.23),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1일 이러한 심판결정의 취지 등을 받아들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개정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 또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사업자가 발급 거부 및 허위 발급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사업자의 모든 감면혜택을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만을 배제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이 의무를 불이행했다하여 모든 감면혜택을 부인하는 것은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면혜택만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다.

2012년 1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배제하여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개정 전]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후]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승수
국무총리

2008.2.29~2009.9.28

국무총리 담화문 · 발표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8(목)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추모하며,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 속에서 숱한 외침과 위협을 극복하고 지금처럼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6·25 전쟁 등에서 희생한 호국용사,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유공자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거룩한 헌신이 곧 우리의 역사이며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정부는 보훈가족 여러분이 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비롯한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공훈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국권 수호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헌신하셨던 뜨거운 애국충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받들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꿈꾸던 세계 중심에 당당히 서는 부강한 나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선진 일류국가' 그리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2(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서 14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인 작년 6월초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가히 제3차 석유위기로 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름값은 물론 물가도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 영세상인, 화물차 기사, 그리고 농어민들까지 모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초(超)고유가는 우리나라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어느 나라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는 계층과 생계마저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오늘 아침,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주신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고위 당직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세 가지 원칙 아래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유가 취약계층별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고통분담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계층별로 유가 인상분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한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제도를 금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각각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78%에 해당하는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둘째, 근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유가 인상 때문에 증가한 광열 · 교통비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 하겠습니다.

셋째,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 보조금인 1리터당 293원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한편, 경유가 인상과 연계하여 경유가 추가 인상분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겠습니다.

넷째,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파악하여 확대 공급하고, 경유가 상승분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요금, 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 인상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도 교부세 정산분인 5조 4,000억원을 활용하여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가 계속 진행되어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가 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 범위를 미리 확정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과 같은 단기대책만으로 고유가 시대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구조조정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과잉인 화물차와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열·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광구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저의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확보된 석유와 가스 광구의 개발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1년간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필요한 정부 재정은 총 10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재정지출은 3조4,000억 원이며, 유가 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1,000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 교부금 정산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합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유가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여, 특히 유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유가 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이 되는 수준입니다. 작년 유류세 세수의 절반 수준이기도 합니다.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2,000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고유가 진행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수입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줄여가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업계 등 기업들도 경영합리화의 노력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이러한 종합대책이 시행되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18대 국회도 입법 활동에 나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제1차, 2차의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입니다.
이번 고유가의 고통도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치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발전의 앞날을 생각할 때 무엇이 에너지와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너지야 말로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며, 신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과 고유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한 점들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합의 내용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지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추가협상 직후에 고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혹시 미흡한 점은 없는 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국민여러분께 추가협상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시를 너무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고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당시 우리는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연간 7,000억달러의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과거 6.25전쟁 전후에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전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바로 그 유엔의 총 책임자가 우리나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 경제력, 인권과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이 모자라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100년 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은 몰라보게 커졌고, 이에 따른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대외협상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한미 FTA협정에 대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계 어떤 큰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 대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외경제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이나 식당, 택시나 버스기사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과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와 경쟁해야할 일부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천금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더욱 받들고 경제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은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국가라 하겠습니까?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확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26(목)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8일,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안되어 고유가로 고통 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1배럴당 70달러였던 석유 값이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일주일전만 해도 140달러이던 석유 값이 이제는 15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유가 시대입니다. 변변한 유전 하나 없이 세계 다섯 번째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는 데 603억달러를 썼고, 올해에는 1,112억달러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총 수출의 3분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총 에너지 소비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4.3% 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초고유가 시대에 산유국들까지 에너지 절약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비하여 준비해온 '단계별 초고유가 위기관리계획' 중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할 모든 에너지 절약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7월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근버스 운행 확대 등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취하겠습니다. 관용차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관용차량 운행도 30%까지 줄일 것입니다.
공공건물의 실내 적정온도를 1℃씩 높이고 엘리베이터 운행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도 꼭 필요한 곳에 한하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모든 실천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과 가정은 물론, 온 국민이 내 일처럼 나서주셔야 합니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실내온도를 높이며, 네온사인과 같은 조명을 조금만 줄여도 에너지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배럴당 140달러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소비량을 10%만 줄이면 연간 122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80만대를 수출하는 금액과 같은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석유 10억리터 모으기 운동' 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며,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고유가에 맞춰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 전체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기술개발, 기업 간 상호협력 등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 절약을 거듭 호소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늘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도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의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1, 2차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10년 전의 외환위기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냈습니다. 작년 겨울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도 12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빨리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바다를 기적의 바다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에너지 절약에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합니다. 저도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뜻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6(일)

쌀소득직불금 관련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의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쌀직불금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된 것으로, 2005년부터 3년간 3조 7,00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신청된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부당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모든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17(금)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새해를 설계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기침체로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비상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내각은 대통령께서 제시한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따뜻한 국정,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준비 등 올해의 4대 국정운영방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연말에 올해의 부처 업무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도 이미 끝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금년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을 확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뉴딜 사업입니다.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 세계 발전사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 녹색성장 전략입니다.

녹색성장은 과거의 양적(量的) 성장의 발전양식을 뛰어넘어 질적(質的)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한편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야심찬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녹색성장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개발에 매년 150억달러씩, 앞으로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중국도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투자에 중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선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분야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발빠르게 장기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부담률도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아 재정적으로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기술력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확정된 녹색뉴딜 사업은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자원절감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둘째, 녹색교통망 구축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셋째, 탄소저감과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그리고 넷째로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4대 분야에 걸쳐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녹색문화생활공간의 창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하이브리드카, 철도,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태양열, 지열, 조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에서 자체 기술력을 기르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며, 이것을 일반 가정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보 인프라망도 더욱 종합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에 산재된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으로 통합 발전시키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녹색숲 가꾸기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린홈 200만호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건물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학교시설도 저탄소 친환경형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약 5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모두 9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당장 금년에만도 약 1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이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와 내각은 녹색뉴딜 사업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들이 제대로, 그리고 계획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당면 경제위기를 우리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투자와 시장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기업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은 위기를 이유로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적 기술혁신과 개발 그리고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각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울 때는 내복을 입고, 물 한방울 전등 하나도 더 아껴 쓰고, 음식물을 절약하는 정신으로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녹색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모아지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 속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낸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위기를 수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올해를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공의 역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를 믿고 함께 그리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 1. 6(화)

용산 사고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불법 점거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을 잃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로 인해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 한 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시위 중이던 다섯 사람도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십수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불법 점거와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불법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 오전에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진상규명과 사후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시에도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오늘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명절인 설을 며칠 앞둔 이 시기에 이와 같이 불행한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20(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국민장을 준비하는 장의위원회는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대통령님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이 추모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을 기리고 받들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모행사는 고인의 뜻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평온하게 대통령님을 모시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대의 예우이며, 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경건하고 엄숙한 국민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고인의 영면과 명복을 빕니다.

2009. 5. 28(목)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에 베풀어주신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조의와 협조에 유가족과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뜨거운 추모의 마음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세상의 모든 근심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평생을 민주화와 국가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남겨진 우리는 고인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하나로 화합하고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기신 숭고한 정신과 열정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민장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 5. 30(토)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을 이어오는 동안 숱한 외침을 겪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불굴의 호국의지와 애국정신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조국광복에 앞장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가수호에 온 몸을 바치신 호국용사,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받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이 뜨거운 애국심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끄는 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확고한 호국·보훈의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국민의 저력으로 기적의 역사,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화해와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호국·보훈의 큰 뜻을 되새기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1(월)

정운찬
국무총리

2009.9.29~2010.8.11

세종시 관련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해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되어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겠습니다. 다행히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한대로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닙니다.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를 더 잘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좋은 결실을 위한 산고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4(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입니다.

역사를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저 역시 밤을 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입니다.

지금은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에 발목이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발전방안은 단지 세종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충청지역과 우리나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과거의 분열과 대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발점입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입니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을 살찌게 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작은 파이를 나누어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

의적 발전방안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의 눈으로 내일의 충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 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를 창조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대기업과 견실한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새롭게 확보한 것도 원대한 목표를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반영돼 있던 자족용지의 세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곳이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수주액을 자랑하는 UAE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첨단과학이 우리의 꿈이라면 첨단기술은 우리의 날개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세종시에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0만m^2에 달하는 거점지역에 세계 첨단의 중이온 가속기, 3,000명이 넘는 국내외 과학자를 수용하게 될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융복합 연구대학원 중심의 국제과학기술원 등이 그곳에 들어설 것입니다.
첨단 녹색산업 지구도 있습니다. 산업지구에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대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 · 한화 · 웅진 · 롯데 · SSF 같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중소 규모의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세 배 이상 높이고 생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부지도 별도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대학단지에는 고려대학교와 KAIST가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기초과학과 융복합기술 ·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중심 대학원과 관련 시설도 200만m^2의 부지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세종시 입주가 계획되었거나 투자가 약속된 부지의 총면적은 무려 900만m^2에 달합니다. 자족용지로 설정된 1,500만m^2미터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현 단계에서 자족용지를 모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의 비전에 걸맞은 잠재적 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세종시 입주를 결심해 준 기업과 대학 · 연구소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대덕과 오송 · 오창은 물론이고 천안 · 아산 · 충주를 넘어 대구 · 광주 · 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입니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조원 정도인 현행 세종시 계획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발전방안은 행정도시 계획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는 원안과 원안+알파는 물론, 일부 부처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충청지역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충청인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번복하는데 어찌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끝까지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도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저의 명예를 걸고자 합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하여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 기업들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고 선조들의 산소까지 이장하신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분들,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세종시로 지나치게 국가자원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원칙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수도 없이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1. 11(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한 쪽이 찢겨나간 천안함 함수 인양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던 심정은 비단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계함에 몸을 싣고, 신성한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가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다시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조국에 바치신 가족 여러분의 가슴 저미는 슬픔을 무엇으로 덜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뼈아픈 고통을 속으로 삭이면서도, 애국장병들의 희생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중대한 고비 때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사투를 벌였던 우리 군과 금양 98호 선원을 비롯한 모두의 노력에도 여섯 명의 장병들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더욱 비통해 하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천안함과 함께 산화한 여섯 장병 가족 여러분께 국무총리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천안함을 지킨 우리 장병들이야말로 조국의 바다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의 영웅들입니다.

정부는 이 시대, 이 땅의 영웅들이 몸으로 보여준 숭고한 애국정신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도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호국영령들을 전사에 준하여 명예롭게 예우하고 1계급 추서와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여 고귀한 희생을 기리겠습니다. 장례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 29일까지 해군장으로 엄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례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영결식이 거행되는 4월 29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장병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카롭게 찢겨나간 함수의 가장자리는 우리 국토를 할퀴고 간 냉엄한 분단의 현실과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조국 대한민국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는 순간에도 독도에 대한 망발을 거듭하는 일본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민간자산까지 동결하겠다는 북한 — 그 중간이 정확히 우리가 처한 오늘의 대한민국 좌표입니다.

우리 앞에는 분열과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고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연한 자세로 엄중한 조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가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우리 군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묻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처음으로 100일 휴가를 나와 석 달 치 봉급을 부모님 손에 쥐어주고 떠난 정 일병,
몸이 불편하신 홀어머니께 효도를 다한 김 중사….
그리고
“아빠 나야, 많이 춥지?
아빠 사랑해,
아빠 기달려, 내가 올 때까지 꼭 기달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최한권 원사의 아홉 살 딸이 쓴 편지가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이들은 미처 푸른 꿈을 다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차갑고 어두운 조국의 바다에서 마지막 눈을 감아야했던 대한의 아들입니다.

이보다 더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부강한 대한민국,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추모의 정을 모아 삼가 천안함 용사들의 영전에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0. 4. 2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입니다.
해마다 맞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나라와 겨레의 의미가 올해는 더욱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6·25가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데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엄혹한 현실을 천안함 사태는 아프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은 북한의 도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충격과 분노를 결연한 각오로 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소임을 다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과 영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 지켜 주지 않습니다.

위기 때 빛나는 아름다운 마음

"인생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데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신 김용철 선생의 말씀입니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곳으로 모아지는 아름다운 마음가짐들이 잿더미에서 오늘의 번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보다 우리,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감연히 도전과 맞서야 할 때입니다.
냉철한 눈으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호국용사와 순국선열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유공자와 보훈가족들께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항구적 평화로 가는 이정표

우리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긴장 악화냐, 평화 정착이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느 시대고 어려운 때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당했지만, 불굴의 의지와 타고난 예지로 전진을 지속해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동서갈등이나 남남갈등 같은 변방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일시적 위기를 물리치고 항구적 평화로 가는 이정표를 당신의 손으로 세워 주십시오.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받들어 대대로 물려줄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6. 1(화)

국회의 세종시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작년 9월 국무총리직을 수락하며, 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는 창의적이며 신명나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소외된 분들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도 세종시 문제에 먼저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청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와 장관들은 충청권으로 나뉘게 되고, 급박한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이 늦어져 위기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안대로라면 세종시는 도시로서의 자족능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잘못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제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였습니다. 작년 9월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의 선택은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정의와 이성에 호소하면, 결국은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순수한 생각은 현실정치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헤아려 달라는 저의 목소리는, 충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가려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회는 세종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수정안을 버리고 원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도,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과연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은 어제의 국회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됩니다.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생을 대학 강단을 지켜온 저는 정치적으로 많이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와 다르게 공격을 받기도 했고, 이런 저런 실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충청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저의 참 마음을 외면할 때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에 희생된 충청인 여러분께 명품 도시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제 진심이 전달되어, 충청지역 주민들과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끝까지 설득해내지 못한 것은 저의 능력과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이 끝난 지금, 이제는 국무총리로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취지대로 세종시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번 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며 모든 논란과 갈등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경향 각지를 두루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했음에도 수정안을 적극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30(수)

총리직 사임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무총리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사의표명 이후에도 국무총리 직을 지킨 이유는, 6·2 지방선거부터 7·28 재보궐 선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 일정 속에서 자칫 동요할 수도 있는 정부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7·28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주요 정치 일정들이 일단락되면서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 국가의 책임 있는 공복(公僕)으로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9월, 뜻하지 않게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이후로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가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내기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3불정책」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3화정책」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직도 아쉽기만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모두를 위한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확고하게 마련하지 못한 점도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개인적인 아쉬움의 차원을 넘어 장차 도래할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

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만 용산문제 해결은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과 자책감을 뒤로한 채, 모든 책임과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이제 국무총리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국무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책무는 수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0. 7. 29(목)

김황식
국무총리

2010.10.2~현재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회의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보다 안정적인 경제 질서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성공을 위해 경호와 안전에서 의전과 시설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율적인 승용차 2부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에 각국 정상들이 수시로 서울 시내를 오가게 됩니다. 주요도로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혼잡의 최소화를 위해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전역에서 승용차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야만, 교통 혼잡을 줄여 정상회의를 안전하고 원만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고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시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상회의 행사장 주위에는 경호안전구역이 설치됩니다. 시민의 출입이 제한되는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 행사기간에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집단의 이익이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G20의 주역은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주역은 바로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조금씩만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보다 부강하고 보다 품격 있는 나라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2(화)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세계인들이 주목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들을 비롯하여 모두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습니다.
정상회의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율적인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등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 경제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서울선언'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선언은 세계 경제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환율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와 금융안전망 구축 등 오늘날 세계 경제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의 큰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주역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입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보다 평화롭고, 함께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그리고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국가브랜드가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세계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공정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중소기업과 농어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는 선진일류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다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0. 11. 15(월)

연평도 포격 도발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23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무고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인 김치백씨와 배복철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담화(11.29)에서 밝히신 연평도 및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인천에서 머물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시거처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이 최대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하루 속히 좀 더 편안한 임시거주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나아가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과 공공시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도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주민대피시설도 현대화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등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억여 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전체의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서해 5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해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해 5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내년 초 바로 관련 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협의하여 서해 5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시 우리의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기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하여 완벽한 대응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상황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여 국지도발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상황을 방불케하는 비상대비훈련 등으로 실효성 있는 상황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 이외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시설과 경보시설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서해 5도를 우리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평도와 서해 5도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계, 언론계 등의 협조가 긴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냈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 사회의 전반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해외 투자자들과 관광객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토대는 탄탄하고 건강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6(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는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잃은 축산인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재정 부담만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제역은 이제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이후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발생지역에서 매몰되는 가축의 수도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제역 종식에 나섰습니다. 한 세기 만에 처음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축산인, 민-군-관의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역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종 지역행사의 취소, 가축시장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 우리 축산업을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 돼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에서부터 축산농장에 이르기까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상의 미흡한 부분도 철저히 보완해 나갈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책을 민과 관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역과정에서 조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지하수와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이 없도록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3월말까지 보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매몰지는 농식품부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매몰지 안전점검, 대책 추진 등의 사후관리는 총리실이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축산업이 커다란 위기를 넘어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정부와 축산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 간다면, 선진화된 방역체계를 갖춘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전국의 지역행사가 정상화되어 지역 경제가 한층 활발해 질 것입니다. 4월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 논산 딸기축제,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등의 다양한 지역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지역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이 우리 모두가 믿고 사랑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산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24(목)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7월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가들로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모든 평가과정을 주관한 평가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준과 기존 공항개발 사례, 그리고 지역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였고, 별도의 평가단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여 신공항의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정부의 입장으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입지평가 과정을 지켜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공항 유치에 높은 기대와 열망을 보여주신 영남 지역 주민 여러분의 실망감과 아쉬움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약속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된 데 대해 영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결정이 본의 아니게 지체되어 지역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컸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영남권의 항공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남지역을 기점으로 보다 많은 국제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공항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공항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입지평가 과정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은 입안하는 단계부터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역과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특정사업 추진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하루 속히 불편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넓고 큰 마음으로 화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 한층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30(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관련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아 공통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 · 중등 9년 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지난 1997년에는 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오랜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부터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만 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세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공통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 5세 공통과정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하고 어

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비 지원은 교육재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에서,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월 17만7,000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만 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 여러분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시설 지원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여러분의 교육 · 보육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종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 · 보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을 맞이하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듬뿍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30(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최종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발표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들이 매듭지어지기까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사회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LH공사 본사가 이전할 지역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면서, 통합 LH공사의 경영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벨트 사업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긴 안목으로 구상해 온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지식과 기술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특히, 아무도 찾지 못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세계와의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후보지 중 연구역량이 가장 잘 결집되어 있고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거점지구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벨트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며, 국내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외국의 뛰어난 연구인력을 유치해야 하고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학벨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학벨트 입지가 발표된 지금, 과학기술계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학기술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舊)주택공사는 경남으로, 구(舊)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사업의 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치면서 통합공사의 이전지역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LH공사 이전 문제를 두 지자체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배치와 일괄이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LH공사의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일괄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주택건설군과 전북의 농업기능군이라는 혁신도시 성격을 고려하여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재배치하고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에서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LH공사 이전 후 발생되는 세수의 일정부분에 대해 일정기간 정부에서 전북에 보전하는 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논의를 거쳐 전북에 대한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와 LH공사 이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최종 결과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여러분께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일부 문제들은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될 염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역량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여부를 과감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벨트 입지와 LH공사 이전지역이 결정된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도모하고 또한, 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로 자제하고, 더 나아가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1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그 숭고한 뜻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모합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숱한 외환과 내우를 겪으면서도 5,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신명을 다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의 탄압에 의연히 맞서 싸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6·25 전쟁에서 고귀한 넋을 바친 호국용사,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불의에 항거한 민주유공자,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경탄해마지 않는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고, G20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선 것도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이 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과 남겨진 유지를 되살려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 일류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이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듯이, 선진 일류국가의 구현도 튼튼한 안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위협으로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방태세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무겁게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이 국민 모두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1(수)

검·경 수사업무 관련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검경수사업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사개특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양 기관 간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검경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금일 정부의 관계 부처와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이 났으며, 제가 직접 양 장관의 보고를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합의된 내용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20(월)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연말 꽃과도 같은 어린 학생들이 선택한 죽음이 지금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따금씩, 아이들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홀로 느꼈을 암흑 같은 절망을 떠올려 봅니다. 그럴 때마다 총리로서 한 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남은 가족들께 마음 깊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폭력서클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패거리를 진 채로 학생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그저 장난삼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굴종하고 가정과 학교도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폭행 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도 '도와 달라' 고 차마 내뱉지 못한 응어리와 절규를 우리 모두가 보듬고 귀 기울여주지 못한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고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교, 학부모와 정부,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련부처들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정부가 검토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종래처럼 학교만의 대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의 자원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입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 가정과 사회가 지금 즉시 챙겨야 할 일들은 물론,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교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문 상담인력도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학교나 교원 평가 시 폭력발생 건수가 아닌 조치실적을 반영하고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관련교원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학교마다, 교실마다 소위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따돌림 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 척 했다는 것도, 어느 쪽이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맞벌이나 가정의 결손으로 마음 붙일 곳 없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다시 침묵하고 학교폭력은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게 됩니다. 선생님여러분!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정부가 우리 선생님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습니다. 학부모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도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각종 연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 학기마다 학교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사가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루려면 서로 긴밀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선생님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도 학부모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도 온 사회가 나서야만 합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학교에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추진 틀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는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전국의 Wee 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를 「One-stop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들도 자원봉사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금년 중에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을 확보하고, 이 분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일대 일로 상담 · 지원할 수 있도록 맺어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종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117'로 통합하였습니다. '117'에는 경찰청과 상담기관, 관련학교가 연계돼 있어 피해 학생이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학생'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특히 보복행위는 가중 징계 등 엄중처벌 할 것입니다.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일진회 문제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기간 단축, 신분노출 차단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충분한 상담치료 기회를 받도록 돕고 '先치료 後비용처리'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일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활동에 인성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사항' 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입학사정관 전형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교육과 독서활동 교육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 현장에서 생활규칙을 스스로 정해 지켜나가고 학교 내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래상담' 운영학교와 '자치법정' 시범학교도 대폭 늘려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선생님들의 철저한 준비와 지도, 학부모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못했느냐' 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학교폭력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학교가 잘해도 부모의 관심이 없으면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교나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거들어야만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 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각오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식·행동이 바뀔 때까지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저 자신도 매월 한 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하여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과 기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도, 언론도, 학교폭력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모두가 나서서 눈을 크게 뜨고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6(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회복 지연, 청년 실업, 물가 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큰 대부업 거래나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들입니다.
불법사금융 가운데는 연 이자율이 수백, 수천퍼센트에 달하여 서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강제로 유흥업소에 나가게 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어찌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폭리에 짓눌리고 벼랑 끝까지 몰려 하루하루를 떨고 절망하면서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인해 내일의 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서민들이 더러는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사례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뽑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상담-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신용회복·법률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유형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세부대책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정부는 내일, 즉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입니다. 금감원, 경찰청에 설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직접 신고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채권 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불법광고 등 모든 불법사금융 행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여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은 당장 내일부터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하며, 경찰청은 총 2,50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5,000여 명의 형사인력까지 총동원해 단속을 펼 것입니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배후조직까지 파악해 이를 끝까지 척결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신고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상환조건 조정, 소액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신용회복도 도울 계획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신고자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분 등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30일 마련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총 3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에 불법 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경우 피해신고 빈발업체는 명단 공개 및 현장검사를 단행하고, 불법추심으로 제재 받은 업체는 3년 간 추심위탁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 사전 차단을 위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광고 게재도 중단토록 할 것입니다. 각종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 문제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지연인출제'를 도입해 계좌이체 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권한 분산, 담당자의 전문성 취약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오늘 내놓은 대책들이 그냥 대책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일제 신고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번에 만든 기본 추진체계들은 계속 유지되며 적발과 단속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론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강요당하거나 폭행·협박·심야방문과 전화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정부를 믿고 「1332번」으로 적극 신고하십시오.

정부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지원·보호하고, 최대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17(화)

금년도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하계 전력수급 상황과 대책'을 설명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여름철 전기 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전력 공급이 한 순간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 후의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는 국민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추운 날씨에도 난방온도를 올리는 대신 내복을 입고,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자율 절전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녁의 전력 피크시간에도 영업상의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네온사인을 꺼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없었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경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또다시 전력부족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발전설비의 유지·보수에 차질이 생겨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정부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어[1] 벌써부터 냉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올 여름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어 전력수요도 지난해 대비 480만kW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능력은 일부 원전이 가동 중단되고 보령화력이 화재피해를 입어, 작년에 비해 90만kW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400만kW의 예비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5월 초에 예비전력이 422만kW까지 하락했고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400만kW의 예비전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

전력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급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발전설비 등을 건설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공급능력을 늘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5월 중순부터 '여름철 절전'에 대해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때문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방금 열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월 1일부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전력부족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정부는 우선 500만kW의 안정적인 예비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협조를 받아 8월 첫째 주에 집중된 하계휴가를 셋째, 넷째 주로 분산하고 전력 피크시간대를 피해 조업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할증요금을 적용해[3] 총 3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 지난해 대비 5%의 전기를 절약하고 냉방온도를 28℃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방기도 30분을 켜면 30분은 끄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대책'은 누구보다도 국민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

1) 기상청 3개월 기상 전망(4.23발표) 7월 중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전망

2) 전력수급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8월 3~4주 예비전력 147만kW로 전망
3) 인센티브 1,020원/kwh 신청 산업체 대상, 최대피크 시간대에는 할증요금을 부과, 평상시에는 할인요금 적용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

여해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백화점, 호텔 등 대형 상업용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고, 피크시간대에는 냉방기를 30분 간격으로 순차 중지토록 권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효과적으로 절전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가정, 상점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절전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력수급시계'[4]를 설치하고 '절전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전력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500만kW 이상의 예비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차단, 긴급절전 등을 통해 충분히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전력공급 체계는 단일 망으로 되어 있어 일단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전 국토에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절약을 상시적으로 생활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6.5%에 달하며 작년도만 하더라도 에너지 순 수입액이 무려 137조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20년 동안 세 배나 증가했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일본보다 30%나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1인당 전력 소비도 네 배나 늘었습니다.[5]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전기와 에너지를 더 절약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전기절약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모든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4)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지하철역, 터미널,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 및 절전행동 수칙을 알림
5) 1990년 2,373kWh에서 2010년 9,510kWh로 증가

프랑스만 하더라도 1979년부터 실내온도를 제한해 왔고,[6] 덴마크는 2015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2006년 대비 50%까지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은 2010년 10월 '녹색대사관'을 선언한 이래 전력 소비량을 거의 삼분의 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7]
국민여러분,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실내온도 26℃ 이상 준수하기, 피크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냉방기 사용 자제하기, 불필요한 전등 소등 및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 여름철 전력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16(수)

6) 1979년부터 공공시설 등의 난방온도를 19℃이하로 제한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는 2007년부터 26℃로 제한)
7) 2010년 9월 3,900kWh → 2012년 3월 1,500kWh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넋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몸과 마음을 다잡아 추모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숱한 외침 속에서도 반만년 동안 겨레의 자존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세기만 해도 일제의 강점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국토는 폐허가 된 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서울이 옛 모습을 찾으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고 영국의 〈더 타임즈〉도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가 피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6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민주주의 또한 아시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풍요와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풍요이고, 민주유공자들이 피와 눈물이 아니었다면 피어날 수 없었던 자유입니다.

모든 희생이 값진 것이지만 나라를 위한 희생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제외한 남은 자들만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도리는 선열과 호국용사,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참된 마음으로 추모하고, 또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에 나섰던 자신의 아들딸을 지금껏 기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럴진대 우리의 광복과 독립,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드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선열들이 피로써 보존해 온 이 나라를 어떠한 외침으로부터도 지켜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최근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핵 실험 계획을 통해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에만 이끌려 군사적 대비를 게을리 한다면 제2의 천안함 사건, 제2의 포격도발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튼튼한 방위력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호국보훈의 정신에서 비롯합니다.
역사를 망각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보를 구축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합시다. 나아가, 이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화합과 단결로 승화시켜 우리나라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그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2. 6. 1(금)

금년도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여름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복되는 전력부족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질책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에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겨울은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낮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전력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정비 등으로 인해 발전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부는 금년도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5일「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계전력 비상수급 기간도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시작했던 것을 11월 중순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400만kW 이상의 예비전력이 꼭 필요한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전력공급' 확충을 위해, 우선,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의 부품을 충분한 안전 검증을 거쳐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금년 말까지는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력량 확보를 위해 준공이 임박한 발전소의 건설공기를 단축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발전기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2 월 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까지 사용량을 의무 감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부터는 평상시에는 할인요금을, 하루 전 예고된 피크일과 피크시간 대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산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요관리대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차제에 우리는 전기 절약을 상시적으로 생활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여섯 배[8]나 됩니다. 전기요금이 싼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1/3, 독일의 1/4 수준입니다.[9]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10]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전기요금을 올려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나 산업경쟁력을

8) 1인당 전력소비량 : 2000년 5,575kWh → 2010년 9,509kWh
전력소비 증가율 : 2000년 28만GWh → 2010년 46만 GWh 67%, / OECD 평균 11%
9) 전기요금(한국 100%기준시) 일본은 279%, 독일은 383%(2010)
10) 우리나라 전기요금보다 중국이 1.3배, 인도네시아가 1.4배, 필리핀이 2배 높음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여주어야만 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는 가로등 격등제 시행, 조명사용 자제, 빨래 야외건조 등을 통해 40%가 넘는 전기 소비를 감축했습니다.

1인당 전력소비가 우리의 60%에 불과한 영국[11]에서는 '학생전기소등(Student Switch Off)' 캠페인을 벌여 지난 해 43개 대학이 전기소비를 5.7%나 줄였습니다.
프랑스는 법령으로 겨울철 난방온도를 19°C 이하로 제한하고, 금년 7월부터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점포와 가로등 조명을 모두 소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에 절전 문화가 국민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 을 보다 강력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겠습니다. 난방온도를 18°C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평상복을 입었습니다만,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들이 격식을 떠나 따뜻한 차림으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백화점, 호텔 등 전기 다소비 시설의 난방온도를 20°C 이하로 제한하고,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광고', '대형건물의 옥외 경관조명 사용' 등 에너지 낭비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400만kW 이상의 예비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긴급절전 등을 통해 결코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발전량의 31%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잘 운영만 한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전력원일 뿐 아니라 에너지를 전부 수입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또, 당장에 원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최근, 원전 운영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고장이 원전 전체의 안전성에 문제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정지율도 프랑스의 1/8, 독일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UAE 등에서도 우리 기술을 신뢰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을 관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고 치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절전으로 인한 불편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이 되면 700만kW의 공급능력이 확충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 겨울이 전력수급에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작년과 같은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기업에서, 영업장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절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지금의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보다 긴 안목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가들도, 실내온도를 낮추고 '난방 중 문 열기' 등 에너지 낭비 사례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내복 입기, 실내난방온도 낮추기, 가전기기 사용 자제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 겨울과 금년 여름의 전력부족 사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잘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도 전력부족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절전대책에 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16(금)

11) 2010년 기준: 영국 5,741.6kWh, 한국 9,509.4kWh

국무총리
주요일지

2008.2.25~현재

2008

한승수 국무총리

2008.2.29~2009.9.28

날짜	행사명(장소)
2. 25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국회)
	노무현 이임대통령 서울역 환송행사(서울역)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국회)
2. 26	제17대 대통령취임경축 재외동포초청리셉션(롯데호텔)
2. 29	제38대 한덕수 국무총리 이임식(정부서울청사)
	제39대 한승수 국무총리 취임식(정부서울청사)
	국립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3. 1	독립선언문 낭독현장 방문(탑골공원)
3. 2	재래시장방문(양천구, 신영시장)
3. 6	태안 방제현장 방문
	정진석 추기경 예방(명동성당)
	김수환 前 추기경 예방(가톨릭신학대)
3. 7	김영삼 前 대통령 상도동 사저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종로구, 조계사)
3. 8	순직소방관 유족 방문(일산)
	중앙119구조대 방문(남양주)
3. 11	김대중 前 대통령 동교동 사저 예방
3. 12	대법원장(이용훈) 예방(서초구)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예방(종로구)
	네팔 UN PKO 순직장병(故 박형진대령) 조문(국군수도병원)
3. 13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송파구, 가락시장)
	전경련 회장단 만찬간담회(하얏트호텔)
3. 14	강원지역 민생현장 방문(속초 · 강릉 · 양양)
3. 15	강원지역 민생현장 방문(평창, 월정사)
3. 20	에너지자원현장 방문(평택, 한국가스공사)
3. 21	세계 물의날 기념식(COEX)
3. 24	중소기업현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음성, 꽃동네)
3. 25	파라과이 대법원장 면담(정부서울청사)
3. 27	김장환 극동방송 목사 예방(마포구, 극동방송)
4.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 · 학 · 관 협약식(프라자호텔)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창립행사(롯데호텔)
4. 3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제주, 평화공원)
	제주 영어교육도시 현장 방문
4. 4	대한상의 회장단 오찬간담회(롯데호텔)
4. 5	식목행사(용인)
4. 7	뉴스타트 2008 관련기관 현장방문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신용보증재단)
4. 8	서울 국제공작기계전(KINTEX)

날짜	행사명(장소)
4. 11	2012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개소식(종로구, 현대빌딩)
	기후변화 국가전략 워크숍(안성, 인재개발원)
4. 1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식(백범기념관)
4. 15	몽골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4. 17	AI 발생지역 현장 방문(영암)
	2008 함평 세계 나비 · 곤충 엑스포 개막식(함평, 엑스포공원)
4. 18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시티)
4. 19	4.19 혁명 기념식(강북구, 4.19 민주묘지)
4. 21	브라질 정무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4. 22	오만 경제부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키르기즈스탄 제1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4. 23	나라기록관 개관식(성남)
	재외공관장 오찬토론회(정부서울청사)
4. 25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현장 방문
4. 29	싱글PPM품질혁신전진대회(대한상공회의소)
4. 30	국립 이천호국원 준공식(이천)
5. 2	외국인근로자 현장 방문(인천)
	다문화가정정책 관련 현장 방문(인천, 여성복지관)
	아동성폭력피해지원 관련 현장 방문(마포구, 해바라기아동센터)
5.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 환영오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5. 6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만찬간담회(63시티)
5. 8	미국산 쇠고기수입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정부서울청사)
5. 21	캐나다 BC주 총리(캠밸) 접견(정부서울청사)
5. 22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COEX)
5. 26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국제회의 개회식(롯데호텔)
	과테말라 부통령 환영만찬(총리공관) 및 면담(정부서울청사)
5. 27	팔레스타인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 방문(COEX)
5. 28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기조연설(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요르단 왕자 및 원자력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5. 29	JCI 부산 아–태 대회 개막식(BEXCO)
6. 2	파라과이 대통령당선인 환영오찬(총리공관)
	BIE 총회의장 및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6. 3	총영사회의 오찬토론회(정부서울청사)
	경제5단체초청 국회의원 당선축하리셉션(롯데호텔)
6. 5	환경의 날 기념식(COEX)
	핀란드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날짜	행사명(장소)
6. 6	대학생과의 시국토론회(연세대)
6. 8	고유가극복 민생종합대책 발표(정부서울청사)
6. 9	원자력발전 30년 기념식(그랜드인터콘호텔)
	차세대 아랍지도자 접견(정부서울청사)
	美 지구정책연구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6. 13	이임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6. 14	기후변화 워크숍(용인, 아시아나 인재개발원)
6. 16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 총회 개회식(BEXCO)
6. 17	UN 글로벌콤팩트회의 기조연설(하얏트호텔)
	OECD 장관회의 환영만찬(COEX)
6. 18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총회 개막식(신라호텔)
6. 19	라오스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6. 20	美 백악관 환경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6. 22	제4차 MEM 회의 기조연설(신라호텔)
6. 23	국제한국전 참전 향군연맹 방한단 환영오찬(총리공관)
6. 24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신청사 준공기념식(성남)
	한국공학산림원 주최 에너지포럼 참석(신라호텔)
	영국 기후변화특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6. 25	제58회 6.25기념식(장충체육관)
6. 26	미국산 쇠고기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정부서울청사)
6. 27	쇠고기 검역시행장 방문(용인)
	학교급식현장 방문(용인, 성산초등학교)
6. 29	제6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 및 장병격려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막식(COEX)
7. 2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방문(태릉선수촌)
7. 3	에너지절감 우수기업((주)아시아페이퍼텍) 방문(시흥)
7. 4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의 UN 사무총장 환영오찬(롯데호텔)
7. 5	반기문 UN 사무총장 환영 만찬(총리공관)
7. 8	수해복구현장 방문(양구)
	축산농가 방문(양구, 대월목장)
7. 10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제주, 롯데호텔)
7. 16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7. 17	제60주년 제헌절경축식(국회)
	제60주년 제헌절경축오찬(63시티)
7. 23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7. 25	투르크메니스탄 도로교통부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날짜	행사명(장소)
7. 25	베이징 올림픽대회 선수단 결단식(올림픽공원)
7. 27	수해현장 방문(봉화)
7. 29	독도 · 울릉도 방문
7. 30	쿠웨이트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한–쿠웨이트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8. 1	세계한인차세대지도자 접견(총리공관)
	안도라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8. 7	새만금현장 시찰(군산 · 부안 · 김제)
	AI 관련 양계농가 방문(김제)
8. 11	한국행정 60년 국제학술대회 개회식(프레스센터)
	호주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8. 12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연설(성균관대)
8. 13	북미아시아학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핀란드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8. 14	한미연합사령관 접견(정부서울청사)
8. 15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식(경복궁)
	건국60년 기념 해외동포 오찬(내외분)(성북구, 삼청각)
8. 20	동대문(흥인지문) 화재진압훈련 참관
8. 22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현장 및 군청 방문(홍천)
	수해복구현장 및 군청 방문(인제)
	한국정치학회 건국60년 기념학술회의 만찬(속초)
8. 23	어판장 방문(삼척)
	진폐증환자 위로방문(태백, 중앙병원)
8. 25	UN 총회의장 환영만찬(내외분)(총리공관) 및 면담(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벨기에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8. 26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립기념리셉션(그랜드인터콘호텔)
8. 31	중앙글로벌포럼 환영만찬(신라호텔)
9. 3	OECD 교육차관회의 만찬(성북구, 삼청각)
	농산물 가격동향 현장점검(송파구, 가락시장)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개막식(COEX)
	이임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9. 4	이임 주한 인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창립세미나(프레스센터)
9. 5	수산물 가격동향 현장점검(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전직 국무총리 만찬(총리공관)
	요르단 하원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9. 8	교통유관업계 결의대회 및 오찬간담회(세종문화회관)

날짜	행사명(장소)
9. 8	KAIST 세계대학총장포럼 만찬(조선호텔)
9. 9	프랑스 경제분석위 위임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9. 10	사회복지시설 방문(양천구)
	경제5단체장 간담회(롯데호텔)
9. 12	추석 국군장병 위문 및 오찬(화천, 육군7사단)
	추석 도로교통상황 점검(도로공사상황실 · 고속도로순찰대)
9. 16	이임 주한미대사(버시바우) 접견(정부서울청사)
10. 2	제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그랜드힐튼호텔)
	영국 요크公 접견(정부서울청사)
10. 3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10.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광주)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광주, 월드컵경기장)
	폴란드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0. 7	해외동포언론인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0. 8	디지털국토엑스포개회식(KINTEX)
	차세대에너지제조공장(포스코파워) 방문(포항)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개막식(경주, 현대호텔)
	562돌 한글날 경축식(세종문화회관)
10. 9	한–투르크메니스탄 공동위원회 참석자 오찬(총리공관)
	베트남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10. 10	과학기술자 오찬간담회(대전, 한국기계연구원)
10. 14	매경 세계지식포럼 만찬(워커힐호텔)
	이임 주한카타르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중국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0. 15	한–몽골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몽골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오송 생명과학단지 준공식(청원)
10. 17	고리원자력본부 방문(부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방문(마산)
10. 18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사천)
10. 21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COEX)
	여수박람회조직위 국제심포지엄 전야만찬(롯데호텔)
10. 23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COEX)
10. 27	이임 주한태국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유럽의회 대표단 접견(정부서울청사)
10. 28	우간다 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제주, 컨벤션센터)
	외신기자(영미지역) 오찬간담회(롯데호텔)

날짜	행사명(장소)
10. 29	여성계지도자 오찬간담회(내외분)(총리공관)
	건국60년 기념 세계지도자 포럼 환영리셉션 및 만찬(신라호텔)
	불가리아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10. 30	한미 재계회의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세계지도자 포럼 폐회식(신라호텔)
10. 31	마르티노 추기경 접견(정부서울청사)
	UN 사무부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1. 6	카타르 부통령 접견(정부서울청사)
11. 10	세계 인권선언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막식(프라자호텔)
11. 11	농업인의 날 기념식(수원, 농촌진흥청)
	제22회 섬유의 날 기념식(강남구, 섬유센터)
11. 12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신안)
	대불산업단지 방문(영암)
	시험조류발전소 건설현장 방문(진도)
11. 13	이란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쿠웨이트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1. 15	엘 고어 前 美 부통령 접견(총리공관)
11. 17	제6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1. 19	일용직 인력알선 현장 방문(구로구, 남부인력개발)
11. 20	한림국제심포지엄 개회식(조선호텔)
11. 21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 방문(인천, 남동공단)
11. 24	축산농가 방문(횡성)
11. 26	이임 주한 뉴질랜드 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2. 5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2. 6	폴란드 대통령 면담(롯데호텔)
12. 9	연말 국군장병 위문(철원, 육군3사단)
	한영협회 만찬(내외분)(조선호텔)
12. 10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메리어트호텔)
12. 10	이천 화재진압 부상 소방관 위로 방문(한강성심병원)
	노인요양시설 방문(도봉 실버센터)
	재래시장 경기 동향 점검(도봉구, 도깨비시장)
	한–EU 산업협력의 날(하얏트호텔)
12. 11	국사편찬위 건국기념역사관 개관식(과천)
	대한민국 발명특허 · 상표 · 디자인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 개막식(COEX)
12. 12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국립서울현충원)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날짜	행사명(장소)
12. 17	美 하원 농업위 대표단 접견(정부서울청사)
	중소기업금융지원상 시상식(증권선물거래소)
12. 18	호주 상원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12. 19	자이툰 · 다이만 부대 환영행사(성남)
12. 26	주민서비스 업무수행 일선현장 방문(영등포 동사무소)
	저소득 취약계층(독거노인) 방문(영등포구)
	여성고용촉진현장(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방문(시흥)
12. 29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낙동강 안동지구 착공식(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현장방문(금강)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영산강 나주지역 착공식(영산강)

2009

날짜	행사명(장소)
1. 1	국립묘지 참배(VIP)(국립서울현충원)
1. 2	정부시무식(정부서울청사)
1. 5	새해 경제현장 방문(인천대교 건설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셀트리온)
1. 6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 발표(정부서울청사)
1. 8	녹색 일자리창출(숲 가꾸기) 현장방문(여주)
	녹색 일자리창출(펠릿 제조공장) 현장방문(여주, 목재유통센터)
1. 12	이란 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1. 13	한국그린비즈니스협회 / IT협회 창립 리셉션(워커힐호텔)
1. 14	Buy Korea 2009 수출상담 행사(COEX)
1. 15	설 물가동향 현장점검(동대문시장 · 남대문시장)
	이라크 국방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 16	고용안정실태점검 관련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방문
	노사협력기업 관련 방문(화성, (주)씬터온)
1. 19	라트비아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이임 주한앙골라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한–라트비아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애쉬턴 EU통상담당 집행위원 접견(정부서울청사)
1. 20	선도 지구 현장 방문(충주)
	용산 재개발지역 사고대책 발표(정부서울청사)

날짜	행사명(장소)
1. 21	용산시위 부상자 위문 및 순직경찰관 조문 (경찰병원 · 순천향대병원)
	한국 이미지 알리기 CICI Korea 5주년 행사(내외분) (그랜드인터콘호텔)
	여성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 23	사회복지시설 방문(가평, 상신전문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방문 (춘천, 애민원 · 시립복지원 · 성골룸반의집)
1. 24	설 귀성현장 점검 및 용산사고 현장 방문(서울역 · 고속버스터미널 · 용산)
2. 3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행사(중구, 기업은행)
2. 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창립기념식 (영등포구)
2. 6	미주 개발은행 총재 접견(정부서울청사)
2. 12	이임 주한탄자니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2. 18	국제우주연맹회장단 접견(국회)
2. 19	대구 신성장동력 설명회(대구, EXCO)
2. 20	故 김수환 추기경 장례미사(내외분)(명동성당)
	녹색미래 실천연합 창립총회 개회식(정부서울청사)
	美 국무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러시아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2. 22	글로벌코리아 2009 환영만찬(롯데호텔)
2. 24	직능 여성단체장 오찬간담회(내외분)(총리공관)
2. 25	이임 주한 호주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2. 26	선도 지구 착공식(충주)
	천변저류지 및 군청 방문(영월)
	4대강 살리기 현장 방문(남한강)
2. 27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프레스센터)
	스웨덴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3. 3	콩고 국토계획부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총리공관)
3. 4	추경예산 관련 현장 방문(광주, 광산구청 · 고용지원센터)
3. 5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산업경제 특구회의 개회식(롯데호텔)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3. 6	낙동강 대저지구 착공식(부산)
3. 11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대전)
	원자력전문가 오찬간담회(대전, 영빈관)
3. 13	태국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날짜	행사명(장소)
3. 13	추경예산관련 학교현장방문(강서구, 공항중)
	한–ASEAN센터 창립행사(프레스센터)
3. 23	스페인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하노이 당서기 접견(정부서울청사)
3. 26	국제형사재판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3. 27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기공식(군산)
	새만금 공사현장 방문(군산)
3. 28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현장시찰(제주)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중시찰(제주)
	황지연못 비상급수원 현장 방문(태백)
3. 30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오찬간담회(총리공관)
4. 2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옥천)
4. 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장 오찬간담회(총리공관)
4. 6	리장춘 중국 상무위원 접견(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
4. 15	수양부모회 및 입양 홍보회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독일 여당 원내대표 접견(정부서울청사)
4. 16	터키 국방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4. 29	상생협력 전진대회(대한상공회의소)
4. 30	제1회 생활 공감 녹색기술대전 개막식(수원, 농촌진흥청)
	모범다문화가족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5	세계시민 포럼 개막식(COEX)
5. 6	우크라이나 내무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5. 7	한탄강 침수방제(배수펌프장) 건설현장(연천)
5. 11	벨기에 왕세자 면담(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
5. 12	섬진강 현장방문(하동, 송림공원)
5. 16	전국 한센가족의 날 기념식, 한센가족 친선체육대회(소록도)
5. 18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5.18 국립민주묘지)
	화순군청 및 녹십자 화순공장 방문(화순, 백신공장)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개막식(그랜드 하얏트호텔)
5. 19	서울C40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 개회식(신라호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사업단 순시(종로구)
5. 23	전국걷기대회 개회식(올림픽공원)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조문(김해, 봉하마을)
	EU의장국 대표단 환영만찬(그랜드 하얏트호텔)
	국민원로회의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카타르 왕세자 면담(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총리공관)
5. 26	신성장동력박람회 개막식(KINTEX)
5. 27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쉐라톤워커힐호텔)

날짜	행사명(장소)
5. 28	동아시아 기후포럼 환영만찬(조선호텔)
5. 29	베트남총리 환영만찬(내외분)(총리공관)
5. 29	한–베트남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5. 30	제주 국제문화관광 엑스포 개막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점검(제주)
6. 3	싱가포르 총리 환영오찬(총리공관)
6. 4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기공식(홍천)
	6.25 참전 전사자 위령탑 헌화 및 분향(화천, 평화의 종 공원)
6. 6	호국 · 보훈의 달 보훈병원 위문(강동구)
6. 8	이임 주한멕시코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사우디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6. 9	UAE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일본 외무대신정무관 접견(정부서울청사)
6. 11	뉴질랜드 통상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6. 13	한영(韓英)미래포럼 만찬(내외분)(총리공관)
6. 15	UN 총회의장협의회 환영만찬(총리공관)
	헌트 UN 총회의장협의회 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6. 16	UN 총회의장협의회 특별회의(롯데호텔)
6. 18	코리아 그린어워드(롯데호텔)
6. 19	동아시아 세계경제 포럼 기조연설(하얏트호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6. 20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직자 특별교육 기조연설 (중앙공무원교육원)
6. 29	제2연평해전 기념식(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6. 30	튀니지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7. 1	경의선 성산–문산 간 복선전철 개통식(행신역)
7. 2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美 무역구제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7. 8	하절기 재해예방 시설방문(강동구, 성내 배수펌프장)
7. 9	녹색 새마을운동 선포식(양화한강공원)
	고령자 등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방문(광진구, (주)나눔사회)
7. 10	중소기업현장 방문(구로구,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제2차 RPA협약 및 그린홈제로하우스 준공식 (국립과천과학관)
7. 13	방과후학교 우수운영학교 방문(파주, 새금초등학교)
	장애인 직업재활 사회복지법인(위캔) 방문(고양)
	여성 친화적 기업 방문(종로, 여행이야기)

날짜	행사명(장소)
7. 14	이임 주한프랑스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7. 15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식(춘천)
7. 16	우크라이나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한–우크라이나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7. 17	자크 랑 프랑스 하원의원 접견(정부서울청사)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식(국회)
	한강홍수통제소 방문(동작구)
	반포 빗물펌프장 방문(서초구)
	신분당선 전철 하저터널 공사현장 방문(강남구)
7. 20	故 고미영 산악인 조문(중구, 국립의료원)
7. 24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막식 및 원전 방문(울진)
7. 25	자연생태현장 방문(창녕, 우포늪)
7. 27	국립 생태원 착공식(서천)
	희망근로프로젝트현장 방문(보령, 화평천)
7. 30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현장 방문(증평, 신성홀딩스)
8. 1	광화문광장 준공식
8. 4	중앙 · 지방 녹색성장책임관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이임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8. 5	앙골라 공공사업부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8. 6	아시아학 세계총회(ICAS) 개회식(대전, 컨벤션센터)
8. 7	국립임실호국원 방문
	담양 자전거도로건설현장 방문
8. 10	UN 협회세계연맹총회 개회식(프라자호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8. 11	반기문 UN 사무총장 환영만찬(내외분)(총리공관)
	세계한인차세대지도자 접견(총리공관)
	혼다 美 하원의원 접견(정부서울청사)
	세계자연보전연맹총재 접견(정부서울청사)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정부서울청사)
8. 12	제주평화 포럼 기조연설(제주, 해비치호텔)
8. 18	세계도시물 포럼 개막식(인천, 송도컨벤시아)
	을지 실제훈련 참관(과천, 지식경제부)
8. 19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조문(신촌세브란스병원)
	나로호 위성발사 참관(고흥)
8. 20	UNEP 툰자 세계 어린이 · 청소년 환경회의(대전, 컨벤션센터)
8. 21	중국 공산당 허융 중앙 서기처 서기 접견(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이집트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날짜	행 사 명 (장소)
8. 23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영결식(국회)
8. 25	나로호 위성발사 참관(고흥)
8. 26	국립 영천호국원 방문(영천)
8. 29	신종플루 예방 · 치료 거점병원 점검(김해중앙병원)
8. 31	다산유적지 방문(강진)
9. 1	이임 주한러시아대사접견(정부서울청사)
9. 2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개막식(COEX)
9. 3	마스카와 노벨상 수상자 접견(정부서울청사)
9. 4	이임 주한독일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오만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9. 6	중앙글로벌포럼 환영만찬(신라호텔)
9. 7	탄자니아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한–탄자니아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야영객 실종사고현장 방문(임진강)
9. 9	그린코리아 2009 개회식(롯데호텔)
	디지털 국토엑스포 개막식(KINTEX)
9. 10	SBL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공장 기공식(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전현장 참관, 태화강 현장 방문(울산)
	국가생산성혁신대회(COEX)
9. 11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제주, 컨벤션센터)
9.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축하리셉션(세종문화회관)
9. 16	APEC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회식(메리어트호텔)
	WCC 제10차 총회 한국유치 축하 행사(잠실롯데호텔)
9. 17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서초구)
	베트남 국가부주석 접견(정부서울청사)
9. 18	전경련 회장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9. 21	소록도 봉사활동(고흥)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여수전남경기장)
9. 23	사회복지시설 방문(관악구, 동명노인복지센터)
9. 24	국군장병 위문(고성, 육군22사단)
9. 25	교정시설 방문(안양교도소)
9. 28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송파구, 가락시장)

한승수 국무총리 해외 순방

날짜	행 사 명 (국가)
2008. 5.11 ~ 20	중앙아시아 순방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아제르바이잔)
2008. 5. 23	지진피해 희생자 조문(중국)
2008. 9. 6 ~ 7	장애인올림픽 대표단 격려 및 개막식 참석(중국)
2008. 9. 22 ~ 27	제3회 UN 총회 참석(미국)
2008. 11. 27 ~ 12. 3	중동 2개국 및 터키 순방(카타르 · 쿠웨이트 · 터키)
2008. 1. 28 ~ 2. 1	다보스포럼 참석(스위스)
2009. 3. 15 ~ 20	세계 물포럼 참석 및 요르단 순방(터키 · 요르단)
2009. 4. 18 ~ 24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석 및 유럽 3개국 순방(독일 · 체코 · 슬로바키아 · 네덜란드)
2009. 6. 12 ~ 13	국제금융연합회(IIF) 총회 참석 및 중국 순방(중국)
2009. 6. 20 ~ 27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및 UAE 순방(프랑스 · UAE)

2009

날짜	행 사 명 (장소)
9. 29	제39대 한승수 국무총리 이임식(정부서울청사)
	제40대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식(정부서울청사)
	국립묘지, 스코필드박사 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9. 30	제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COEX)
	중소기업체 방문(구로구,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0. 1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접견(정부서울청사)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방문(종로구, 보건복지부)
	추석 도로교통상황 점검(도로공사상황실 · 고속도로순찰대)
10. 3	사고현장 방문(용산구)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추석연휴 비상근무 현장방문(종로소방서)
10. 5	대법원장(이용훈) 예방(서초구)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예방(종로구)
10. 6	김영삼 前 대통령 상도동 사저 예방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사저 예방
10. 7	조계종 총무원장(지관스님) 예방(종로구, 조계사)
	정진석 추기경 예방(명동성당)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엄신형 목사) 예방(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김삼환 목사) 예방(종로구)
10. 9	제563돌 한글날 경축식(세종문화회관)
	스위스 연방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총리공관)
10. 13	세계지식포럼 환영만찬(워커힐호텔)
	특임장관실 개청 행사(정부서울청사)
10. 14	아시아 · 태평양 소매업자대회 개회식(COEX)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강남구, 대한건설회관)
10. 15	코스타리카 국회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0. 17	김만덕 나눔 쌀 만섬쌓기 기념행사(광화문광장)
10. 19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환영리셉션(그랜드인터콘호텔)
10. 20	저탄소 녹색성장박람회 개막식(COEX)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대전, 월드컵경기장)
10. 21	美 국방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녹색구매세계대회 환영오찬(수원, 라마다호텔)
10. 22	말레이시아 국방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이임 주한콜롬비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0. 23	UN 사무부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0. 26	뉴질랜드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2010

날짜	행사명(장소)
1. 1	국립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1. 6	성장 동력 분야 수출기업 방문(인천, 남동공단)
1. 7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63시티)
	건설인 신년인사회(롯데호텔)
1. 8	용산사고 사망자 조문(용산구, 순천향병원)
1. 11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정부서울청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1. 13	에스토니아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 16	대전 · 충남 지역 과학 · 상공인 만찬간담회 (대전, 유성관광호텔)
1. 17	대전 · 충남 지역 여성단체 조찬간담회(대전, 유성관광호텔)
	대전 · 충남 지역 기자 오찬간담회(대전, 소도한정식)
1. 18	코스타리카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 19	엘살바도르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 20	4대강 방문(대구, 달성보)
	구미공단 생산현장 방문(구미, 도레이새한)
	혁신도시 현장 방문(김천)
	대구 · 경북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대구)
1. 21	CERN(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파라과이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 22	이임 주한베트남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 23	세종시 주민 독일시찰단 간담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5	구제역 방역대책 현장방문(포천)
1. 26	광주과학기술원 방문(광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4대강 공사현장 방문(나주, 죽산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간담회(총리공관)
1. 2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회식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
2. 1	이임 주한중국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2. 8	故 이영덕 前 국무총리 조문 및 훈장추서(신촌세브란스병원)
2. 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서울대)
2. 10	팔레스타인 수반 환영만찬(총리공관)
2. 11	세종시 관련 기자간담회(정부서울청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환영오찬(총리공관)
	정부업무평가위원 만찬간담회(총리공관)
	일본 외무대신 접견(정부서울청사)
2. 12	설 연휴 종합교통대책 점검 및 현장방문 (서울역 · 국가교통정보센터)
2. 16	국격 제고 민간자문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2. 18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오찬간담회(인터콘티넨탈호텔)
	리투아니아 국방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2. 22	총영사회의 오찬토론회(정부서울청사)
	규제개혁위원 만찬간담회(총리공관)
2. 23	글로벌코리아 2010 환영만찬(신라호텔)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기공식(하동)
2. 24	UAE 총참모장 접견(정부서울청사)
	몽골 국회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2. 25	세종시 민관합동위원 오찬(총리공관)
3. 2	가나 부통령 회담(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총리공관)
3. 4	호주 상원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3. 9	미래한국해양 · 수산선진화 포럼 창립총회(프라자호텔)
3. 11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회식(인터콘티넨탈호텔)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조선호텔)
	세종시 관련 전문가 오찬간담회(총리공관)
3. 14	故 법정스님 조문(성북구, 길상사)
3. 17	상공의 날 기념식(COEX)
3. 18	공교육현장 방문(익산, 남성고)
	전북혁신도시현장 방문(완주)
	새만금 현장 방문(군산)
3. 19	백제문화단지 방문(부여)
3. 22	세계물의 날 기념식(서울숲)
3. 24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신라호텔)
	Diplomacy 주최 주한외교단 조찬특강(롯데호텔)
	식품안전정책위 민간위원 오찬(총리공관)
3. 25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준공식
	헬스케어타운 · 제주혁신도시 · 영어교육도시 현장 방문(제주)
3. 26	안중근의사 순국100주년 추념식(서울광장)
	인니 경제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3. 28	해군 초계함 침몰사고 현장방문(백령도)
4. 1	핀란드 국회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4. 3	故 한주호 준위(해군 천안함실종자구출 UDT요원) 영결식 (국군수도병원)
	낙동강 4대강 현장방문(창녕, 함안보)
	양산 물금취수장 방문
4. 5	카자흐스탄 여당 제1부총재 접견(정부서울청사)
	포르투갈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날짜	행사명(장소)
10. 26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안중근의사기념관)
	중소기업단체장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0. 27	벤처코리아 개막식(COEX)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인천, 송도컨벤시아)
10. 28	한국정책금융공사 창립기념행사(영등포구)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구미)
	낙동강 선도 지구 현장 방문(안동)
	OECD사무총장 환영오찬(총리공관)
10. 29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러시아 감사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0. 30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식(공주)
	4대강 현장 방문(금강)
11. 2	이임 주한알제리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1. 3	아시아농식품 기술협력 이니셔티브 발족식(롯데호텔)
11. 4	세종시 관련 발표(정부서울청사)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1. 5	슈뢰더 前 독일 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신라호텔)
11. 10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회식(COEX)
11. 12	김영삼 前 대통령 오찬(신라호텔)
11. 15	실탄사격장 화재 사고현장 방문(부산)
11. 17	제7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백범기념관)
	전경련 회장단 만찬(롯데호텔)
11. 18	OLC경제언론인회 조찬토론회(프레스센터)
	한국경제학회 회장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제1회 중소기업기술인재대전 개막식(AT센터)
11. 19	새만금 환경 국제컨퍼런스 개회식(르네상스호텔)
11. 20	카타르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11. 24	한–아프리카포럼 개회식(롯데호텔)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생명 나눔의 밤(컨벤션 헤리츠홀)
11. 25	국가품질경영대회(COEX)
11. 26	전직 국무총리 만찬(총리공관)
	카메룬 경제협력 · 투자유치사절단 접견(정부서울청사)
11. 27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4대강 살리기 사업(한강–이포보) 기공식(여주)
11. 28	민관합동위원회 세종시 현장방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오송생명과학단지)
11. 30	여수세계박람회 기공식
12. 1	국민원로회의위원 정치 · 사회 관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2. 2	국민원로회의위원 외교안보 · 통일 · 교육 · 과학 관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아르메니아 국회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2. 3	이임 주한아르헨티나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막식(COEX)
	한–EU 산업 협력의 날 행사(롯데호텔)
	대한민국 로봇대상 시상식(63시티)
12. 4	국민원로회의위원 경제 · 문화 · 체육 관련 오찬간담회 (총리공관)
12. 7	캐나다 총리 면담(국회)
12. 8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만찬(롯데호텔)
	한국선진화 포럼 국제세미나 개회식(인터콘티넨탈호텔)
12. 10	이임 주한남아공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2. 11	연말 국군장병 위문(양주, 육군25사단)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국립서울현충원)
12. 12	대전지역 종교계인사 및 지역원로 만찬(대전, 우송대)
12. 14	제5차 세종시 민 · 관 합동위원회 오찬(총리공관)
12. 15	호주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12. 16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현장방문(종로구)
12. 17	혁신도시 자치단체장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시진핑 중국부주석 환영만찬(총리공관)
12. 18	과학기술인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2. 19	세종시 수정안 관련 이장단 간담회(연기, 남면사무소)
	과학기술인 만찬간담회(대전, KAIST)
	재래시장 방문(대구, 대평리시장)
12. 20	사회복지시설 방문(대전, 천양원)
12. 23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전달(중구)
12. 28	김종필 前 총리 신당동 사저 예방
	이임 주한에콰도르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2. 29	여성친화 사회문화조성 기여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날짜	행 사 명 (장소)
4. 12	스코필드박사 서거40주기 추모참배(국립서울현충원)
4. 1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백범기념관)
4. 14	구제역 방역현장 방문(강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선포식(프레스센터)
	오만 경제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4. 15	사할린 주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COEX)
4. 16	국제백신연구소 이사진 만찬(총리공관)
4. 20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시티)
	한경TV.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개막식(하얏트호텔)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총독 접견(정부서울청사)
4. 21	대전 원자력연구원 방문
4. 22	연합뉴스. 아–태 통신사정상회의 개회식(롯데호텔)
	카자흐스탄 대통령 환영오찬(총리공관)
4. 25	천안함 사고관련 대국민 담화발표(정부서울청사)
	천안함 희생 장병 합동분향소 조문(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4. 26	국정평가와 국정운영방향 심포지엄 개회식(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요녕성 당서기 접견(정부서울청사)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4. 27	아제르바이잔 여당 부대표 접견(정부서울청사)
4. 28	칠레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개회식(서초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의사 참배(예산)
	한–네덜란드 새만금 MOU 체결식(롯데호텔)
4. 30	카타르 도시계획부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5. 3	스웨덴 웁살라대학 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5. 6	故 금양호 선원 수협장 합동영결식(인천, 신세계장례식장)
5. 10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연차총회 개회식(그랜드힐튼호텔)
5. 12	서울세계여성법관회의 개회식(인터컨티넨탈호텔)
	UAE 경제부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5. 13	해군교육사령부 방문 및 故 한주호준위 유가족 · 장병가족 면담(진해)
	중중소기업 애로해소대책회의 및 중소기업 방문(창원)
5. 14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현장방문(COEX)
	해외봉사단 발단식 오찬(성남, KOICA)
5. 17	UN ESCAP총회 개회식(인천)
	키리바시 대통령 면담(인천)
5. 18	세종시 입주예정기업 대표 접견(정부서울청사)

날짜	행 사 명 (장소)
5. 18	5. 18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5.18 국립민주묘지)
5. 19	6.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비누아투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5. 20	모범 다문화가족 오찬간담회(내외분)(총리공관)
5. 24	짐바브웨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세계사이언스파크총회 개회식(대전, 컨벤션센터)
	천안함 46용사(한주호 준위) 묘역 참배(국립대전현충원)
	녹색성장체험관 재개관 개막식(종로구, KT빌딩)
	한–짐바브웨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5. 25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환영리셉션 (인터컨티넨탈호텔)
5. 26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회식(롯데호텔)
5. 27	한–UAE Biz Council 출범행사(잠실롯데호텔)
	UAE 왕세자 면담(정부서울청사)
5. 28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정책세미나 개회식(대한상공회의소)
5. 29	중국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5. 31	한국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오찬(롯데호텔)
6. 4	수도권매립지현장 방문, 환경의 날 기념식(인천)
	故 유창순 前 국무총리 조문(서울아산병원)
6. 7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대책회의(용인)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 방문(용인)
6. 8	민주평통 유럽–아시아지역 자문위원 오찬(워커힐호텔)
	걸프협력이사회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6. 10	나로호 위성 2차 발사 참관(고흥)
6. 11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개회식(대한상공회의소)
6. 16	세계한인회장대회 환영만찬(워커힐호텔)
6. 21	이임 주한우루과이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6. 22	부산 신항 1단계 준공 · 개장식(부산)
6. 23	이임 주한덴마크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영국 글로스터공작 접견(정부서울청사)
	국격제고 관련 청년층과의 오찬간담회(총리공관)
	UN참전용사 재방한 만찬(내외분)(잠실롯데호텔)
6. 24	대한민국 창업대전 개막식(COEX)
6. 25	6.25전쟁 60주년 참전유공자 위로연(신라호텔)
	한국경제신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만찬(인천, 인천대)
6. 28	故 채문식 前 국회의장 조문(서울대병원)
6. 29	제2연평해전 기념식, '아! 6.25'특별전 참관(전쟁기념관)
	한–세르비아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날짜	행 사 명 (장소)
6. 29	세르비아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6. 30	국회의 세종시 법안처리 관련 담화문 발표(정부서울청사)
7. 1	UN 기념공원 참배(부산)
	통합창원시 출범식 및 축하오찬(창원)
7. 5	뉴질랜드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7. 6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출범식(조선호텔)
7. 7	경부고속도로 개통40주년 및 도로의 날 기념식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
	세계물위원회 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7. 14	이임 주한일본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7. 16	해바라기아동센터 방문(마포구)
7. 17	제헌절 경축식(국회)
7. 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 오찬(총리공관)
7. 20	중소기업 소통 만찬간담회(영등포구)
	국가산업단지 및 우수중소기업 현장 방문(안산)
7. 22	청년취업 2만명 프로젝트달성 기념식(중구, 기업은행)
7. 27	세계 한인차세대지도자 접견(총리공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문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7. 28	이임 주한수단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말레이시아 교육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7. 29	사의표명 기자회견(정부서울청사)
8. 4	한국전력거래소 방문(영등포구)
	필리핀 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8. 6	희망근로 현장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춘천)
8. 10	사교육비경감민관협의회 만찬(총리공관)
8. 11	제40대 정운찬 국무총리 이임식(정부서울청사)

김황식 국무총리

2010.10.2 ~ 현재

2010

날짜	행사명(장소)
10. 1	제41대 김황식 국무총리 취임식(정부서울청사)
10. 2	국립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10. 3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10. 4	대법원장(이용훈) 예방(서초구)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예방(종로구)
10. 5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워커힐호텔)
	김영삼 前 대통령 상도동 사저 예방
	이희호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영부인 동교동 사저 예방
10. 8	태국 국회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한-독 동문네트워크 정기학술대회 만찬(힐튼호텔)
10. 9	한글날 경축식(세종문화회관)
10. 11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 개회식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대전)
	IPCC 총회 환영만찬(부산, 조선호텔)
10. 12	세계지식포럼 환영만찬(워커힐호텔)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인천)
	SMART KOREA 개회식(KINTEX)
10. 13	故 황장엽 前 노동당비서 조문(서울아산병원)
	故 황인성 前 국무총리 조문(강남구, 삼성의료원)
	스리랑카 경제개발부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강남구, 대한건설회관)
10. 14	세계프랜차이즈대회 개막식(메리어트호텔)
	세계화상 한국논단 개막식(하얏트호텔)
10. 15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사저 예방
10. 17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용산구, 효창운동장)
10. 19	벤처코리아 2010 개회식(한양대)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및 환영만찬(대구, EXCO)
10. 20	아-태지역 군고위급회의 대표단 만찬(내외분)(총리공관)
10. 21	청산리 독립전쟁 승전 90주년 기념식(전쟁기념관)
10. 22	정진석 추기경 예방(명동성당)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방(종로구)
10. 24	5.18 국립민주묘지 참배(광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참배(광주, 광주제일고)
	영산강 4대강 현장방문(광주, 승촌보)
10. 26	UN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개회식 및 환영오찬(인천)
10. 27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만찬(KINTEX)
	글로벌 인재포럼 개회식(워커힐호텔)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종로구, 조계사)
10. 28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식(부산역)
	울산역 개통식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기공식(부산)
	KTX 완전개통 축하 오찬(신경주역)
10. 29	이라크 투자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1. 4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신라호텔)
	케냐 부통령 환영오찬(영등포구, 백원)
11. 6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걷기대회 개회식 (마포구, 월드컵공원)
11. 8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대표선수단 결단식(태릉선수촌)
	주한미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1. 10	UN 사무총장 오찬(내외분)(총리공관)
11. 11	독일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베트남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11. 12	서울사회공헌포럼 개회식 및 조찬(조선호텔)
11. 15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노인복지시설(혜명양로원) 및 독거노인가구 방문(금천구)
11. 17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1. 18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준공식(광양)
	여수세계박람회 현장방문
11. 19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직장문화 확산협약행사 개회식(프레스센터)
11. 23	이임 주한이탈리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1. 25	우루과이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착공식(종로구)
	국무위원 연평도 전사자 조문(국군수도병원)
11. 26	전주 중앙버드나무상가, 전주 공동체 나눔 환경 방문
	새만금 현장 방문(군산)
11. 27	연평도 전투전사자 합동영결식 및 연평도 전투부상자 위문(국군수도병원)
	연평도 민간인 사망자 조문(인천, 길병원)
	연평도 피해주민 임시거처 방문(인천)
11. 29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식 (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
12. 6	연평도 후속대책 발표(정부서울청사)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글로벌리더 접견(정부서울청사)
12. 7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강남구, 대한건설회관)
12. 8	연말 국군장병 위문(화천, 육군15사단)
12. 9	국정과제공동세미나 개회식(중구, 은행회관)
	한-EU 산업협력의 날 행사(신라호텔)
12. 10	무료법률상담 현장방문(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2. 15	아제르바이잔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 설립 기념행사(롯데호텔)
	민방위 특별대피훈련 참관(서울타워)
12. 16	여성단체장 및 가족친화기업대표 오찬간담회(내외분) (총리공관)
	이임 주한이란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2. 17	일본 오사카출신 민주당 의원단 접견(정부서울청사)
	〈실크로드와 둔황특별전〉 테이프커팅 및 참관(국립중앙박물관)
12. 20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식(청원)
12. 22	저소득층 지역현장 방문(노원구)
12. 23	구제역 방역현장 방문(김포)
12. 26	국무위원 만찬간담회(총리공관)
12. 27	구제역 종합상황실 방문(과천, 농림수산식품부)
12. 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정부서울청사)

2011

날짜	행사명(장소)
1. 1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1. 12	KB Good Job 출범식(대한상공회의소)
1. 13	구제역 · AI방역 현장방문(천안)
	파독 광부 · 간호사 오찬간담회(내외분)(총리공관)
1. 17	청년벤처CEO 오찬간담회(성남, 경원대)
	미래신성장기업 현장방문(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소)
	한국전력거래소 방문(영등포구)
1. 18	전직 국무총리 만찬(총리공관)
1. 19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 20	교정시설 방문(화성, 직업훈련교도소)
1. 24	IT산업인 신년인사회(인터컨티넨탈호텔)
	산업 국가기반시설 현장 방문(인천, 남동공단)
1. 27	故 안춘생 애국지사 조문(강동구, 서울보훈병원)
1. 31	한국공학한림원 신년인사회(신라호텔)

날짜	행사명(장소)
1. 31	공정사회 관련 전문가 만찬간담회(총리공관)
2. 1	귀성현장 교통상황 점검(용산역)
2. 6	설 연휴 근무기관 방문 (고속터미널역 · 농림수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 10	걸프협력이사회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2. 17	대한노인회 신년인사회(백범기념관)
2. 18	외신기자단 초청만찬 환영인사, 평창평가단 공식 환영만찬(평창)
2. 19	대설 피해 복구현장 방문(동해 · 삼척)
2. 21	재외공관장 오찬토론회(정부서울청사)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2. 23	글로벌코리아 2011 환영만찬(롯데호텔)
3. 2	FTA 박람회 개막식(COEX)
3. 3	세계경제와 미래포럼 개회식(신라호텔)
	광복회장 故 김영일 애국지사 조문(서울삼성병원)
3. 9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개막식(신라호텔)
3. 10	구제역 가축 매몰지역 침출수 관련 현장점검(남양주)
	KDI 개원 40주년 기념식(동대문구, KDI)
	서부호주 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전경련 회장단 만찬(하얏트호텔)
3. 11	다문화 가족 출신 공직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3. 15	3.15 의거 기념식(마산)
	낙동강 4대강 현장방문(창녕, 함안보)
	반구대 암각화 · 석유비축기지 현장방문(울산)
3. 16	상공의 날 기념식(COEX)
3. 17	공정사회 구현 관련 공동학술회의 개회식(프레스센터)
3. 21	총영사 오찬간담회(정부서울청사)
3. 22	전국광역시장 오찬간담회(정부서울청사)
	세계 물의 날 기념식(COEX)
3. 23	국민소통자문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3. 24	한–몽골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몽골 총리 환영만찬(내외분)(총리공관)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신라호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서울청사)
3. 30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관련 정부입장 발표(정부서울청사)
3. 31	세종시지원위원회 오찬(정부서울청사)
4. 1	금강 희망의 숲 식목행사(공주)

날짜	행사명(장소)
4. 3	제주4. 3사건희생자 위령제(제주, 평화공원)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현장 방문(제주)
	4. 3 관계자 오찬(제주)
4. 4	이임 주한캐나다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4. 6	말레이시아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4. 18	119 구조대 격려오찬(총리공관)
4. 19	4.19 혁명 기념식(강북구, 4.19 국립민주묘지)
4. 21	제1회 여성이 주도하는 녹색생활실천 선포식(청계광장)
	룩셈부르크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4. 25	호주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국책연구원장 만찬간담회(총리공관)
4. 26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이임 주한UAE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4. 27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대한상공회의소)
	공정사회학술행사 참여학회 간부 만찬간담회(총리공관)
4. 28	해군2함대사령부 방문(평택)
4. 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2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발표(정부서울청사)
5. 3	아동복지시설 방문(강서구, 지온보육원)
5. 4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울진원전 방재훈련 참관(울진)
	산업시설 방문(울진, 대후기업)
5. 6	외국인 · 다문화마을 현장방문(안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안성)
5. 9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회장단 접견(정부서울청사)
	몽골인민당 대표단 접견(정부서울청사)
5. 11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5. 12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및 GS 칼텍스 중질유 분해시설 준공식 참석(여수)
5. 13	기부 · 나눔 모범실천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18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5.18 국립민주묘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송파구)
	브라질 하원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5. 19	코스타리카 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5. 20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5. 28	제주포럼 개회식(제주, 해비치호텔)
5. 30	연평도 · 백령도 방문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만찬간담회(COEX)
5. 31	청소년지도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날짜	행사명(장소)
6. 1	위원회 민간위원장 만찬간담회(총리공관)
6. 6	서울보훈병원 위문(강동구)
6. 7	글로벌R&D포럼 주요참석자 만찬(총리공관)
6. 9	한–라트비아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총리공관)
	故 김준엽 애국지사 조문(고대안암병원)
6. 10	6.10 민주항쟁 24주년 기념식(프레스센터)
6. 13	T–50 인도네시아 수출기념 행사(메리어트호텔)
6. 14	세계전략포럼 개회식(신라호텔)
6. 15	중앙부처 감사관 오찬간담회(총리공관)
6. 20	검–경 수사업무 관련 합의결과 발표(정부서울청사)
6. 21	주한 외국투자기업인 오찬간담회(총리공관)
	OECD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6. 23	캠프 님블 주한미군기지 방문(동두천)
6. 24	중국 전인대 외사위 주임 접견(정부서울청사)
6. 25	6.25 전쟁 61주년 기념식(전쟁기념관)
6. 27	한–영 미래포럼 참석자 접견(정부서울청사)
6. 28	산업현장 방문(포항, 지능로봇연구소)
6. 29	제2연평해전 기념식(평택)
	금강 4대강 공사현장 방문(세종시, 금남보)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
6.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은평구)
	한–미 우호의 밤 리셉션(하얏트호텔)
	UN 세계검찰총장회의 공식만찬(신라호텔)
7. 6	중소기업 · 소상공인 현장 만찬간담회(중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행사 참석(평창)
	WIPO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7. 7	보건 · 의료 분야 나눔 · 봉사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지식재산전략 국제세미나 개회식(인터컨티넨탈호텔)
7. 8	광야홈리스복지센터 · 쪽방촌 현장방문(영등포구)
7. 13	특성화 고교생 채용박람회 개막식(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
	전국재해구호협회 창립50주년 기념식(프레스센터)
7. 14	폭력 ·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우수학교 방문 (중구, 청구초등학교)
7. 18	세계물포럼 유치 · 사단 접견(정부서울청사)
7. 19	GE그룹 부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7. 20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7. 22	당진항 준공식(평택)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현장방문(태안)

날짜	행사명(장소)
7. 25	희망디딤돌,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 방문(부산)
7. 27	목동 빗물펌프장 방문(양천구)
7. 28	호우피해현장 방문(서초구, 우면산)
8. 10	제1회 UNAI 포럼 개회식(신라호텔)
8. 15	호우피해현장 방문(정읍)
8. 17	장애인고용모범업체 관계자 오찬(총리공관)
8. 19	공군작전사령부 방문 및 오찬(평택)
8. 25	국가브랜드컨벤션 개막식(COEX)
8. 26	중앙부처 대변인 및 온라인 대변인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 방문(강남구)
8. 31	공정사회 국민토론회 개회식(중구, 포스트타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개막식(COEX)
	전통시장 방문(양천구, 경창시장)
	이임 주한스웨덴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9. 1	스리랑카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9. 2	일본 감사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9. 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인증서 전달식(광주)
	호우피해현장 점검(가거도)
9. 8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서울대병원)
	교육 · 문화 관련 경제계인사 등 오찬간담회(총리공관)
9. 9	노인복지시설 방문(은평구, 성우회)
9. 11	아동복지시설 방문(동작구, 성로원)
9. 14	이임주한미국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9. 15	미 오레곤 주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그린코리아 2011개회식(대한상공회의소)
9. 16	한국조폐공사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대전,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서초구)
9. 20	한 · 중 · 일 미래 성장전략 심포지엄 개회식(프라자호텔)
	쿠웨이트 차관단 만찬(총리공관)
9. 23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막식(합천)
10. 3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10. 4	희망의 나눔 걷기행사(청계광장)
10. 5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COEX)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개막식(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
	한–카리브포럼 참석자 오찬(조선호텔)
	아데코 컨퍼런스 만찬(힐튼호텔)
10. 6	KB 굿잡 중견 ·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 (인천, 송도컨벤시아)

날짜	행사명(장소)
10. 6	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인천)
	4대강 개방행사(부여, 백제보)
	백제문화단지 방문(부여)
10. 7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잠실롯데호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 접견(총리공관)
10. 9	한글날 경축식(세종문화회관)
	UN WTO총회 개회식(경주)
10. 10	일본 중의원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10. 11	세계지식포럼 환영만찬(워커힐호텔)
10. 12	EU 통상담당집행위원 접견(정부서울청사)
10. 14	럼스펠드 前 미 국방 장관 서훈 및 접견(정부서울청사)
10. 16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용산구, 효창운동장)
10. 17	UN CCD총회 고위급회의 개회식(창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접견(정부서울청사)
	UN 총회의장 면담(창원)
10. 18	탕자쉬안 前 중국 국무위원 접견(정부서울청사)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개막식 (성남, 서울공항)
	여자 럭비 국가대표팀 오찬(총리공관)
10. 21	한–프랑스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프랑스 총리 환영 오찬(총리공관)
10. 24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정부서울청사)
	UN GGIM 창립총회 개회식(COEX)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상황 점검(과천, 농림수산식품부)
10. 25	EADS 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학력차별극복 CEO 등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0. 26	중국 부총리(리커창) 접견(정부서울청사)
	중국 부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디지털 국토엑스포 개막식(KINTEX)
	군남홍수조절지 준공식(연천)
10. 27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공식(청원)
	대구 ·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공식(대구)
10. 28	망우본동 경로당 현장방문(중랑구)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단 접견(총리공관)
10. 31	청년창업사관학교 방문(안산)
11. 2	SBS 미래한국리포트발표회(신라호텔)
	글로벌 인재포럼 개회식(워커힐호텔)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착공식(나주)

날짜	행사명(장소)
11. 2	영산강 죽산보 · 승촌보 방문(나주)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및 환영만찬(부산)
11. 3	구제역 방역관계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일본 국회의원 방한단 접견(정부서울청사)
11. 9	베트남 국가주석 면담(정부서울청사)
11. 10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회식(인천)
	경인 아라뱃길 현장방문(인천)
11. 11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영등포구, 한국전력거래소)
11. 14	아시아미래포럼 환영만찬(롯데호텔)
11. 15	민방위훈련 참관(정부서울청사)
	국가녹색기술대상 시상식(신라호텔)
	체코 상원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11. 16	대한민국 명장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1. 17	이임 주한인도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규제개혁 민간위원 만찬(총리공관)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롯데호텔)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1. 21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송파구, 올림픽공원)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1주기 추모식(국립대전현충원)
11. 24	한국선진화포럼 개회식(롯데호텔)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성남, 가천대)
11. 25	이임 주한레바논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11. 28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롯데호텔)
11. 30	범경제계 절전 실천 사회적 협약식(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 상장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COEX)
12. 1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막식(COEX)
	세계개발원조 총회 폐회식(부산, BEXCO)
12. 4	순직 소방관 조문(평택)
12. 5	경찰기동본부 전 · 의경 격려방문(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2. 6	신임 주한미국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한미 FTA 홍보 관련 주요 업종별 대표 오찬간담회 (총리공관)
	정부업무평가민간위원 만찬(총리공관)
12. 7	연말 국군장병 위문(김포, 해병2사단)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합동봉안식(국립서울현충원)
12. 9	보라매 안전체험관 현장 방문(동작구)
12. 13	국가품질경영대회(COEX)
	자활사업현장 방문(관악구, 나눔공동체)

날짜	행사명(장소)
12. 13	중국어선 단속중 사망해양경찰관 조문 및 부상경찰관 위문(인하대병원)
12. 14	故 박태준 前 국무총리 조문(신촌 세브란스병원)
	한미 FTA 홍보 관련 중소기업 업종대표 오찬간담회(총리공관)
	LA시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2. 20	우크라이나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12. 21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만찬(총리공관)

2012

날짜	행사명(장소)
1. 15	역동적 기업현장 방문(금천구, 전일정공)
1. 19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 및 오찬(중랑구, 서울동부Wee센터)
	학교폭력근절대책 관련 현장 방문 (중구,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 20	철도안전관리 현장 방문(구로구, 구로차량사업소)
1. 31	지식재산 강국원년 선포식(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Korea Society 창립 55주년 기념만찬(롯데호텔)
2. 3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식(울산)
	울산지역상공인 오찬간담회(울산)
	경제현장 방문(울산, SK에너지 · 덕산하이메탈)
2. 6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정부서울청사)
2. 17	보육현장 방문 및 간담회(용인, 삼성열린생태어린이집)
2. 20	재외공관장 오찬간담회(정부서울청사)
2. 21	세종시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만찬(총리공관)
2. 22	글로벌코리아 환영만찬(롯데호텔)
2. 23	아르매니아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2. 27	MBN 포럼 VIP 라운드테이블(신라호텔)
2. 29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별 오찬간담회(총리공관)
3.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천)
3. 6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 개회식(신라호텔)
3. 15	3.15 의거 기념식(창원, 3.15아트센터)
3. 16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장 점검(COEX)
	여수세계박람회 후원기업CEO 및 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날짜	행사명(장소)
3. 19	농어촌현장방문 농어촌 규제개선회의(파주)
3. 20	건강한 사회 만들기 현장보고회(중구, 도로교통공단)
3. 21	상공의 날 기념식(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
3. 22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신라호텔)
	세계 물의 날 기념식(KINTEX)
3. 23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 개회식(인터컨티넨탈호텔)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전시관 및 특화시설 점검(여수)
	서울핵안보 심포지엄 만찬(그랜드힐튼호텔)
3. 26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식(국립대전현충원)
	영국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브라질 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노르웨이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3. 27	체코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3. 28	알제리 상원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이스라엘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파키스탄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우크라이나 대통령 환영오찬(총리공관)
3. 29	UN 인권이사회방문 국회대표단 접견(정부서울청사)
	베트남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3. 30	농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민간위원 오찬(총리공관)
4. 2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만찬(총리공관)
4. 3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제주, 평화공원)
4. 4	중국 심계장 접견(정부서울청사)
4. 5	총리실 식목행사(김포, 승마산)
4. 6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프레스센터)
4. 9	112신고센터 방문(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이임 주한태국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4. 13	임시정부수립 기념식(백범기념관)
	건강한 사회 만들기 현장간담회(강남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4. 15	한 · 중 · 일 30인회 환영만찬(신라호텔)
4. 16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장 방문(안성, 한겨레 중 · 고등학교)
4. 17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발표(정부서울청사)
4. 19	4.19 혁명 기념식(4.19 국립민주묘지)
4. 20	건강한 사회 만들기 현장보고회(대전, 솔로몬 로파크)
4. 21	주5일 수업제 관련 학교현장 방문(강남구, 수서초등학교)
4. 23	국가개발미래비전 공유사업 참가 중남미 고위급인사 환영오찬(총리공관)

날짜	행사명(장소)
4. 23	우드로윌슨 센터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4. 24	국립 외교원 개원식(서초구)
4. 25	전역간부 취업박람회 개막식(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
	공공기관 CEO 분야별 오찬간담회(총리공관)
4. 26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대한상공회의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개회식(창원)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개통식(순천)
4. 29	Tour de Korea 대회 폐막행사(여주, 이포보)
	한강 문화관 개관행사(여주, 강천보)
4. 30	한국 세무사회 창립50주년 기념식(COEX)
	부처 정책알리미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1	바레인 왕세자 면담(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총리공관)
5. 2	동계올림픽 비인기종목 국가대표팀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4	저탄소 녹색건축 · 도시건설을 위한 Mayor's Forum 개회식(천안)
5. 7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공생발전 한 · 중 · 일 포럼 개회식(프라자호텔)
	공공기관CEO 분야별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9	세계여성경제인대회 개막식(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 점검(여수)
5. 10	사우디 주택부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덴마크 왕세자 면담(정부서울청사) 및 환영만찬(내외분)(총리공관)
5. 11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가구 현장방문(종로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대전, 한밭종합운동장)
5. 14	키리바시 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5. 15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제2차 한–덴마크 녹색동맹회의 개회식(신라호텔)
	세종대왕 탄신 615돌 숭모제전(여주)
5. 16	불법사금융 척결관련 현장방문(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하계 전력수급대책 발표(정부서울청사)
	EU 집행위 부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정책현장 감동인물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18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5.18 국립민주묘지)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50주년 기념리셉션(영등포구)
5. 21	모범가족 격려 오찬간담회(내외분)(총리공관)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개막식(신라호텔)
	슈뢰더 前 독일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날짜	행사명(장소)
5. 22	APEC 교육장관회의 공식오찬(경주, 힐튼호텔)
5. 24	공공기관 CEO 분야별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재일 민단(재일본 대한민군 민단) 간부 접견(정부서울청사)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오만대표단 접견(정부서울청사)
5. 25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식(정부서울청사)
5. 29	중동지역 해외취업 박람회 및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COEX)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현장보고회(서초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후원사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30	모범교사 오찬간담회(총리공관)
5. 31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개막식(여수, 웅천친수공원)
	여수세계박람회 참관
6. 1	제주포럼 개회식(제주, 해비치호텔)
	키르기즈 총리 면담(제주, 해비치호텔)
6. 4	베르텔스만재단 부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리비아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6. 5	서울보훈병원 위문(강동구)
6. 7	하계절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출범식(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
	한국전력거래소 방문(영등포구)
	싱가포르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6. 8	서울남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식(관악구)
6. 11	말레이시아 부총리 접견(정부서울청사)
6. 12	세계전략포럼 개회식(신라호텔)
6. 14	페루 헬기사고 사망자 조문(중구, 합동분향소)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군산)
	농업용지 방수제 공사현장 방문(군산)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6. 18	도솔산지구 전투전적지 방문(양구)
6. 19	한국사회 공정성 학술세미나 개회식(프레스센터)
	네덜란드 왕세자 면담(정부서울청사)
	길림성 당서기 접견(정부서울청사)
6. 20	6.25 납북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및 납북자가족 오찬(총리공관)
	민화협 해외본부 전체회의 개막식 및 환영만찬(로얄호텔)
	수해복구 현장 방문(서초구, 우면산)
6. 21	귀농 · 귀촌 성공사례 현장 방문(함평)
	가뭄 현장 방문(홍성)

날짜	행사명(장소)
6. 21	한국경제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만찬(롯데호텔)
6. 22	주한EU대사단 오찬(총리공관)
6. 25	6.25 전쟁기념식(전쟁기념관)
	6.25 해외참전용사 후손 유학생 오찬(총리공관)
	민주당 전남북 및 충남북지역 국회의원 접견(정부서울청사)
6. 26	가뭄 현장 방문(화성)
	에너지위너상 시상식 및 고효율 에너지제품 전시회 개막식(국립과천과학관)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송파구, 올림픽공원)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워커힐호텔)
6. 27	아시아법제포럼 개회식(KINTEX)
6. 28	주한걸프협력회의 대사단 오찬(총리공관)
6. 29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천안)
7. 2	세종시 출범식(세종시민체육관)
7. 3	여성주간 기념식(내외분)(국립중앙박물관)
	해양경찰훈련함 취역식(내외분)(인천해경서 함정부두)
7. 4	한–라오스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라오스 총리 환영만찬(총리공관)
7. 5	한–중앙아 협력포럼 대표단 오찬(총리공관)
	다산 정약용선생 탄신 250주년 기념식전(프레스센터)
	런던올림픽 국가대표팀 격려 방문(태릉선수촌)
7. 6	충주기업도시 준공식(충주)
7. 17	제헌절 경축식(국회)
7. 19	CHINA 포럼 2012 개막식(신라호텔)
7. 26	방학 중 방과 후 학교 및 급식관련 학교현장 방문(영등포구, 영문초)
	에너지낭비 현장 점검(중구)
8. 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현장점검(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가짜석유 단속관련 석유관리원 방문(성남)
8. 2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2 개막식(COEX)
	방학 중 아동 돌봄 현장 방문(성북구, 마가렛지역아동센터)
	하절기 서민대책집행현장 방문(종로구, 동대문 쪽방상담소)
8. 3	미얀마 외교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한국 잼버리 환영리셉션 및 개영식(고성)
8. 12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식(내외분)
	밀라노 세계박람회 정부대표 접견(여수)
	FAO 사무총장 접견(여수)

날짜	행사명(장소)
8. 13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정부서울청사)
8. 14	에너지기업CEO 안전결의대회(보령화력발전소)
8. 16	내수활성화 관련 오찬간담회(총리공관)
	한국기자협회 창립48주년 기념식(프레스센터)
8. 17	런던 장애인올림픽 대표 선수단 결단식(정부서울청사)
	통일생각 후원의 밤 행사(정부서울청사)
8. 21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공생발전관련 현장 방문(안산, (주)광명전기)
8. 22	을지연습 실제훈련장 참관(이수역)
8. 29	불법사금융 척결 관련 전통시장 방문(안양)
8. 30	한–아세안 특별 산림 장관회의 개회식(신라호텔)
	국가원자력연구개발 성과한마당 개막식(COEX)
	필리핀 외교 장관 접견(정부서울청사)
8. 31	태풍피해 현장 방문(해남 · 영암 · 나주 · 광주)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광주)
9. 3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선 현장 방문(금천구)
9. 4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9. 5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개막식(COEX)
	국가생산성대회(COEX)
9. 12	이러닝 코리아 개막식(COEX)
9. 13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접견(정부서울청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만찬간담회(총리공관)
9. 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오찬(총리공관)
	한–미 재계회의 참석자 만찬(총리공관)
9. 17	국민연금 지속발전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신라호텔)
	美 미시시피 주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9. 18	태풍 피해현장 방문(진주)
9. 19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동대문구)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정부서울청사)
	독거노인 사랑잇기 후원의밤 행사(총리공관)
9. 20	세계강포럼 고위급포럼 개회식(대구)
	전통시장 방문(대구, 서남신시장)
	4대강 대표문화관 개관식(대구, 강정 고령보)
9. 21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익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롯데호텔)
9. 24	한–중남미 경제협력비즈니스포럼 개회식(COEX)
	하절기 서민생활안정 공로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날짜	행 사 명 (장소)
9. 25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오찬간담회(총리공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CEO 만찬간담회(총리공관)
	美 네바다 주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9. 26	사회 안전저해 범죄근절 관련 전문가 오찬간담회(총리공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및 연구원장 만찬간담회(총리공관)
9. 27	환경미화원 현장 격려 방문(종로구)
9. 28	김순전 할머니 격려 방문(광진구)
	소년소녀가장 · 조손가정 방문(중랑구)
10. 3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10. 4	희망의 나눔 걷기 행사(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10. 5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COEX)
10. 11	스리랑카 KOICA 봉사단원 낙뢰사고 사망자 조문 (서울아산병원)
10. 12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COEX)
10. 14	손기정 기념관 개관식(중구, 손기정 체육공원)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용산구, 효창운동장)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영암)
10. 15	만학도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0. 16	GCF 국제포럼 개회식(인터컨티넨탈호텔)
	세계한상대회 개회식(COEX)
10. 17	한–아프리카포럼 개회식(하얏트호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개막식(KINTEX)
	할로넨 前 핀란드 대통령 면담(정부서울청사)
10. 18	이임 주한일본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카르만 예멘 노벨평화상 수상자 접견(정부서울청사)
	오만 술탄카부스대학 총장보 접견(정부서울청사)
	軍 사병훈련 및 교육관계관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0. 19	재능기부 예술인 오찬 간담회(총리공관)
	카타르 투명성 및 행정통제청 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기부식품 제공사업 현장 방문(영등포구, 푸드마켓)
10. 20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세계총회 개막식(COEX)
10. 22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사전 각료급회의 개회식(신라호텔)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팔레스호텔)
10. 23	GGGI 창립회의 계기 대표단 환영만찬(신라호텔)
	美 영화협회 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0. 24	드라이어 美 하원규칙위원장 접견(정부서울청사)
	글로벌 인재포럼 개회식(롯데호텔)
10. 26	화폐박람회 개막식(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

날짜	행 사 명 (장소)
10. 26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현장 방문(순천)
10. 29	美 3M사 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UN 사무총장 면담(정부서울청사)
	태풍대비 · 복구지원 관계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0. 30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막식(COEX)
	GCF 유치기념 행사(대한상공회의소)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서울총회 전야만찬(롯데호텔)
10. 31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서울총회 개회식(롯데호텔)
11. 7	태국 국회의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1.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문 및 특강(천안)
11. 9	농업인의 날 기념식(중구, 농협중앙회)
	장성군 등 합동직거래장터 개장식(강동구)
	섬유의 날 기념식(강남구, 섬유센터)
11. 12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회식(COEX)
11. 13	신성장동력 이행점검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식(강남구, 대한건설회관)
11. 15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신라호텔)
11. 16	동계전력수급대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정부서울청사)
	국외입양 관련 관계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1. 17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백범김구기념관)
11. 19	한–케냐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케냐 총리 환영만찬(내외분)(총리공관)
11. 21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1. 22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이사회 개회식(그랜드힐튼호텔)
	정부업무평가위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2주기 추모식(전쟁기념관)
	UN결핵퇴치특사 접견(정부서울청사)
	독서동아리 활동 우수학교 방문(파주)
	출판도시 방문(파주)
	동절기 서민생활대책 관련 현장방문(고양)
11. 29	사랑의 열매 전달식(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개막식(COEX)
12. 7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식(국방대학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합동봉안식(국립서울현충원)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행사(그랜드힐튼호텔)
12. 10	연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국군장병 위문(서산)
12. 11	신임 주한일본대사 접견(정부서울청사)

날짜	행 사 명 (장소)
12. 12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계기 베트남 관계자 오찬간담회(총리공관)
	건강한사회 추진성과 보고대회(정부서울청사)
12. 13	동반성장위원회 2주년 기념식(63시티)
	녹색성장 생생도시 포상식(정부서울청사)
12. 17	불법사금융척결 현장 보고회(금융감독원)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내외분)(종로구)
12. 20	영광지역 방문
12. 21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전달(중구)
	나눔특별생방송 출연(KBS)
	공직복무관리 우수공무원 포상식(정부서울청사)
12. 26	장애인거주시설(소망공동체) 방문(공주)
	노인복지시설 방문(세종)
	소방본부 방문(세종)
12. 27	정부세종청사 1단계 개청식
	청주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청주)
12. 2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방문(종로구)
	한글날 공휴일 지정 기념 축하행사(광화문광장)

김황식 국무총리 해외 순방

날짜	행 사 명 (국가)
2010. 11. 30~12. 3	월드컵 유치 행사(스위스)
2010. 12. 30~1. 9	브라질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및 남미 순방(브라질 · 파라 과이 · 우루과이)
2011. 3. 21	일본 지진희생자 조문(일본)
2011. 4. 12~ 15	보아오 포럼 참석 및 중국 순방(중국)
2011. 5. 24~ 27	OECD 각료이사회 참석(프랑스)
2011. 9. 26~10. 2	유럽 2개국 순방(불가리아 · 우크라이나)
2012. 1. 12~ 18	중동 2개국 순방(오만 · UAE)
2012. 3. 10~ 14	세계 물 포럼 참석(프랑스)
2012. 7. 7~ 15	아프리카 2개국 순방(케냐 · 모잠비크)
2012. 10. 7~ 11	GCF참석 및 덴마크 순방(덴마크)
2012. 11. 30~12. 6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특사 및 캐나다 순방(멕시코 · 캐나다)

국무총리실 5년의 기록

조화로운 정책 선진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❷ 2008.2 ~ 2013.2

발행인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발행처 국무총리실
기획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발행일 2013년 1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101000-000051-0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홈페이지 http://pmo.go.kr/pmo_web/main/
제작 MOON P&C
인쇄 정원문화인쇄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